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838-01

도축검사 매뉴얼

관련 법령 및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발간사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식생활도 과거와는 그 양상이 크게 변화하였고, 특히 고단백 식품인 육류의 섭취는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2018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의 국민 1인당 연간 소비량은 53.9kg으로 나타나, 1998년의 28.1kg에 비해 20년만에 약 2배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육류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역시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식육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수단은 도축장에서 검사관에 의해 실시되는 도축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축검사는 도축 당시의 가축이 건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고기, 내장이 위생상 문제가 없는지를 검사함으로써, 식용에 부적합한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검사가 축산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매년 도축 검사관과 검사원을 대상으로 도축검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검사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기에, 그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축검사 현장에서는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도축검사 매뉴얼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도축장에서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계의 전문가 및 연구자는 물론, 현장에서 발로 뛰고 검사하는

검사관과 검사원이 합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소·돼지 등 포유류와 닭·오리 등 가금류를 구분하여 축종별로 주요 질병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자료 중심으로 수록하고, 도축검사 관련 법령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핸드북 및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이 도축 현장에서 검사관과 검사원들을 위한 표준 매뉴얼로 널리 활용되어 우리나라의 가축과 육류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매뉴얼의 편찬을 위해 수 개월간 애써 주신 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위생 방역지원본부, 농협경제지주 관계관과 시·도 검사관 및 학계 등의 감수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오병석

CONTENTS

도축검사 매뉴얼(관련 법령 및 규정)

I. 식육위생과 도축검사 _ 1

1. 식육의 이해 -----	2
가. 식육으로의 변화 -----	3
나. 정상육과 이상육 -----	4
2. 식육의 생산단계별 위생관리 대책 -----	5
가. 생축으로 있을 때의 대책 -----	5
나. 식육 생산과정에서의 대책 -----	5
3. 도축장 위생관리와 도축검사 -----	9
가. 도축장 위생관리 -----	9
나. 도축검사관의 역할 -----	9

II. 도축검사 관련 법령 및 규정 _ 11

1. 축산물 위생관리법 -----	12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축검사 관련 조항 -----	12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	60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	72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도 및 별지서식 ---	124

2. 도축검사 관련 고시	147
가.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147
나. 기립불능소 판정 및 보상금의 지급요령 등 규정	164
다.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174
라.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272
마.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280
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314
사.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323
아. 도축검사관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지침	330
자. 자가소비 및 자가조리·판매를 위한 가축의 도살 및 처리허용지역 ...	339

Ⅲ. 참고 자료 _ 343

1. 정보시스템의 활용	344
가. 도축검사 흐름도	344
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활용	345
다. 이력조회시스템의 활용	351
2. 절식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352
3. 도축장 식육부산물 위생관리 매뉴얼	355

도축검사 매뉴얼(관련 법령 및 규정)





식육위생과 도축검사

1. 식육의 이해
2. 식육의 생산단계별 위생관리 대책
3. 도축장 위생관리와 도축검사

1 식육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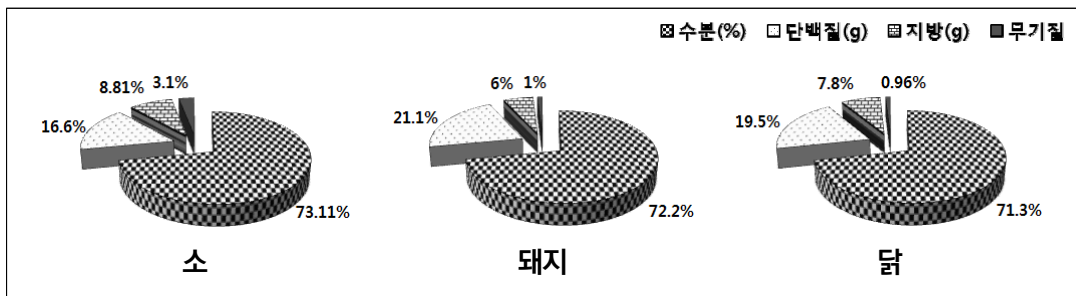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 돼지, 양 등 포유류 또는 닭, 오리 등 가금류의 각종 동물의 고기를 통틀어 말한다. 식육은 소화율이 높고 영양성분이 골고루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그 조성도 인체의 구성성분과 비슷하다. 특히 중요한 영양소인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이고, 필수아미노산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하며, 비타민 B군과 우유에 적은 철이나 인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영양분이 많으므로 인해 유통이나 조리과정에서 변패나 오염되기 쉽고 또한 가축이 각종 질병이나 전염성 질환에 걸리기 쉬워 이를 보균하는 동물을 식용하거나 직접 접촉 흡혈곤충 등의 매개체로 감염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특히, 식육의 소비량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요즘에는 식육에 의한 위해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연에 예방한다는 것은 식육위생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식육은 도살부터 판매까지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냉장 및 냉동 보관되어야 한다.

식품위생상 주의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인수공통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
- ② 식육을 중간숙주로 하는 기생충에 의한 오염
- ③ 식중독 원인 세균에 의한 오염
- ④ 소화기계 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한 오염
- ⑤ 식육의 부패 및 변패에 따른 위해
- ⑥ 가축의 치료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등 잔류화학물질에 의한 위해



〈식육 구성 성분〉

가. 식육으로의 변화

숙성이란 산소공급 중단, 근육의 혐기성 ATP 생성, 글리코겐 분해의 ATP 생성 중단, 근육의 수축·이완 중지의 과정을 거쳐 근육의 분해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 사후강직과 숙성 시간

종류	강직 시작	최대강직(냉장)	숙성 완료(냉장)
쇠고기	12시간	27시간	7~10일(4~7℃)
돼지고기	12시간	24시간	3~5일
닭고기	6시간	12시간	2일

2) 숙성 과정



나. 정상육과 이상육

식육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운송, 도축, 포장처리, 판매단계 등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식육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식육에 이상이 발생한 것을 이상육 또는 결합육이라 한다.

1) 정상육

정상육은 pH의 완만한 강하로 육단백의 변성이 없이 선홍색의 적당한 보수력을 갖고 있다.

2) PSE(Pale, Soft, Exudative ; 창백하고 흐물거리며 육즙이 많이 나오는)

유전적 요인과 도살 직전의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되며, 글리코젠에서 젖산으로의 급속한 변화로 발생된다.

- 냉각 이전에 pH가 급감하여 육단백의 변성 초래 → 보수력 감소로 수분이 육 표면으로 삼출

3) DFD(Dark, Firm, Dry ; 암적색이며 조직이 견고하고 육즙이 적은)

도살 시 근육의 글리코젠 함량이 매우 적어 도살 후 젖산 생성의 미약으로 발생된다.

- 근육의 pH 변화가 미미하여 pH6.0이상 유지
- 쇠고기에서 다크커팅 쇠고기(Dark cutting beef)로 불리며 육색은 암적색이지만 보수력이 좋아 조리 후 정상육보다 연하고 다즙성임

구분	pH의 변화	육즙	비고
정상육	완전히 변화	중간	
PSE육	급격히 변화	표면에 삼출	돼지고기에서 출현율이 높음
DFD육	변화가 거의 없음	육질에 함유	소고기에서는 DFD육만 나타남

〈정상육과 이상육의 특성〉

이 밖에도 소의 경우 근출혈, 수종, 근염, 질병과 상처 등에 의한 근육 손상 등이 있다. 돼지의 경우에는 방혈 불량, 이분체 불량, 골절, 척추 이상, 농양, 근출혈, 호흡기 불량, 피부 불량 등이 도체의 육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식육 생산단계별 위생관리 대책

식육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위생상 안전한 식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 생축으로 있을 때의 대책

건강한 동물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축산업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가축을 방역상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하여 질병의 유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생산되는 식육의 위생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수공통전염병을 타파할 수 있고, 축산으로 경제적 이익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또한 식육 위생대책 면에서도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식육의 생산과정에서의 대책

식육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도살과 해체는 도축장이나 소정의 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식육위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도축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도축검사(meat inspection)은 도살되는 가축의 건강 상태와 법정 전염병 감염 여부와 공중위생상 도체를 식용으로 할 수 있는가를 판정하는 과정이며, 여기에는 도살 전에 행하는 생체검사와 도살 후에 행하는 해체 검사가 있다.

1) 생체검사(antemortem inspection)

가축이 도살되기 전 살아있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검사로 해당 가축의 건강여부를 판정하여 도체가 식용으로 하는데 이상이 없는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도살 2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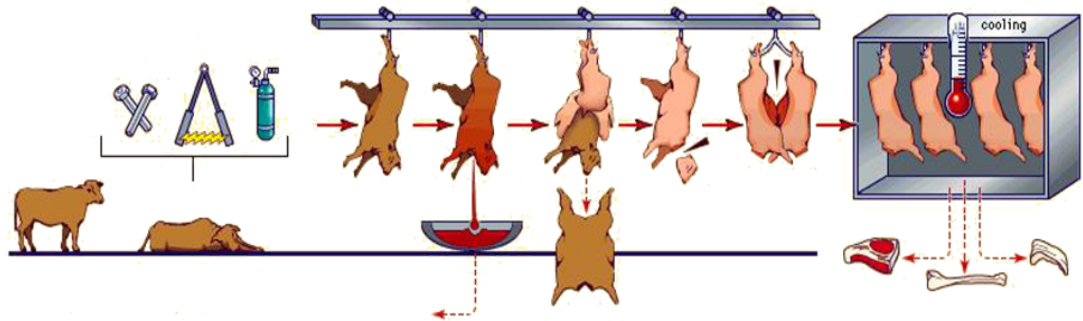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령감별과 가축의 안정상태 및 운동 시에 실시하는 망진과 축진으로 생리적인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판단한다.

생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결과에 따라 정밀 검사를 수행하여 도축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2) 해체검사(postmortem inspection)

청결한 해체장소와 깨끗이 세척된 기구로 외관검사(general inspection)와 병리 해체검사(detailed inspection)를 실시한다. 외경검사는 영양상태를 비롯해서 외상, 충혈, 부종, 방혈의 정도, 골과 관절의 이상 및 이상취 등을 검사하며, 병리해체검사에서 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부분적으로 두부, 복강내장, 흉강과 흉강내장, 유방, 지육 등의 병변, 혈액, 각 입파선, 세균 및 기생충 등을 검사한다.

도축장은 가축을 도살하여 지육과 내장 등을 생산하는 식육 생산공장이므로 도살·해체하는 동안 식용으로 제공될 부분이 2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도축장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축검사를 실시하는 곳이므로 가축은 불결해지기 쉽고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병원성미생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축장의 구조 및 설비와 운영,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류 → 기절 → 현수 → 방혈 → 박피 및 내장적출 → 분할 → 냉각
 생체검사 → 해체검사 → 지육검사

〈소 도축 공정 예시〉

3) 식육 유통과정에서의 대책

도축검사를 거쳐 식용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판정된 식육은 수송과정을 통해 식육판매업장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때까지의 유통과정을 거치게 된다. 도축장으로부터 식육점이나 가공장까지 수송될 때 부적합한 수송으로 말미암아 세균의 오염이나 기타의 오염을 받을 우려가 많기 때문에 식육 수송 시의 위생은 여러 면에서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가공장이 도축장과 분리되어 있어 수송과정이 필수적인 실정 하에서는 더욱 더 중요하다, 식육수송에 사용되는 차량은 특수시설과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식육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식육점 등의 영업장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지육과 내장을 취급하는 장소로서 시설과 취급방법을 중심으로 한 위생관리가 주가 되어야 한다.

냉장·냉동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가급적 식육을 맨손으로 만지지 말아야 하며, 육류 상호간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오염을 피해야 한다. 즉, 2개의 육류가 접촉하면 미생물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오염물이 이행되며, 이 오염미생물은 온습도가 적절하면 서서히 증식하여 식중독이나 부패, 변패를 일으키는 정도까지 증식한다.

미생물의 증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관리인데 2~3℃ 이하로 보존하여야만 병원균, 부패균의 증식을 완전히 억제하거나 현저히 지연시킬 수 있으며 또한 식육을 세절하지 않는 것이 미생물의 증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 좋다.

(단위 : CFU/cm²)

처리	저장 기간 (일)								
	0	10	15	20	25	30	40	45	50
5℃	5.6×10 ⁴	1.7×10 ⁴	8.0×10 ⁵	2.7×10 ⁶	6.0×10 ⁶	1.0×10 ⁷	-	-	-
0~-2℃	5.6×10 ³	1.1×10 ⁴	-	2.3×10 ⁴	-	1.4×10 ⁴	1.9×10 ⁴	2.9×10 ⁵	1.7×10 ⁶
-18℃	5.6×10 ³	2.9×10 ⁴	-	1.4×10 ⁴	-	2.4×10 ⁴	5.0×10 ³	-	9.2×10 ⁴

〈저장 온도별 미생물 증식 현황 : 표면 총세균수〉

4) 식육 가공과정에서의 대책

식육의 가공과정에서의 위생대책은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병원성미생물의 2차오염을 방지하고, 선도저하의 주원인이 되는 일반미생물의 오염방지가 중요하다. 특히 2차오염된 지육을 가공원료로 사용할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밖에도 기계, 기구 등으로부터의 오염이나 유해물질의 혼입을 방지해야 한다.

5) 소비자 입장에서의 대책

식육은 식육판매업소를 거쳐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소비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살모넬라균 등의 오염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날 것으로 섭취하는 육회 등은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기생충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가열처리 후에도 취급 부주의로 인해 클로스트리디움균의 오염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식육을 조리하는 사람이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식품위생, 특히 식육위생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식육위생의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3 도축장 위생관리와 도축검사

가. 도축장 위생관리

도축장은 축산농가에서 사육된 가축을 식육으로 생산하고자 도살 및 해체를 하여 얻은 축산물을 처리·보관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도축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축산물 생산에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축과정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면 식중독 등의 공중위생상의 문제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변질 및 변패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받을 우려가 크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도축검사 및 위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도축검사관과 도축검사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더불어 도축장 영업자와 종사자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방법을 숙지하여 위생관념을 익히고 실천하는 것도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나. 도축검사관의 역할

소비자의 축산물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 수준 향상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됨에 따라 도축장에서 축산물 검사를 담당하는 검사관의 역할이 증대되고 매우 강조되고 있다. 도축장에서 검사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에 대한 검사

2) 검사에 불합격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폐기물 관련 법에 의한 처리 등

관련법의 처리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수시 확인

- 인수공통전염병 및 가축전염병에 의한 사항은 특히 유의하여 관리·감독 실시

3) 영업장 시설위생의 검사

- 도축작업 전·후 작업장의 청결상태와 시설·설비·도구·규격에 적합한 용기의 사용 및 이들의 세척·소독에 관한 사항과 종업원의 개인위생 및 폐수처리시설 등 작업장 시설물의 가동 여부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명시된 영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수시확인

5) 축산물 유통에 대한 지도

6)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한 검사·처리

7) 도축검사원의 업무 이행여부 확인

도축검사관은 이 외에도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폭넓게 관장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생산과 처리를 관리·감독하여 품질향상을 통한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도축검사 관련 법령 및 규정

1. 축산물 위생관리법
2. 도축검사 관련 고시

1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도축검사 관련 조항

<p>목적 (제1조)</p>	<p>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p>
<p>정의 (제2조)</p>	<p>1. 가축의 범위 :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 돼지(멧돼지를 포함), 닭, 오리</p> <p>☞ 시행령 제2조(가축의 범위)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당나귀</p> <p>2. 축산물 : 식육·포장육·원유·식용란·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p> <p>3. 식육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p> <p>11. 작업장 : 도축장, 집유장, 축산물가공장 등</p> <p>12. 기립불능 :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p>
<p>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p>	<p>축산물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름</p>
<p>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4조)</p>	<p>①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함</p> <p>☞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별표 1*과 같음</p>
<p>가축의 도살 등 (제7조)</p>	<p>①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이외에서 도축이 가능한 경우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시·도지사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고해야 함. 단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려 할 경우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봄) 2. 자가소비(소와 말을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장소와 종류를 고시) 3. 자가 조리·판매(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자가조리·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p>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p>

가축의 도살 등
(제7조)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함
-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 시행령 제12조의2(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 ① 법 제7조 제5항 “부상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함 (다음 각 호 이외의 기립불능 가축은 도축 불가능)
 - 1. 부상(負傷)
 - 2. 난산(難産)
 - 3. 산욕마비(産褥痲痺)
 - 4.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 ②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은 소로 함
- ③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립불능 소(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라 한다)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하여야 함
 - 1. 도축장에서 발견된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소에 대한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로 판정
 - 2.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소에 대한 임상검사 결과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
- ④ 제3항에 따른 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함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 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함

☞ 시행령 제12조의3(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함
- ② 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p>가축의 도살 등 (제7조)</p>	<p>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이 정함</p>
	<p>시행령 제12조의4(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p> <p>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기준은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의 평가액 전부로 함</p> <p>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상가격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 경력 및 예후소견(豫後所見),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함</p> <p>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소유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상가격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함</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함</p>
	<p>시행령 제12조의5(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함. 다만, 제12조의3에 따른 질병검사 결과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함</p> <p>1.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p> <p>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p> <p>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p>
	<p>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⑧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제1항제2호에 따른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판매를 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도살·처리하는 가축이나 도살 후 처리하는 식육 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임명·위촉한 검사관에게 그 검사를 하게 해야 함</p> <p>⑨ 제8항에 따라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한 식육에</p>

<p>가축의 도살 등 (제7조)</p>	<p>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를 요청한 자가 합격 표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⑩ 제8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p> <p>☞ 시행규칙 제5조의2(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사슴의 경우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판매하기 위해 도살·처리하는 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도살·처리하는 가축이나 도살 후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관은 검사 후 식육에 합격표시를 해야 함(검사를 요청한 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표시하지 않음). 검사기준은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따름</p>
<p>위생관리기준 (제8조)</p>	<p>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함</p> <p>② 도축장의 영업자는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해야 함</p> <p>☞ 시행규칙 제6조(위생관리기준 등)</p> <p>① 법제8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음</p> <p>④ 도축업의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를 점검 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함</p>
<p>안전관리 인증기준 (제9조)</p>	<p>①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함</p> <p>☞ 시행규칙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p> <p>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한계기준

안전관리 인증기준 (제9조)	<p>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p> <p>5. 중요관리점이 한계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하여야 할 조치</p> <p>6.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p> <p>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다만, 기록유지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자료 및 기록은 2년 이상 보관해야 함</p>
	<p>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해야 함.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에 있는 영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 시행규칙 제7조(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p> <p>②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지역”이란 울릉도 및 백령도를 말함</p>
	<p>☞ 시행규칙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p> <p>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 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음</p>
	<p>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영업자(도축업 영업자 등, 종업원을 포함)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p>
	<p>☞ 시행규칙 제7조의4(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p> <p>①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영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 교육훈련 : 매년 1회(영업 개시일 또는 인증받은 날부터 기산)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2. 수시 교육훈련 : 축산물 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교육 훈련으로서 1회 8시간 이내 <p>② 영업자 등이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그 종업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받은 종업원이 그 관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자 등이나 그 관리 업무를 새로 담당하는 직원에게 다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p> <p>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p>안전관리 인증기준 (제9조)</p>	<p>3.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증기준과 관련된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p>
<p>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의 3)</p>	<p>②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도축업자)에 대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함</p> <p>☞ 시행규칙 제7조의6(조사·평가의 방법 등)</p> <p>⑤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u>별표 2의2*</u>에 따름</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u>고시*</u>함</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영업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통하여 안전관리인증제도의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p> <p>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검증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함</p> <p>☞ 시행규칙 제7조의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p> <p>①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출입·조사에 관하여는 제7조의6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함.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도축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 중 일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수 있음</p> <p>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도축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에 관한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p> <p>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도축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결과 및 제7조의6제4항에 따른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계 기관에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할 수 있음</p> <p>⑥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는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됨</p> <p>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과정에서 자체안전관리</p>

<p>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제9조의 3)</p>	<p>인증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해당 작업장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p> <p>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2. 제4항에 따른 적정성 검증의 방법 등
<p>부정행위의 금지 (제10조)</p>	<p>누구든지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p>
<p>축산물의 포장 등 (제10조의2)</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게 할 수 있음</p> <p>②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종류 및 영업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 시행령 제12조의7(축산물의 포장 등)</p> <p>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닭·오리의 식육 2.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을 포장하여 보관·운반·진열 및 판매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1조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5호의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6호의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4. 제21조제7호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p>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제21조제7호가목의 식육판매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요건을 갖춘 영업자는 제외함</p> <p>③ 제1항에 따른 포장대상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p> <p>☞ 시행규칙 제7조의11(축산물의 포장방법 등)</p> <p>영 제12조의7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3*에 따름</p>
<p>가축의 검사 (제11조)</p>	<p>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p> <p>☞ 시행규칙 제8조(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p> <p>①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거나 소·돼지·닭·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경우로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이</p>

<p>가축의 검사 (제11조)</p>	<p>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p> <p>② 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함</p> <p>③ 시·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음</p> <p>☞ 시행규칙 제9조(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p> <p>① 검사관은 해당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고려하여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를 하여야 함</p> <p>③ 제1항에 따른 가축 및 그 식육검사의 항목·방법 및 기준은 <u>별표 3*</u>과 같음</p>
<p>축산물의 검사 (제12조)</p>	<p>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p> <p>☞ 시행규칙 제13조(검사증명서의 발급)</p> <p>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한 검사관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그 검사 신청인에게 <u>별지 제4호 서식*</u>의 도축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음</p> <p>③ 제1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 도살·처리 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 증명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음</p> <p>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 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p> <p>☞ 시행규칙 제16조(검사시료의 채취)</p> <p>① 법 제12조에 따라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u>별표 6*</u>과 같음</p> <p>② 검사관이 제1항에 따라 검사시료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u>별지 제6호 서식*</u>의 수거증을 해당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함</p> <p>☞ 시행규칙 제17조(검사기록부)</p> <p>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p> <p>☞ 시행규칙 제18조(검사결과의 통보)</p> <p>① 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 신청인 또는</p>

<p>축산물의 검사 (제12조)</p>	<p>도살·처리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함</p> <p>② 검사관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월별 도축검사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p>
<p>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2조의2)</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 투여 금지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을 사육하는 자 2.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3. 원유, 식용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작업장 또는 축산물 판매업의 영업장으로 출하하려는 자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가축의 사육방법 및 위생적인 출하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자가 출하한 가축 또는 축산물이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한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p>☞ 시행규칙 제18조의 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p> <p>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絶食)할 것.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한다.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할 것 3. 제2항의 거래명세서에 냉장보관으로 표시한 경우 냉장차량 등을 이용하여 냉장상태로 출하할 것
<p>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제13조)</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함</p> <p>②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관은 제33조</p>

<p style="text-align: center;">검사관과 책임수의사 (제1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13. 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지도 14.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또는 과대포장 금지의 위반 여부에 관한 점검·지도 15. 판매 등의 금지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지도 16. 축산물의 압류·폐기·회수 17. 가축 외의 동물 및 그 지육(枝肉),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한 검사·처리 18.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19.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및 보고의무의 이행 여부 확인 등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p>☞ 시행령 제17조2(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기준 업무량과 법 제14조에 따라 작업장 등에 배치하거나 두어야 하는 검사원의 수는 <u>별표 1*</u>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검사원 (제14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원을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함. 다만, 도서·벽지에 있는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 임무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p>☞ 시행령 18조(검사원의 자격·임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의 검사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식품학·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축산기능사 이상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 위생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관이 수행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에 대한 보조업무 2. 검사관이 수행하는 도축장의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 기준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한 보조업무

**검사원
(제14조)**

-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 4. 검사관이 수행하는 실험실검사의 보조업무
 - 5.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 6.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 및 시설 등의 위생관리
 - 7. 그 밖에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관이 지시하는 업무
- ⑤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은 제3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 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관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시행령 18조의2(검사원의 교육)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검사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함께 고시하여야 함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원이 되려는 사람 : 40시간 이상
 -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원 : 매년 4시간 이상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교육내용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1. 수의학에 대한 기초이론
 - 2.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 3.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
 - 4.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5. 축산물 위생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시행령 18조의3(교육실시비용 등)

-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교육 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음
 - 1. 강사수당
 - 2. 교육교재 편찬비
 -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 ② 검사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림축산식품부)이 정하여 고시함

<p>합격표시 (제16조)</p>	<p>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는 제12조에 따라 검사한 결과 검사에 합격한 축산물(원유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표시를 하여야 함</p> <p>☞ 시행규칙 제23조(합격표시) 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u>별표 8*</u>에 따름</p>
<p>미검사품의 반출금지 (제17조)</p>	<p>영업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이하 "미검사품"이라 한다)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됨</p>
<p>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제18조)</p>	<p>영업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p> <p>☞ 시행령 제19조(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축산물의 처리)</p> <p>①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는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p>② 검사불합격품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u>별표 2*</u>와 같음</p> <p>③ 검사불합격품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함</p> <p>☞ 시행규칙 제24조(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u>별표 9*</u>와 같음</p>
<p>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1조)</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축업 2. 집유업 3. 축산물가공업 등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p>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p> <p>☞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축업 :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p>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제21조)</p>	<p>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함</p> <p>3.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등</p> <p>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음</p>
<p>영업의 허가 (제22조)</p>	<p>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p> <p>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같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나 변경허가를 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과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 3.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과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6.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영업의 허가
(제22조)

-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제27조제1항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9. 제33조의2제5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허가 보류 요청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시행규칙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 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한다)
 3. 삭제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처리·가공·포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삭제
 6.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함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p>영업의 허가 (제22조)</p>	<p>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p> <p>④ 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p> <p>⑤ 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허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함</p> <p>⑥ 제4항의 영업허가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함</p>
	<p>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p> <p>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p> <p>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봄</p>
	<p>☞ 시행령 제22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축업의 경우 : 계류장·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 2. 집유업의 경우 : 저유조
	<p>☞ 시행규칙 제31조(영업의 변경허가 등)</p> <p>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 제22조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 <p>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p>

영업의 허가
(제22조)

포함한다)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함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함

☞ 시행규칙 제32조(휴업 등의 신고)

-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음
- ② 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하여야 함
-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함
-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 시행규칙 제39조(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영업의 승계
(제26조)**

- ①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함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을 준용함

☞ 시행규칙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

- ①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함.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 2. 상속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영업양도의 경우만 해당한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하며,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확인해야 함. 다만, 신고인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함
- ③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p>영업의 승계 (제26조)</p>	<p>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p> <p>④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음</p> <p>⑤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함</p>
<p>허가의 취소 등 (제27조)</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음.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9조의3제6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의4제1항 후단·제2항 단서,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p>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음</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

허가의 취소 등
(제27조)

- 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⑥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함

☞ 시행령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처분 사유 및 처분 내용 등이 적힌 서면으로 하여야 함
 - 1.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 2.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함
-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 기간 등이 적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함

☞ 시행규칙 제4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및 영업소 폐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음

☞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통보)

- ①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농장 인증취소 관련 청문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함) 이 법 제27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43조에 따른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 ②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였을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p>허가의 취소 등 (제27조)</p>	<p>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일 또는 폐쇄일 등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함</p> <p>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47조제1항의 교육의 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함</p> <p>④ 제1항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함</p>
<p>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9조)</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p>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영업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다만,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p>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본 : 국토교통부장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 국토교통부장관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 시·도지사

<p style="text-align: center;">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9조)</p>	<p>☞ 시행령 제2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p> <p>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함</p> <p>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p> <p>☞ 시행령 제26조의2(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p> <p>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의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함</p>
<p style="text-align: center;">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8조의 2)</p>	<p>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제3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제7호·제9호를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함</p> <p>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p> <p>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p> <p>☞ 시행령 제26조의3(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p> <p>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2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판매한 해당 축산물(이하</p>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8조의 2)

이 조에서 "위해축산물등"이라 한다)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함

-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위해축산물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 시점까지의 출하량에서 회수량 및 반품·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아니한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판매기간 중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시기별로 가격을 산정함
- ③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함

☞ 시행령 제26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과징금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음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음
 -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p>건강진단 (제2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봄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 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③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
	<p>☞ 시행규칙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포장·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 함.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에서 완전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은 제외함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함 <p>☞ 시행규칙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p> <p>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질병이 있는 사람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 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피부병이나 그 밖의 화농성(化膿性)질환
<p>위생교육 등 (제3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다음 각 호의 검사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8항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판매를 위한 검사를 하는 검사관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

위생교육 등
(제30조)

-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
-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⑦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음

☞ 시행규칙 제46조(위생교육 대상자)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음

-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 2.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 3.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등

☞ 시행규칙 제47조(위생교육기관)

- ①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이 지정함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위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함. 다만,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그 1개의 기관을 지정함
- ③ 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함
- ④ 위생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종료

위생교육 등
(제30조)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축장의 검사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함. 위생교육 기관은 수료증 발급대상 등 교육에 관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⑥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함

시행규칙 제48조(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 ① 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음
 - 1. 강사 수당
 - 2. 교육교재 편찬비
 -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 4. 그 밖에 교육 관련 사무용품 구입비 등 소요경비
- ②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
 - 가. 가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적인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 나. 지육 및 내장 등에서의 병변과 기생충 등에 대한 검사 및 판정방법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
 - 2.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
 - 가. 축산물과 관련한 개인 위생에 관한 사항
 - 나. 축산물 위생시책에 관한 사항
 - 다. 축산물의 위생관리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 라. 축산물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생교육기관은 도축검사, 축산물 위생, 개인 위생, 축산물 위생시책, 품질관리 등 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재를 편찬하여 교육 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49조(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이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은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함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름
 - 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 6시간

위생교육 등
(제30조)

2.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 ③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름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 : 매년 4시간. 다만, 책임수의사가 되려는 자는 2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2. 제4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 : 매년 3시간
 3. 제46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 : 매년 4시간
- ④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음
 1.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에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음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1명이 교육을 받은 후 전달교육을 하면 그 전달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⑤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시행규칙 제50조(교육의 생략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의 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영업장소는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함
 1.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이하 이 항에서 "신규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영업자로부터 퇴직한 후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1의2. 신규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규위생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p>위생교육 등 (제30조)</p>	<p>1의3.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교육을 받았던 영업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p> <p>4. 제4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가 제7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그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p> <p>③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p> <p>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0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u>고시</u>*함</p>
<p>영업자 준수사항 (제31조)</p>	<p>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p> <p>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식용란의 경우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된 거래명세서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p>5의2.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 및 그 보고 등에 관한 사항</p> <p>5의3. 식용란의 용도에 따른 유통·판매의 구분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함</p> <p>☞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p> <p>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u>별표 12*</u>와 같음</p>
<p>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제31조의2)</p>	<p>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p>

<p>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제31조의2)</p>	<p>경우에는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p> <p>②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폐기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그 회수·폐기 계획에 따른 회수·폐기 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축산물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축산물이고, 보고 의무자가 해당 축산물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폐기의 대상 축산물, 회수·폐기의 계획, 회수·폐기의 절차 및 회수·폐기의 결과 보고 등은 총리령으로 정함</p>
	<p>제51조의2(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p> <p>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음</p>
	<p>제51조의3(회수 및 폐기계획 등)</p> <p>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및 생산단위(롯데) 2.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거래업체명 등 판매경로 및 판매량 3. 회수계획량(위해 축산물로 판명될 당시 해당 축산물의 소비량 및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6. 회수하는 축산물의 회수장소 및 폐기 등 처리방법 7. 회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p>② 제1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는 자는 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미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고, 회수·폐기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회수 및 폐기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함. 이 경우 그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의 명칭

<p>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제31조의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생산량·판매량·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과 폐기결과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 용도 및 전환 후의 사용처 등을 말함) 3. 미회수량에 대한 내역 및 조치계획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p>③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을 보고받은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및 폐기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함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및 폐기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3. 유통 중인 해당 회수 및 폐기대상 축산물에 대하여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할 것 <p>④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 및 폐기계획 또는 그 결과가 공중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p>
<p>판매 등의 금지 (제33조)</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함.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제6항 또는</p>

<p>판매 등의 금지 (제33조)</p>	<p>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p> <p>☞ 시행규칙 제53조(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3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p>위해평가 (제33조의2)</p>	<p>식약처장은 위해성의 우려가 제기되는 축산물이 판매 등의 금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썩었거나 상한 것,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음,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우려,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등)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진열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음</p>
<p>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34조)</p>	<p>제22조제1항에 따라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축실적, 집유실적, 축산물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생산실적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함.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야 함</p> <p>☞ 시행규칙 제54조(생산실적 등의 보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전자문서로 하는 보고를 포함한다) 하여야 함. 다만, 제1호의 경우 제18조제2항에 따라 월별 도축검사실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봄 1. 도축업의 경우 : 별지 제34호 서식에 따라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p>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34조)</p>	<p>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p>
<p>시설 개선 (제35조)</p>	<p>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음</p>
<p>압류·폐기 또는 회수 (제35조)</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한다)에게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축산물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축산물 3. 삭제 <2018. 3. 13.> 4. 삭제 <2015. 2. 3.> 5.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살·처리, 집유, 가공·포장 또는 보관한 축산물 6.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하거나 판매한 축산물 7. 삭제 <2018. 3. 13.> 8.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축산물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음</p> <p>③ 제1항에 따라 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대하여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p> <p>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압류·회수·폐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p>

<p style="text-align: center;">압류·폐기 또는 회수 (제35조)</p>	<p>☞ 시행규칙 제54조의2(축산물의 회수명령)</p> <p>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축산물의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회수대상 축산물의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회수계획을 작성하여 그 회수계획에 따라 회수하여야 함. 이 경우 제51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함</p> <p>② 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함</p> <hr/> <p>☞ 시행규칙 제54조의3(축산물 회수의 지도·감독 등)</p> <p>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1조의3 또는 제54조의2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는 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기간 중에 그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p> <p>② 제51조의3제4항 또는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는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p> <p>③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회수기간 이내에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영업자가 폐기대상인 해당 축산물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음</p> <p>④ 법 제31조의2 또는 제3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회수·압류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영 별표 2*를 준용하고,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를 준용함.</p> <p>⑤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압류 대상 축산물을 영업장 내 일정구역에 구분·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압류확인서를 작성하여 압류 대상 축산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함</p> <hr/> <p>☞ 시행규칙 제55조(압류증)</p> <p>제54조의3제5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 발급하는 압류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공표 (제37조)</p>

**공표
(제37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회수를 명령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음. 다만, 축산물 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함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3조의2제1항의 위해 평가에 따라 해당 축산물이 위해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 및 영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28조·제36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축산물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공표하여야 함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규칙 제28조(공표의 방법 등)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 회수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 전체에 게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긴급 회수문을 법 제37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연계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함.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요청받은 긴급 회수문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이 전량 회수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로서 긴급 회수문을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긴급 회수문을 게재하지 아니하거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음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회수 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 사유
 5. 회수 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전화번호 및 주소
 7.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 ②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공표
(제37조)**

-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함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 또는 "위해 축산물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3. 해당 축산물의 제조연월일·수입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또는 위해요소
 5.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6. 그 밖에 위해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함
1.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 축산물의 제품명(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6.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7.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재할 때 그 게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름
1. 제2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 : 게재일부터 6개월
 2.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처분인 경우 : 그 영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3. 제3항에 따라 게재하는 경우로서 확정된 행정처분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취소 처분인 경우 : 게재일부터 2년
- ⑤ 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

☞ 시행규칙 제55조의2(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긴급 회수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등은 별표 14의4*와 같다.
- ②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을 공표한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 결과를 지체 없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함

<p>공표 (제37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표일 2. 공표매체 3. 공표횟수 4.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당일 인쇄·보급된 해당 신문의 전체에 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함)
<p>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37조의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의 검사·조사, 폐기·회수 및 공표 등에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의 제출 등은 총리령으로 정함 <p>☞ 시행규칙 제55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 제37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 다만,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하고, 추후 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그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의 실적 등 5. 그 밖에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정보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및 자료의 처리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함
<p>폐쇄조치 (제3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도록 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 2.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폐쇄

<p>폐쇄조치 (제38조)</p>	<p>조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시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같음</p> <p>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려면 미리 이를 해당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함.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⑤ 제2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함</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함</p> <p>☞ 시행령 제29조(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사유로 인하여 영업을 허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쇄 대상 영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인수공통감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 시행규칙 제56조(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명·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하는 경우 2.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게시문을 붙이는 경우
<p>포상금 (제39조)</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조제5항·제6항, 제7조제1항·제5항,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4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 포장, 사용, 보관, 운반, 진열 또는 판매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p>

<p style="text-align: center;">포상금 (제39조)</p>	<p>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p>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p> <p>☞ 시행령 제30조(포상금의 지급)</p> <p>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p> <p>②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p> <p>☞ 시행규칙 제57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p> <p>①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후에 별지 제37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가족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족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함</p> <p>② 시·도지사는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함.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함</p>
<p style="text-align: center;">가족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제40조의 2)</p>	<p>① 가족 외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처리하는데 처리하는 자는 해당 동물과 그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p> <p>② 검사관은 도축 의뢰인에게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함</p> <p>③ 검사관은 불합격한 동물, 지육 등에 대하여 폐기 명령을 함</p> <p>④ 의뢰자는 폐기 명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p> <p>⑤ 검사의 신청절차, 신청요건, 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결과의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함</p> <p>☞ 시행규칙 제58조(검사대상 가족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p> <p>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동물 :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타조(에뮤·리아 및 그 개량종을 포함), 오소리</p> <p>②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3일 전까지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관에게 제출</p> <p>③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의 요건</p> <p>1. 별표 10 제1호가목(1)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작업장을 갖출 것. 다만, 작업장의 구조규모시설배치 등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가족외 동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거나</p>

<p>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제40조의 2)</p>	<p>일부 시설의 설치를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음</p> <p>2. 가축외동물을 제1호의 작업장에서 <u>별표 14의5*</u>에 따른 가축외동물의 도살·처리 방법에 따라 도살·처리할 것</p> <hr/> <p>☞ 시행규칙 제58조의 2(가축외 동물 검사 방법 및 기준 등)</p> <p>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관은 도살·처리되는 가축외 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u>별표 14의6*</u>의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p>
<p>수수료 (제41조)</p>	<p>제41조(수수료)</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8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1의2.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8항에 따라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7. 제12조제5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8.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13.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1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5. 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15의2.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16. 제40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hr/> <p>☞ 시행규칙 제59조(검사 수수료 등)</p> <p>① 법 제41조제1호의2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작업장 등의 인증·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내야 함</p>

<p>수수료 (제41조)</p>	<p>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함</p> <p>③ 법 제41조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의2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함</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음</p> <p>☞ 시행규칙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함.</p>
<p>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제41조)</p>	<p>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위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p>
<p>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p>	<p>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p> <p>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음</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와 제31조의3,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다만,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함</p> <p>③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p> <p>☞ 시행령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31조의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위탁함</p> <p>③ 삭제</p>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함
 1. 법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9조의2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업무(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제2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보관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안전관리인증업소(제2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도축장·집유장 또는 농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함
 1. 법 제9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변경 인증 및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및 교육훈련 실시
 3.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 대한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등의 우선지원
 4. 법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5.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조사·평가
 6. 법 제9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조사·평가 및 지원
 7.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작업장 또는 농장에 대한 출입·조사
 8. 법 제9조의3제7항에 따른 영업자에 대한 조치
 9.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에 대한 인증취소 및 시정 명령
 10. 삭제 <2016. 7. 26.>
 11.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가축의 사육방법 등 개선에 필요한 지도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

- 및 시정명령
13. 법 제13조제1항·제5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검사관 및 그 업무를 보조하는 검사원의 임명·채용·배치에 관한 사항
 1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영업자에 대한 축산물 검사 결과 보고 명령 및 검사관에 대한 도축장·집유장 또는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
 15. 법 제36조에 따른 검사관에 대한 압류·폐기 명령(도축장 및 집유장에 관한 명령만 해당한다)
 1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하거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한다)
 17. 법 제42조에 따른 조치 명령
 18. 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9호에 따라 위탁된 권한에 따른 청문만 해당한다)
 19.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 판정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고시
 - 19의2.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취급처리,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한 사항
 20.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보상가격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고시
 21.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원(제13호에 따라 채용·배치 권한이 위탁된 검사원으로 한정한다)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고시 및 교육에 관한 고시

☞ 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31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1. 삭제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4. 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 5의2.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 5의3. 법 제38조에 따른 폐쇄조치에 관한 사무

<p>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4조)</p>	<p>6.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40조의2에 따른 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삭제 예정)</p>
<p>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의2)</p>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책임수의사 3.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p>벌칙 (제45조)</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2.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 3.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p>6의2. 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p>②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제6호의2, 제7호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이 경우 그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금액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함</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보존 또는 유통을 한 자

**벌칙
(제45조)**

2.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규격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용기등을 사용한 자
4.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집유하거나 축산물을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한 자
5.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식육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집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의2.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 6의2. 삭제
7. 제17조를 위반하여 미검사품을 작업장 밖으로 반출한 자
8. 제18조를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처리한 자
9. 삭제
10.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의2, 제5호의3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함
12.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13. 제31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거래내역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4.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
15. 제36조제1항·제2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4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등을 처리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제7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합격표시를 한 자
 - 1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수의사의 요청을 거부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합격 표시를 한 자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게시문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별칙
(제45조)**

1. 삭제
 2. 삭제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를 한 자
 - 4의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자
 5.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자
 8.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 11의2.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8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61조(별칙에서 제외되는 자)

- ① 법 제45조제4항제11호 단서 및 제47조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2.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및 위생화를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자
 3.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일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

**별칙
(제45조)**

-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별표 12 제1호아목 또는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출입·검사 등 기록부,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4의2. 별표 12 제1호자목 또는 별표 13 제3호버목·제4호거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식육을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아니한 자
 5.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 자
 - 5의2.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별표 12 제4호나목 또는 별표 13 제3호파목·제4호차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축산물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지 아니한 자
 7.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 7의2. 별표 13 제2호다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별표 13 제3호가목·나목 또는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제외한다)
- ② 법 제45조제6항제1호 단서 및 제47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합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하 이 항에서 "기준"이라 한다) 중 축산물의 영양성분에 관한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영양성분을 축산물에 표시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 기준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자
 2. 영양성분 표시 시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영양성분 표시 시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4.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자
 5. 영양성분의 실제 측정값이 영양 표시량 대비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자

<p>양벌규정 (제46조)</p>	<p>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p>
<p>과태료 (제47조)</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 2. 삭제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6.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7.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익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0.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0의2.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p>과태료 (제47조)</p>	<p>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p>10의3.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자</p> <p>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p> <p>1.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2.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p> <p>2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의3.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 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p> <p>2의4. 제3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p> <p>3.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함</p> <hr/> <p>☞ 시행령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음</p> <hr/> <p>☞ 시행규칙 제62조(과태료 부과금액) 영 제32조 및 별표 4 제2호가목 및 더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16*에 따른 금액을 말함</p>
<p>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 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제58조의 3)</p>	<p>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 및 그 식육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작업장의 시설기준, 도살·처리방법 및 검사기준 등은 제58조부터 제58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등에 따를 수 있음</p>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별표 1 2014. 1. 28.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시행령 제17조의2 관련)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해당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1명이 근무하는 경우 :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5만수 이하
- 2) 2명이 근무하는 경우 :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10만수 이하
- 3)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 3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15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15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
- 4) 같은 작업장에서 소·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에는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한다.
- 5) 삭제 <2014.1.28>

나. 집유장에 근무하는 책임수의사의 수는 집유농가 500호당 1명 이상으로 한다.

2. 검사원의 수

구 분	가축별	일일 도축두수	검사원의 수
도축장	소	1두 ~ 30두	1명 이상
		31두 ~ 60두	2명 이상
		61두 이상	3명 이상
	돼지	1두 ~ 300두	1명 이상
		301두 ~ 700두	2명 이상
		701두 이상	3명 이상
	닭	1수 ~ 25,000수	1명 이상
		25,001수 ~ 50,000수	2명 이상
		50,001수 ~ 75,000수	3명 이상
		75,001수 ~ 100,000수	4명 이상
100,001수 이상		6명 이상	
집 유 장		집유농가수	100호당 1인 이상

3. 그 밖의 기준

- 가. 도축장의 도축기준을 정하는 경우 말은 소의 기준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과 사슴은 돼지의 기준을, 그 밖의 가금류는 닭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 나. 제2호에 따른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의 산정은 전년도 연간 실제 도축(집유)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원의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다. 작업장의 영업자는 검사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별표 2 2018. 1. 16.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시행령 제19조제2항 관련)

1. 검사불합격품 등의 처리

- 가.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에 대해서는 가축의 머리 또는 몸통에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적색 또는 청색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나. 법 제11조에 따른 검사 대상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어 불합격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다.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 중 농가에서 원유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에 불합격한 원유에 대해서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색소를 섞어야 한다.

2. 소각매몰정화처리의 방법과 기준

- 가. 동물의 사체, 축산물 등 폐기대상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소각매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나. 원유 등 액상물질에 대한 정화처리는 「물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3) 과징금의 금액기준

별표 3 2018. 4. 24.

과징금의 금액기준

(시행령 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영업의 전부정지 또는 일부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영업의 전부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도축업과 집유업의 경우에는 도축 및 집유 시 영업자가 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처분 전연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연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다.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처분 전연도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 라. 영업의 일부정지인 품목 제조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에 대한 처분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의 해당 품목의 총매출금액에 4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신규제조·휴업 등으로 3개월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월(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월을 말한다)의 1일 평균매출액에 365를 곱하여 산출한다.
-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의 산정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 전부정지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10 이하	17
4	310 초과 430 이하	20
5	430 초과 560 이하	27
6	560 초과 700 이하	34
7	700 초과 860 이하	42
8	860 초과 1,040 이하	51
9	1,040 초과 1,240 이하	62
10	1,240 초과 1,460 이하	73
11	1,460 초과 1,710 이하	86
12	1,710 초과 2,000 이하	94
13	2,000 초과 2,300 이하	100
14	2,300 초과 2,600 이하	106
15	2,600 초과 3,000 이하	112
16	3,000 초과 3,400 이하	118
17	3,400 초과 3,800 이하	124
18	3,800 초과 4,300 이하	140
19	4,300 초과 4,800 이하	157
20	4,800 초과 5,400 이하	176
21	5,400 초과 6,000 이하	197
22	6,000 초과 6,700 이하	219
23	6,700 초과 7,500 이하	245
24	7,500 초과 8,600 이하	278
25	8,600 초과 10,000 이하	321
26	10,000 초과 12,000 이하	380
27	12,000 초과 15,000 이하	466
28	15,000 초과 20,000 이하	604
29	20,000 초과 25,000 이하	777
30	25,000 초과 30,000 이하	949
31	30,000 초과 35,000 이하	1,122
32	35,000 초과 40,000 이하	1,295
33	40,000 초과	1,381

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외의 영업의 영업 전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영업의 전부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 만원)
1	20 이하	5
2	20 초과 30 이하	8
3	30 초과 50 이하	10
4	50 초과 100 이하	13
5	100 초과 150 이하	16
6	150 초과 210 이하	23
7	210 초과 270 이하	31
8	270 초과 330 이하	39
9	330 초과 400 이하	47
10	400 초과 470 이하	56
11	470 초과 550 이하	66
12	550 초과 650 이하	78
13	650 초과 750 이하	88
14	750 초과 850 이하	94
15	850 초과 1,000 이하	100
16	1,000 초과 1,200 이하	106
17	1,200 초과 1,500 이하	112
18	1,500 초과 2,000 이하	118
19	2,000 초과 2,500 이하	124
20	2,500 초과 3,000 이하	130
21	3,000 초과 4,000 이하	136
22	4,000 초과 5,000 이하	165
23	5,000 초과 6,500 이하	211
24	6,500 초과 8,000 이하	266
25	8,000 초과 10,000 이하	330
26	10,000 초과	367

다. 품목류·품목 제조정지를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급	연간매출액 (단위 : 백만원)	품목류·품목 제조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 만원)
1	100 이하	12
2	100 초과 200 이하	14
3	200 초과 300 이하	16
4	300 초과 400 이하	19
5	400 초과 500 이하	24
6	500 초과 650 이하	31
7	650 초과 800 이하	39
8	800 초과 950 이하	47
9	950 초과 1,100 이하	55
10	1,100 초과 1,300 이하	65
11	1,300 초과 1,500 이하	76
12	1,500 초과 1,700 이하	86
13	1,700 초과 2,000 이하	100
14	2,000 초과 2,300 이하	106
15	2,300 초과 2,700 이하	112
16	2,700 초과 3,100 이하	118
17	3,100 초과 3,600 이하	124
18	3,600 초과 4,100 이하	142
19	4,100 초과 4,700 이하	163
20	4,700 초과 5,300 이하	185
21	5,300 초과 6,000 이하	209
22	6,000 초과 6,700 이하	235
23	6,700 초과 7,400 이하	261
24	7,400 초과 8,200 이하	289
25	8,200 초과 9,000 이하	318
26	9,000 초과 10,000 이하	351
27	10,000 초과 11,000 이하	388
28	11,000 초과 12,000 이하	425
29	12,000 초과 13,000 이하	462
30	13,000 초과 15,000 이하	518
31	15,000 초과 17,000 이하	592
32	17,000 초과 20,000 이하	684
33	20,000 초과	740

4)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표 3의2 개정 2018. 4. 24.

포상금의 지급기준

(시행령 제30조제1항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등"이라 한다)	20만원 이하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 해당 가축의 시가(이하 이 표에서 "시가"라 한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해당 가축의 시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해당 식육의 소비자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50만원 이하
6.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신고자 등	10만원 이하

비 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신고·고발 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은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축산물에 한정한다.

5)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4 2018. 4. 24.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행령 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같은 시기에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과태료 금액의 상한·하한을 정하고 세부 기준을 위임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삭제 <2019. 3. 14.>				
나.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2호	500	750	1,000
다.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3호	300	600	900
라.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 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1,000	1,000	1,000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3) 그 밖의 영업자		300	600	900
마.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 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4호			
1) 도축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	600	900
3)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200	400	600
4) 그 밖의 영업자		50	100	150
바.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1,000	1,000	1,000
2) 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500	750	1,000
사.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1항제5호			
1) 도축업의 영업자		700	850	1,000
2) 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00	600	9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법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않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경우 1) 도축업의 영업자 2)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자 3) 축산물운반업의 영업자 4)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제12조의7 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5)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제12조의7 제2항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47조 제2항제1호	300 200 200 100 100	400 350 350 100 100	500 500 500 100 100
자.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법 제12조의2제3항제1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2조의2제3항제2호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1호	300 30	300 60	300 90
차.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3호	30	60	90
카.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200	350	500
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5호	20 100	40 200	60 3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파.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가) 종업원의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나) 종업원의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1)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6호			
하. 법 제30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1)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2) 교육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법 제47조 제2항제7호			
거. 법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8호	20	40	6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9호	200	350	500
더.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러. 법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500	500	500
머.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의2	30	60	90
버. 법 제31조의4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의2	30	60	90
서. 법 제3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축산물 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0호 의3	30	60	90
어. 제31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추적 관리정보를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의3	30	60	90
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4호	30	60	90
처. 법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7조 제2항제11호	200	350	500
커. 법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3호	50	100	150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별표 1 2018. 4. 25.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시행규칙 제2조 관련)

1.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토끼는 제외한다)

가. 도살방법

- 1) 도살 전에 가축의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 2) 도살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CO₂ 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혈 전후 연수 또는 척수를 파괴할 목적으로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 그 철선은 스테인리스철재로서 소독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방혈법

- 가) 방혈은 목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한다.
- 나) 목동맥 절단 시에는 식도 및 기관이 손상되어서는 아니 된다.
- 다) 방혈 시에는 뒷다리를 매달아 방혈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처리방법

부위별 절단은 다음 방법에 따르고,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屠體)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 1) 가축의 껍질과 털은 해당 가축의 특성에 맞게 벗기거나 뽑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2) 머리
 - 가) 소
 - (1) 뒷머리뼈와 제1목뼈 사이를 절단한다.
 - (2) 머리부위에는 하악림프절·인후두림프절 및 귀밑림프절을 부착시킨다.
 - 나) 양·돼지 등
 - 가)에 따른 소 머리 처리방법에 따라 머리부위를 절단하되, 림프절은 머리에 부착시킨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머리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앞다리
 -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다만, 탕박(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돼지의 경우에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 뒷다리

뒷발목뼈와 뒷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다만, 탕박을 하는 돼지의 경우에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장기

배 쪽의 정중선에 따라 절개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

 - 가) 절개 시에 음경고환 및 유방(새끼를 낳은 소만 해당한다)을 제거한다.
 - 나) 항문의음부 및 그 주위 부분을 제거한 후 횡경막의 부착 부분부터 절개한다.
 - 다) 가슴뼈와 치골결합 사이를 세로로 절개한다.
 - 라) 장 내용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항문을 묶는다.
 - 마) 흉강장기·복강장기를 모두 끼집어내고 도체에서 분리한다.
 - 바)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간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채취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 사)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위소장 및 대장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하여 처리하되,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한다.
- 6) 도체

다음 방법에 따라 2등분 또는 4등분으로 절단하되, 필요에 따라 더 작은 크기로 절단할 수 있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도체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엉덩이사이뼈·허리뼈·등뼈 및 목뼈를 좌우 평등하게 절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의 도체는 제1허리뼈와 최후등뼈 사이가 일부 절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나) 도체를 4등분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제1허리뼈와 최후등뼈(제13등뼈) 사이를 절단하여야 하며, 추가로 절단하려는 경우에는 도체 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절단 부분을 정할 수 있다.
 - 다) 도체의 절단은 전기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도체는 그 특성에 따라 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도체 및 4등분 이상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7)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은 10℃ 이하로 냉각하여야 한다. 다만, 소·말의 식육 중 가열을 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용도로 식육의 일부를 반출하려는 경우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돼지의 식육을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7) 본문에 따라 냉각한 식육은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하여 반출할 것을 권장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지는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라 정한 기준 및 규격에 맞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

가. 도살방법

- 1) 도살은 전살법, 자격법 또는 CO₂ 가스법을 이용한다.
- 2) 방혈은 목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하며, 도체에 상처나 울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처리방법

- 1) 가금의 처리는 충분히 방혈한 후 탕지(털을 제거하기 위하여 뜨거운 물에 담그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탈모·머리·절단·항문제거·개복·장기적출·냉각(수세냉각 또는 공기냉각)냉장냉동(냉동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포장(포장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의 순서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탕지는 가금이 죽은 후에 하여야 하고, 탕지하는 물은 식육이 익지 않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여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 3) 가금의 털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제거하되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오리 등의 경우 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처리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 허용된 털 제거용 처리제(예시)

- 로진(Rosin, 껌기초제)+석유왁스(피막제, 껌기초제)+에스테르검(껌기초제)

- 4) 가금의 절단작업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머리·발·기도·허파·식도·심장·모이주머니·내장 등을 제거하고, 해체된 식육은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내장의 적출은 항문의 주위를 도려낸 후 실시하여야 한다.
- 5) 냉장·냉동(냉동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포장은 해체된 식육을 신속히 냉각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가)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심부온도는 2℃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 빙수냉각

- (1) 빙수냉각은 식용얼음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제빙기가 없는 도축장에서는 수냉각장치에 의한다.
- (2) 식육은 다음에 규정된 시간 내에 5℃ 이하로 냉각하여야 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포장 시까지 이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도체중량	시간
1.8kg 미만	4
1.8kg 이상 ~ 3.6kg 미만	6
3.6kg 이상	8

- (3) 식육가공품 또는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는 식육은 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각 탱크에 24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

(가) 보관기간 중에는 5℃ 이하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얼음을 보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세척냉각수는 포장 시의 습기흡수율 및 수분함유율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냉동 또는 냉동포장을 하는 식육의 경우 세척 및 냉각수로 인한 최대 허용습기흡수량 및 수분함유량은 다음에서 정한 백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냉각세척 후 중량증가 허용기준

식육의 종류	구분	허용기준
닭고기		8%
칠면조고기	4.5kg 미만	8%
	4.5kg 이상 ~ 9kg 미만	6%
	9kg 이상	4.5%
그 밖의 가금육		6%

(라) 빙수냉각을 한 냉동식육의 최대 허용습기흡수량 및 수분함유량은 증가된 중량의 백분율이 1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냉각시설의 온도는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공기냉각의 경우에는 해체 후 식육의 심부온도가 신속하게 5℃ 이하로 되어야 하며, 공기 유통과 적정 습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

6) 계절적인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도축 물량이 증가하여 도축장의 시설만으로는 도축한 물량을 제때 냉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육을 신속히 냉각하고 포장한 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도축장 외부에 있는 냉동시설(이하 이 목에서 "외부 냉동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5)에 따른 냉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축장을 관리하는 검사관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을 것

나) 외부 냉동시설이 도축장 인근에 있는 것일 것

다) 외부 냉동시설의 운영자가 축산물보관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일 것

라) 도축장에서 식육을 반출할 때 식육의 심부온도가 2℃ 이하일 것

마) 도축장에서 외부 냉동시설까지 운반하는 동안 식육의 심부온도를 2℃ 이하로 유지할 것

바) 품질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부 냉동시설에 도착한 즉시 신속히 냉동할 것

7) 식육의 포장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8)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3. 토끼

토끼의 도살·처리방법은 제1호의 기준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개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5. 수출 등 특수한 목적의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기준

- 가.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처리 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 나. 바베큐 또는 제수 용도로 사용하거나 종교적 이유로 달리 도살·처리할 필요가 있는 가축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살·처리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목적으로 도체의 절단방법 및 집유의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에서 가축의 도살·처리기준 특례

- 가. 제1호나목7) 및 제2호나목5)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에서 염소 등 포유류 또는 닭·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이 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축업 영업자는 해당 영업자에게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별도로 정한 온도로 반출할 수 있다.
 - 1)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을 허가한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이와 관할 구역이 접해있는 시·도에 소재하는 식육판매업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2)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을 허가한 관할 시·도 또는 이와 관할 구역이 접해있는 시·도에 소재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장에서 식육가공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 3)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염소의 식육을 자신의 영업장 냉장 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별표 2 2018. 4. 25.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1. 작업개시 전 위생관리

- 가. 작업실, 작업실의 출입구, 화장실 등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나. 축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도구 등의 표면은 흙·고기찌꺼기·털·쇠붙이 등 이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2. 작업 중 위생관리

- 가. 작업실은 축산물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안쪽부터 처리·가공·유통·공정의 순서대로 설치하고, 출입구는 맨 바깥쪽에 설치하여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축산물의 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나. 축산물은 벽바닥 등에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처리·운반하여야 하고, 냉장·냉동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저장·운반하여야 한다.
- 다. 작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항상 손을 씻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등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생복 등을 입은 상태에서 작업장 밖으로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작업 중 화장실에 갈 때에는 앞치마와 장갑을 벗어야 한다.
- 바. 작업 중 흡연·음식물 섭취 및 껌을 씹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 시계·반지·귀걸이 및 머리핀 등의 장신구가 축산물에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업자·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책무

- 가. 영업자는 작업개시 전 또는 작업종료 후에 시설·장비 및 도구 등에 대한 위생상태 및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나.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은 자체위생관리기준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그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명하여 이를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소속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영업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지시한 사항을 즉시 시정·보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보완이 될 때까지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영업자는 다음 장소에 형성되거나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시설장비
- (2) 작업실의 천정, 벽, 자동이송장치 등(이물질의 낙하 등으로 인하여 축산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개별기준

가. 도축업

- (1) 도살작업은 가축을 매단 상태 또는 가축이 바닥과 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 (2) 종업원은 지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에 수시로 작업칼기구톱 등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를 적어도 83℃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3) 종업원은 작업종료 후 오염물질 및 지방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작업대운반도구 및 용기 등 식육과 직접 접촉되는 시설 등의 표면을 깨끗이 세척하여야 한다.
- (4) 가축도살·지육처리 및 내장처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각 작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복 및 앞치마를 갈아입고 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는 등의 위생조치를 하여야 한다.
- (5) 도살 및 처리 작업 중에 지육이 분변 또는 장의 내용물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탕박(湯糶)시설의 수조 및 내장 세척용수조에 탕박 또는 세척의 효과가 없을 정도로 분변이 잔류하지 않도록 수시로 물을 교환하여야 한다.
- (7) 식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폐기처리 대상인 것은 식육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별표 2의2 2018. 4. 25.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시행규칙 제7조의6제5항 관련)

1. 평가대상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는 도축업·집유업·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작업장

2. 평가기준

가. 도축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실태	도축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3. 평가절차 및 방법 등

가. 평가 수행기관 또는 단체는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평가방법에는 현장실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별표 2의3 개정 2018. 4. 25.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시행규칙 제7조의11 관련)

1. 축산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용기 또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포장한다.
 - 가. 닭·오리 식육 : 소매단위(1~5마리 단위를 권장), 부위별(20kg 이하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25마리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하며, 그 외부에 별표 8에 따른 합격표시(이하 “합격표시”라 한다)를 할 것
 - 나. 식용란 : 소매단위(1~30개 단위를 권장) 또는 벌크(300개 이하 단위를 권장)로 포장(식용란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덮개와 끈을 이용하여 포장하는 것도 포함한다)할 것
2. 도축장 외부로 반출하는 닭·오리의 식육은 포장한 후 그 외부에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닭·오리 식육의 포장에 사용되는 용기 및 재료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

별표 3 개정 2018. 6. 29.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

(시행규칙 제9조제3항)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가. 소·말(당나귀 포함)·양·돼지 등 포유류

- (1)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가축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생체검사장에서 실시한다.
- (2) 검사대상가축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3)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가) 가축의 자세·거동·영양상태·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체온을 측정한다.
 -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 (다) 필요한 경우 눈꺼풀·비강·구강·항문·생식기·직장검사를 실시한다.
- (4)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하여는 격리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도축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5)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분변 등으로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적절하게 제거될 때까지 도축을 보류하거나 도축 공정 중 그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

- (1) 검사는 군별 검사와 개체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군별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실시하고, 개체별 검사는 도축장안의 생체검사대에서 실시한다.
- (2) 검사대상가축의 군별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3) 수송 중 죽었거나 손상이 심하여 식육으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골라내어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군별 검사는 가축의 자세·거동상태 등을 관찰한다.
- (5) 개체별 검사는 군별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하며, 털의 상태 및 눈꺼풀·비강·항문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 (6) 검사관은 생체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에 대해서는 계류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하여 도축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7) 검사관은 생체검사결과 분변 등으로 체표면 오염이 심하여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가축은 그 오염원이 적절하게 제거될 때까지 도축을 보류하거나 도축 공정 중 그 오염원이 제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검사관은 가축의 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다음의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 (가) 우역(牛疫)·우폐역(牛肺疫)·구제역(口蹄疫)·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블루텡병·리프트계곡열·립스스킨병·가성우역(假性牛疫)·소유행열·결핵병(結核病)·브루셀라병·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스크래피·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 BSE)·소류코시스(임상증상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만 해당한다)·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한다)·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마 및 에놀라타만 해당한다)
 - (나) 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수포병(水疱病)·돼지티센병·돼지단독·돼지일본뇌염
 - (다) 양두(羊痘)·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비저(鼻疽)·말전염성빈혈·아프리카마역(馬疫)·광견병(狂犬病)
 - (라) 뉴캐슬병·가금콜레라·추백리(雛白痢)·조류(鳥類)인플루엔자·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가금티프스
 - (마)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농독증·패혈증·요독증·황달·수종·중양·중독증·전신쇠약·전신빈혈증·이상고열증상·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만 해당한다)
- (2)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2. 식육의 검사기준

가. 소·말(당나귀 포함)·양·돼지 등 포유류

- (1) 검사항목
 - (가) 혈액 및 가축
 - (나) 머리·혀·인두후·목부위 및 그 인근 림프절
 - (다) 폐·폐문·폐림프절 및 폐종격
 - (라) 심장·심낭
 - (마) 횡격막
 - (바) 간·간문 및 그 인근 림프절
 - (사) 위·장간막림프절 및 망막
 - (아) 비장·췌장·신장 및 그 인근 림프절
 - (자) 방광·고환·음경·난소·자궁·질 및 외음부
 - (차) 지육

(2) 검사방법

(가) 소

- 1) 내외교근은 하악과 병행하여 절개하여 검사한다.
- 2) 간장은 담관 및 우엽·좌엽을 가로로 절개하여 검사한다.
- 3) 신경은 지방을 분리한 후 검사한다.
- 4) 자궁은 절개하여 검사한다.
- 5) 심장·심낭은 양심실을 동맥에 따라 절개하여 검사한다.

(나) 말·당나귀

두부를 횡단하여 비중격을 절개하여 점막을 검사한다.

(다) 면양·산양

간·폐 및 두부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라) 돼지

복근·횡격막·목·심장·혀 및 인두후를 절개하여 검사한다.

(마) 사슴

간·폐 및 두부와 그 인근 림프절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구분	대상질병	폐기범위			가축별
		일부	전체	폐기 세부내용	
위장관	농양	○			포유류
	복막염		○	위장관 전체 폐기	포유류
	장염		○	장관 전체 폐기	소·돼지
	직장협착			살모넬라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식육 전체 폐기	돼지
	제2위염	○		제2위-횡격막-심장막 누관형성시 식육 전체 폐기	반추류
	제1위비장염		○	위장관 전체 폐기	반추류
	비종		○	비장폐기·전신성 병변 여부 확인	포유류
	장간막림프절결핵 오염	○		○ 식육 전체 폐기 오염부위 폐기, 심한 경우 위장관 전체 폐기	포유류
간	복막염	○			포유류
	농양		○	간 폐기	포유류
	간경화	○			포유류
	간출혈	○			포유류

구분	대상질병	폐기범위			가축별
		일부	전체	폐기 세부내용	
간	지방간	○	○	간 폐기	포유류
	부맥반				포유류
	결핵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를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간질증		○	간 폐기	소
	밀크반점		○	간 폐기	돼지
	세경낭미충		○	간 폐기	돼지
	파라티프스결절		○	간을 포함한 모든 장기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	소·돼지
심장·폐	점상출혈			전신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심장·폐 폐기	포유류
	심장지방의 아교양 위축		○	심장 전체 폐기	포유류
	심근농양		○	내장·머리 및 지육 폐기	포유류
	폐수종		○	폐 폐기	포유류
	흡입성출혈		○	폐 폐기	포유류
	간질성폐기종		○	폐 폐기	포유류
	기관지확장증		○	폐 폐기	포유류
	화농성기관지폐렴		○	폐 폐기	포유류
	심장내막염		○	심장 폐기	포유류
	폐렴·흉막염		○	폐 폐기, 폐와 늑골흉막의 분리가 불가능하면 심장·폐·전체갈비부위 폐기	포유류
신장	점상출혈		○	신장 폐기, 전신성감염증으로 추정 시 다른 장기와 지육을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농양		○	신장 폐기, 신장림프절에 농양시 다른 장기와 지육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백반신과신우신염		○	신장 폐기	포유류
	신낭		○	신장 폐기	포유류
	오염		○	신장 폐기	포유류
머리·혀	농양	○	○	관련장기 폐기	포유류
	오염			오염부위 폐기	포유류
	결핵			정밀검사 실시	소·돼지

구분	대상질병	폐기범위			가축별
		일부	전체	폐기 세부내용	
머리·혀	방선균증, 악티노바실러스증		○	관련장기 폐기	소
	눈편평상피암		○	머리 폐기	소
	림프절의 혈액흡수			관련머리 정밀검사 실시	돼지
지육	화농성 병변	○		농양부위 폐기	포유류
	관절염	○		관련 부위 폐기, 전신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머리·지육 및 내장 폐기	포유류
	복막염	○		관련 부위 폐기	포유류
	흉막염	○		관련 부위 폐기	포유류
	창상, 좌상	○		약취가 나면 전체지육 폐기	포유류
	오염	○		관련 부위 폐기	포유류
	결핵		○	전체지육 폐기, 정밀검사 실시	소·돼지
	방선균증	○		관련 부위 폐기	소
	피부병변 (농양·구진·농포)	○		관련 부위 폐기, 다이아몬드형 구진 시 정밀검사 실시, 척추의 농양 시 전체지육 폐기, 피부청색증 시 정밀검사 실시	포유류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하고,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린 식육(이하 "부정행위식육"이라 한다)의 검사는 수분단백비 등 이화학적 검사로 한다.

나.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

(1) 검사구분

해체 전 검사 및 해체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검사내용 및 방법

(가) 해체 전 검사

1) 우모 및 잔모의 제거상태

2) 발목부위의 기형과 목뼈의 적정제거여부 확인

3) 백혈병·패혈증·독혈증·관절염·염증·농양·궤양·피부기생충증·황색종증의 감염 여부 검사

- 4) 명들거나 도살 전에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이물질오염도체, 심하게 탕지된 도체 (껍질이 익은 것을 말한다), 부패도체, 복부팽만도체여부 검사

(나) 해체 후 검사

- 1) 정상적인 도체절단 및 장기제거상태 확인
- 2) 내부장기·조직·체벽을 검사하여 병변·삼출물 및 이물질오염여부 검사
- 3) 비장은 으깨어 보고 간은 손으로 진단하여 경변정도 및 표면의 이상여부 검사

(3) 검사기준 및 폐기범위

(가) 도체와 내장 전부폐기

- 1) 결핵병 또는 백혈병에 감염된 도체
- 2) 서로 다른 장기에 2개 이상의 종양이 있는 도체
- 3) 심한 기낭염·복막염·복수증·내장유착 등이 있는 도체
- 4) 죽은 도체, 방혈불량도체, 부패도체 등 식용에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도체

(나) 부분폐기

- 1) 생체 및 도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서 1개의 장기에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장기만을 폐기하고, 2개 이상의 장기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장기 전체를 폐기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어 전신성 질병이 있다고 의심되면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 2) 생체 또는 도체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으로서 1개 이상의 장기에 이상이 있으면 장기를 포함한 도체전부를 폐기한다.

(4) 실험실검사

실험실검사는 식육의 검사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가)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여부를 확인한다.

(나) 식육 중의 유해성잔류물질·특정병원성미생물의 검사는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로 한다.

다. 식육의 검사결과 부정행위식육으로 의심되는 식육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른 검사불합격품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의2.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및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장 및 도축장 등에서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후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식육의 합격 표시

별표 8 2016. 8. 4.

식육의 합격표시

(시행규칙 제23조 관련)

1. 합격표시 방법

가. 합격표시는 다음 식육의 종류별로 별도 1, 별도 1의2 또는 별도 2의 규격에 따른 스탬프식 검인을 이용하여 식육에 표시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2조의7에 따른 포장대상 식육의 경우 그 포장에 합격여부에 관하여 별도 2에 따른 합격표시와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표시내용과 표시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 (1) 소·말·양·돼지 등 포유류의 식육 : 별도 1의 검인. 단, 머리·꼬리 등의 표면에는 별도 1의 2의 검인
- (2) 닭·오리·칠면조 등 가금류의 식육
 - (가) 포장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별도 2의 검인
 - (나) 포장을 하는 경우 : 별도 2에 따른 합격표시와 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

나. 표시부위

- (1) 지육 : 어깨·등·가슴·배·앞다리·뒷다리 등의 표면
- (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머리·꼬리 등의 표면

2.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

가. 시·도별 검인부호

시·도	부호	시·도	부호
서울특별시	서울	강원도	강원
부산광역시	부산	충청북도	충북
대구광역시	대구	충청남도	충남
인천광역시	인천	전라북도	전북
광주광역시	광주	전라남도	전남
대전광역시	대전	경상북도	경북
울산광역시	울산	경상남도	경남
경기도	경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 나. 도축장별 검인번호는 시·도지사가 부여한 두 자리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한다.
- 다. 별도 1과 별도 2의 스탬프식 검인의 “검”자, 시·도별 부호 및 도축장별 번호는 각각 평면에서 5mm 이상 양각되어야 한다.
- 라.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한 식육의 합격표시에 사용하는 검인의 부호·번호 및 규격에 대해서는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검인용 색소

- 가. 검인용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식용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나. 검인용 색소는 식육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 (1) 한우고기 : 식용색소 적색3호
 - (2) 육우고기(새끼를 낳지 아니한 젖소고기 및 국내에서 사육한 수입소의 고기를 포함한다)
: 식용색소 황색4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1로 배합한 색소(녹색을 나타낸다)
 - (3) 젖소·돼지 등 그 밖의 가축의 고기 : 식용색소 적색3호와 식용색소 청색1호를 4:1로 배합한 색소(청색을 나타낸다)
- 다. 나목 외의 검인용 색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검인의 사용

- 가. 합격표시의 검인은 식육을 도축장 밖으로 반출하기 전에 검사관이 직접하거나 검사관 또는 책임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원이 한다.
- 나. 냉장을 하는 경우의 합격표시는 냉장 후 출고하기 전에 할 수 있다.
- 다. 검인기 및 검인용 색소는 검사관이 관리하여야 하며, 검인기 보관상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

별표 9 2016. 2. 4.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

(시행규칙 제24조 관련)

1. 용도전환대상 축산물

- 가. 법 제12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
 - (1)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
 -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부적합한 축산물
- 나. 법 제10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중량이 늘어난 식육
- 다. 법 제31조의2에 따라 회수하는 축산물
- 라. 법 제36조에 따라 압류·회수된 축산물
- 마. 가축의 도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식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가축의 털·내장·피·가죽·발굽·머리·유방 등
- 바. 검사시료에 사용된 잔여 식육 등

2. 용도전환의 방법 등

- 가. 농장·동물원 등에서 동물의 사료로 직접 사용한다.
- 나. 사료 또는 비료(이하 “사료등”이라 한다)제조업체나 렌더링시설(도축부산물 열처리정제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골분·육분·육골분·우모분 등 사료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 다.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동물원·농장 및 사료등제조업체 등에 사료 또는 사료등의 원료로 제공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 또는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그 사실을 검사불합격품등재활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라. 검사불합격품 등의 물량이 적거나 사료등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를 찾지 못하여 사료등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해당 축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용도전환의 기준

- 가. 축산물의 보관상태에 대한 검사결과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아니한 축산물이어야 한다.
- 나. 해당축산물에는 쇠붙이·합성수지 등 이물질이 붙어있거나 혼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 다.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및 병원성미생물의 검출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검사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기준초과 또는 안전성 확보방법 등을 감안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8)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별표 10 2018. 12. 31.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1. 도축업

가. 포유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검사시험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 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의 세척 및 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나)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러움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 계류장은 가축의 종류별로 구획하여 개방식으로 설치하되, 가축을 하역할 수 있는 시설과 사람 및 가축의 출입통제가 가능한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 (라) 계류장에는 110룩스 이상의 조명장치,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시설, 안개분무가 가능한 분무시설 및 가축의 몸통을 세척할 수 있는 샤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마) 생체검사장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체검사에 편리한 보정등조명장치(밝기가 22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등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바) 생체검사장과 작업실 사이에는 가축이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구획된 통로가 있어야 한다.
- (사)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아)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천정에 설치하는 아이빔은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의 높이를 두어야 한다.
- (자)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파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차) 작업실은 도살실지육처리실내장처리실로 구획하여 설치하고, 창은 방충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내장처리실에는 장기를 냉각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카) 작업라인에는 일정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타) 작업실은 가축이 들어가는 입구를 제외하고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소돼지 도축장의 경우 출입문은 공기스크린 장치를 하거나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파)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하) 검사시험실은 검사관실과 시험실을 구획하여 설치하되, 검사관실에는 서류보관함옷장 신발장 검사기구상자 등이 있어야 하고, 검사기구상자에는 체온계청진기해부기검인기 등이 있어야 하며, 시험실에는 냉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거) 소독준비실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 (너) 급수시설은 수도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더)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며,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 P자관, S자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트랩)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들음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 (리)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고 수세설비와 방충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머) 도축장의 진입로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 사이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 (버)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 (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다.
 - (어)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 (저)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 (쳐)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도살처리한 식육을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6호가목에 따른 운반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개별시설기준
- (가) 소 도축업
 -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 ①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飛散)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 ②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 ③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 2) 도축장 부지는 2천㎡ 이상이어야 한다.
-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 냉장냉동실, 계량시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4)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 5)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계류장	150㎡ 이상 (1두당 3.3㎡이상)	냉장냉동실	41.25㎡ 이상 (평면 3.3㎡당 4두 기준)
생체검사장 작업실	15㎡ 이상 100㎡ 이상	탈의실 등 부대시설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정한 면적
검사시험실	20㎡ 이상		
원피처리실	30㎡ 이상		

- 6)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되, 바닥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① 작업실 :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30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② 냉장냉동실 :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10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7)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 8)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어야 하며, 검사대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지육을 최종적으로 세척하는 장치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기세척 방식일 것을 권장한다.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하루에 양 10마리 이상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부지면적)
-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분무시설·샤워시설, 작업실 내부의 구획, 출입문의 공기스크린·자동·반자동화, 외부 차단 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원피처리실, 자동이송장치, 검사위치의 자동조작 등 자동화 여부 등)

3) 소 또는 돼지 도축업의 영업자가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 안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소 또는 돼지 도축장시설을 이용하여 양 도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 도축업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돼지 도축업

1) 각 시설의 배치순서는 별도 4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라인을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축장의 공간구조상 일직선으로 배치하기 힘든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치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 ① 최종 세척을 마무리한 지육이 위치하는 장소로 오염원이 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흐름을 조정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
- ②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을 벽으로 구분한 경우
- ③ 최종 세척된 도체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2)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3천㎡ 이상이어야 한다.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원피처리실(박피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냉장냉동실 등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 또는 동물성폐기물소각로 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4) 영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도축장 안에 발골정형실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 발골정형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그 안에는 도체현수시설발골작업대 및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5)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계류장	100㎡ 이상 (1두당 0.83㎡ 이상)	냉장냉동실	61.88㎡ 이상 (평면 3.3㎡당 8두 기준)
생체검사장	15㎡ 이상	탈의실 등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당한 면적
작업실	200㎡ 이상	부대시설	
검사시험실	20㎡ 이상		
원피처리실	30㎡ 이상		

- 6) 작업실과 냉장냉동실에는 아이빔을 설치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이빔은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되, 바닥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① 작업실 :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30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② 냉장냉동실 : 작업실의 바닥에서 도체까지 10c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7)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식육운반차량의 상차대까지 연결하여 설치하되 자동이송장치의 설비를 권장한다.
- 8)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어야 하고, 검사대는 2명 이상이 동시에 서서 검사하기에 편리한 크기로 하되, 지육과 내장을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검사자가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작업실에는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지육을 최종적으로 세척하는 장치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증기세척 방식일 것을 권장한다.
- 10) 작업실은 실내온도가 15℃ 이하(고온의 물 또는 화염을 사용하는 탕박수조잔모제거기 등 열 발생 설비가 위치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하며, 이 경우 온도를 확인하는 장소는 최종 세척이 이루어진 지육이 위치한 곳으로 하되, 최종 세척을 증기세척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도살실에는 돼지가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고, 피를 동물의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틱처리시설 등의 설치를 권장하며, 피를 식용에 제공하거나 식품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는 이물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공기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피를 채취할 수 있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11의2) 돼지의 털을 뽑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작업실에 탈모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온샤워 또는 증기 방식을 권장한다.
- 12)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하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세척용수조 및 폐기용 저장용기가 있어야 하며,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한다.
- 13) 냉장냉동실은 평면 3.3㎡당 돈지육 8두를 초과할 수 없는 면적으로 하되,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 14) 지육의 온도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도록 급냉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며,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와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냉장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15)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가능한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 사슴·토끼 도축업

-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돼지 도축업의 시설기준(무계가 200킬로그램이 넘는 사슴을 도축하는 경우는 소 도축업의 시설기준으로 한다)을 준용한다.
- 2) 허가관청은 사슴·토끼와 그 식육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사슴 도축장은 사슴 10마리 이상을, 토끼 도축장은 토끼 100마리 이상을, 사슴 및 토끼 도축장은 사슴 10마리 이상 및 토끼 100마리 이상을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부지면적)
 -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분무시설·샤워시설, 작업실 내부의 구획, 출입문의 공기스크린·자동·반자동화,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원피처리실, 자동이송장치, 검사위치의 자동조작 등 자동화 여부 등)
- 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소·말·당나귀 도축업의 영업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축장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에서 사슴·토끼를 도축하려는 경우
 - ② 돼지 또는 양 도축업의 영업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축장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도축장의 도축능력 범위에서 사슴(무계가 200킬로그램 이하인 사슴만 해당한다)·토끼를 도축하려는 경우

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1) 공통시설기준

-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검사시험실포장실소독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식당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나)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다) 계류장은 도축장 안에 설치된 가금의 투입라인에 연결하여 개방식구조로 설치하되, 차광송풍 및 물뿌림시설이 있어야 하고, 가금수송차량 또는 가금수송용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하여야 하며,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11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도살방혈실은 작업실과 차단하여 설치하되, 방혈대에서 작업실의 방지시설까지의 라인만 도체의 방혈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길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마) 생체검사대는 도살방혈실 옆에 설치하되,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22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고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수성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 (사)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 (아) 작업실 안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부식이 되지 아니하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설치하여야 한다.
 - 2) 탕지시설탈모시설잔모처리시설내장적출시설도체절단기 및 냉각시설로 구획하여 일괄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내장적출라인별로 도체검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고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이 되어야 하며, 조명장치는 파열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4) 작업실의 창은 방충설비를 하고 배수구에는 쥐 등의 드나들음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5) 작업라인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가금의 해체 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작업실의 출입구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7) 탕지시설은 콤베어식 연속탕지조 또는 자동탕지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8) 탈모시설은 콤베어식이동식탈모기 또는 자동식탈모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9) 내장적출시설 안에는 콤베어식내장운반기 또는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분한 급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0) 냉각시설은 냉풍냉각수냉각 또는 빙수냉각장치로 설치하여야 한다.
 - 11) 내장처리시설은 충분한 면적으로 설치하고 내장처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자) 검사시험실은 검사관실과 시험실을 구획하여 설치하되, 검사관실에는 서류보관함·옷장·신발장·검사기구상자 등이 있어야 하고, 검사기구상자에는 심부온도계·청진기·해부기·검인기 등이 있어야 하며, 시험실에는 냉·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 (차) 소독준비실의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 등이 있어야 한다.
- (카)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타)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고,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 P자관, S자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트랩)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들음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 (파)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세설비와 방충방서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하) 도축장의 진입로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에는 포장을 하여야 한다.
- (거)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한다.
- (너)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을 퇴비 등으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 (더)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 (러)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 (머)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도살처리한 식육을 직접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6호가목에 따른 운반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별시설기준

(가) 닭 도축업

- 1) 각 시설의 배치는 별도 5를 기준으로 한다.
- 2) 도축장 부지면적은 2천백㎡ 이상이어야 한다.
- 3) 도축장에는 공통시설기준에 따른 시설 외에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용기세척소독시설이 있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동물성폐기물소각로시설 또는 렌더링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4) 각 시설별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시설명	면적	시설명	면적
냉장냉동실	100㎡ 이상	탈의실 등	도축능력 및 종업원의 이용에 적정한 면적
작업실	200㎡ 이상	부대시설	
검사시험실	20㎡ 이상		

- 5) 작업실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축기계를 자동식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검사대가 위치한 곳은 도축기계의 가동속도를 시간당 2천500수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 6) 탕지시설은 도체의 이동방향과 반대로 온수가 공급되어 깨끗한 온수가 나오는 곳에서 도체를 꺼낼 수 있도록 자동탕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항문제거기, 허파제거기, 기도식도인출기, 내외부세척기내장적출시설은 자동설비를 권장한다.
- 8) 검사시험실에는 (1)공통시설기준 중 (자)의 시설장비 외에 현미경과 혈청검사 또는 잔류 물질검사에 필요한 간이검사기구류가 있어야 한다.

- 9)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와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자동온도기록장치 : 타코미터)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10)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해당차량이 가축을 하역한 후 차량을 돌리지 아니한 상태로 진행하면서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닭 수송용기의 세척소독 시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1) 영업자가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모내장 등 동물성폐기물을 이용하여 사료의 원료를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축장 안에 렌더링설비를 할 수 있다.
- 12) 생체중량 2.3킬로그램 이상의 닭을 연간 30만수 이하로 도축·처리하는 도축업에 대하여는 허가관청이 닭과 닭고기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하루에 닭 500마리 이상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부지면적)
 -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물뿌림시설, 작업실 안 시설별 구획, 출입문의 자동·반자동화, 자동 탕지기·탈모기, 외부 차단 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도축기계의 자동식 설치 등)

(나) 그 밖의 가금류 가축의 도축업

- 1) 공통시설기준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닭 도축업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 2) 허가관청은 (나)에 따른 그 밖의 가금류 가축과 그 고기의 국내수급상황·지역여건·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다음 ① 및 ②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하루에 오리는 200마리 이상, 메추리는 1,000마리 이상, 꿩은 100마리 이상, 칠면조는 100마리 이상, 거위는 100마리 이상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① 도축장의 위치·구조·규모(부지면적)
 - ② 도축장의 시설(소독준비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물뿌림시설, 작업실 안 시설별 구획, 출입문의 자동·반자동화, 자동 탕지기·탈모기, 외부 차단 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도축기계의 자동식 설치 등)
- 3) 닭 도축업의 영업자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닭 도축장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도축장의 도축 능력 안에서 (나)에 따른 그 밖의 가금류 가축을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등

- (1) 도축업의 영업자가 같은 도축장에서 2종류 이상의 가축을 도살하거나 같은 작업장 안에서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하려는 경우 검사시험실, 소독준비실, 원피처리실, 내장처리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 목욕실, 휴게실, 냉장냉동실,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 등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장냉동실의 면적은 가축의 지육별

수용기준을, 도축장의 부지면적은 가축별 면적기준을 각각 합산한 면적이 되어야 한다.

- (2)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외국으로 수출하는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수출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의 요구기준에 적합한 식육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라.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시설기준 특례

- (1) 허가관청은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 내 가축(소·돼지는 제외한다)의 국내 공급상황·지역여건·특성 또는 도축 예상 마릿수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특정 장소를 지정하여 차량을 작업장으로 하는 도축업을 허가할 수 있다.
- (2) 도축업의 공통 시설기준 및 개별 시설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 하되, 허가관청은 다음과 같이 (가) 및 (나)에 관한 시설기준을 조정하거나 일부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으로 하는 차량은 길이 7.3미터, 폭 2.3미터 이상, 높이는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이어야 하고, 가축 종류별로 말·당나귀·사슴은 10마리 이상, 양은 50마리 이상, 토끼는 100마리 이상, 닭·오리·칠면조·거위·메추리·꿩은 500마리 이상을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작업장의 구조·시설별 면적

- (나) 도축 관련 시설(계류장, 생체검사장, 소독준비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 부대시설, 물뿌림시설, 작업실 안 시설별 구획, 출입문의 자동·반자동화, 자동 탕지기·탈모기, 외부 차단시설, 시설의 배치순서, 각 시설별 면적, 도축기계의 자동식 설치 등)

9) 행정처분 기준

별표 11 2018. 9. 5.

행정처분 기준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 (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 (2) 한 품목 또는 품목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 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다음에 따라 처분한다.

- (1)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할 것
- (2)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영업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 (3)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만 할 것
- (4)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이 품목 제조정지 기간보다 짧으면 그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과 그 초과기간에 대한 품목 제조정지 처분을 병과할 것

다.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횡수산정은 최근 1년간(다만, 법 제9조제2항제17조제18조제33조제1항 위반은 3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기준규격 항목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그 외의 위반의 경우에 대해서는 2. 개별기준에서 정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라. 다목에 따른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수거검사에 따른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적발일부터 행정처분의 효력

- 발생일까지를 말한다)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 바. 같은 날 가공한 같은 품목에 대하여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 사.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 가목 및 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는 뒤에 다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본다.
- 자. 4차 위반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르고, 5차 위반의 경우로서 (1)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하고, (2)의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1)의 경우로서 6차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하여야 한다.
- (1)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한다.
 - (2)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3차 위반 처분 기준의 2배로 하되,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한다.
 - (3) 축산물에 이물이 혼입된 경우로서 4차 이상의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 차. 축산물의 출입·검사·수거 등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축산물의 처리·가공·운반·열보관 또는 판매과정 중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한다. 다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축산물이 법 제4조제5조제6조제32조 및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을 제조·가공한 영업자와 해당 축산물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함께 처분하여야 하고, 식용란 수집·처리를 다른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그 수집·처리된 식용란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유통·판매하는 식용란이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32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가 해당 식용란 수집·처리를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인 경우에는 의뢰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와 의뢰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함께 처분하여야 한다.
- 카. 차목 단서에 따라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그 위반행위의 원인제공자인 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한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의 판매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그 처분이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류 제조정지 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파. 삭제 <2016.2.4.>
- 하. 법 제2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의 경우에는 그 승계 전에 해당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영업을 승계받은 자가 이를 승계한다.

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또는 성분배합비율 등과 같이 경미한 위반의 경우로서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위반의 경우로서 일부 가공품 등에 대한 제조일자 등의 표시누락 등 그 위반사유가 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단순한 기계작동 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축산물을 처리가공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 (4)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한 축산물가공품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이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영업자가 같은 생산단위(같은 도축장에서 같은 도축일에 같은 농장에서 출하된 것을 말한다)에 대해 표본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료의 적합성을 관리하여야 할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진열하고 있는 식용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잔류허용기준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영업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식용란의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를 성실히 실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유독유해물질 등이 축산물에 혼입여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고의성이 없는 최초의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 (7)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만,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공중위생상 인체의 건강을 해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 (8) 축산물가공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경우
- (9) 그 밖에 축산물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더.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러. 행정처분의 기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개별기준

가. 도축업·집유업·식용란선별포장업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 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도축업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가축의 도살·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위 1) 및 2) 외의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4)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나. 집유업				
1) 보냉탱크집유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집유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에 집유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의2. 법 제6조 위반(닭, 오리 등 가금류의 식육 중 포장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표시대상 축산물에 표시사항 전부(합격표시,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생산연월일, 유통기한, 보존방법 및 내용량)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나.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보존방법 및 내용량을 전부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다. 작업장의 명칭, 작업장의 소재지 또는 보존방법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라. 내용량만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마.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중 1개 이상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바. 제품에 표시된 생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경우(가공 없이 포장만을 다시 하여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와 해당 제품 폐기		
사. 생산연월일 표시기준을 위반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2.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점검표를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이상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3)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작업 전 및 작업 중 위생점검을 통틀어 10일 미만 실시기록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전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안전관리인증기준에서 정한 작업장 세척소독, 종사자 위생관리,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검증·한계기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아니한 경우				
1) 작업장 세척 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종사자 위생관리도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6)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 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 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9) 대장균 및 살모넬라균의 검사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오염의 방지 또는 감축을 위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0)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을 받은 경우				
11)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가) 선행요건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분야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로서 만점의 85퍼센트 미만 60퍼센트 이상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2)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에 대하여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4. 법 제11조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제2항 위반				
가. 가축과 식육에 대하여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점유하는 원유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삭제 <2014.2.19>				
5.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위반				
가. 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검사관의 조치 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책임수의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다. 책임수의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라. 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책임수의사의 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6. 법 제14조제2항 위반				
가. 검사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다.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 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장 면적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마. 급수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허가를 받은 업종의 영업행위가 아닌 다른 업종의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를 제외한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1) 시설기준에 위반된 경우		시설개선 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그 밖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12.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 위반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3. 법 제31조제2항 위반				
가. 별표 12의 도축업·집유업·식용란 선별포장업·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 사항 중				
1) 제1호 마목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부적합 판정한 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2) 제1호자목을 위반한 경우 중 별표 13 제2호다목을 위반한 경우		해당 차량 영업정지 15일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3) 제1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제2호가목나목다목마목 또는 바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5) 제3호가목나목다목 또는 라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6) 제3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별표 12 제3호의2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 또는 자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그 밖에 1)부터 7)까지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0일
14.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				
1) 제52조제1항제13호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제5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14의2. 법 제35조 위반	법 제27조 제1항제4호			
가. 시설개선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한 것으로 속인 경우		영업허가 취소		
1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 경영자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1 항 제5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1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법 제27조제1 항 제6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17. 그 밖에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제3호를 제외한다) 중 이 표 제1호부터 제14호까지를 제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3. 과징금 제외대상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류 또는 품목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축산물수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도축업집유업 : 2. 개별기준 가목의 표의

- (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 제1호의2가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 (3)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4)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5)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 (6)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7)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8)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10) 도축업·집유업 등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별표 12 2019. 4. 25.

도축업·집유업 등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 가.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작업장 안에서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 및 위생화의 착용 여부 및 개인의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작업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의 경우 낙하물의 충격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없는 구역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을 작업장 안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라.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검사관이 개선을 지시한 경우 영업자는 그 명령 및 지시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 또는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축산물의 도살·처리·집유·가공 등(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바. 작업장 안에서는 법 제5조에 따른 용기등의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점인용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 및 이 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책임수의사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아. 삭제 <2015.1.6.>
- 자. 영업자 자신이 도살·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차.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 가. 다른 작업장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장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접 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검사원으로 임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제8조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도축검사 신청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축에 대한 도축 의뢰자 및 가축의 출하농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다. 검사를 받으려는 가축을 도축장 안의 계류장에서 계류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계류기간을 지켜야 한다.
- 라.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초과하여 검사관에게 도축검사신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검사관의 작업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작업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삭제 <2016. 8. 4.>
- 사. 삭제 <2018. 4. 25.>
- 아. 도살·처리의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 외에 금품을 받거나 작업인의 동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도축장 내의 다른 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전기를 이용하여 가축에 충격을 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전용 위생용기에 담는다.

6) 도체

가) 도체를 2등분으로 절단할 경우에는 엉덩이사이뼈·허리뼈 등 등뼈를 좌우대칭이 되도록 절단한다.

나) 도체는 전기톱 또는 에어톱 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절단한다.

7) 냉장·냉동 및 포장은 해체된 타조고기를 신속히 냉각한 후 실시한다.

2. 오소리

가. 도살방법

1) 도살 전에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류하여야 하며, 동물의 표면에 묻어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한다.

2) 도살은 타격법·전살법·총격법·자격법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혈 전후 연수 또는 척수를 파괴할 목적으로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 그 철선은 소독된 스테인리스 철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방혈법

가) 방혈은 목동맥 또는 복대동맥을 절단하여 실시한다.

나) 목동맥 절단시에는 식도 및 기관이 손상되어서는 아니되며, 복대동맥 절단시에는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방혈은 목 또는 뒷다리를 매달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처리방법

1) 동물의 껍질과 털은 해당 동물의 특성에 맞게 벗기거나 뽑는 등 위생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머리는 뒷머리뼈와 제1목뼈 사이를 절단하되 림프절은 머리에 부착시킨다.

3) 앞다리는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4) 뒷다리는 뒷발목뼈와 뒷발허리뼈 사이를 절단한다.

5) 장기적출은 배쪽의 정중선에 따라 절개한 후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가) 절개시에 음경·고환을 제거한다.

나) 항문·외음부 및 그 주위부분을 제거한 후 횡경막의 부착부분부터 절개한다.

다) 가슴뼈와 치골결합 사이를 종단한다.

라) 장내용물이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가급적 항문을 묶는다.

마) 흉강장기·복강장기를 적출한다.

바)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간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적출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담는다

사)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위·소장 및 대장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하여 처리하되,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전용 위생용기에 담는다.

6) 도체는 전기톱 또는 에어톱 등을 이용하여 위생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7) 냉장·냉동 및 포장은 해체된 식육을 신속하게 냉각한 후 실시한다.

12) 가축외 동물의 검사기준

별표 14의6 개정 2015. 12. 31.

가축외동물의 검사기준

(제58조의2제1항 관련)

1. 타조

가. 생체검사

-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타조를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 2) 타조는 개체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대상 타조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타조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3) 생체검사전에 죽은 타조는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4)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가) 타조의 자세·거동·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 다) 필요한 경우 눈꺼풀·비강·구강 및 항문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5) 검사관은 생체검사 실시결과 이상이 있는 타조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6) 검사관은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해당되는 타조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단독·앵무병·탄저·살모넬라균감염증 및 바이러스성뇌염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타조
 - 나)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패혈증·농독증·뇨독증·황달·수종·종양·전신쇠약·전신빈혈증·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타조
 - 다)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 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타조

나. 해체검사

- 1) 도축된 타조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
- 2) 심장·폐·간 및 신장은 축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 그 밖의 모든 흉강·복강장기는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정상적인 지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
- 3) 검사내용

- 가) 패혈증·농독증·관절염·염증·궤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
 - 나) 불완전 방혈 도체, 이물질 오염 도체,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
 - 다)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
 - 라) 내부장기·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삼출물 또는 이물질 오염 여부
- 4)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

검사대상		폐기범위		
		일부	전체	폐기세부내용
기낭염	국소적	○		감염조직 폐기
	기낭의 염증부위가 과도하거나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빈혈	식용에 적당하지 않을 만큼 심한 경우		○	전체지육 폐기
탄저	도체와 가죽·깃털 및 내장 등 모든 생산물 폐기		○	전체지육 폐기
관절염	국소적·구조적 변화가 없는 경우	○		감염부위 폐기
	구조적 변화가 있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생물체제의 잔류		○	전체지육 폐기
타박상	국소적, 표면적	○		감염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중추신경 장애	우울, 졸음, 혼수, 비틀거림, 선회, 근육 경련		○	전체지육 폐기
도축과정중 오염	국소적	○		오염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사후변성	자연적인 표면의 변화	○		관련부위 폐기
	부패하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잔류물질	휴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도축금지
쇠약	근육의 침윤이나 지방조직의 장액성 점액성 변성을 보이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염증	국소적	○		감염기관·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신장	검사후 신장은 폐기		○	신장 폐기
간	염증·농양·괴사·경화·종양 또는 담즙에 의한 변색, 장간염, 내장 혹은 다른 물질에 의한 오염		○	간 폐기

검사대상		폐기범위		
		일부	전체	폐기세부내용
폐	모든 타조의 폐는 사람이나 동물의 식용으로 사용 불가		○	폐 폐기
근육 염증·퇴화 또는 침윤	국소적	○		감염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종양	국소적	○		감염기관 폐기
	전이성, 전신적, 조류백혈병복합체		○	전체지육 폐기
기생충증	국소적	○		감염기관·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색소 침착	국소적	○		감염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기타	병리조직학적, 이화학적 또는 미생물적으로 검사결과 식용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다. 실험실검사

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거나 이를 의뢰할 수 있다.

- 1)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 2) 식육중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오소리

가. 생체검사

- 1) 검사는 작업장안의 계류장에서 동물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실시한다.
- 2) 검사대상동물이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동물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3) 개체별 검사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 가) 동물의 자세·거동·영양상태 및 호흡상태 등을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맥박과 체온을 측정한다.
 - 나) 피부와 털의 상태를 확인한다.
 - 다) 필요한 경우 눈꺼풀·비강·구강·항문·직장검사를 실시한다.
- 4) 생체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구획된 계류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5) 생체검사 이전에 죽은 동물은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6) 검사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동물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한다.
 - 가) 부루세라병·광견병·탄저·출혈성페혈증·백혈병·괴사성간균증·결핵병·연쇄간균증 또는 가성결핵의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
 - 나) 현저한 임상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농독증·폐혈증·요독증·황달·수종·종양·전신쇠약·전신빈혈증·이상고열증상 또는 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에 한한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동물
 - 다) 항생물질 또는 합성항균제 등의 약물을 사용한 경우 그 약물의 특성에 따른 권장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고 출하된 동물

나. 해체검사

- 1) 도살된 동물의 지육 등에 대하여 개체별로 해체검사를 실시한다.
- 2) 심장·폐·간 및 신장에 대하여 촉진 및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하고, 그 밖의 모든 흉강·복강 장기에 대하여 육안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정상적인 지육이나 내장 등은 확인검사를 위하여 격리할 수 있다.
- 3) 검사내용
 - 가) 패혈증·농독증·관절염·염증·괴양 또는 기생충증 등의 감염여부
 - 나) 불완전 방혈도체, 이물질 오염도체, 부패 도체 또는 복부팽만 도체인지의 여부
 - 다) 정상적인 장기의 제거상태 확인
 - 라) 내부장기·조직 및 체벽을 검사하여 병변·삼출물 및 이물질 오염여부
- 4) 검사대상 및 폐기범위

검사대상		폐기범위		
		일부	전체	폐기세부내용
도축금지대상에 해당되는 동물의 도체			○	전체도체 폐기
종양	양성	국소적	○	감염기관·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악성	국소적,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흑색증, 가성백혈병		전신적일 경우	○	전체지육 폐기
타박상, 농양		국소적	○	감염부위 폐기
		전신적	○	전체지육 폐기
폐나 흉막·심막·복막 또는 수막의 급성 염증, 창상등에 의한 폐혈증·농혈증·괴저성 혹은 심한 출혈성 장염이나 위염, 다발성 관절염과 급성 신염			○	전체지육 폐기
실질조직의 변성이나 짙은 색소침착을 보이는 황달			○	전체지육 폐기

검사대상		폐기범위		
		일부	전체	폐기세부내용
개선충음	경미한 경우	○		감염부위 폐기
	수척하고 광범위한 범위에 진행		○	전체지육 폐기
기생충	국소적이며 제거 가능할 경우	○		감염부위 폐기
	한 장기에 여러 개의 병소	○		감염장기 폐기
	전신적인 감염		○	전체지육 폐기
포낭충증			○	전체지육 폐기
사람의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로 수척하거나 빈혈이 있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도체가 부패하였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			○	전체지육 폐기

다. 실험실검사

검사관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험실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 1) 병리조직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질병감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 2) 식육의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또는 이화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13)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별표 16 개정 2019. 4. 25.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른 위반행위 중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

(시행규칙 제62조 관련)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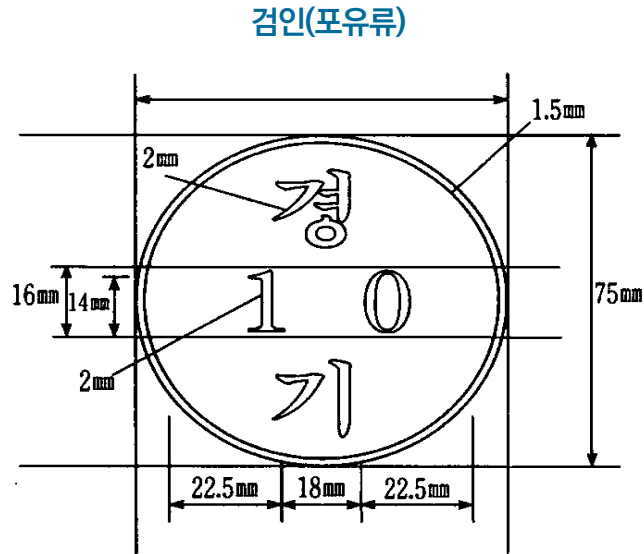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삭제 <2019. 4. 25.>				
2. 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제6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7조 제3항제2호, 영 별표 4 제2호러목 및 이 규칙 제61조제1항	30	60	90
가. 별표 12 제1호가목 또는 별표 13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로서 허가 또는 신고한 영업장 내 해충을 방제·구제하지 아니하여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축산물의 제조·가공·포장 등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를 사용한 후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나. 별표 12 제1호나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작업장 안에서 위생복·위생모(도축장의 경우 안전모를 말한다) 및 위생화를 착용하지 않거나 개인 위생상태가 불량한 종업원을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경우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별표 12 제1호사목 또는 별표 13 제1호 바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업원에 대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생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라. 별표 12 제1호자목 또는 별표 13 제3호버목·제4호거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식육을 별표 13 제2호다목에 따른 방법으로 위생적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마. 별표 12 제2호자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30	60	90
바. 별표 12 제3호의2아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사. 삭제 <2019. 4. 25.>				
아. 별표 12 제4호타목 또는 별표 13 제3호러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 등의 증거품을 정해진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자. 별표 13 제1호라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도축검사증명서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10	20	30
차. 별표 13 제2호다목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카. 별표 13 제3호가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100	100	100
타. 별표 13 제4호다목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제품별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0	60	90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도 및 별지서식

1) 검인(포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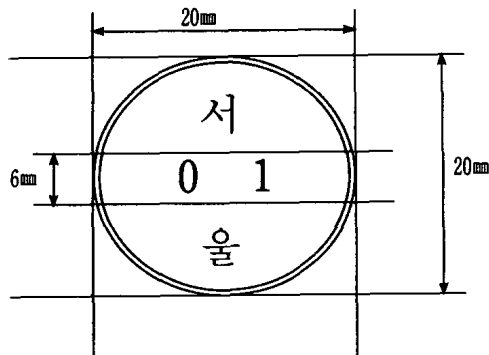
시행규칙 [별도 1]



2) 검인(포유류가축의 머리·꼬리 등의 표면)

시행규칙 [별도 1의2] <2000.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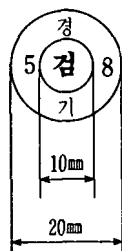
검인(포유류가축의 머리·꼬리등의 표면)



3) 검인(가금류)

시행규칙 [별도 2]

검인(가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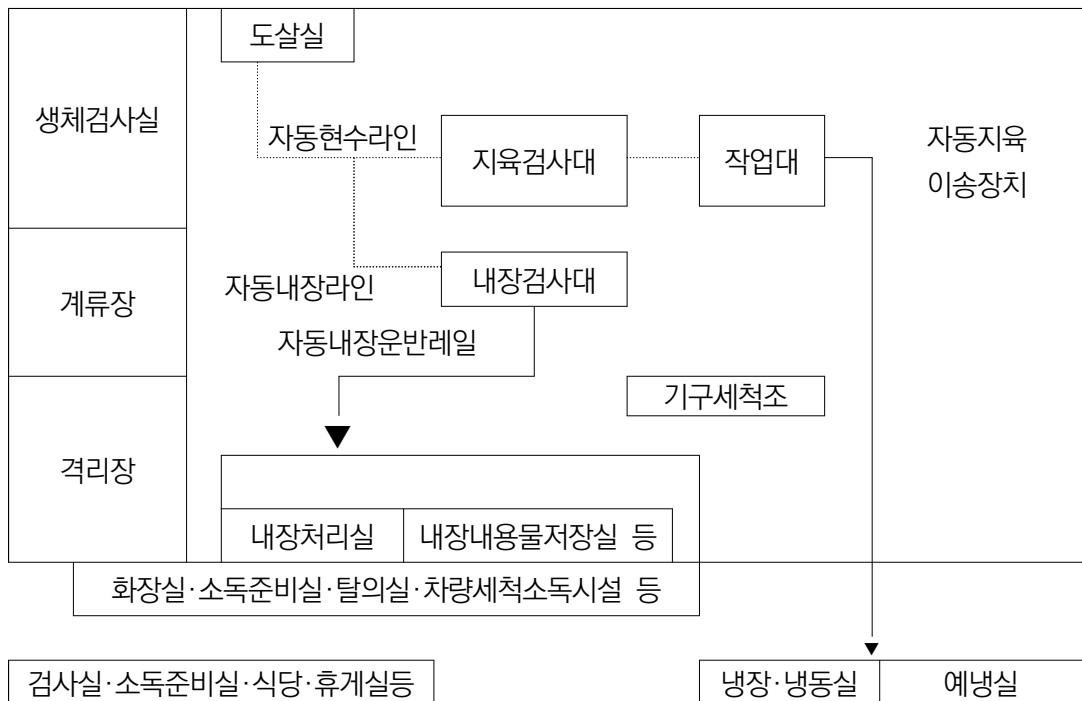


4) 도축장(포유류) 시설배치도

시행규칙 [별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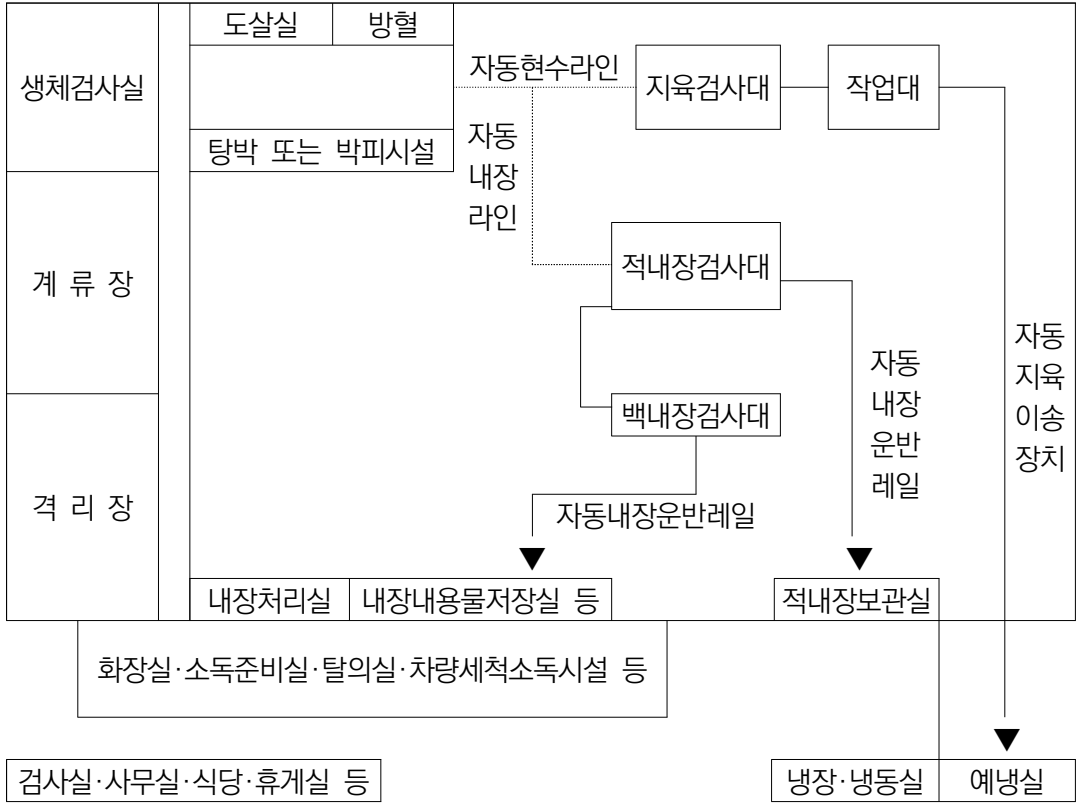
도축장(포유류) 시설배치도

〈소〉



II. 도축검사 관련 법령 및 규정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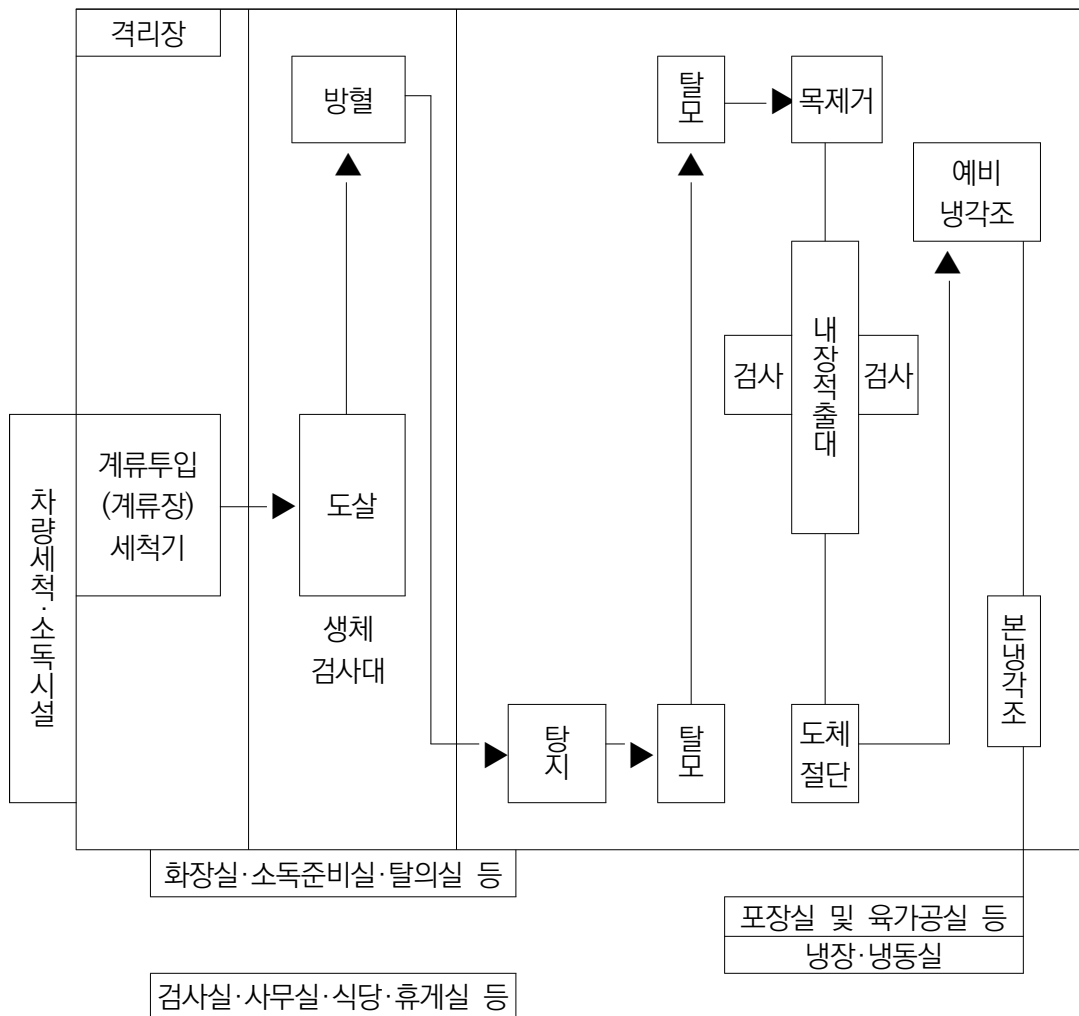


5) 도축장(가금류) 시설배치도

시행규칙 [별도 5]

도축장(가금류)시설배치도

〈답〉



영근 제 5호 영근 판례 관련 법령 및 규정
 II. 도축검사 관련 법령 및 규정

6) 학술연구용 도살·처리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2015. 1. 6.>

학술연구용 도살·처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및 소속 연구기관명	생년월일 및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고 내용	가축의 종류		
	농장식별번호 (소, 돼지만 해당함)		
	개체식별번호 (소만 해당함)		
	성 별		
	연 령		
	체 중		
	도살 사유		
	도살 장소		
일 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7)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2017. 12. 29.>

□ 한글증명서

(앞쪽)

제 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확인서

영업자 :

회사명 :

소재지 :

적용 업종 :

적용 품목 :

조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 영문증명서

CERTIFICATE OF HACCP COMPLIANCE

Certificate No. :

Representative :

Company Name. :

Address :

Type of Business :

Type of Product :

Conditions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licensee is designated as HACCP applied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7-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Month / Day / Year

Governor of Province, Republic of Korea

Stamp

11) 검사관증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014. 2. 19.>

(앞 쪽)

제 호
<h1 style="margin: 0;">검 사 관 증</h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5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사 진</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3cm×4cm</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p> </div>
<h2 style="margin: 0;">성 명</h2> <h2 style="margin: 0;">기 관 명</h2>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 연노랑)

(뒤 쪽)

<h1 style="margin: 0;">검 사 관 증</h1> <p style="margin: 5px 0 5px 20px;">소속/직급 :</p> <p style="margin: 5px 0 5px 20px;">성 명 :</p> <p style="margin: 5px 0 5px 20px;">생년월일 :</p> <p style="margin: 20px 0 20px 20px;">위 사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검사관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margin: 10px 0 10px 40px;">년 월 일</p> <p style="margin: 10px 0 10px 20px;">기 관 장 명 의 직인</p>
<p style="margin: 0;">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p> <p style="margin: 0;">2.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출입·수거·검사·압류 또는 폐기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p> <p style="margin: 0;">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p>

12) 검사원증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2014. 2. 19>

(앞 쪽)

제 호
검 사 원 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

(색상 : 연노랑)

(뒤 쪽)

검 사 원 증
소속/직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13) 영업허가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8. 12. 31.>

영업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8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도축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가공업(아래에서 선택)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알가공업 ()	
	가축의 종류(도축업만 해당함)	전화번호		
	소재지	영업장 면적 m ²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이 직접 닿지 아니하는 시설을 청소하는 경우가 아닌 축산물의 도살·처리·집유·가공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1만원 (온라인신청 시 9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건강진단서(「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건강진단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4) 허가증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2014. 2. 19)

(앞 쪽)

제	호
<h1>허 가 증</h1>	
업 소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생년월일:)
주 소 :	
영업의 종류 :	가축의 종류
허 가 조 건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라 ()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210mm×297mm[백상지(1종) 120g/m²]

15) () 영업허가 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2012. 8. 20.)

(앞 쪽)

()영업허가 관리대장

영업허가사항			계 인		
업 소 명					
영업 허가 번호		제 호	허가일	년 월 일	
영업장 소재지		본 사		전화번호	
		공 장		전화번호	
대 표 자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영업 허가 조건			영업허가 시설범위		
영업허가의 변경허가(신고)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급 · 성명	연월일	내 용	기재자 직급 · 성명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뒤 쪽)

업 소 규 모											
공 장 규 모									종 업 원 수		
대 지 면 적			㎡			총 원			명		
건 물 면 적			㎡			본 사			명		
작 업 장 면 적 (처리·가공장)			소계 ㎡			공 장			사 무 직		명
									판 매 직		명
									생 산 직		명
건물 소유 구분			[] 자 가 [] 임 대								
책임수의사 지정승인·해임신고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수의사 면허 번호	직 책	신 고 내 용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수의사 면허 번호	직 책	신 고 내 용	
				구분 (지정·해임)	승인일·수리일					구분 (지정·해임)	승인일·수리일
그 밖의 행정 조치 사항											
연월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연월일	구분	조치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행 정 처 분 사 항											
처 분 연월일	문서 번호	위반 사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 재 자 직급·성명	처 분 연월일	문서 번호	위반 사항	처분내용 및 기간	기 재 자 직급·성명		
비 고 : 위생관리책임자(위생교육 관련) 지정사항 등											

16)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2015. 12. 31.)

영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사항	명칭(상호)		허가번호	
	영업의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재발급 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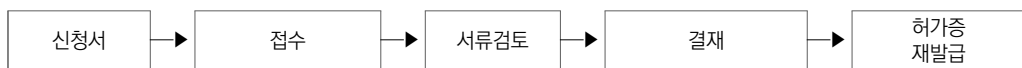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	----	----------------------------

유의사항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리절차



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축산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17)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2015. 12. 31.)

영업허가사항 변경 [] 허가신청서 [] 신고서

※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허가 7일 신고 3일
------	-----	-----	------	----------------

신청(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허가대상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명	
	영업의종류	허가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가축의 종류		
영업장 중요시설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
기타 영업장의 시설변경		
변경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3항에 따라 영업허가의 변경 [] 허가
[] 신고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

신청(신고)인 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 × 297mm [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천원 (온라인신청시 4천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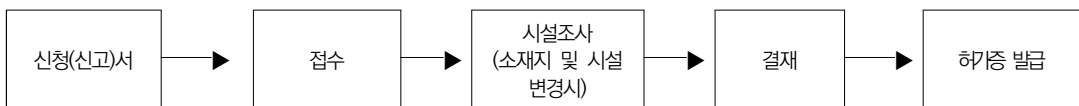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 · 유가공업 · 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축산부서)

18)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016. 2. 4.)

영업 휴업·재개업·폐업 신고서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업소명	영업의 종류		
	소재지			
	허가·신고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유형	[] 휴업	[] 재개업	[] 폐업
	폐업(재개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5항 또는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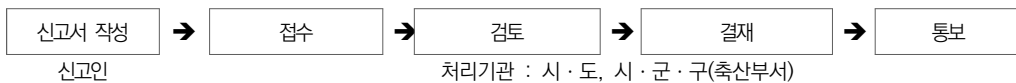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유의사항

1. 도축업과 집유업의 영업자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 예정일 5일 전까지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적고[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유가공업·알가공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으며[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우유류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70g/m²(재활용품)]

19) 가축외 동물 도축검사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2014. 2. 19.>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검사 신청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도축 의뢰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도축목적							
출하농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농장명			
가축 운반자	성 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신청내용	동물의 종류 (품종)	성 별	연 령	생체량(kg)	총수량(두)	비 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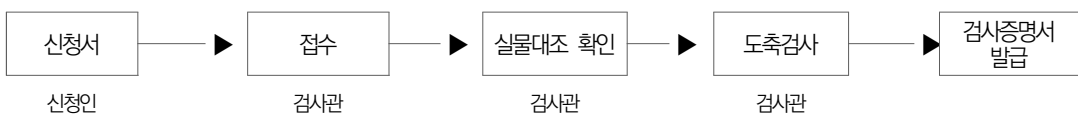
신청인(검사의뢰인)

(서명 또는 인)

검사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
------	-----	--

처리절차



210mm × 297mm[백상지 80g/㎡]

20) 가축외 동물 도축검사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개정 2014.2.19>

제	호		
가축외동물의 도축검사증명서			
1. 동물의 종류 :			
2. 두 수 :			
3. 중 량 :	지육	kg,	내장 등 기타 kg
4. 작 업 장 명 :			
5. 검 인 번 호 :	(합격한 경우에 한함)		
6. 검 사 일 :	년	월	일
7. 검 사 결 과 :	[]합격		[]불합격
8.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	폐기(kg),	식용 외의 용도전환(kg)
9. 검사신청인 :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10. 기 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사관 소 속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수의사 면허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

② 도축검사 관련 고시

가.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 2016-18호, 2016. 3. 3.)

1) 주요 조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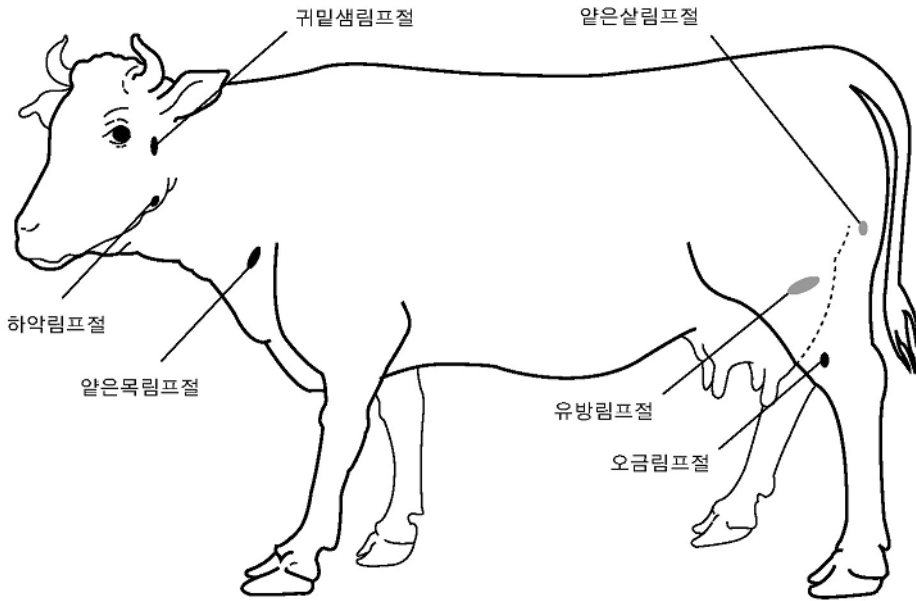
<p>목적 (제1조)</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p>
<p>정의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축검사"란 식육을 목적으로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을 검사하는 것으로서, 생체검사와 해체검사로 구분함 2. "식육"이란 식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을 말함 3. "생체검사(生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도축될 생축에 대해 사람 또는 가축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검사 등을 말함 4. "해체검사(解體檢査)"란 도축장에서 검사관 또는 검사관의 감독·지시를 받는 도축검사원(이하 "도축검사원"이라 한다)이 도축된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식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육안 검사 등을 말함 5. "폐기"란 도축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관이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가축 또는 가축의 지육, 머리,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해 도축장 영업자가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함 가. "전체폐기"란 생축 또는 식육의 전체를 폐기하거나, 지육·머리·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전체를 폐기하는 것을 말함 나. "부분폐기"란 지육·머리·내장 또는 그 밖의 부분 중 특정한 부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것을 말함
<p>생체검사 (제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체검사는 별표 1의 생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함 ② 검사관은 죽은 가축, 생체검사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5항의 기립불능소 및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함. ③ 검사관은 생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개체 또는 군을 의심축(군)으로 분류하여 격리장 또는 계류장 등에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

<p>생체검사 (제3조)</p>	<p>서식의 의심축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과 도축을 허용할 경우에는 해체검사시 해당병변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p> <p>④ 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유류 생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금류 생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p>
<p>해체검사 (제4조)</p>	<p>① 해체검사는 별표 2의 해체검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함</p> <p>② 검사관은 머리, 지육, 내장 및 그 밖의 부분에 대한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p> <p>③ 검사관 또는 도축검사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포유류 해체검사기록부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금류 해체검사기록부를 활용하여 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p>
<p>실험실검사 (제5조)</p>	<p>① 검사관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상 또는 병변에 따라 병리조직학적 검사, 잔류물질 등 이화학적 검사 또는 미생물학적 검사 등 실험실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가축 또는 그 식육은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구획이 분명한 별도의 시설에서 계류 또는 냉장, 냉동시설에서 출하보류 하여야 함</p> <p>② 실험실검사는 도축장 실험실 또는 관내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할 수 있음.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신속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함</p> <p>③ 검사관은 도축검사에서 확인한 병변에 대해 정밀한 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내외 수의과대학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험실검사 또는 육안병변 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관 및 검사기관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도축검사-도축병리관리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축병리 정밀검사 의뢰내역 및 결과 통보서)"란에 입력하여야 함</p>
<p>불합격품 처리 (제6조)</p>	<p>① 도축장 영업자는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에서 불합격된 가축 및 그 식육은 색소 등으로 구분 표시 및 분리보관한 후 법 제1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p> <p>② 검사관은 생체검사 및 해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다목에 열거된 가축질병 또는 그 밖의 국내 비발생 가축질병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함</p>
<p>도축검사 결과 보고 (제7조)</p>	<p>검사관은 도축검사 결과를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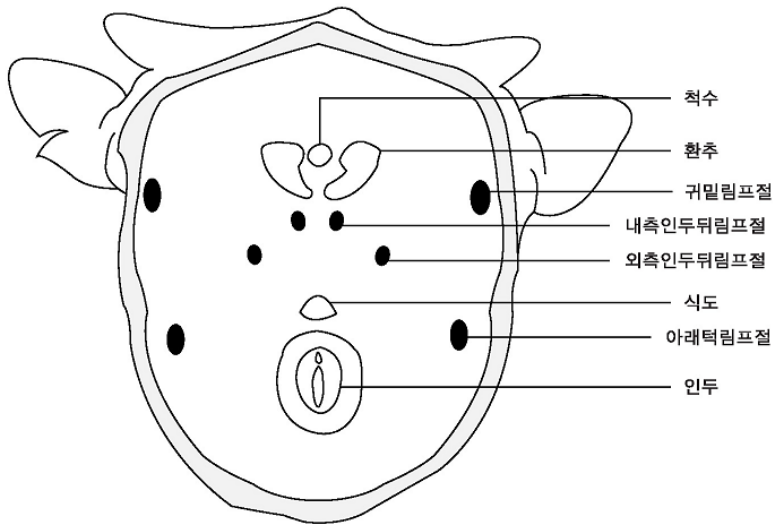
2) 별도

별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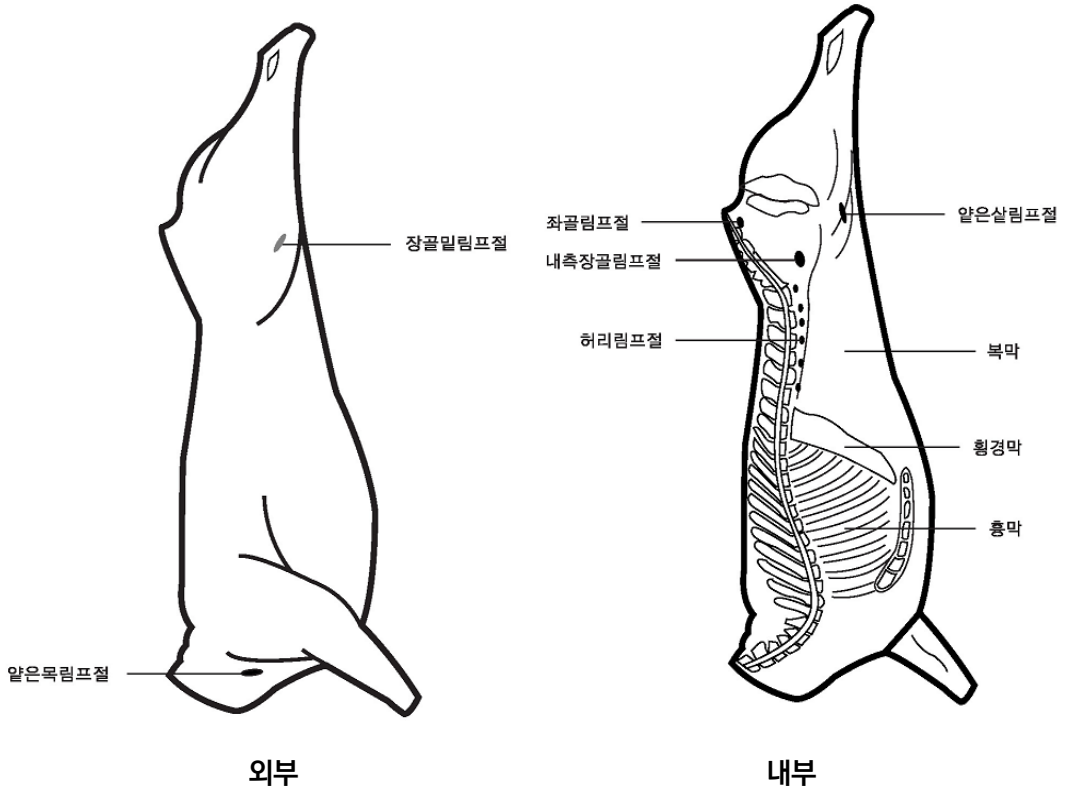
도체 및 장기 등의 주요 림프절 모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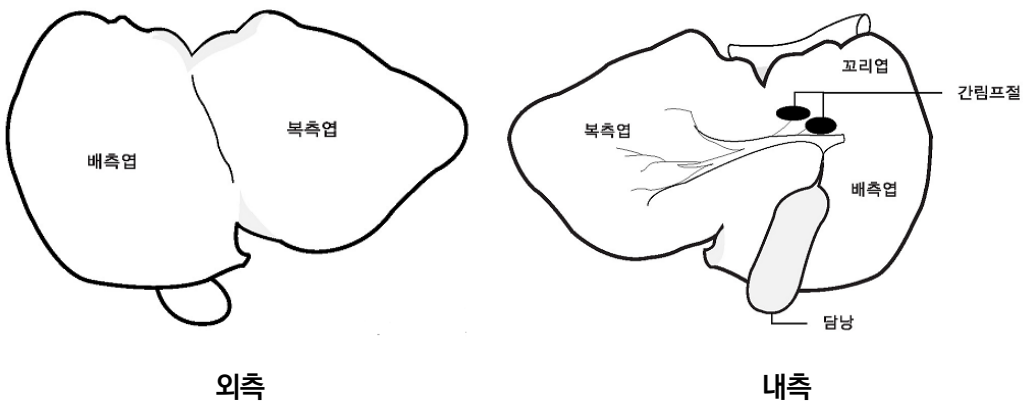
〈소 체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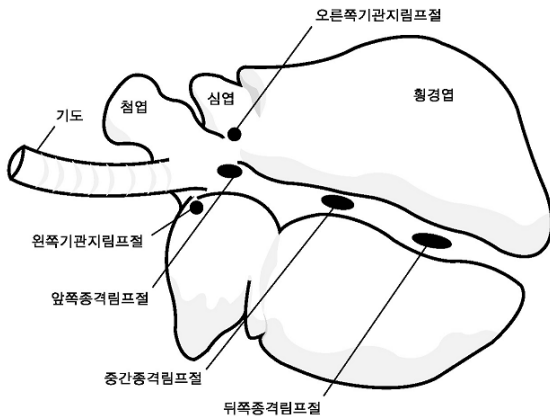
〈소 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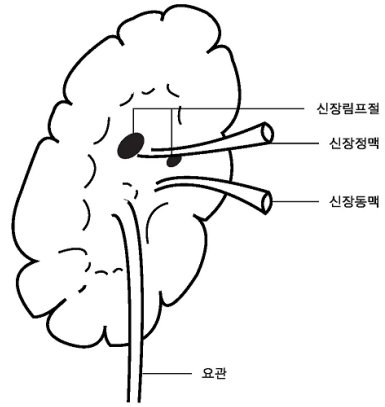
〈소 지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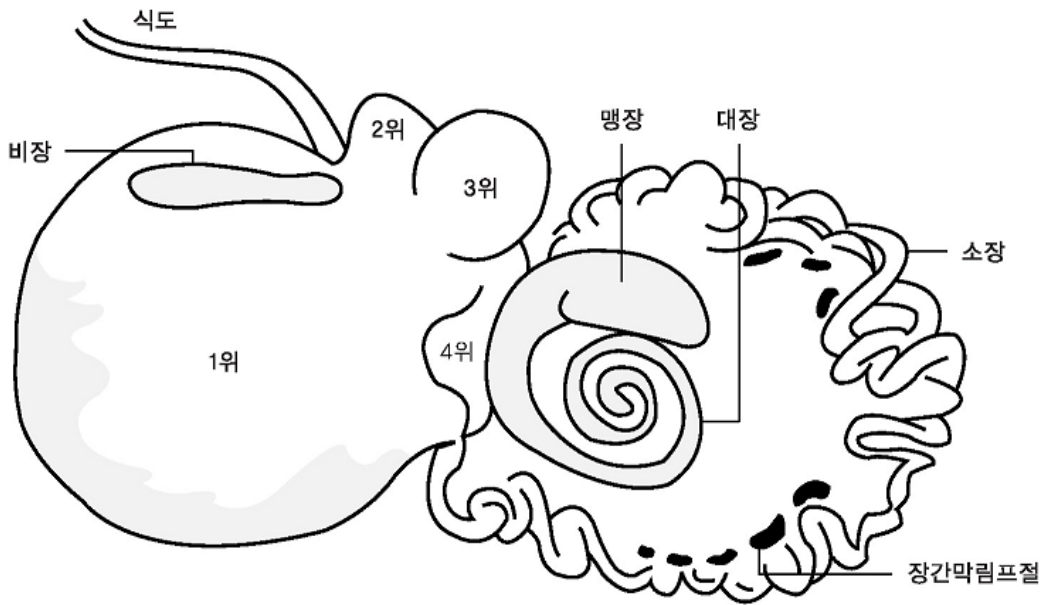
〈소 간장〉



〈소 폐장〉



〈소 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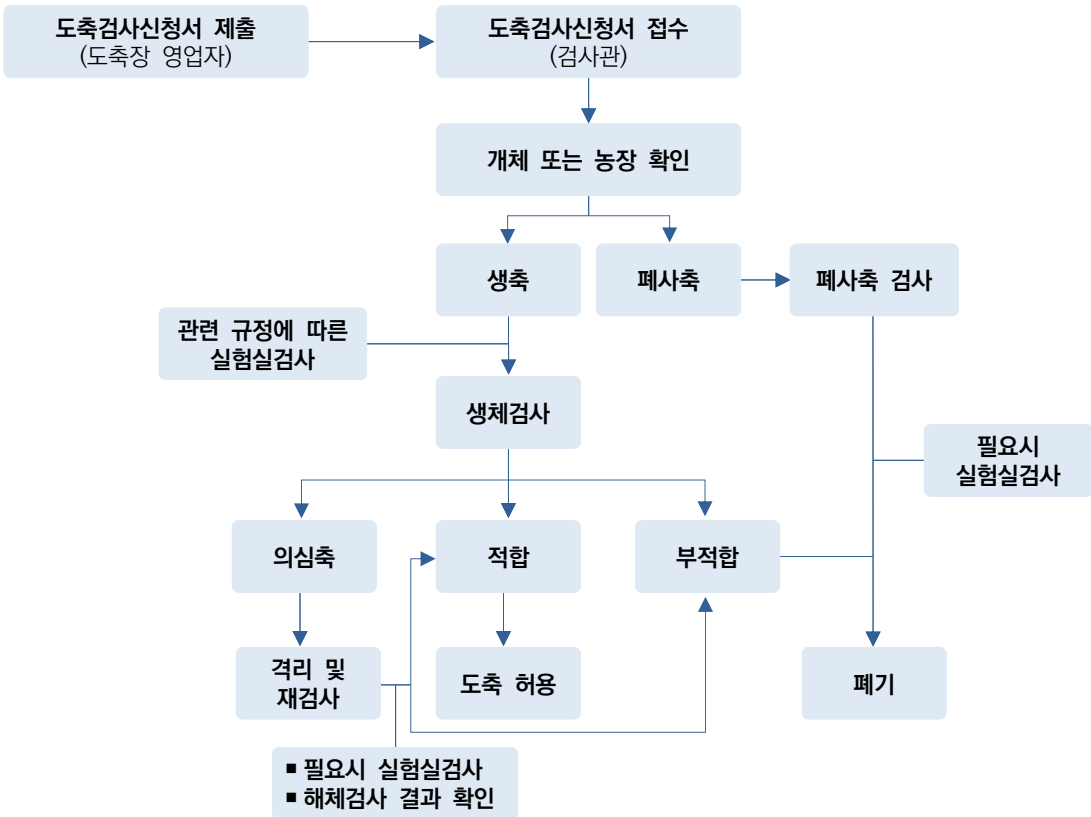
〈소 위장〉

3) 별표

별표 1

생체검사 세부기준

1. 생체검사 처리절차도



2. 검사관은 생체검사전 위생복, 위생화, 안전모, 위생장갑 착용과 검사도구(체온계, 청진기, 손전등 등 축종에 맞는 도구), 기록지 및 필기도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3. 포유류

가. 모든 가축은 생체검사장에서 생체검사를 실시한다.

나. 소 또는 말의 경우 개체별로 망진 후 체온이상 여부를 조사하고 다음에 안검, 비강 및 구강을 열어 검사하고 가축의 한쪽의 측면에 대하여 체표 림프절[별도1 참고]을 포함하여 경부, 몸통

및 전지를 촉진하고 후방으로 향하여 항문, 생식기 및 후지를 검사하고 또한 다른 쪽의 측면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돼지의 경우는 개체별 또는 돈군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다. 생체검사 시에는 품종, 성별, 나이, 행동, 영양, 피부와 털 상태, 보행과 기립상태, 비경 및 비강, 구강, 연하곤란, 안검과 결막, 비뇨생식기, 소화기 및 호흡기계 등 주요관찰 항목을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라. 생체검사결과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질병 또는 어떤 상태에 감염 또는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의심축”으로 분류하여 격리장에서 일정시간 이상 계류시킨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가축의 도축이 완료된 후에 도축하여 그 식육은 해체 검사 결과에 따라 처리
 - (2) 식용으로 공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폐기처리
- 마. 죽은 가축, 죽어가는 가축, 움직이지 못하는 가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부상, 난산, 산욕마비 및 급성고창증 가축제외),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해당된 가축 또는 이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
- 바. 눈 편평상피암과 같이 악성종양으로 인해 종양조직이 눈을 파괴하고 광범위하게 침습하여 회농 및 괴사가 수반하여 악취가 나거나 악액질을 수반하는 가축은 폐기하거나 도축을 금지한다.
- 사. 생체검사결과 탄저로 의심될 경우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정밀검사시 탄저로 확인될 경우 해당 가축의 출하능가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탄저 환축이 있는 계류장 등은 철저히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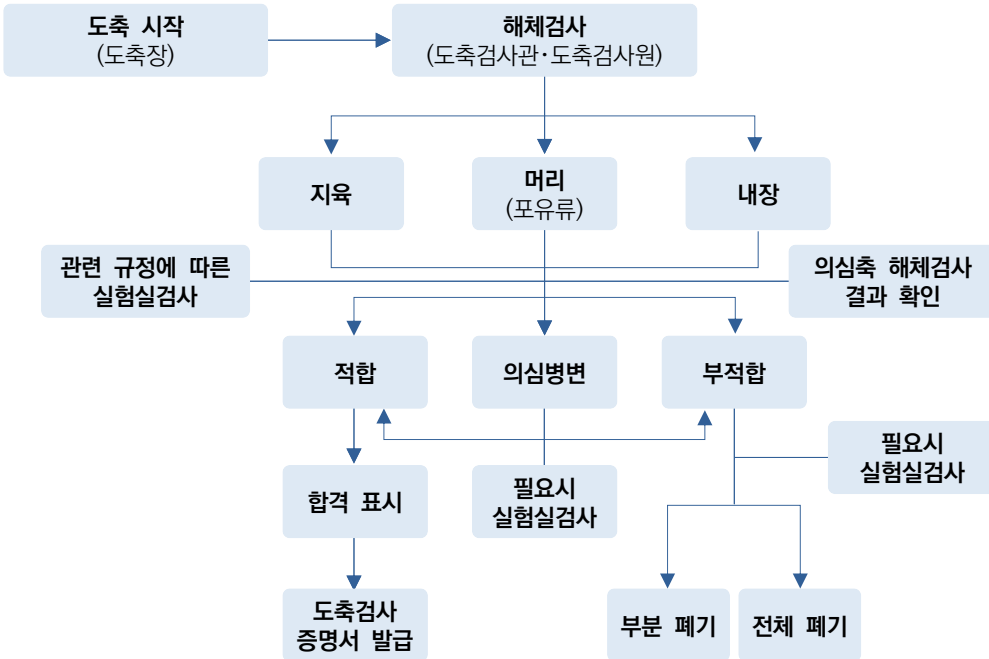
4. 가금류

- 가. 모든 가금은 계류장에서 생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생체검사는 군별검사와 개체별검사로 구분한다.
- 나. 군별검사는 군별(롯데) 단위로 실시하며, 가금의 자세, 거동상태, 쇠약상태, 털의 상태, 눈, 비공 및 항문 등 망진에 의해 농장별 전염병 등의 질병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다. 생체검사 결과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나, 질병 또는 어떤 상태에 감염 또는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의심군”으로 분류하여 도축을 허용한 경우 다른 가금의 도축이 완료된 후에 개체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라. 개체별 검사에서 머리 및 눈의 종창, 벼슬의 부종, 호흡곤란 및 재채기, 비정상 분변 색깔, 피부병변, 사경, 뼈 및 관절 종대, 피부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마. 죽은 가금, 죽어가는 가금, 움직이지 못하는 가금,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해당된 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가금은 도축을 금지하여야 한다.

별표 2

해체검사 세부기준

1. 해체검사 처리절차도



2. 검사관 또는 도축검사원은 해체검사 전 위생복, 위생화, 안전모, 위생장갑 착용과 검사도구 (칼, 칼갈이, 가위, 핀셋 등 축종에 맞는 도구)를 준비 하여야 하며, 해체검사 시 병변이 있는 장기나 조직 또는 내장을 절개한 경우에는 반드시 손과 칼 등 사용도구에 대한 세척소독을 실시하여 식육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유류

가. 공통사항

해체검사시 장기의 육안병변 확인은 전체 장기 앞뒤면의 관찰 및 축진을 통해 크기, 색깔, 모양, 경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 및 관련 림프절[별도1 참고]을 절개하여 이상유무를 검사한다. 지육의 경우도 내외부, 척주 관찰 및 축진을 통해 병변여부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림프절 및 근육 등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나. 소

- (1) 머리 : 머리표면과 눈의 이상유무를 관찰하고 교근을 하악골에 평행하게 절개한다. 귀밑 림프절, 인두뒤림프절, 아래턱림프절을 촉진, 절개하여 검사한다. 혀를 촉진한다.
- (2) 폐장 : 종격림프절의 촉진, 절개 및 기관지 림프절을 촉진, 절개하여 검사한다. 폐엽을 촉진하고 필요시 폐엽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 (3) 심장 : 종축으로 좌우심실 및 심방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 (4) 횡격막 및 종격막 : 횡격막의 근육부의 장막을 절개하고 종격 림프절을 세절하여 검사한다.
- (5) 간장 : 간의 횡격막면과 내장면을 촉진하고 필요시 절개한다. 간장림프절의 절개 및 담관을 종축을 따라 절개하여 검사한다.
- (6) 위 및 장 : 위 림프절 및 장간막 림프절을 세절하여 검사한다.
- (7) 비장 : 표면을 촉진하며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한다.
- (8) 췌장 : 표면을 촉진하며 필요시 절개하여 검사한다.
- (9) 신장 : 피막을 벗기고 신장 표면을 촉진하며 필요시 종축으로 이등분 절개하여 피질, 수질, 신우의 상태를 관찰한다. 신장림프절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 (10) 유방 : 유방을 촉진하며 필요시 절개하며 상유방림프절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 (11) 자궁 : 절개하여 검사한다.
- (12) 지육 : 지육의 외관을 관찰한다. 지육 바깥면의 장골밑림프절과 얇은목림프절을 절개한다. 지육 안쪽면의 얇은살림프절, 내측장골림프절, 허리림프절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척추를 관찰한다.

다. 송아지

송아지의 검사는 특히 배꼽 및 관절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에 준하여 실시한다.

라. 말

- (1) 머리 : 하악골에 따라 후낭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절개하여 검사한다.
- (2) 간장 : 담관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 (3) 비장 : 장측면을 비분에 따라 절개하여 검사한다.
- (4) 폐, 심장, 위장 및 지육 등 : 소에 준하여 실시한다.

마. 돼지

- (1) 머리 : 머리 표면을 관찰하며 아래턱 림프절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혀를 관찰한다.
- (2) 폐장 : 소에 준하여 검사한다.
- (3) 간장 : 소에 준하여 검사한다.
- (4) 심장, 위장 등 : 소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5) 지육 : 지육의 외관을 관찰한다. 지육 내면의 얇은살림프절, 내측장골림프절을 절개한다.

바. 면양 및 산양

- (1) 머리 : 소에 준하여 검사한다.
- (2) 폐장, 심장, 간장, 비장 및 지육 등 : 소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단, 폐의 경우 좌우 1개소씩 실시한다.

사. 검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부, 지육 및 내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 검사에 의해 이상을 발견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그 조치를 보류하여야 한다.

자. 해체검사결과 다음질병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육 및 내장 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 (1) 관절염(Arthritis) : 전신 증상이 없는 경우 해당 관절 부위 폐기
- (2) 소 전신부종(Generalized edema) : 현저한 전신성 부종인 경우 전체 폐기, 국소성인 경우 해당 부위 폐기
- (3) 방선균증(Actinomycosis), 액티노바실러스증(Actinobacillosis) 및 포도상진균증(Botryomycosis)
 - (가) 전신성 감염인 경우 : 전체 폐기
 - (나) 국소성 또는 전이가 제한된 경우 : 감염 부위 폐기
- (4) 리스테리아증(Listeriosis) : 지육이 정상일 경우 머리 폐기, 전신성인 경우 전체 폐기
- (5) 결핵(Tuberculosis) : 전체 폐기 및 정밀검사
- (6) 종양(Neoplasms)
 - (가) 종양이 있는 부위 및 장기 폐기
 - (나) 종양이 전이되어 전신성으로 존재할 때 전체 폐기
 - (다) 악성 림프종(Lymphosarcoma)은 전체 폐기
 - (라) 상피세포종(Squamous cell carcinoma)
 - 1) 전체 폐기
 - 가) 종양이 머리뼈까지 침투하여 화농 및 괴사가 있을 때
 - 나) 종양이 전이되어 눈에서 이하선 림프절, 내장, 근육 등에 전이 되었을 때
 - 다) 악액질과 관련 되었을 때
 - 2) 지육은 정상이고 눈에만 종양이 있는 경우 머리(혀 포함)만 폐기
- (7) 기생충성 질병(Parasites)
 - (가) 낭미충증(Cysticercosis)
 - 1) 소 무구낭미충(Cysticercus bovis)
 - 가) 감염이 광범위(낭미충 10개 이상 확인)하고 근육에 부종 및 변색이 있을 때 식육 전체 폐기
 - 나) 감염이 심하지(낭미충 10개 미만 확인) 않은 경우 해당 부위만 폐기. 단, 해당 식육은 -12℃ 이하에서 20일 이상 처리 후 식용 가능
 - 2) 돼지 유구낭미충(Cysticercus cellulosae) :
 - 가) 감염이 광범위한 경우 식육 전체 폐기
 - 나) 감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위만 폐기. 단, 해당 식육은 -12℃ 이하에서 5일 이상 처리한 경우 또는 가열 조리한 경우에는 식용 가능
 - (나) 소 사상충(Parafilaria bovicola) : 감염부위 폐기
 - (다) 세경낭미충(Cysticercus tenuicollis, ovis), 포충증(Echinococcosis), 공미낭충(Coenuirus cerebralis) :
 - 가) 감염이 광범위한 경우 식육 전체 폐기

- 나) 감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위만 폐기. 단, 가열 조리한 경우에는 식용 가능
- (라) 장 및 장막하 조직의 만성 섬유증, 육아종(기생충 감염) : 장 전체 폐기
- (마) 분선충증(Strongylosis)(폐, 위 및 장) 및 편충(소화기) : 해당 장기 전체 폐기
- (바) 분선충 유충(Strongylus larvae) : 감염부위 폐기
- (사) 간질증(Fascioliosis; Fluke) : 간 전체 폐기
- (아) 말파리 유충(Botfly larvae) : 소의 등근육, 척추관 및 식도, 말의 인두, 양의 머리 등 해당 감염부위 폐기
- (자) 돼지 개선충(Sarcoptes mite) : 감염부위 폐기
- (차) 양 개선충(Psoroptes mite) : 감염부위 폐기
- (카) 선모충증(Trichinella spp.) : 전체 폐기
- (8) 원충성 질병(Protozoa)
 - (가) 주육포자충증(Sarcosporidiosis) : 감염 부위 폐기
 - (나) 장 콕시디움증(Eimeriosis, isosporosis, cryptosporidiosis) : 장 전체 폐기
- (9) 색소침착(Pigmentary deposits)[흑색증(Melanosis), 황색증(Xanthosis) 및 갈색증(Ochronosis) 등] : 전신성 색소침착인 경우 전체 폐기, 국소성인 경우 색소 침착 부위 폐기
- (10) 찰과상(Abrasion), 타박상(Bruises), 농양(Abscesses) 등 : 전신성인 경우 전체 폐기, 국소성인 경우 감염 부위 폐기
- (11)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다음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전체 폐기
 - (가) 폐장, 흉막, 심외막, 복막 또는 수막의 급성 염증
 - (나) 산후, 창상 또는 원인불명 등에 의한 패혈증 또는 농혈증
 - (다) 괴저성 또는 심한 출혈성 장염 또는 위염
 - (라) 급성 미만성 자궁근염 또는 유방염
 - (마) 제대정맥의 정맥염
 - (바) 감염성 또는 화농성의 창상성 심외막염
 - (사) 급성 염증, 농양 또는 화농성 궤양
 - (아) 살모넬라증
- (12) 괴사간균증(Necrobacillosis) : 도체의 영양상태가 양호하고 국소성인 경우 감염부위 폐기, 도체의 상태가 쇠약하고 실질조직 및 림프절 종창이 있는 독혈증 상태의 경우 전체 폐기
- (13) 패혈증(Septicemia), 농혈증(Pyemia), 독혈증(Toxemia) 및 바이러스혈증(Viremia) : 전체 폐기
- (14) 근육 염증, 변성, 침윤(Muscular inflammation, degeneration, infiltration) : 병변을 제거하기 어려우면 전체 폐기, 병변제거가 가능하면 감염부위 폐기
- (15) 콕시듐 관련 육아종(Coccidiodal granuloma) : 전신성인 경우 전체폐기, 국소성인 경우 감염부위 폐기
- (16) 옴(Mange or Scab) : 악액질을 수반하거나 광범위한 염증이 있는 경우 전체폐기, 경미한

경우 감염부위 폐기

- (17) 돼지 두드러기(Urticaria), 모낭충(Demodex folliculorum), 홍반(Erythema) : 감염부위 폐기
- (18) 소생식기캠필로박터증(Bovine genital campylobacteriosis) : 감염부위 폐기
- (19) 송아지디프테리아[Calf diphtheria(Fusobacterium necrophorum)] : 전체 폐기
- (20) 면양 부제병(Dichelobacter nodosus) : 감염부위 폐기
- (21)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Leptospira interrogans)] : 전체 폐기
- (22) 황달(Icterus) : 어느 정도 황달 상태가 보이면 전체 폐기
- (23) 쇠약(Emaciation) : 근육조직의 장액성 위축, 지방조직의 장액성 또는 점액성 변성이 있는 경우 전체 폐기
- (24) 빈혈(Anemia), 수혈증(Hydremia), 부종(General edema) : 전체 폐기
- (25) 배아(Embryos), 태아(Fetuses), 유산산(Abortion & stillbirth) 및 신생 동물(New-born animals) : 전체 폐기
- (26) 과탕지 돼지(Scalding hog) : 전체 폐기
- (27) 비정상적 냄새, 맛 또는 색깔(Abnormal smell, taste, color) : 전체 폐기
- (28) 생물학적 잔류물질(Biological residues) 허용한계치 초과 : 지육 및 장기 전체 폐기
- (29) 성취가 심한 지육(Sexual odor) : 전체 폐기
- (30) 급성 제대감염(Acute umbilical infection) : 전체 폐기
- (31) 오염(Condemnation) : 분변 등 오염부위 폐기
- (32) 신경계 병변(Nervous system)
 - (가) 급성 뇌염(Acute encephalitis), 뇌척수막염(Cerebrospinal meningitis) 및 척수염 : 전체 폐기
 - (나) 만성 뇌염 및 척수염(Chronic cerebral or spinal cord inflammation) : 두부 및 척주 폐기
 - (다) 만성 뇌 농양(Chronic brain abscess) : 두부 폐기
- (33) 심장혈관계 병변(Pericardium, heart and Cardiovascular system)
 - (가) 급성 삼출성 심외막염(Acute exudative pericarditis) : 전체 폐기
 - (나) 만성 삼출성 심외막염(Chronic exudative pericarditis) : 심장 폐기
 - (다) 창상성 심외막염(Traumatic pericarditis)[삼출물 축적, 순환장애, 쇠약 또는 복합감염] : 전체 폐기
 - (라) 만성 섬유소성 심외막염(Chronic fibrous pericarditis) : 심장 폐기
 - (마) 혈전성 심내막염(Endocarditis with thrombosis)[Ulcerative and verrucous] : 전체 폐기
 - (바) 감염성, 혈전성 동맥 및 정맥 내막염(Infectious endarteritis and endophlebitis with thrombosis) : 전체 폐기
 - (사) 비감염성 심장질병(Non-infectious heart disease)[선천성 기형 등] : 심장 폐기
 - (아) 기생충에 의한 혈전(Thrombosis) : 심장 폐기

- (자) 점상출혈(Petechia) : 급성 열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 전체 폐기
- (차) 심장지방의 장액성 위축(Collagenic atrophy) : 심장 폐기
- (카) 심근농양(Heart abscess) : 내장·머리 및 지육 폐기
- (34) 호흡기 병변(Respiratory tract and lungs)
 - (가) 부비강염(Sinusitis), 비염(Rhinitis) : 머리 폐기
 - (나) 위축성비염(Atrophic rhinitis) : 머리 폐기
 - (다) 만성 기관지폐렴(Chronic bronchopneumonia) : 폐장 폐기
 - (라) 돼지 흉막폐렴(pleuropneumonia) : 심급성 또는 25% 이상의 급성 병변인 경우 전체 폐기, 25% 미만의 급성 병변인 경우 폐장 폐기
 - (마) 구획된 폐 괴사 및 농양(Demarcated necrosis and abscesses) : 폐장 폐기
 - (바) 농혈증에 의한 괴사 및 농양(Necrosis and abscesses of pyemic organ) : 전체 폐기
 - (사) 기관염(Tracheitis) 및 기관지염(Bronchitis) : 폐장 폐기
 - (아) 무기폐(Atelectasis), 폐기종(Emphysema), 색소침착(Pigmentation), 출혈(Bleeding), 폐수종(Pulmonary edema), 기관지확장증(Bronchiectasia) 및 혈액 등 흡인폐(Aspiration) : 폐장 폐기
- (35) 흉막 병변(Pleura)
 - (가) 섬유소성, 장액섬유소성, 화농성 또는 부패성 흉막염(Fibrous, serofibrinous, suppurative or putrid pleuritis) : 전체 폐기(25% 이하 병변인 경우 감염부위 폐기)
 - (나) 만성 섬유소성 흉막염(Chronic fibrous pleuritis) : 감염부위 및 폐장 폐기
- (36) 위장 병변(Stomach and Intestine)
 - (가) 위염 또는 장염(Gastritis or enteritis) : 위 또는 장 폐기, 전신성인 경우 전체폐기
 - (나) 급성 섬유소성, 괴사성, 디프테리아성 또는 출혈성 장염(Acute fibrinous necrotising diphtheric or hemorrhagic enteritis) : 전체 폐기
 - (다) 만성 섬유소성, 괴사성, 디프테리아성 또는 출혈성 장염(Chronic fibrinous necrotizing diphtheric or hemorrhagic enteritis) : 장 폐기
 - (라) 전위(Displacement)
 - 1) 회장 염전, 감돈 또는 중첩(Torsion, invagination or incarceration of ileum) : 장 폐기
 - 2) 탈장[Constipation of all animals] : 장 폐기
 - (마) 고창증(Gas colic and bloat) : 장 폐기
 - (바) 장간막 기종(돼지)[Mesenteric emphysema] : 장 폐기
 - (사) 장출혈(돼지)[Universal intestine bleeding] : 장 폐기
 - (아) 직장탈(Rectal prolapse) : 장 폐기
 - (자) 제1위염(반추류)[Rumenitis] : 위장 전체폐기
 - (차) 제2위염(반추류)[Reticulitis] : 제2위-횡격막-심장막 누관 형성시 전체 폐기
 - (카) 직장협착(Rectostenosis) : 장 폐기, 돼지의 살모넬라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식육 전체 폐기

- (타) 농양(Abscess) : 장 폐기
- (37) 복막 병변(Peritoneum)
 - (가) 급성 미만성 복막염(Acute diffuse peritonitis) : 전체 폐기
 - (나) 급성 국소성 복막염(Acute local peritonitis) : 감염부위 폐기
 - (다) 만성 국소성 복막염(농양포함)[Chronic local peritonitis] : 감염부위 폐기
- (38) 간장 병변(Liver)
 - (가) 모세혈관 확장증(부맥반)[Telangiectasia], 낭포(Cysts) 및 담석(Gallstone) : 간장 폐기
 - (나) 국소성 또는 미만성 지방 침윤(지방간)[Local or diffuse fat infiltration; fatty liver] : 간장 폐기, 전신성인 경우 전체 폐기
 - (다) 괴사성 간염(Necrotic hepatitis)
 - 1) 급성 및 아급성 미만성 간염(다발성, 지역성 확대)[Diffuse acute and subacute cases with multifocal or zonal extention] : 전체 폐기
 - 2) 급성 및 아급성 국소성 괴사(Single acute or subacute necrosis) : 간장 폐기
 - 3) 만성 간염(기생충 감염)[Chronic hepatitis] : 간장 폐기
 - (라) 간경화(Liver cirrhosis) : 간장 폐기, 전신성인 경우 전체 폐기
 - (마) 간농양(Liver abscesses)
 - 1) 급성 및 아급성 간농양(Acute and subacute liver abscesses)(다발성 또는 농혈증) : 전체 폐기
 - 2) 만성 간농양(Chronic liver abscesses) : 간장 폐기
 - 3) 속립성 간괴사(송아지)[miliary liver necrosis] : 전체 폐기
 - (바) 간출혈(Liver hemorrhage) : 부분 폐기
 - (사) 간질증(Fasciola hepatica), 밀크반점(Milkspot; ascariosis) : 간장 폐기
 - (아) 파라티프스결절(Paratyphoid nodule) : 간장 폐기, 전신성인 경우 전체 폐기
- (39) 비장 병변(Spleen)
 - (가) 비장 염전, 무균성 괴사(비장경색) 및 파열(Torsion of the spleen, aseptic necrosis and rupture) : 비장 폐기
 - (나) 비장염 또는 창상성 비장염(Splenitis or traumatic splenitis) : 전체 폐기, 전신성이 아닌 경우 비장 폐기
 - (다) 비장종대(Enlarged spleen) : 비장 폐기, 전신성인 경우 전체 폐기
- (40) 췌장 병변(Pancreas)
 - (가) 췌장염 및 췌장의 순환장애(부종)[Pancreatitis and disturbance of the circulation (edema)] : 췌장 폐기
 - (나) 결석 침착(Accumulation of concrement) : 췌장 폐기
- (41) 비뇨기 병변(Urinary tract)
 - (가) 신장결석(Kidney concrement), 신낭포(Cystic formation), 백반신(White spotted kidney), 수신증(Hydronephrosis) 및 색소침착(Pigmentation) : 신장 폐기
 - (나) 급성 감염성 사구체신염 및 간질성 신염(Acute infectious glomerulonephritis and

- interstitial nephritis) : 전체 폐기
- (다) 만성 사구체 및 간질성 신염(Chronic glomerulonephritis and interstitial nephritis) : 신장 폐기
- (라) 백혈구림프구성 신우신염(Leucolymphocytic pyelonephritis) : 신장 폐기
- (마) 아밀로이드증(Amyloidosis) 및 신증(Nephrosis) : 신장 폐기
- (바) 신장 괴사(Renal necrosis) : 신장폐기
- (사) 색전성 신염(경색 포함)[Embolic nephritis) : 전체 폐기
- (아) 감염성 상행성 신우신염(Infectious ascending pyelonephritis) : 신장폐기
- (자) 점상출혈(Petechia) : 신장 폐기, 전신성 감염시 전체폐기
- (차) 농양(Abscess) : 신장 폐기, 신장 림프절 농양시 다른장기 및 지육 정밀검사 실시, 전신성 감염 시 전체 폐기
- (카) 방광염(Urocystitis) : 신장 및 방광 폐기
- (타) 방광 또는 요관 파열, 또는 결합조직염(Rupture of the bladder or urinary duct or urinary phlegmone) : 신장 폐기
- (42) 생식기 병변(Reproductive organs)
 - (가) 자궁염(Metritis)
 - 1) 급성 자궁염(섬유소성 디프테리아성 괴사성 및 세균성 자궁내막염 포함)[Acute metritis(fibrinous, diphtheroid, necrotic and septic endometritis)] : 전체 폐기
 - 2) 만성 자궁내막염(자궁축농증, 부패 및 미이라 태아 포함) [Chronic endometritis (pyometra, macerated/putrified fetuses or mummified fetuses)] : 전체 폐기
 - (나) 후산정체(Retained placenta) : 자궁 및 태아 폐기
 - (다) 자궁염전, 자궁탈 또는 파열(Torsion or prolapse or rupture of uterus) : 자궁 폐기
 - (라) 자궁수종(Hydrometra) : 자궁 폐기
 - (마) 고환염 또는 부고환염(Orchitis or epididymitis) : 고환 폐기
- (43) 유방(Udder)
 - (가) 패혈성 및 급성 괴사성 유방염(Septic and acute necrotic mastitis) : 전체 폐기
 - (나) 급성, 카탈성 또는 화농성 유방염(Acute, catarrhal or purulent mastitis) : 감염부위 폐기
 - (다) 만성, 카탈성, 화농성 또는 괴사성 유방염(Chronic, catarrhal, purulent or necrotic mastitis) : 감염부위 폐기
- (44) 뼈, 관절 및 힘줄 병변(bones, joints and tendons)
 - (가) 뼈 골절(Bone fracture)
 - 1) 6시간 이상 개방된 골절(Open fractures older than 6 hours) : 전체 폐기
 - 2) 감염된 골절(Infected fractures) : 전체 폐기. 단, 국소성인 경우 발골 후 식육 가능
 - 3) 비감염성의 급성, 치유 중 또는 치유된 골절(Non-infected, acute or healing or healed fractures) : 감염부위 폐기

- (나) 골수염(Osteomyelitis)
 - 1) 급성 전색성 골수염(화농상태)[Acute embolic osteomyelitis (pyemic condition)] : 전체 폐기
 - 2) 만성 전색성 골수염(화농상태)[Chronic embolic osteomyelitis (pyemic condition)] : 감염부위 폐기
 - 3) 국소성 골수염(Local osteomyelitis) : 감염부위 폐기
- (다) 중이염(Otitis media) : 두부 폐기
- (라) 뼈 및 골막내 색소침착(Pigmentation deposits in bones and periosteum) : 해당부위 폐기
- (마) 건염(tendonitis)을 포함한 관절염증
 - 1) 급성 감염성 관절염(Acute infectious arthritis) : 전체 폐기
 - 2) 만성 감염성 또는 비감염성 관절염(Chronic infectious or non-infectious arthritis) : 감염부위 폐기
 - 3) 관절증(Arthrosis) : 감염부위 폐기
- (45) 근육 병변(Muscle)
 - (가) 무균성 근육괴사(Aseptic muscle necrosis) : 해당부위 폐기
 - (나) 근육변성(Muscle degeneration : PSE, DFD)
 - 1) 심한 변성(High degree of degeneration) : 전체 폐기
 - 2) 국소성 변성(Limited spread of high or low degree of degeneration) : 해당부위 폐기
 - (다) 근육 조직 및 색깔 변화(Changes of texture and color of muscle) : 전체 폐기
- (46) 피부 등 병변(Skin etc)
 - (가) 창상·봉와직염·흉터(Wounds, phlegmone and scars) : 감염부위 폐기
 - (나) 타박상 및 열상(Contusion and laceration) : 해당부위 폐기
 - (다) 화상(Burns)
 - 1) 급성 표면 화상(Acute superficial burns) : 해당부위 폐기
 - 2) 급성 심부 화상(2-3도 화상)[Acute profound burns] : 해당 부위 폐기, 피부의 5% 이상 화상을 입은 경우 전체 폐기
 - (라) 만성 피부염(습진 포함)[Chronic dermatitis including eczema] : 해당부위 폐기
 - (마) 피부홍반(동상, 태양에 의한 홍반, 화학적 부식)[Skin erythema(frost bite, sun erythema or chemical corrosions)], 구진(papule) : 해당부위 폐기
 - (바) 백선증(Ringworms) : 해당부위 폐기

4. 가금

가. 개체별로 도체 전체의 크기(여위었는지 여부), 다리 관절의 종대, 체표의 색조, 내장(간장, 비장, 심장 및 장관 등)의 색, 형태, 크기 및 단단함과 체벽 내측면의 상태, 병변 및 이물오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해체검사 절차

- (1) 검사자 반대측의 도체 체표면을 신속하게 거울상에서 확인한다.
- (2) 도체와 내장은 각각 검사자가 위치하는 측의 손으로 만진다
- (3) 도체의 체벽 내측면은 엄지를 도체 개구부에 넣어 개구부를 넓게 벌려 확인한다.
- (4) 검사자측의 도체의 체표면을 확인한다.
- (5) 확인결과 이상도체(분변오염 포함)등은 검사대(hang back rack)로 이동하여 검사한다.

다. 해체검사결과 다음과 같이 판단될 경우에는 지육 및 내장 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 (1) 결핵, 패혈증 및 독혈증(Tuberculosis, septicemia and toxemia) : 전체 폐기
- (2) 복수/부종(Ascites/edema) : 전체 폐기
- (3) 타박상/골절(Bruising and fractures) : 병변이 심한 경우 전체 폐기, 국소성인 경우 해당 부위 폐기
- (4) 봉와직염(Cellulitis) : 국소성인 경우 감염부위 폐기, 전신성인 경우 전체 폐기
- (5) 오염(Contamination) : 국소성인 경우 해당부위 폐기, 전신성인 경우 전체 폐기
- (6) 두부 미절단/방혈 불량(Uncut/Badly bled) : 전체 폐기
- (7) 피부염(Dermatitis) : 국소성인 경우 감염부위 폐기, 전신성인 경우 전체 폐기
- (8) 쇠약/왜소증(Emaciation/runts) : 전체 폐기
- (9) 간염(담관간염, 괴사소)[Hepatitis(cholangiohepatitis/necrotic foci) : 간 폐기, 다른 장기 및 지육 오염 시 전체 폐기
- (10) 관절병변/관절염(Hock joint lesion/arthritis) : 국소성인 경우 해당부위 폐기, 전신성인 경우 전체 폐기
- (11) 기계적 손상(Machine damage) : 국소성인 경우 해당부위 폐기, 전신성인 경우 전체 폐기
- (12) 과탕지(Overscald) : 전체 폐기
- (13) 심외막염(Pericarditis) : 진행형의 심한 심외막염 또는 2차 증상(질병)이 확인되는 경우 전체 폐기, 치유되거나 아급성의 심외막염의 경우 심장폐기
- (14) 복막염/간포막염(Peritonitis/perihepatitis) : 전체 폐기
- (15) 호흡기질병/기낭염(Respiratory disease/airsacculitis) : 급성인 경우 전체 폐기, 만성인 경우 감염 부위 폐기
- (16) 난관염(Salpingitis) : 2차 질병(증상)과 관련된 경우 전체폐기, 국소성인 경우 난관 폐기
- (17) 백혈병/종양/결절(Leukosis/Tumors/nodules) : 국소성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 폐기
- (18) 탈모불량(Poor plucking) : 깃털 제거, 깃털 제거가 어려운 경우 지육 폐기
- (19) 황달/백색근육(Jaundice/white muscle) : 전체 폐기
- (20) 선천성 기형(Congenital malformation) : 해당 부위 폐기

나. 기립불능소 판정 및 보상금의 지급요령 등 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2호, 2018. 2. 1.)

1) 주요 조항

<p>목적 (제1조)</p>	<p>법 제7조5항부터 제7항,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및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기립불능소의 판정, 보상가격의 산정방법 및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기립불능의 신고 (제2조)</p>	<p>기립불능소(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증상을 가진 소)에 대하여 법 제7조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에 해당하는지를 판정받고자 하는 기립불능소의 소유자는 기립불능소가 발견된 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신고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립불능소가 도축장에서 발견되는 경우 :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검사관에게 신고 2. 기립불능소가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견되는 경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p>기립불능소의 판정절차 및 방법 등 (제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축장에서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기립불능소에 대하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생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당 소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의 사용판매를 금지하여야 하는 가축(이하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함 ②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견하거나 신고받은 기립불능소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립불능 증상의 원인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고 해당 소가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속 검사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에게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기립불능 증상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 등을 검사하게 한 결과 2.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해당 기립불능소에 대해 진단 또는 치료를 행한 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기립불능 증상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 등을 기록하여 발행한 진단서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소속 검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에 해당 기립불능소의 건강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 소속 검사관은 해당 기립불능소에 대한 검사

<p>기립불능소의 판정절차 및 방법 등 (제3조)</p>	<p>또는 조사에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p> <p>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수의는 제2항에 따른 기립불능소에 대한 검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기립불능소가 부상·난산·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명되어 도축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음</p> <p>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함</p>
<p>보상금 지급대상 (제4조)</p>	<p>①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 영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에 따라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판정받아 폐기처리된 기립불능소로 한다.</p> <p>② 기립불능소는 영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질병검사를 위해 뇌조직을 채취할 당시까지 살아있는 상태이어야 함</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립불능소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도축을 금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p>
<p>보상금 평가반 (제5조)</p>	<p>① 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금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 및 시군 또는 자치구의 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보상금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둠</p> <p>② 평가반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함</p> <p>③ 평가반장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또는 시·군·구의 축산물위생 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소속 검사관 또는 시·군·구의 축산물위생 업무 담당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4. 도축장 관계자 또는 소 유통업자
<p>보상 평가 및 보상가격 결정 등 (제6조)</p>	<p>① 기립불능소에 대한 보상가격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평가반원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함</p> <p>② 기립불능소의 보상가격은 제3조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로 판정된 당시에 식용의 용도로서 지닌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함</p> <p>③ 평가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기립불능소를 평가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기립불능소의 종류(한우, 젃소, 육우로 구분하며, 씨소인지를 불문한다), 성별, 나이 및 체중,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p>보상 평가 및 보상가격 결정 등 (제6조)</p>	<p>여부,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조건 그 밖에 가격 형성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관련 사항을 기록함</p> <p>2. 기립불능소의 생존여부, 염종의 유무부위 및 범위, 패혈증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상가격 산정에 반영하며, 특히 해당 기립불능소를 도축 하더라도 식용으로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 제외하고 평가함</p> <p>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도축을 금지하여야 하는 기립불능소에 대하여는 식용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 이 조에 따른 평가를 생략함</p> <p>④ 평가반장은 보상금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근지역 도축장에서 도축된 기립불능 증상을 가진 소의 산지거래가격, 축산물 도매시장 또는 축산물공판장(이하 "축산물 도매시장"이라 한다) 경락가격 등을 조사하여 평가반원에게 제공하여야 함</p> <p>⑤ 평가반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평가서를 작성하고 기립불능소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평가액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함</p>
<p>보상금지급 신청 (제7조)</p>	<p>① 기립불능소의 소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기립불능소로 판정한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함</p> <p>②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항에 따른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 2. 영 제12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시군구의 검사관 등이 진료기록 조사를 통해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로 판정한 경우 또는 기립불능소 대한 치료노력을 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공수의동물병원개설자가 수의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p>③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도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당해 신청서를 진달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각·매몰등 폐기처리 또는 식용외 용도로 처리했음을 확인하는 서류 (처리일시·장소, 처리두수, 실시방법, 소유자의 주소 등을 상세하게 기재)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상금평가서 사본
<p>보상금의 지급 (제8조)</p>	<p>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시도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진달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함</p> <p>② 시·도지사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서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배정된 보상금예산으로 기립불능소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p>

별지 제1호의2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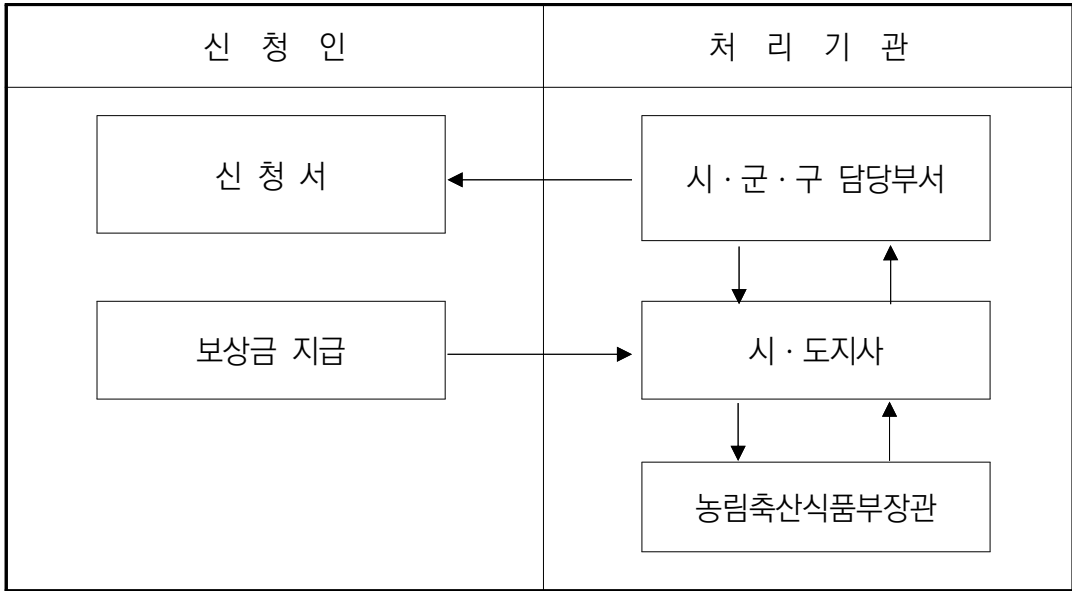
제 호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가축의 소유자	①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②전화번호	③생년월일		
	④주소			
사육 농장	⑤성 명	⑥농장등록번호		
	⑦주 소	(전화 :)	⑧농장명	
⑨가축의 종류(품종)		한우 · 젖소 · 육우 · 수입소	⑩성 별	
⑪개체식별번호			⑫두 수	
수입소의 경우		⑬수출국가명 :	⑭검역계류장 도착일자	
⑮도축대상판정사유		부상(負傷), 난산(難産), 산욕마비(産褥痲痺), 급성고창증(急性鼓脹症)		
<p>「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 가축은 도축대상으로 판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판정관 소 속 : (예) 000도 00군 축산과</p> <p>직 위 : (예) 공수의 또는 지방수의주사보</p> <p>성 명 : (예) 홍길동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수의사면허번호 :)</p>				

210mm×297mm (백상지(80g/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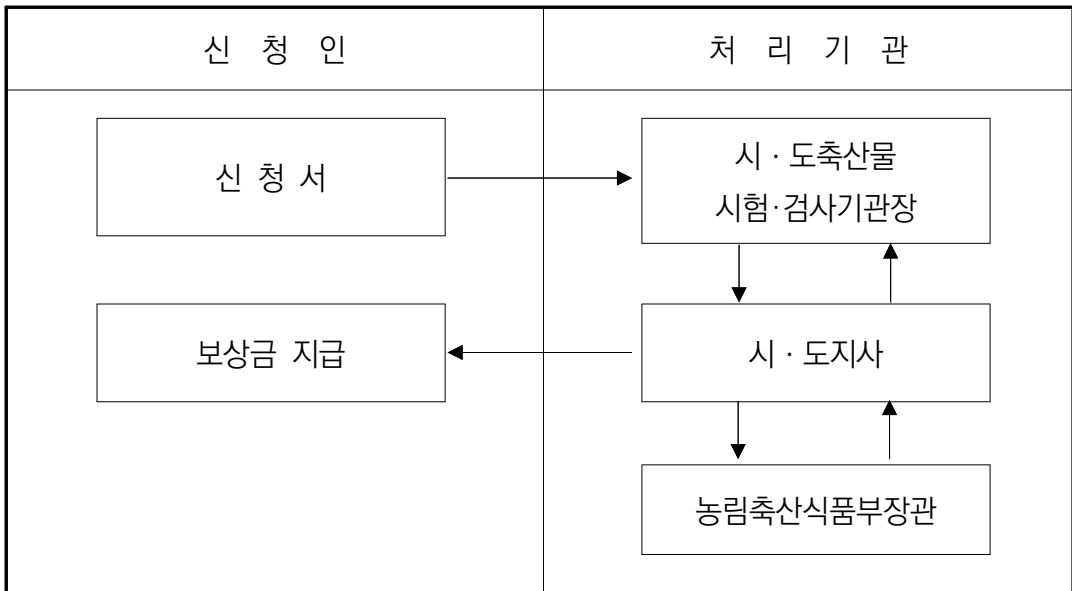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립불능소로 판정한 경우



나. 시·도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이 기립불능소로 판정한 경우



※ 기립불능소 판정 관련 업무 처리방법

- 도축가능한 기립불능소(시행령 12조의2) : 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 도축금지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 도축장에서 발견 : 검사관에게 신고, 검사관의 생체검사결과 판정
 - 도축장 외에서 발견 : 시장·군수에게 신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임상검사 또는 진료기록으로 판정(시장군수의 판단 : 검사관, 방역관 및 공수의 검사결과, 개업수의사의 진단서를 보고 판단, 도축장에서는 검사관이 직접 판단)
 - 도축금지 기립불능소로 판정한 경우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의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를 발급
 - 부상, 난산, 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명되어 도축 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의 규정」 [별지] 제1호2 서식에 따라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를 발급
 - 확인서 교부 시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판정 및 보상금 지급요령 등의 규정」 [별지] 제1호3 서식에 따라 기립불능소 판정대장에 기재
- 질병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시행령 제12조의3)
 - 소해면상뇌증
- 보상기준 및 절차(시행령 제12조의4)
 - 보상대상 : 도축금지 기립불능소로 시료 채취 시 살아있는 상태(단, 도축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도축 금지되는 경우에는 보상제외)
 - 보상기준 : 판정 시점에서 식용으로 지닌 가치 평가액 전부
 - 평가반 : 시도, 시험소, 시군 담당과장이 반장, 검사관 및 시군업무 담당자, 지역생산자단체 근무자, 공수의 또는 개업수의사, 도축장 관계자 또는 소 유통업자
 - 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소를 판정한 시·도 또는 시·군에 보상을 신청 : 도축금지 기립불능소 확인서, 진단서(시군에서 진단서로 판정한 경우) 첨부
- 도축금지 기립불능소의 소각매몰 방법
 -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시행령 제19조제2항 관련)에 따름
- 도축금지 기립불능소의 용도전환방법
 -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의 방법과 기준(시행규칙 제24조 관련)에 따름

다. 식품 및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식약처고시 제2018-69호, 2018. 9. 18.)

1) 주요 조항

<p>목적 (제1조)</p>	<p>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48조부터 제48조의3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까지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부터 제9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8 까지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운영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p>
<p>정의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이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도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함(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함) 2. "위해요소(Hazard)"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판매 등의 금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나 조건을 말함 3.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이란 식품축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요소와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 CCP)"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을 적용하여 식품축산물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당해 식품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함 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란 중요관리점에서의 위해요소 관리가 허용 범위 이내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함. 6. "모니터링(Monitoring)"이란 중요관리점에 설정된 한계기준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계획된 관찰

<p style="text-align: center;">정의 (제2조)</p>	<p>이나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함 8.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함 9.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식품축산물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어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작성한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 공정 관리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함 10. "검증(Verification)"이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유효성(Validation)과 실행(Implementation)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적용 방법과 절차, 확인 및 기타 평가 등을 수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을 말함 1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준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하는 업소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준수하고 있는 안전관리인증 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축산물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등을 말함 12. "관리책임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작업장 등의 영업자·농업인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및 관리를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 및 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지정한 자(영업자·농업인을 포함한다)를 말함 13. "통합관리프로그램"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4항제3호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운용하고 있는 통합적인 위생관리프로그램을 말함
<p style="text-align: center;">선행요건 관리 (제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중 도축장, 농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축장의 선행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생관리기준 나. 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의 교육훈련 다. 검사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미검사품 및 검사 불합격품 사후관리 포함)

<p>선행요건 관리 (제5조)</p>	<p>라. 회수프로그램 관리 마. 제조·가공 시설·설비 등 환경 관리(영업장, 방충·방서, 채광 및 조명, 환기, 배관, 배수, 용수, 탈의실, 화장실 등)</p> <p>2. 선행요건 준수를 위해 필요한 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함. 단 선행요건을 포함한 자체 위생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이를 선행요건관리 기준서로 같음 또는 대체할 수 있음</p> <p>3.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담당자, 관리 책임자 또는 영업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해야 함</p>
<p>안전관리인증 기준 (제6조)</p>	<p>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원칙과 별표 2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순서도에 따라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하는 식품,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에 사용하는 원·부재료와 해당 공정에 대하여 적절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해요소 분석 2. 중요관리점 결정 3. 한계기준 설정 4. 모니터링 체계 확립 5. 개선조치 방법 수립 6.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7. 문서화 및 기록 유지 <p>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은 과학적 근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함</p> <p>④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직 및 인력현황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 구성원별 역할 다. 교대근무 시 인수·인계방법 2. 도체설명서(도축장에 한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체식육명 나. 도체절단방법 다. 보관·운반·판매시 주의사항

<p>안전관리인증 기준 (제6조)</p>	<p>라. 식육용도 마. 작성자 이름 및 작성 연월일 바. 기타 필요한 사항</p> <p>8. 도살·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 공정(과정) 등의 시설·설비(농장은 제외한다) 가. 공정도(공정별 처리·가공·포장 및 유통 등의 방법) 나. 평면도(작업특성별 분리, 시설·설비 등의 배치, 제품의 흐름 또는 축산물의 생산·유통과정, 세척·소독조의 위치, 종업원의 이동경로, 출입문 및 창문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다. 급기 및 배기 등 환기 또는 공조시설(공기여과시설 및 배출시설을 말함) 계통도 라. 급수 및 배수처리 계통도</p> <p>10. 위해요소의 분석 11. 중요관리점 결정 12.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1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체계 확립 14. 개선 조치방법 수립 15.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16.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p> <p>⑥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는 업소별 또는 적용 대상 식품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기준서는 작업장·업소·농장(축종)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담당자 및 관리책임자 또는 영업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함</p>
<p>기록관리 (제8조)</p>	<p>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는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사항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함</p> <p>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을 할 때에 작성자는 작성일자, 시간 및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함</p> <p>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이 작성일자, 시간, 이름 및 서명 등의 동일함을 보증할 수 있을 때에는 전산으로 유지할 수 있음</p> <p>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출입·검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또는 시·도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 식품(축산물)위생감시원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할 수 있음</p>

<p>안전관리인증 기준팀 구성 및 팀장의 책무 등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영업자·농업인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과 팀원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②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은 종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행요건관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등에 관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③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은 원·부재료 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다만, 공급업소가 「식품위생법」 제48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음 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은 원·부자재 공급원이나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 공정 변경 등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계획의 재평가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이력 및 개선조치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관·유지하여야 함 ⑤ 도축장의 관리책임자는 별표 3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대하여 대장균(<i>Escherichia coli</i> Biotype 1)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p>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 (제1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해야 하므로 인증신청 대상이 아님 ①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고자 하는 자와 같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라 동 규칙 별지 제52서식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업소별 또는 적용대상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동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작업장·업소·농장(축종)별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기준이 포함되어야 함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p>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신청 (제10조)</p>	<p>동 규칙 제7조의3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p> <p>④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의 준수여부를 심사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장·업소·농장(축종)별로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에 따른 1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을 확인할 수 있음</p> <p>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 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 유효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p> <p>⑥ 제1항 및 제2항의 식품·축산물 안전관리인증계획서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관리점 및 한계기준 2. 모니터링 체계 3. 개선조치 및 검증 절차 및 방법 <p>⑦ 제1항 또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는 영업자·농업인은 작업장·업소·농장(축종)별로 신청하여야함</p>
<p>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제15조)</p>	<p>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여부를 별표 4에 따라 연 1회 이상(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연도는 정기 조사·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정기 조사·평가할 수 있으며, 조사·평가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주요안전조항 검증 등에 필요한 경우 수거 및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선행요건 중 회수프로그램 관리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p> <p>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또는 행정 지도를 할 수 있음</p> <p>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p>

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제15조)

- (HACCP) 준수 여부를 별표 4에 따라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제19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에 준하거나 관련교육을 이수한 관계공무원, 관련협회 등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④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인증받은 유사한 유형의 식품 또는 축산물이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식품 또는 축산물을 추가한 경우에는 최초로 인증한 기관에서 추가로 인증받은 식품 또는 축산물을 포함하여 조사·평가를 실시하며, 이 경우 추가된 식품 또는 축산물에 대한 조사·평가를 한 것으로 봄
-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음.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도축업 집유업 등 의무적용 작업장)에 따른 축산물작업장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른 연장심사 대상에 해당하고 그 연장심사 결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미만이거나 부적합한 경우 자체적인 조사·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함
1.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2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다만, 배추김치, 기타김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중 비가열 식품은 제외함
 2.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미만에서 90% 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다만, 배추김치, 기타김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 식품 중 비가열식품은 제외함
 3.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0% 미만에서 85%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실시
 4.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5% 미만에서 70%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이하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실시. 다만,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5.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70% 미만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다만,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 ⑥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체적인 조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업종(축종)별 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조사·평가를 실시한 업소는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p>조사·평가 방법 (제1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인증, 연장 또는 최근 조사·평가 이후 운영해 온 선행요건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 운용사항을 평가하여야 하며,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3항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② 시·도 검사관은 도축장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제9호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영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도축장 전체 또는 일부구역을 정하여 매일 작업전·중 위생상태와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함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5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영업자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작업전·중 위생상태 확인 포함)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점검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p>조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제1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이 기준에 적합한 업소로 판정되었으나 일부 사항이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수정·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또는 인증취소를 명할 수 있음 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부적합하거나 수정·보완사항이 기한내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장에 한함)에게 통보하여야 함 ③ 제16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부적합사항이 발생할 경우 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부적합통보서를 영업자에게 발급하고, 영업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개선조치 결과를 검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관은 도축장의 개선조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p>감독기관의 검증기준 (제1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7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작업장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장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일부항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항목 등을 조정할

<p>감독기관의 검증기준 (제18조)</p>	<p>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행요건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에 관한 사항 3. 모니터링, 개선조치 및 검증활동에 대한 기록, 현장확인 및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 4. 작업전·중 위생상태 확인(농장 제외)에 관한 사항 5. 축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료의 검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증에 필요한 사항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축산물 위생관련 연구기관·단체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전문가·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음</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영업자·농업인에게 1개월 이내에 보완하게 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자·농업인이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선행요건관리기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에 따른 검증결과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에 따른 기록관리가 시행되지 아니한 때 4. 공중위생상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출하한 때 5. 기타 이 고시의 규정을 위반한 때 <p>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5조의 조사·평가 및 제1항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고시 개정 등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개선하거나 관계기관에 기술·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p> <p>⑤ 시·도지사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별표 3의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에 따라 관할 도축장에 대하여 살모넬라균(<i>Salmonella</i> spp.)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p>
<p>안전관리인증 기준 지도관 (제19조)</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업무와 제15조에 따른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이하 "지도관"이라 한다)을 둠</p> <p>② 제1항에 따른 지도관은 식품·축산물위생 관계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지도관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도축장·집유장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지도관 지명서를 해당자에게 교부함</p>

**안전관리인증
기준
지도관
(제19조)**

1.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수의사
2.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 행정(축산물 포함)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식품·축산관련학과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식품산업기사 또는 축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4. 식품위생행정(축산물 포함)에 8년 이상 근무한 자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검사관으로 임명된 자
- ③ 지도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업소 실시상황평가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업소 사후관리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
 4.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활성화 사업 지원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함
 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초과정 : 식품·축산물 위생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훈련하는 과정
 2. 신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양성과정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또는 사후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훈련하는 과정
 3.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 실무교육과정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도관들의 전문성 제고 및 자질향상을 위해 최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정보 및 사후관리기법 등을 교육·훈련하는 과정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도관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지도관의 지명을 철회할 수 있음
 1. 교육·훈련을 2년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신청업소에 대한 실시상황평가나 정기 조사·평가 업무를 연 2회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관 중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과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지도관 교육·훈련을 전담하도록 하거나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연구기관·대학·외국기관 등의 전문가를 선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음
- ⑦ 지도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지도관이 제3항에 따른 지도관의 직무를 이행하고 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함

교육훈련
등
(제20조)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를 수행할 자와 식품 또는 축산물위생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 실시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강사·교육과정 등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별표 5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음
- ③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훈련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하고,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축산물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인증신청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인증일 이전에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신규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봄
- ④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신규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업자가 제1호나목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자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2. 축산물
 - 가. 영업자 및 농업인 : 4시간 이상,
 - 나. 종업원 : 24시간 이상.
 -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음
- ⑤ 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 훈련 기관에서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하고, 제4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른 교육 훈련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훈련 등 (제20조)</p>	<p>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장,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팀원 및 기타 종업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영업자 및 농업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함.</p> <p>2. 축산물 : 매년 1회(영업 개시일 또는 인증받은 날부터 기산) 이상 4시간 이상. 다만,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영업자 및 농업인의 경우에는 다음 1년간의 정기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할 수 있음. 이 경우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종업원에 대한 교육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p> <p>⑦ 제4항 또는 제6항에서 규정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중 위탁급식업소와 계약을 맺고 급식을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운영주체인 위탁급식업소 영업자나 설치신고자가 영업자 신규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음</p> <p>⑧ 제6항제1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 개시일은 인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거나 인증연도의 차기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할 수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제21조)</p>	<p>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5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한 기간 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등기부 등본(축산물에 한함) 1부. 2. 법인 정관(축산물에 한함) 1부 3. 교육훈련시설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에 한함) 1부. 4. 교육훈련관련 조직 및 직무(급)별 명단 1부 5. 교육훈련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6.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7.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교재 1부 <p>② 제1항제6호의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정별 교육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과정별 교육훈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 3. 과정별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p>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제21조)</p>	<p>4. 과정별 교육훈련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강사 및 교육훈련생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6.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p>
<p>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제22조)</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수행능력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함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대상과 교육훈련과정별로 세분하거나 전문성을 감안하여 과정별·분야별로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④ (삭제)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은 별표 7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p>
<p>교육훈련기관의 지정내용변경 (제23조)</p>	<p>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재교부하여야 함</p>
<p>교육훈련기관의 평가 (제24조)</p>	<p>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방법과 내용 및 강사와 시설·설비, 교육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음</p>
<p>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제25조)</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p>

<p>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제25조)</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확인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훈련시설 및 교재·강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결과의 정기보고 여부에 관한 사항 4. 교육훈련수료증의 발급 및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5. 기타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확인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p>
<p>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6조)</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훈련과정을 개설(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교육훈련기관의 지도·감독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5. 교육훈련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변경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 교육훈련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교육훈련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한 경우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별표 7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p>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 취소된 교육훈련기관과 그 대표자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간 교육훈련기관 및 그 대표자로 지정받을 수 없음</p> <p>④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교육훈련기관의 대표자는 교육훈련기관지정서 등 관련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함</p>

2) 별표

별표 1

선행요건

(제5조 관련)

I.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축산물작업장·업소

가. 영업장 관리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취급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층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 또는 공간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출입문, 창문, 벽, 천장 등)은 누수,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작업장은 청결구역(식품의 특성에 따라 청결구역은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과 일반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할 수 있다.

건물 바닥, 벽, 천장

4.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 벽, 천장 등에 타일 등과 같이 흠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 때에는 흠에 먼지, 곰팡이, 이물 등이 끼지 아니 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배수 및 배관

5.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어야 하고 배수로에 퇴적물이 쌓이지 아니 하여야 하며, 배수구, 배수관 등은 역류가 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출입구

6.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구역별 복장 착용 방법을 게시하여야 하고,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세척 또는 소독 등을 통해 오염가능성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통로

7. 작업장 내부에는 종업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동경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창

- 8. 창 의 유리는 파손 시 유리조각이 작업장내로 흩어지거나 원부자재 등으로 혼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광 및 조명

- 9. 작업실 안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이용하여 밝기는 220룩스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특히 선별 및 검사구역 작업장 등은 육안확인이 필요한 조도(540룩스 이상)를 유지하여야 한다.
- 10. 채광 및 조명시설은 내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식품이 노출되거나 내포장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파손이나 이물 낙하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부대시설

- 화장실, 탈의실 등
- 11. 화장실, 탈의실 등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화장실 등의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12. 탈의실은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신발 포함)간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분리 또는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나. 위생관리

작업 환경 관리

- 동선 계획 및 공정간 오염방지
- 13. 원·부자재의 입고에서부터 출고까지 물류 및 종업원의 이동 동선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4.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제조·가공, 보관, 운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혼입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15.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로 각각 출입, 복장, 세척·소독 기준 등을 포함하는 위생 수칙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온도·습도 관리
- 16. 제조·가공·포장·보관 등 공정별로 온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습도관리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환기시설 관리
- 17.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충방서 관리

18.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 등에는 여과망이나 방충망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9. 작업장은 방충방서관리를 위하여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0. 작업장내에서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구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정해진 위생 수칙에 따라 공정이나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며, 작업 종료 후 식품취급시설 또는 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은 세척 등을 통해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개인위생 관리

21. 작업장내에서 작업 중인 종업원 등은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등을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용 장신구 등을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 관리

22. 폐기물·폐수처리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된 일정장소에 설치·운영하며, 폐기물 등의 처리용기는 밀폐 가능한 구조로 침출수 및 냄새가 누출되지 아니 하여야 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폐기물 등을 처리·반출하고, 그 관리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척 또는 소독

23. 영업장에는 기계·설비, 기구·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4. 세척·소독 시설에는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하여야 한다.
25.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종업원
 -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
 - 작업장 주변
 - 작업실별 내부
 - 식품제조시설(이송배관포함)
 - 냉장·냉동설비
 - 용수저장시설
 - 보관·운반시설
 - 운송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
 - 모니터링 및 검사 장비
 - 환기시설 (필터, 방충망 등 포함)
 - 폐기물 처리용기

- 세척, 소독도구
 - 기타 필요사항
26. 세척 또는 소독 기준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세척·소독 대상별 세척·소독 부위
 - 세척·소독 방법 및 주기
 - 세척·소독 책임자
 - 세척·소독 기구의 올바른 사용 방법
 - 세제 및 소독제(일반명칭 및 통용명칭)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
27. 세척 및 소독용 기구나 용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28. 세척 및 소독의 효과를 확인하고, 정해진 관리계획에 따라 세척 또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제조·가공 시설·설비 관리

제조시설 및 기계·기구류 등 설비관리

29. 식품취급시설·설비는 공정간 또는 취급시설·설비 간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 하도록 공정의 흐름에 따라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위해요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30.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내부식성 재질로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보관하여야 한다.
31.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처리시설에는 온도변화를 측정·기록하는 장치를 설치·구비하거나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온도를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른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32. 식품취급시설·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냉장·냉동시설·설비 관리

33. 냉장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10℃이하(다만, 신선편의식품, 훈제연어, 가금육은 5℃이하 보관 등 보관온도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냉동시설은 -18℃이하로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 감응 장치의 센서는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마. 용수관리

34.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동물사육장 등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살균 또는 소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5.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반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 1회 이상(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상수도의 경우는 비가열식품의 원료 세척수 또는 제품 배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시하여야 하며,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36. 저수조, 배관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수 및 오염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37. 저수조는 반기별 1회 이상 「수도법」에 따라 청소와 소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수도법」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8. 비음용수 배관은 음용수 배관과 구별되도록 표시하고 교차되거나 합류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바. 보관·운송관리

구입 및 입고

39. 검사성적서로 확인하거나 자체적으로 정한 입고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부·자재만을 구입하여야 한다.

협력업소 관리

40. 영업자는 원·부·자재 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업소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운송

41. 운반 중인 식품·축산물은 비식품·축산물 등과 구분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운송차량(지게차 등 포함)으로 인하여 운송제품이 오염되어서는 아니 된다.
42. 운송차량은 냉장의 경우 10℃이하(단, 가금육 -2~5℃ 운반과 같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냉동의 경우 -18℃이하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보관

43. 원료 및 완제품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입고·출고상황을 관리·기록하여야 한다.
44.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구분관리 하고,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아니 하도록 적재관리

하여야 한다.

45. 부적합한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은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고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반송,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6. 유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및 비식용 화학물질은 식품취급 구역으로부터 격리되고, 환기가 잘되는 지정 장소에서 구분하여 보관·취급하여야 한다.

사. 검사 관리

제품검사

47. 제품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8. 검사결과에는 다음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 검체명
 -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 검사 연월일
 - 검사항목, 검사기준 및 검사결과
 - 판정결과 및 판정연월일
 - 검사자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 기타 필요한 사항

시설 설비 기구 등 검사

49. 냉장·냉동 및 가열처리 시설 등의 온도측정 장치는 연 1회 이상, 검사용 장비 및 기구는 정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교정검사를 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외부 공인 국가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50. 작업장의 청정도 유지를 위하여 공중낙하세균 등을 관리계획에 따라 측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시설·제품의 특수성, 식품이 노출되지 아니 하거나, 식품을 포장된 상태로 취급하는 등 작업장의 청정도가 식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회수 프로그램 관리

51.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회수절차나 방법을 기술한 회수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52.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제품별 생산장소, 일시, 제조라인 등 해당시설내의 필요한 정보를 기록·보관하고 제품추적을 위한 코드표시 또는 로트관리 등의 적절한 확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별표 2

HACCP 적용 순서도

(제6조 관련)

I. 식품(식품첨가물 포함)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도시락 제조·가공업(운반급식 포함),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축산물작업장·업소·농장

1. HACCP 팀 구성
2. 제품 설명서 작성
3. 사용 용도 확인
4. 공정 흐름도 작성
5.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6. 모든 잠재적 위해요소분석
7. 중요관리점 (CCP) 결정
8.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9. 중요관리점별 모니터링 체계 확립
10. 개선 조치방법 수립
11.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12. 문서화 및 기록유지방법 설정

위해요소분석표

일련 번호	원부자재명/ 공정명	구분	위해요소		위해 평가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
			명칭	발생원인	심각성	발생 가능성	종합 평가	
1		B						
		C						
		P						

※ B(Biological hazards) : 생물학적 위해요소

제품에 내재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병원성 미생물, 부패미생물, 병원성 대장균(군), 효모, 곰팡이, 기생충, 바이러스 등

C(Cheical hazards) : 화학적 위해요소

제품에 내재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금속, 농약, 항생물질, 항균물질, 사용 기준초과 또는 사용 금지된 식품 첨가물 등 화학적 원인물질

P(Physical hazards) : 물리적 위해요소

제품에 내재하면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인자 중에서 돌조각, 유리조각, 플라스틱 조각, 쇳조각 등

별표 3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

(제9조, 제18조 관련)

1. 목적

이 검사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그리고 이 고시 제8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도축장에서 HACCP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검사요령은 도축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3. 미생물검사 항목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검사항목은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I) 및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으로 한다.

4. 미생물검사 주체

- 가. 도축장의 영업자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대장균(*Escherichia coli* Biotype I)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시·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소속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도축장별로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식육에 대하여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 검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5. 검사주기

미생물검사는 소 300 도체, 돼지 1,000 도체 및 닭·오리 22,000 도체마다 각 1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되, 1주 도축두수가 이에 미달하는 도축장의 경우는 최소한 1주에 축종별로 1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6.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제3.축산물 시험방법 9. 미생물시험법에 의한다.

7. 미생물검사 실행기준

가. 대장균수의 실행기준은 아래와 같다.

도축장	허용기준치 (CFU/cm ² , mL)	최대허용한계치 (CFU/cm ² , mL)	대장균수 평가기준	
			검사시료수	허용기준치 이상에서 최대허용한계치 이하 까지 최대 허용 시료수
소	5 미만	100	13	3
돼지	10 미만	10,000	13	3
닭·오리	100 미만	1,000	13	3

나. 살모넬라균의 실행기준은 아래와 같다.

도축장	살모넬라균 검출 허용기준		살모넬라균 검출율(연간)
	검사시료수	최대허용 검출 시료수	
소	26	1	2.5% 이내
돼지	26	2	7% 이내
닭·오리	26	5	18% 이내

8. 검사결과 판정기준

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검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7. 미생물 검사 실행기준”에 의거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나. 대장균수 검사에 의한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최근 13회 검사중 1회 이상에서 대장균수가 최대허용한계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2) 최근 13회 검사중 허용기준치 이상이면서 최대허용한계치 이하인 시료가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 살모넬라균 검사의 경우 최근 26회 검사시료 중 소는 1회, 돼지는 2회 및 닭·오리는 5회를 초과하여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도축장에서 연간 살모넬라 검출율이 소는 2.5%, 돼지는 7%, 닭·오리는 18%를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라. 대장균수와 살모넬라균에 의해 동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1회 부적합으로 간주한다.

9. 검사기록

이 요령에 따라 미생물검사를 실시한 도축장의 영업자 및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0. 검사결과 조치사항

- 가. 도축장의 영업자는 대장균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거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살모넬라균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부적합 원인을 조사하고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도축장의 영업자는 이 고시에 의한 미생물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후 1년이내에 다시 부적합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축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계획을 재평가하고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 다.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살모넬라균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 그 세부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도축장의 영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살모넬라균 검사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도축장의 영업자는 원인 분석, 시정조치,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 재검토 등의 살모넬라균 재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치 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지역 시도지사 및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 시도지사는 이 검사요령에 의한 살모넬라균검사 결과 2회 연속 또는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부적합 판정이 있는 도축장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자로 하여금 외부 전문가 1명과 당해 도축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팀이 도축장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을 재검토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 변경, 시설보완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검사결과 통보(보고)

- 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한 미생물검사 결과를 매월 관할 시도지사 및 해당 도축장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시료 중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시도지사 및 해당 도축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시도지사는 소속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미생물검사 결과 및 부적합 도축장의 시정조치내역을 분기별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다음 양식에 따라 보고(통보) 하여야 한다.

□ 대장균·살모넬라균 검사 결과

회사명	적용 축종	대 장 균					살 모 넬 라 균			
		검사 시료 수	허용 기준치 미만 판정건수	허용기준치 이상에서 최대허용한 계치 이하	최대허용 한계치 초과 건수	13회 검사중 부적합 판정건수	검사 시료 수	검출 시료 수	26회 검사중 부적합판정건 수	검출률 (%)

부적합 도축장의 시정조치내역

회사명	부적합사항	시정조치내역	비고

※ 도축장의 미생물검사의 의의

1. 일반세균수 : 작업환경의 위생수준을 파악하는 지표 또는 식품의 신선도를 감별하는 지표
2. 대장균수(*E.coli*) : 식품의 분변오염 지표
3. 살모넬라균 : 식육제품과 관련한 식중독균의 오염지표

※ 2019년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표

□ 포유류 도축장

'19년 포유류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총괄표

가. 평가반 : 반

나. 평가일 : 년 월 일

다. 도축장명(인허가명) 및 번호 :
 (예시) 검역도축장-M-52 [※ 평가반별 부여된 도축장의 번호기입 : 도축장명 - M - 번호]

라. 소재지 (도, 시) :

마. 위반사항 확인 여부 (), 위반건수 (건)

바. HACCP 조사평가 결과²⁾ : 적합 / 보완 / 부적합
 - (참고) 100% 환산 시, 선행요건 관리 (%), HACCP 관리 (%)

사. 현장 평가 환산 결과 (점)

도축장	계(환산)	인프라 구축 (10%)	선행요건 관리 (30%)	HACCP 관리 (40%)	비고
					(가점) +

* 평가점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록

아. 도축장 HACCP 조사평가 요약표 (붙임 1)

평가자 :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2) 선행요건 관리 및 HACCP 관리

- 각 항별 5점으로 하며 양호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미이행 0점
- 평가결과 만점의 85% 이상일 경우 수정·보완하도록 조치, 85%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

붙임 1 **포유류 도축장 HACCP 조사평가 요약표**

평가일 : '19. . .		평가반 : 포-		작업장명 :		최종판정 :	
I 도축장 인프라 : (총점 :)							
항목	내용	점수	항목	내용	점수		
1	도축검사라인 구축		4	도축장내 식육 실가공 비율			
2	작업장 구획		5	실험실 구축정도 및 실험자 능력			
3	도축장 주변환경 여건(악취, 폐수 등)		6	도축장 전체 면적			
II 선행요건 관리 : (총점 :)							
가 작업장관리			30	약품			
1	관리기준서 작성비치		31	분변오염			
2	유지보수계획, 변경허가신고		32	도축 위생			
3	영업자 책임권한 (문서화)		33	식용부산물 처리			
4	필수시설·시설변경		34	비식용부산물 처리			
5	주위 환경 및 방서방충관리		35	종업원 건강관리			
6	계류장 (건물구조)		라	검사 관리			
7	생체감사장 (건물구조, 포유류)		36	기준서 작성비치			
8	작업실, 내장처리실, 발골정형실(건물구조)		37	변경개정			
9	배수구		38	결과판정			
10	환기		39	시료채취			
11	조명		40	소모품 관리			
12	화장실·탈의실		41	감교정			
13	용수		42	개선조치			
14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설		43	검증			
15	도축검사장소		마	영업자 준수사항			
16	검사시험실		44	검사관의 지시 준수			
17	소독준비실		45	동물복지			
나 시설 및 설비 관리			바	교육훈련			
18	관리기준서 작성비치		46	교육훈련			
19	유지보수계획, 변경개정		사	자체위생 관리기준(SSOP)			
20	계류장 (시설, 설비)		47	작업 전중 위생 관리기준 절차			
21	생체감사장 (시설, 설비)		48	모니터링 절차			
22	작업실 설비		49	개선조치 절차			
23	냉장·냉동설비		50	검증 절차			
24	가족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		51	변경개정			
다 위생 관리 (위생작업 및 종업원 위생)			52	작업 전중 위생관리 준수			
25	기준서 작성비치		53	모니터링 활동			
26	변경개정		54	개선조치			
27	직접 접촉부위 청소상태		55	검증			
28	간접 접촉부위 청소상태		56	기록유지			
29	비식용 용기		57	보관			
III HACCP 관리 : (총점 :)							
가. 예비 5단계			14	모니터링 변경사항 반영			
1	HACCP팀 역할 지정 적정		15	개선조치 실시			
2	HACCP팀 업무 숙지도		16	개선조치 결과 기록			
3	HACCP팀 정기회의 실시		17	(이탈 반복 시) 개선조치 재조장강화			
4	도체설명서		18	검증활동 실시			
5	대상소비자(용도)		19	유효성 평가			
6	공정도 및 작업장 평면도		20	재평가(연1회 이상)			
7	현장일치		21	관리기준서 작성비치			
나 HACCP 7원칙			22	기록의 구체적인 작성			
8	위해분석 재실시(원료, 공정 등 변경)		23	변경사항 발생 시 근거문서 여부			
9	위해분석 재실시(예측하지 못한 위해)		24	개정내역 기록			
10	중요관리점 변경		다	HACCP 교육훈련			
11	한계기준 변경		25	종업원에 대한 HACCP 교육			
12	모니터링 실시		26	영업자 HACCP 교육			
13	모니터링 결과 현장 기록						

I. 도축업 일반 현황

도축업 영업장	① 영업허가 번호				② 영업허가 연월일	
	③ 회사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본 사				
		공 장				
	⑥ 대표자 성명				⑦ 생년월일	
⑧ HACCP 적용축산물						
관리 책임자	⑨ 직 위				⑩ 성 명	
도축 시설 및 면적 (㎡)	⑪ 계류장	⑫ 생체 검사장	⑬ 격리장	⑭ 작업실	⑮ 검사 시험실	⑯ 소독 준비실
	⑰ 기 타				⑱ 합 계	
작업 인원 (명)	⑲ 현장 도축 작업원				⑳ 검사(실험실) 보조원	
	㉑ 기 타 작업원				㉒ 합 계	

◎ 포유류 도축장 (2018.1.1.~12.31.까지의 평균도축물량 기준)

* 2018년 도축물량 :

소()마리,
돼지() 마리,
기타(축종 :) ()마리

* 1일 도축물량 (2018년 총도축수/총도축일수) :

소()마리,
돼지() 마리,
기타(축종 :) ()마리

* 도축일수 : 소()일, 돼지()일,
기타(축종 :) ()일

검사종사자 근무 현황

도축장	① 검사관 :	명	①도축검사원 :	명
도축물량대비	② 검사관 적정수 :	명	②검사원 적정수 :	명
비고	①-②=	명	①-②=	명

* 검사종사자 수는 평가 시 현장에서 근무중인 인원을 기준
(단기, 정기 휴가 중인 인원은 포함)

* 도축물량대비 검사종사자의 적정 수는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참조

2018년도 도축장 실제 가동율(1일도축두수/냉장실면적환산두수)

*냉장실면적환산두수는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참조

소()%	1일 도축두수 ()	냉장실면적환산두수()
돼지()%	1일 도축두수 ()	냉장실면적환산두수()

II. 도축장 인프라 부분 (10점)

* 주의사항 : 가점을 부여하더라도 해당 점수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점수	비고
1. 도축검사라인 구축정도(3점) *도축장-소, 돼지 (3)	1. 도축검사라인(두부검사대, 내장검사대)는 검사를 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1.5점) * 두부검사대(발)검사대 적합 0.5점, 내장검사대 적합 0.5점, 자육검사대 적합 0.5점, 부적절한 검사대 위치로 인하여 작업자와 이동 동선 교차 등은 0.5점 감점 2. 도축검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필요한 설비도구 등을 비치하고 있는가? (0.5점) * 옆 공장에서 물튀김 등 0.2 감점, 필요 설비도구 미비치 등은 0.1점 감점 3. 작업속도는 식육검사를 실시하기에 적당한 속도를 유지하는가? (0.5점) * 라인정지 스위치 설치와 정상작동은 0.2점 가점 4. 조명등은 도축검사(부산물 포함)하기에 충분한 밝기인가? (0.5점) * 조도의 적정성에 따라 수행정도에 따라 0.3점, 0.5점 * 검사장소 조도가 540룩스를 넘는 경우에만 0.5점 부여 5. 도축검사능력을 초과하여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감점 0.5점)		
2. 작업장 구획 구축정도(1점)	작업장 내에서 청결, 준청결, 오염지역의 구획이 되어있고 공기와 배수의 흐름이 올바른가? (0점, 0.5점, 1점) * 구획이 분리되어있고, 서로 차단되어 있으면 1점, 분리되어 있으나 차단이 안 되어있으면 0.5점, 분리되어있지 않으면 0점 * 부산물(내장)처리실과 원피처리실이 같은 공간에 있어 차량 등으로 인한 교차오염 발생 시 (0점)		
3. 도축장 악취 발생 정도, 폐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여건 (1점)	1. 주변환경은 외부에서 봤을 때 혐오시설 정도 및 악취정도에 따라 * 심함 0점, 약간 0.3, 없음 0.5 2. 고품폐기물에 대한 처리주기 * 매우적절 0.4, 보통 0.2, 부적절 0점 (폐기물 처리대장 등 참조) 3. 도축장 내부 도로 및 포장 상태가 좋으면 (0.1)점		
4. 도축장내 식육(정육) 실가공 비율 (2점) (가공물량/	1. 소, 돼지(2점) : (가공물량/도축물량) * 0~20% 미만 (0점), 20%~240% 미만 (0.5점), 40%~60 미만 (1점) 60%~280% 이하(1.5점), 80%~2100% (2점) * 축산물 도매시장은 아래의 기준으로 가점하되 합산점수가 2점을 초과할 수 없음. 경매물량이 전체 도축물량의 40%미만은 가점없음, 40~60%미만 : 0.5점 가점, 60~80%미만 : 1점 가점, 80~100%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점수	비고
도축물량) * 소, 돼지 도축장만 해당	: 1.5점 가점 (예 : 실가공비율이 5%, 경매물량이 85%이면 $0+1.5=1.5$, 1.5점) - 자육 운반과정 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축장 구내에 외부와 차단되어 라인을 타고나간 임대가공장은 인정 - 도축장 구내라도 차로 이동되면 인정안됨. * 실가공 비율이 높은 축종으로 계산하되 축종별 도축물량을 감안		
5. 실험실 구축정도 및 실험자 능력 (2점)	1. 실험기기의 적정 구축정도와 검사재료의 적절성(0.5점) - 크린벤치, 균배양기, 오토크레이브, 냉장고, 시약장, 기구장등 미생 물실험장비 등이 모두 갖춰 있으면 0.3점 - 검사재료의 적절성(유효기간, 재료구비정도에 따라 0점, 0.2점) 2. 실험실책임자의 전문성 (0.2점) - 전문지식 정도에 따라 0.1점, 0.2점 3. 실험담당자의 전문성 (0.2점) - 전문지식 정도에 따라 0.1점, 0.2점 * 실험실책임자와 실험담당자가 동일인이라면 2번과 3번의 점수는 동일 4. 실험 담당자의 겸업여부(0.2점) - 실험담당자가 행정직등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으면 0점, 아니면 0.2점 5. 실험의 실제 수행여부(0.9점) - 실험실이 형식적이고 검사를 안하면 0점 - 검사기준(일반세균, 대장균등)에 준한 실험수행(0.7점) - 검사기준 이상 실험 수행(0.8점) - 실험실이 아주 잘 가동(0.9점)		
6. 도축장 전체 면적 (1점) * 공장부지 + 연건평	○ 10,000제곱미터 미만 (0.4점), ○ 10,000- 20,000제곱미터미만(0.6점) ○ 2,0000-30,000제곱미터미만(0.8점) ○ 30,000제곱미터이상(1.0점)		
합계 (10점)	소, 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 (10점)		

Ⅲ. 선행요건 관리 (30점)

1. 소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가. 작업장 관리			
1) 작업장 관리기준서			
1	(기준서) 가) 작업장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의 비치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법령 등을 비치하는 경우에도 관리기준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유지·보수 관리 (2) 외부인 출입통제 관리 (3) 방서·방충 관리 (4) 용수 관리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5) 폐기물·폐수처리시설 관리		
2	(유지·보수) 가)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관리 및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나) 변경사항이 있거나 자체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기준서를 개정하고 있는가?		
3	(영업자 책임) 영업자는 관리기준서 제정 및 개정내용을 검토·승인 시 일자 및 개정 이력을 기록하고 서명하는가?(선행요건 관리로 공통 적용할 수 있다)		
2)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4	(시설 변경) 가) 계류장·생체검사장·격리장·작업실·검사시험실·소독준비실·폐수 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가축수송차량 세척소독실 등이 있는가? 나) 시설 또는 설비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였는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9	<p>(배수구) 배수구는 암거로 되었고,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항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개폐식으로 설비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인가?</p>		
10	<p>(환기) 환기시설은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데 충분하고 응결수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가?</p>		
11	<p>(조명)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이용하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할 장소는 540룩스 이상)이 되고, 파열 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였는가?</p>		
12	<p>(화장실·탈의실) 가)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고 수세 설비와 방서·방충설비를 하였고 수도꼭지는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나)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내부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으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p>		
13	<p>(용수) 가) 수도물 외에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는가?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취수원은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가? 다) 용수저장 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고 시건장치가 있는가?</p>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14	<p>(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설이고,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는가?</p>		
15	<p>(도축검사장소) 작업실에는 도체를 매다는 라인별로 지육검사대와 내장검사대가 있으며, 검사관이 검사하기에 편리한 위치이거나 검사위치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구조인가?</p>		
16	<p>(검사시험실) 검사시험실은 검사관실과 시험실을 구획하여 설비하되, 검사관실에는 서류보관함·옷장·신발장·검사기구상자 등이 있고, 시험실에는 냉·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였는가?</p>		
17	<p>(소독준비실) 소독준비실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였고, 소독준비실에는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약품 등이 있는가?</p>		
나. 시설 및 설비 관리			
1) 시설 및 냉장·냉동설비 관리기준서			
18	<p>(기준서) 도축시설, 냉장·냉동설비 및 위생관리 설비·기구 등에 대한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가?</p>		
19	<p>(유지·보수) 가)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관리 및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나) 변경사항이 있거나 재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기준서를 개정하고 있는가?</p>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2)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20	<p>(계류장) 가축을 하역할 수 있는 하차시설 및 가축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 시설, 가축의 몸통을 세척할 수 있는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110룩스 이상의 조명장치 및 안개분무가 가능한 분무시설 설치 규정 추가</p>		
21	<p>(생체검사장) 생체검사에 편리한 보정틀조명장치(220룩스이상) 등 필요한 설비가 있는가?</p>		
22	<p>(작업실 설비) 가) 도체를 절단하는 전기톱과 지육세척장치가 있는가? 나) 도살실에는 매달린 상태에서 충분히 방혈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혈액을 식용에 제공하는 경우 위생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가 있는가? * 피를 식용에 제공하거나 식품·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 다) 내장처리실에는 스테인리스 철재인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가 있는가? * 스테인리스 철재(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인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수조의 유무 라) 작업라인에는 일정간격으로 83℃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설치하여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는가? 마)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하고 항부식성 재질로 설치되어 있는가? 바) 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의 아이빔은 일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육운반차량 상차대까지 연결하였으며,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이나 벽에 닿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p>		
23	<p>(냉장·냉동설비) 가) 냉장·냉동실은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였는가? *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예 : 타코미터) 설치 규정 추가 나) 냉장·냉동실 안의 현수시설은 도체가 서로 닿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설치하였는가?</p>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24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가축을 하역한 후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다. 위생 관리(위생작업 및 종업원 위생)			
1) 위생 관리기준서			
25	(기준서) 위생 관리기준서는 아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가) 청소장소 및 청소주기 나) 청소방법과 청소에 사용하는 약품 및 도구 다) 청소상태 평가방법 라) 종업원 건강상태 관리 마) 작업복장 규격 및 착용방법 바) 소독조의 소독약품, 점검횟수 및 점검방법 사)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사용 등 관리사항		
26	(개정) 변경사항이 있거나 재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기준서를 개정하고 있는가?		
2)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27	(직접 접촉부위 청소상태) 도체(식용부산물 포함)와 직접 접촉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표면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28	(간접 접촉부위 청소상태) 도체(식용부산물 포함)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시설, 설비 및 기구 등의 표면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29	(비식용 용기) 비식용 제품을 처리하거나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용기 등은 제품에 교차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30	(약품) 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소독제 및 기타 화학물질들을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취급, 사용 및 보관하고 있는가? 나)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인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31	<p>(분변오염) 종업원은 도살 및 처리 작업 중에 도체가 분변 또는 장의 내용물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가?</p>		
32	<p>(도축 위생) 가) 도살·처리는 가축을 매단 상태 또는 가축이 바닥과 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하는가? 나) 식육은 벽바닥 등과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운반하고 있는가? * 식육의 위생적 처리(취급)·보관·운반 여부 추가 확인</p>		
33	<p>(식용부산물 처리) 가)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간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채취하여 바닥 및 내벽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처리 및 위생적인 용기에 담아 보관·운반 하는가? 나)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위·소장·대장은 그 밖의 장기와 구분하여 바닥 및 내벽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내용물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세척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담아 보관·운반 하는가? 다) 혈액을 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수집 및 처리하고 위생적인 용기에 담아 보관·운반 하는가? 라) 기타 식용에 제공하기 위한 부산물은 바닥 및 내벽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담는가?</p>		
34	<p>(비식용부산물 처리) 비식용부산물은 해충·쥐 등을 유도하지 않고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처리·관리하는가?</p>		
35	<p>(종업원 건강관리) 신체질환 등으로 제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p>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라. 검사 관리			
1) 검사 관리기준서			
36	(기준서) 검사 관리기준서에는 아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가) 검사대상(종류) 및 적용절차 나) 도축일련번호 및 도축연월일 다) 검사번호 및 검사시료명 라) 접수 및 검사연월일 마) 검사항목, 검사기준 및 검사성적 바) 판정결과 및 판정연월일 사) 검사자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아) 검체의 채취방법 자) 검사결과의 통지방법 차) 기타 필요한 사항		
37	(개정) 변경사항이 있거나 재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기준서를 개정하고 있는가?		
2)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38	(결과판정) 가) 지정된 검사자는 검사 관리기준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기록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나) 최종 판정자는 지정된 검사자가 작성한 검사결과를 판정기준에 따라 검증하는가?		
39	(시료채취) 검사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수립된 기준에 따라 오염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채취하고 있는가?		
40	(소모품 관리) 검사에 필요한 배지, 시약 등은 소모품관리대장에 적합하게 기록하고 관리되는가?		
41	(검교정) 검교정이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류는 기준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는가?		
42	(개선조치) 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고 이를 기록·보관하는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43	(검증) 이탈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를 현장관찰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는가?		
마. 영업자 준수사항			
44	(검사관의 지시준수) 가) 검사관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작하는가? 나) 개선조치 요구 등 대한 검사관의 지시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는가? 다) 검사관에게 이탈사항, 개선조치결과 및 대장균검사결과 등을 성실히 보고하는가? 라) 만약, 지시사항이 즉시 시정·보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보완이 될 때까지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가?		
45	(동물복지) 도축하려는 가축을 운송차량에서 내리거나 도축장 내의 다른 시설 등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해 전기봉을 사용하거나 신체적인 충격을 가하지 않는가? * 전기봉 또는 가축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도구의 사용 여부		
바. 교육훈련			
46	가) 영업자는 종업원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고 있는가? 나) 보관·운반관리 종업원을 대상으로 도축하려는 가축 및 도체(식용 부산물 포함) 취급주의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다) 검사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사. 자체위생 관리기준 개발 및 유지개정			
1) 자체위생 관리기준			
47	(작업 전중 위생 관리기준) 가) 자체위생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 관리기준 등의 비치로 같음할 수 있다. 나) 응결수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 또는 공정이 있는 경우 응결수 관리절차를 정하였는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48	<p>(모니터링절차) 가) 종업원의 작업 전·중 위생관리 준수 여부와 응결수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정하였는가? 나) 모니터링 빈도 및 담당자를 지정하였는가?</p>		
49	<p>(개선조치 절차) 이탈 발생 시 개선조치 절차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1) 위생상태 개선, (2) 재발방지 조치, (3) 오염우려가 있는 제품의 적절한 처리 등</p>		
50	<p>(검증 절차) 가) 종업원의 자체위생 관리기준 준수, 모니터링 활동, 개선조치 등이 적합하게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정하였는가? 나) 검증빈도 및 담당자를 지정하였는가?</p>		
51	<p>(개정) 가) 영업자는 자체위생 관리기준(SSOP)이 의도한 대로 운영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나) 변경사항이 있거나 재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기준서를 개정하고 있는가?</p>		

2)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52	<p>(작업 전중 위생 관리기준 준수) 가) 모든 종업원은 작업 전중 위생관리 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가? (1) 종업원 등 작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작업장 안에 들어올 때 손을 씻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업원은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작업장 밖으로 출입하지 아니하고, 작업 중 화장실에 갈 때는 앞치마와 장갑을 벗어야 한다. (3) 종업원은 작업과정 중 수시로 손·팔·장갑·앞치마·장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4) 종업원은 지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중에 수시로 작업칼·기구·톱 등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를 적어도 83℃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나) 종업원은 응결수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응결수를 제거하거나 관리하고 있는가?</p>		
----	---	--	--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53	(모니터링 활동) 모니터링 담당자는 매일 절차에 따라 정해진 빈도대로 작업 전·중 위생관리 모니터링을 적합하게 이행하고 기록하는가?		
54	(개선조치) 가) 자체위생 관리기준(SSOP) 또는 절차 이행 시 부적합한 사항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가? 나)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조치 결과를 기록하는가? (1) 위생상태 개선, (2) 재발방지 조치, (3) 오염우려가 있는 도체(식용 부산물 포함)의 적절한 처리 등		
55	(검증) 영업자는 자체위생 관리기준(SSOP), 모니터링 활동 및 이탈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 보완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관찰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56	(기록유지) 가) 자체위생 관리기준(SSOP) 또는 절차에 따라 작성되는 작업 전·중 위생관리점검표 등에는 점검 일시, 현장점검 내용(수치기입 여부), 작성자 및 검증자(최종 서류 검토자를 포함한다)의 서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나) 모니터링 점검 등 현장에서 이행한 사항들의 기록은 모니터링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57	(보관) 자체위생 관리기준의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최소한 6개월간 보관하고 있는가?		

판 정 결 과

총 합 평 가 (100% 기준)	① (평가결과점수/평가대상점수)*100% 예) 277점/285점*100% = 97.2% ② 점수별 개수 5점(53 개), 3점(4 개) 1점(개), 0점(개)	예) 적합 (97.2%)
평 가 분 야 별 (30점 만점 기준)	30점 * (평가결과점수/평가대상점수) 예) 30점 * (277점/285점)= 29.2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지 적 사 항	※ 해당 항목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판정기준

- ① 점수는 각항별 5점으로 한다.
- ② 5점(양호)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현장 이행 및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로 판정한다.
- ③ 3점(보통)은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현장 이행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서가 경미한 수준으로 부족하거나 현장 이행 및 기록 방법에 실수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로 판정한다. 이 경우 실수가 비반복적이어야 하며, 안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④ 1점(미흡)은 기준에 따라 현장 수행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준서가 미흡하거나, 현장 이행 및 기록 방법 등이 부족하여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판정한다.
- ⑤ 0점(미이행)은 세부기준의 설정이 없고 현장 이행 및 기록 등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하고, 법적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 ⑥ 조사평가시 평가결과 만점의 85% 이상일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도록 조치하되, 85% 미만 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IV. HACCP 관리 조사평가용 (40점)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가. 예비 5단계			
1) HACCP팀 변경			
1	HACCP팀 변경 발생 시 책임자와 구성원의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가) HACCP팀 구성의 역할 지정 적절성		
2	나) HACCP팀장 및 구성원의 업무 경험 및 숙지도		
3	다) 정기적인 회의 실시 여부		
2) 도체설명서 변경			
4	도체설명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개정하거나 추가 하였는가?		
3) 대상 소비자 변경			
5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개정하였는가?		
4) 공정도 및 작업장 평면도 변경			
6	공정도 및 작업장평면도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개정 하였는가?		
5) 현장일치			
7	변경된 공정도 및 작업장 평면도는 현장과 일치하고 있는가?		
나. HACCP 7원칙			
1) 위해분석 재실시			
8	가) 원료(부원료 포함), 도축공정 및 유통단계 등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해 위해분석을 재실시하였는가?		
9	나) 예측치 못한 위해 발생 시 위해분석을 재실시하였는가?		
2) 중요관리점 변경			
10	CCP 변경사항은 HACCP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가?		
3) 한계기준 변경			
11	CCP에 대한 한계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한계기준이 구체적인 공정 또는 제품에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4) 모니터링			
12	가) CCP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가?		
13	나) CCP 모니터링 결과를 현장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14	다) CCP 모니터링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는가?		
5) 개선조치			
15	가)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 이탈시 원인분석 및 제거, CCP의 정상 복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영향 받은 제품의 처리를 포함하여 적절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16	나) 개선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17	다) 이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선조치 방법을 재조정하거나 강화하고 있는가?		
6) 검증			
18	가) HACCP 관리계획에 따라 검증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1) 서류(기록물) 검토 (2) 현장관찰 (3)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검교정 (4) 기타사항		
19	나) (유효성 평가) 변경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적용해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 HACCP 관리계획이 목적인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20	다) (재평가)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변경사항 발생하거나 예측치 못한 위해발생 시에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7) 기록 및 유지			
21	가)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22	나) HACCP 관리계획에 따라 생산된 기록은 일시, 측정된 수치, 조치된 사항, 담당자 서명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가?		
23	다) 위해분석, CCP 설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검증의 변경사항 발생 시 과학적 논문, 문헌, 실험결과 등의 근거문서가 있는가?		
24	라) HACCP 관리계획 개발 시 및 개정 시 일자, 책임자의 서명, 개정 내역 등을 기록하고 있는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다. HACCP 교육·훈련			
25	HACCP 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하고 있는가? 가) 종업원에 대한 HACCP 교육		
26	나) 영업자 HACCP 교육		
판 정 결 과 (예시) *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록			
총 합 평 가 (100% 기준)	① (평가결과점수/평가항목점수)*100% 예) 105점/130점*100% = 80.77 ② 점수별 개수 5점(개), 3점(개) 1점(개), 0점(개)		예) 부적합 (80.77%)
평 가 분 야 별 (40점 만점 기준)	40점 * (평가결과점수/평가항목점수) 예) 40점*(105점/130점)= 32.31		
지 적 사 항	※ 해당 항목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판정기준

- ① 점수는 각항별 5점으로 한다.
- ② 5점(양호)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현장 이행 및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로 판정한다.
- ③ 3점(보통)은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현장 이행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서가 경미한 수준으로 부족하거나 현장 이행 및 기록 방법에 실수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로 판정한다. 이 경우 실수가 비반복적이어야 하며, 안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④ 1점(미흡)은 기준에 따라 현장 수행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준서가 미흡하거나, 현장 이행 및 기록 방법 등이 부족하여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판정한다.
- ⑤ 0점(미이행)은 세부기준의 설정이 없고 현장 이행 및 기록 등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하고, 법적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 ⑥ 조사평가시 평가결과 만점의 85% 이상일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도록 조치하되, 85%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19년 도축장 가식부산물 처리실태 평가표 (3점 이내 가점)

□ 소·돼지 도축장 : 가식부산물 처리 평가 가점 (점)

* ①, ② 해당번호를 기입하고,

①이 0-9개(0점), 10-11개(1점), 12-13개(1.5점), 14개(2점), 15개(3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내장처리대, 내장운반구, 세척용 수조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있는가?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2. 부산물 처리실의 바닥, 벽, 용기 등의 청소상태는 위생적인가?
① 양호 () ② 보통-불량 ()
3. 부산물 처리실의 조명도는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가?
① 양호 () ② 보통-불량 ()
4. 부산물처리실의 배수상태는 양호한가?
① 양호 () ② 보통-불량 ()
5. 부산물처리실의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① 양호 () ② 보통-불량 ()
6. 작업자가 위생모, 장화, 앞치마, 장갑 등의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는가?
* 위의 어느 것 하나라도 착용하지 않았으면 아니요.
① 예() ② 아니요()
7. 작업자의 복장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① 양호 () ② 보통-불량 ()
8. 부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세척수의 상태는 어떠한가?
① 양호 () ② 보통-불량 ()

9. 처리가 완료된 머리와 족은 청결하게 관리 및 보관되고 있는가?

- ① 양호 () ② 보통-불량 ()

10. 처리된 부산물은 냉각처리가 되는가 ?

- ① 냉수(얼음)보관이나 냉장보관() ② 냉각처리하지 않음()

11. 백, 적내장을 담은 박스를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가?

- ① 예() ② 아니오()

12. 백, 적내장을 담은 박스를 침출수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 ① 예() ② 아니오()

13-15. 부산물 출하

13. 부산물을 적재한 차량의 냉장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가?

- ① 예() ② 아니오()

* 냉장차량이 아니거나 냉장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아니오.

14. 두, 족, 쇠간, 소 위, 백내장 및 적내장을 별도로 구분 포장하여 출하하는가?

- ① 예() ② 아니오()

* 어느 것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아니오.

15. 부산물 출하 차량 내부의 세척 및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 ① 예() ② 아니오()

'19년 도축장 출입구 CCTV 설치실태 평가표 (1점 이내 가점)

□ 도축장 CCTV 설치실태 평가 가점 (점)

1. 도축장을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확인을 위해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① 출입구 CCTV 설치(0.5점)()
 - ② 녹화영상 사후관리(0.5점)()

V. 미생물 검사 평가표(20점)

◆ 지자체의 일반 미생물 검사 반영 방안

1. 반영 항목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식육 중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결과
- 일반세균, 대장균 검사, 살모넬라검사 결과 (비율가중치)

2. 반영 기간 : 2018.1.1. ~ 2018.12.31.의 미생물 검사결과

3. 반영점수 : 20점 (5번의 ①+②)

4. 반영 방법

①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사결과 : 14점 만점

- 1종 도축장 : 산출결과 반영 - 14점 만점
- 2종 축종(소·돼지) 도축장 : 소 7점 + 돼지 7점
- 2종 축종(닭·오리) 도축장 : 닭 7점 + 오리 7점

② 살모넬라 검사결과 : 6점 만점

5. 미생물 검사결과에 따른 세부 적용배점 산출 방법

①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사결과

- 축종별 일반세균, 대장균 검출결과 판정기준 및 검출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소·돼지·닭·오리 도축장 별 평가
- 일반세균 50%, 대장균 50%,
- 해당 시도 시험소에서는 각 도축장별로 해당 기간에 대한 점수를 산출

※ 아래 표 A, B 및 C의 양식을 활용하여 도축장별로 반영점수 기입

→ 산출식 계산방식 : (각 검사결과(%)×해당 가중치)의 합계×0.5 =반영점수

② 살모넬라 검사결과

- 부적합 판정건수가 없는 도축장 : 6점
- 부적합 판정건수 1회인 도축장 : 5점
- 부적합 판정건수 2회인 도축장 : 4점
- 부적합 판정건수 3회이상인 도축장 : 3점

6.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로 공문제출 (제출기한 2019.9.30.)

A. 소(염소) 도축장

검사항목	산출식			반영%	비고	
	검사결과(%) (A)	가중치 (B)	반영점수 (A×B)			
일반세균	10 ² 이하	울	1	a	50%	위생지표
	10 ² 초과 ~ 10 ³ 이하	울	0.75	b		
	10 ³ 초과 ~ 10 ⁴ 이하	울	0.5	c		
	10 ⁴ 초과 ~ 10 ⁵ 이하	울	0.25	d		
	10 ⁵ 초과	울	0	e		
				합계(a~e)×0.5		
대장균	10 이하	울	1	a	50%	
	10 ~ 10 ² 이하	울	0.5	b		
	10 ² 초과	울	0	c		
				합계(a~c)×0.5		

B. 돼지 도축장

검사항목	산출식			반영%	비고	
	검사결과(%) (A)	가중치 (B)	반영점수 (A×B)			
일반세균	10 ² 이하	울	1	a	50%	위생지표
	10 ² 초과 ~ 10 ³ 이하	울	0.75	b		
	10 ³ 초과 ~ 10 ⁴ 이하	울	0.5	c		
	10 ⁴ 초과 ~ 10 ⁵ 이하	울	0.25	d		
	10 ⁵ 초과	울	0	e		
				합계(a~e)×0.5		
대장균	10 이하	울	1	a	50%	
	10초과 ~ 10 ² 이하	울	0.66	b		
	10 ² 초과 ~ 10 ³ 이하	울	0.33	c		
	10 ³ 초과	울	0	d		
				합계(a~d)×0.5		

C. 닭 · 오리도축장

검사항목	산출식			반영%	비고	
	검사결과(%)	가중치	반영점수			
일반세균	10 ² 이하	울	1	a	50%	위생지표
	10 ² 초과 ~ 10 ³ 이하	울	0.75	b		
	10 ³ 초과 ~ 10 ⁴ 이하	울	0.5	c		
	10 ⁴ 초과 ~ 10 ⁵ 이하	울	0.25	d		
	10 ⁵ 초과	울	0	e		
				합계(a~e)×0.5		
대장균	10 이하	울	1	a	50%	
	10초과 ~ 10 ² 이하	울	0.66	b		
	10 ² 초과 ~ 10 ³ 이하	울	0.33	c		
	10 ³ 초과	울	0	d		
				합계(a~d)×0.5		

□ 가금류 도축장

'19년 가금류 도축장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총괄표

가. 평가반 : 반

나. 평가일 : 년 월 일

다. 도축장명(인허가명) 및 번호 :
 (예시) 검역도축장-P-52 [※ 평가번호 부여된 도축장의 번호기입 : 도축장명 - P - 번호]

라. 소재지 (도, 시) :

마. 위반사항 확인 여부 (), 위반건수 (건)

바. HACCP 조사평가 결과³⁾ : 적합 / 보완 / 부적합
 - (참고) 100% 환산 시, 선행요건 관리 (%), HACCP 관리 (%)

사. 현장 평가 환산 결과 (점)

도축장	계(환산)	인프라 구축 (10%)	선행요건 관리 (30%)	HACCP 관리 (40%)	비고
					(가점) +

* 평가점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록

아. 도축장 HACCP 조사평가 요약표 (붙임 1)

평가자 :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3)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 각 항별 5점으로 하며 양호 5점, 보통 3점, 미흡 1점, 미이행 0점
- 평가결과 만점의 85% 이상일 경우 수정·보완하도록 조치, 85%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

붙임 1 가금류 도축장 HACCP 조사·평가 요약표

평가일 : '19. . .		평가반 : 가-		작업장명 :		최종판정 :	
I 도축장 인프라 : (총점 :)							
항목	내용	점수	항목	내용	점수		
1	도축검사라인 구축		4	실험실 구축정도 및 실험자 능력			
2	작업장 구획		5	도축장 전체 면적			
3	도축장 주변환경 여건(악취, 폐수 등)						
II 선형요건 관리 : (총점 :)							
가 작업장 관리			30	분변오염			
1	관리기준서 작성비치		31	도축 위생			
2	유지보수계획, 변경허가신고		32	식용부산물 처리			
3	필수시설·시설변경		33	비식용부산물 처리			
4	주위 환경 및 방서방충관리		34	종업원 건강관리			
5	계류장 (건물구조)		라	검사관리			
6	도살방혈실 (건물구조, 방혈라인)		35	기준서 작성비치			
7	작업실		36	변경개정			
8	배수구		37	결과판정			
9	환기		38	시료채취			
10	조명		39	소모품 관리			
11	화장실·탈의실		40	검교정			
12	용수		41	개선조치			
13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설		42	검증			
14	도축검사장소		마	영업자 준수사항			
15	검사시험실		43	검사관의 지시 준수			
16	소독준비실		44	동물복지			
나 시설 및 설비 관리			바	교육훈련			
17	관리기준서 작성비치		45	교육훈련			
18	유지보수계획, 변경개정		사	자체위생 관리기준(SSOP)			
19	계류장 (시설, 설비)		46	작업 전중 위생 관리기준 절차			
20	생체검사대 (장소, 조명)		47	모니터링 절차			
21	작업실 설비		48	개선조치 절차			
22	냉장냉동설비		49	검증 절차			
23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		50	변경개정			
다 위생 관리 (위생작업 및 종업원 위생)			51	작업 전중 위생관리 준수			
24	기준서 작성비치		52	모니터링 활동			
25	변경개정		53	개선조치			
26	직접 접촉부위 청소상태		54	검증			
27	간접 접촉부위 청소상태		55	기록유지			
28	비식용 용기		56	보관			
29	약품						
III HACCP 관리 : (총점 :)							
가. 예비 5단계			14	모니터링 변경사항 반영			
1	HACCP팀 역할 지정 적정		15	개선조치 실시			
2	HACCP팀 업무 숙지도		16	개선조치 결과 기록			
3	HACCP팀 정기회의 실시		17	(이탈 반복 시) 개선조치 재조정·강화			
4	도체설명서		18	검증활동 실시			
5	대상소비자(용도)		19	유효성 평가			
6	공정도 및 작업장 평면도		20	재평가(연1회 이상)			
7	현장일치		21	관리기준서 작성비치			
나 HACCP 7원칙			22	기록의 구체적인 작성			
8	위해분석 재실시(원료, 공정 등 변경)		23	변경사항 발생 시 근거문서 여부			
9	위해분석 재실시(예측하지 못한 위해)		24	개정내역 기록			
10	중요관리점 변경		다	HACCP 교육훈련			
11	한계기준 변경		25	종업원에 대한 HACCP 교육			
12	모니터링 실시		26	영업자 HACCP 교육			
13	모니터링 결과 현장 기록						

I. 도축업 일반 현황

도축업 영업장	① 영업허가 번호				② 영업허가 연월일	
	③ 회사명				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본 사				
		공 장				
	⑥ 대표자 성명				⑦ 생년월일	
	⑧ HACCP 적용축산물					
관리 책임자	⑨ 직 위				⑩ 성 명	
도축 시설 및 면적 (㎡)	⑪ 계류장	⑫ 생체 검사장	⑬ 격리장	⑭ 작업실	⑮ 검사 시험실	⑯ 소독 준비실
	⑰ 기 타				⑱ 합 계	
작업 인원 (명)	⑲ 현장 도축 작업원				⑳ 검사(실험실) 보조원	
	㉑ 기 타 작업원				㉒ 합 계	

◎ 가금류 도축장 (2018.1.1~12.31까지의 평균도축물량 기준)

* 2018년 도축물량 :

닭()마리

오리() 마리

기타(축종 :) ()마리

* 1일 도축물량 (2018 총도축수/총도축일수) :

닭()마리

오리() 마리

기타(축종 :) ()마리

* 도축일수 : 닭()일, 오리()일, 기타(축종 :)()일

* 자가도계(계열화) : %, 위탁도계(임도계) : %

검사종사자 근무 현황

도축장	①검사관 : 명	①도축검사원 : 명
도축물량대비	②검사관적정수 : 명	②검사원적정수 : 명
비고	①-②= 명	①-②= 명

* 검사종사자 수는 평가 시 현장에서 근무중인 인원을 기준

(단기, 정기 휴가 중인 인원은 포함)

* 도축물량대비 검사종사자의 적정 수는「검사관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참조

2018년도 도축장 실제 가동율 (실제도축수/도축능력)

닭 ()%
실제도축수 () 도축능력 ()

오리 ()%
실제도축수 () 도축능력 ()

II. 도축장 인프라 부분 (10점)

* 주의사항 : 가점을 부여하더라도 해당 점수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점수	비고																								
1. 도축검사라인 구축정도(5점) * 닭, 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5)	1. 도축검사대의 길이 (1점) * 검사대가 없으면 (0점), 2m미만 (0.5점), 2m이상 (1.0점)																										
	2. 도축검사대 위치의 적절성 (1점) * 생체 및 해체검사의 편리성과 적절성에 따라 0.5점, 1.0점 (생체검사대 미비치 시 0.5점 감점)																										
	3. 검사라인의 충분한 공간 (1점) * 검사를 실제로 할 수 있는 검사공간의 여유정도 및 필요 설비·도구 등 비치여부에 따라 0.5점, 1.0점																										
	4. line speed (1점) * 도축라인 ()개, 라인스피드 ()수/시간, ()수/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닭</th> <th colspan="2">오리</th> </tr> </thead> <tbody> <tr> <td>2,000수 이하</td> <td>1.0점</td> <td>2,000수 이하</td> <td>1.0점</td> </tr> <tr> <td>4,000수 이하</td> <td>0.8점</td> <td>3,000수 이하</td> <td>0.8점</td> </tr> <tr> <td>6,000수 이하</td> <td>0.6점</td> <td>4,000수 이하</td> <td>0.6점</td> </tr> <tr> <td>8,000수 이하</td> <td>0.4점</td> <td>5,000수 이하</td> <td>0.4점</td> </tr> <tr> <td>8,001수 이상</td> <td>0.2점</td> <td>5,001수 이상</td> <td>0.2점</td> </tr> </tbody> </table>	닭		오리		2,000수 이하	1.0점	2,000수 이하	1.0점	4,000수 이하	0.8점	3,000수 이하	0.8점	6,000수 이하	0.6점	4,000수 이하	0.6점	8,000수 이하	0.4점	5,000수 이하	0.4점	8,001수 이상	0.2점	5,001수 이상	0.2점		
	닭		오리																								
2,000수 이하	1.0점	2,000수 이하	1.0점																								
4,000수 이하	0.8점	3,000수 이하	0.8점																								
6,000수 이하	0.6점	4,000수 이하	0.6점																								
8,000수 이하	0.4점	5,000수 이하	0.4점																								
8,001수 이상	0.2점	5,001수 이상	0.2점																								
5. 최종세척 후 분변오염도 조사 (1점)-닭, 오리 등 공통 * 도체 육안확인 시 분변오염 및 정내용물 Zero (1점), 검출시 0점 - 최종세척 후 칠러공정 전 : 1분당 분변오염도 조사 (3회 실시할 것)																											
2. 작업장 구획 구축정도(1점)	작업장 내에서 청결, 준청결, 오염지역의 구획이 되어있고 공기와 배수의 흐름이 올바른가? (0점, 0.5점, 1점) * 구획이 분리되어 있고, 서로 차단되어 있으면 1점, 분리되어 있으나 차단이 안되어 있으면 0.5점,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0점 * 부산물(내장)처리실과 원피처리실이 같은 공간에 있어 차량 등으로 인한 교차오염 발생 시 (0점)																										

평가항목	평가 내용	점수	비고
3. 도축장 악취 발생 정도, 폐수 처리 등 주변환경 여건(1점)	1. 주변환경은 외부에서 봤을 때 혐오시설 정도 및 악취 정도에 따라 * 심함 0점, 약간 0.3, 없음 0.5		
	2. 고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주기 * 매우적절 0.4, 보통 0.2, 부적절 0점 (폐기물 처리대상 등 참조)		
	3. 도축장 내부 도로 및 포장 상태가 좋으면 (0.1)점		
4. 실험실 구축정도 및 실험자 능력 (2점)	1. 실험기기의 적정 구축정도와 검사재료의 적절성(0.5점) - 크린벤치, 균배양기, 오토크레이브,냉장고, 시약장, 기구장 등 미생물실험장비 등이 모두 갖춰 있으면 0.3점 - 검사재료의 적절성(유효기간, 재료구비정도에 따라 0점, 0.2점		
	2. 실험실책임자의 전문성 (0.2점) - 전문지식 정도에 따라 0.1점, 0.2점		
	3. 실험담당자의 전문성 (0.2점) - 전문지식 정도에 따라 0.1점, 0.2점 * 실험실책임자와 실험담당자가 동일인이면 2번과 3번의 점수는 동일		
	4. 실험 담당자의 겸업여부(0.2점) - 실험담당자가 행정직 등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으면 0점, 아니면 0.2점		
	5. 실험의 실제 수행여부(0.9점) - 실험실이 형식적이고 검사를 안하면 0점 - 검사기준(일반세균, 대장균 등)에 준한 실험수행(0.7점) - 검사기준 이상 실험 수행(0.8점) - 실험실이 아주 잘 가동(0.9점)		
5. 도축장 전체 면적 (1점) * 공장부지 + 연건평	○ 10,000제곱미터 미만 (0.4점), ○ 10,000- 20,000제곱미터미만(0.6점) ○ 2,0000-30,000제곱미터미만(0.8점) ○ 30,000제곱미터이상(1.0점)		
합계 (10점)	닭, 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 (10점)		

Ⅲ. 선행요건 관리 (30점)

1. 닭·오리 등 가금류 도축장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가. 작업장 관리			
1) 작업장 관리 기준서			
1	(기준서) 가) 작업장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다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등의 비치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법령 등을 비치하는 경우에도 관리기준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작업장 유자·보수 관리 (2) 외부인 출입통제 관리 (3) 방서·방충 관리 (4) 용수 관리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5) 폐기물·폐수처리시설 관리		
2	(유자·보수) 가) 유자·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관리 및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나) 변경사항이 있거나 재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기준서를 개정하고 있는가?		
2)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3	(시설 변경) 가) 도축장에는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검사시험실·포장실·소독 준비실·폐수처리시설·폐기물처리시설·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탈의실·목욕실·휴게실 등이 있는가? 나) 시설 또는 설비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허가관청에 변경허가 또는 신고를 하였는가?		
4	(환경) 가) 도축장의 진입로·주차장 및 건물과 건물사이에는 포장되어 있는가? 나) 도축장의 주위는 외부에서 도축장의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였는가? 다) 작업장 내·외부에 곤충·쥐 등이 유입·서식하지 않도록 설비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라) 작업장 내·외부의 외부인 통제를 하고 있는가? 마) 계류장·도살방혈실·작업실의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정도의 경사를 유지하고 있는가?		
5	(계류장) 계류장은 도축장 안에 설치된 가금의 투입라인에 연결하여 개방식 구조로 설치하고, 가금수송차량 또는 가금수송용기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인가?		
6	(도살방혈실) 도살방혈실은 작업실과 차단하여 설치하고, 방혈대에서 작업실의 탕지시설까지의 라인에 도체의 방혈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길이가 되도록 설치되었는가?		
7	(작업실) 가) 탕지시설·탈모시설·잔모처리시설·내장적출시설·도체절단기 및 냉각시설로 구획하여 일괄작업이 가능한가? 나) 작업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m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고,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용이한가? 다) 작업실의 천정은 내수성 재료를 사용하여 이물이나 먼지 등 붙지 아니하는 구조인가? 라) 작업실의 출입구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서 자동 또는 반자동문으로 설비되었는가? 마) 작업실의 창은 방충설비를 하였는가?		
8	(배수구) 배수구는 암거로 되었고,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항부식성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개폐식으로 설비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인가?		
9	(환기) 환기시설은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는데 충분하고 응결수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10	<p>(조명) 작업실 안은 작업과 검사가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이용하며 밝기는 220룩스 이상(검사할 장소는 540룩스 이상)이 되고, 파열 시 식육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였는가?</p>		
11	<p>(화장실·탈의실) 가) 화장실은 작업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고 수세설비와 방수·방충설비를 하였고 수도꼭지는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나) 탈의실은 작업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내부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이 있으며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가?</p>		
12	<p>(용수) 가) 수도물 외에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는가? 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취수원은 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는가? 다) 용수저장 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고 시건 장치가 있는가?</p>		
13	<p>(폐수 및 폐기물처리시설) 가)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처리 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설이라고 인·허가 받은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가? 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을 퇴비로 활용하는 증명서류가 있는가?</p>		
14	<p>(도축검사장소) 도축검사(해체검사)시 내장적출라인별로 도체와 내장을 확인할 수 있는 도축검사대를 설치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수세시설을 구비하고 있는가?</p>		
15	<p>(검사시험실) 검사시험실에는 심부온도계·시료채취기 등 시험기구류와 해부기구세트, 청진기, 기구보관상자, 냉장고 등 검사에 필요한 기구와 장비가 있고, 냉·온수가 나오는 급수설비를 하였는가?</p>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16	(소독준비실) 소독준비실의 바닥은 내수성재료로 시공하였고, 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약품이 있는가?		
나. 시설 및 설비 관리			
1) 시설 및 냉장·냉동설비 관리 기준서			
17	(기준서) 도축시설, 냉장·냉동설비, 및 위생관리 설비가구 등에 대한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18	(유자·보수) 가) 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관리 및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나) 변경사항이 있거나 재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기준서를 개정하고 있는가?		
2)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19	(계류장) 계류장은 차광·송풍 및 물부림 시설이 있는가? * 조명장치 (최소한 110룩스 이상) 설치		
20	(생체검사대) 생체검사대는 도살방혈실 옆에 설치되어 있고, 조명장치의 밝기는 최소한 220룩스 이상인가?		
21	(작업실) 가) 탕지시설은 컨베이어식 연속탕지조 또는 자동탕지기로 설치하였는가? 나) 탈모시설은 컨베이어식·이동식 또는 자동식탈모기로 설치하였는가? 다) 내장적출시설 안에는 컨베이어식 내장운반기 또는 작업대를 설치하고 충분한 급수시설을 갖추었는가? 라) 냉각시설은 냉풍냉각수냉각 또는 빙수냉각장치로 설비하였는가? 마) 내장처리시설은 충분한 면적으로 설치하고 내장처리대를 설치하였는가? 바) 작업라인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83℃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해체작업과 검사에 사용되는 칼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사) 도체에 직접 접촉되는 기계·기구류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항부식성 재질로 설비하였는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22	(냉장·냉동설비) 냉장·냉동실은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였는가? * 온도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예 : 타코미터) 설치 규정 추가		
23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 가축수송차량세척·소독시설은 가축을 하역한 후 세척·소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가? * 닭 수송용기의 세척·소독시설은 작업실과 구획하여 설치		
다. 위생 관리(위생작업 및 종업원 위생)			
1) 위생 관리기준서			
24	(기준서) 위생 관리기준서는 아래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가) 청소장소 및 청소주기 나) 청소방법과 청소에 사용하는 약품 및 도구 다) 청소상태 평가방법 라) 종업원 건강상태 관리 마) 작업복장 규격 및 착용방법 바) 소독조의 소독약품, 점검횟수 및 점검방법 사)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및 사용 등 관리사항		
25	(개정) 변경사항이 있거나 재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기준서를 개정하고 있는가?		
2)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26	(직접 접촉부위 청소상태) 도체(식용부산물 포함)와 직접 접촉하는 설비 및 기구 등의 표면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27	(간접 접촉부위 청소상태) 도체(식용부산물 포함)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시설, 설비 및 기구 등의 표면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28	(비식용 용기) 비식용 제품을 처리하거나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용기 등은 제품에 교차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구분하여 사용하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29	<p>(약품) 가)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세척제, 소독제 및 기타 화학물질들을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취급, 사용 및 보관하고 있는가? 나)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인가? 다) 잔모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왁스 등은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인가? (오리에 한한다)</p>		
30	<p>(분변오염) 종업원은 도살 및 처리 작업 중에 도체가 분변 또는 장의 내용물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는가?</p>		
31	<p>(도축 위생) 가) 가금육은 도체중량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정해진 시간 내에 5℃ 이하로 냉각하고 있으며, 포장하는 경우에는 포장 시까지 이 온도가 유지되는가? * 식육의 위생적 처리(취급)·보관·운반 여부 추가 확인 나) 가금육의 경우, 식육 포장시의 습기흡수율 및 수분함유율을 최소화 하고 있는가? 단, 이 경우 냉동 또는 냉동포장을 하는 식육의 경우에 적용하는 냉각세척 후 중량증가 허용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다)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가금육의 심부온도는 2℃이하로 유지하는가? * 가금육의 반출온도 규정 변경됨(시행 '18.4.25.) 라) 빙수냉각은 식용얼음을 사용하여 위생적인 방법으로 취급·저장 하고 있는가?</p>		
32	<p>(식용부산물 처리) 식용부산물을 바닥 및 내벽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처리 하여 위생적인 용기에 담는가?</p>		
33	<p>(비식용부산물 처리) 비식용 부산물은 해충·쥐 등을 유도하지 않고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처리·관리하는가?</p>		
34	<p>(종업원 건강관리) 신체질환 등으로 제품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종업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가?</p>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라. 검사 관리			
1) 검사 관리기준 및 절차			
35	(기준서) 검사 관리기준서에는 아래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가) 검사대상(종류) 및 적용절차 나) 도축일련번호 및 도축연월일 다) 검사번호 및 검사시료명 라) 접수 및 검사연월일 마) 검사항목, 검사기준 및 검사성적 바) 판정결과 및 판정연월일 사) 검사자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아) 검체의 채취방법 자) 검사결과의 통지방법 차) 기타 필요한 사항		
36	(개정) 변경사항이 있거나 재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기준서를 개정하고 있는가?		
2)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37	(결과판정) 가) 지정된 검사자는 검사기준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나) 최종 판정자는 지정된 검사자가 작성한 검사결과를 판정기준에 따라 검증하는가?		
38	(시료채취) 검사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수립된 기준에 따라 오염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채취하고 있는가?		
39	(소모품관리) 검사에 필요한 배지, 시약 등은 소모품관리대장에 적합하게 기록하고 관리되는가?		
40	(검교정) 검교정이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류는 기준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하는가?		
41	(개선조치) 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고 이를 기록보관하는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48	(개선조치 절차) 이탈 발생 시 개선조치 절차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1) 위생상태 개선, (2) 재발방지 조치, (3) 오염우려가 있는 제품의 적절한 처리 등		
49	(검증 절차) 가) 종업원의 자체위생관리준수, 모니터링 활동, 개선조치 등이 적합하게 이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절차를 정하였는가? 나) 검증빈도 및 담당자를 지정하였는가?		
50	(개정) 가)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이 의도한 대로 운영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가? 나) 변경사항이 있거나 재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기준서를 개정하고 있는가?		

2) 기록물 검토 및 현장관찰

51	(작업 전중 위생관리 준수) 가) 모든 종업원은 작업 전중 위생관리절차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가? (1) 종업원 등 작업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작업장 안에 들어올 때 손을 씻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업원은 위생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작업장 밖으로 출입하지 아니하고, 작업중 화장실에 갈 때는 앞치마와 장갑을 벗어야 한다. (3) 종업원은 작업과정중 수시로 손·팔·장갑·앞치마·장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4) 종업원은 지육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중에 수시로 작업칼·기구·툼 등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를 적어도 83℃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나) 종업원은 응결수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응결수를 제거하거나 관리하고 있는가?		
52	(모니터링 활동) 모니터링 담당자는 매일 절차에 따라 정해진 빈도대로 작업 전·중 위생관리 모니터링을 적합하게 이행하고 기록하는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53	(개선조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또는 절차 이행시 부적합한 사항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개선조치를 하고 있는가? 나)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조치 결과를 기록하는가? (1) 위생상태 개선, (2) 재발방지조치, (3) 오염우려가 있는 도체(식용부산물 포함)의 적절한 처리 등		
54	(검증)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모니터링활동 및 이탈에 대한 개선조치 결과 보완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관찰 또는 서류검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55	(기록유지) 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또는 절차에 따라 작성되는 작업 전·중 위생관리점검표 등에는 점검일시, 현장점검내용(수치기입여부), 작성자 및 검증자(최종서류검토자를 포함한다)의 서명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나) 모니터링 점검 등 현장에서 이행한 사항들의 기록은 모니터링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56	(보관) 자체위생 관리기준의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부터 최소한 6개월간 보관하고 있는가?		
판 정 결 과 (예시) *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록			
총 합 평 가 (100% 기준)	① (평가결과점수/평가대상점수)*100% 예) 272점/280점*100% = 95.41% ② 점수별 개수 5점(52 개), 3점(4 개) 1점(개), 0점(개)		예) 적합 (95.41%)
평 가 분 야 별 (30점 만점 기준)	① 30점 * (평가결과점수/평가대상점수) 예) 30점 * (272점/280점)= 28.6		
지 적 사 항	※ 해당 항목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	------	----	----

※ 판정기준

- ① 점수는 각항별 5점으로 한다.
- ② 5점(양호)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현장 이행 및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로 판정한다.
- ③ 3점(보통)은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현장 이행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서가 경미한 수준으로 부족하거나 현장 이행 및 기록 방법에 실수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로 판정한다. 이 경우 실수가 비반복적이어야 하며, 안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④ 1점(미흡)은 기준에 따라 현장 수행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준서가 미흡하거나, 현장 이행 및 기록 방법 등이 부족하여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판정한다.
- ⑤ 0점(미이행)은 세부기준의 설정이 없고 현장 이행 및 기록 등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하고, 법적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 ⑥ 조사평가시 평가결과 만점의 85% 이상일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도록 조치하되, 85% 미만 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IV. HACCP 관리 조사평가용 (40점)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가. 예비 5단계			
1) HACCP팀 변경			
1	HACCP팀 변경 발생 시 책임자와 구성원의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가) HACCP 팀구성의 역할 지정 적절성		
2	나) HACCP팀장 및 구성원의 업무 경험 및 숙지도		
3	다) 정기적인 회의 실시 여부		
2) 도체설명서 변경			
4	도체설명서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개정하거나 추가 하였는가?		
3) 대상 소비자 변경			
5	용도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개정하였는가?		
4) 공정도 및 작업장 평면도 변경			
6	공정도 및 작업장 평면도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개정 하였는가?		
5) 현장일치			
7	변경된 공정도 및 작업장 평면도는 현장과 일치하고 있는가?		
나. HACCP 7원칙			
1) 위해분석 재실시			
8	가) 원료(부원료 포함), 도축공정 및 유통단계 등에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해 위해분석을 재실시 하였는가?		
9	나) 예측치 못한 위해 발생 시 위해분석을 재실시하였는가?		
2) 중요관리점 변경			
10	CCP 변경사항은 HACCP 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가?		
3) 한계기준 변경			
11	CCP에 대한 한계기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한계기준이 구체적인 공정 또는 제품에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4) 모니터링			
12	가) CCP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가?		
13	나) CCP 모니터링 결과를 현장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14	다) CCP 모니터링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는가?		
5) 개선조치			
15	가)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 이탈시 원인분석 및 제거, CCP의 정상복귀, 재발방지대책수립, 영향받은 제품의 처리를 포함하여 적절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는가?		
16	나) 개선조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가?		
17	다) 이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개선조치 방법을 재조정하거나 강화하고 있는가?		
6) 검증			
18	가) HACCP 관리계획에 따라 검증활동을 실시하고 있는가? (1) 서류(기록물) 검토 (2) 현장관찰 (3) 모니터링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검교정 (4) 기타사항		
19	나) (유효성 평가) 변경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적용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HACCP 관리계획이 목적인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20	다) (재평가)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변경사항 발생하거나 예측치 못한 위해발생 시에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7) 기록 및 유지			
21	가) HACCP 관리기준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가?		
22	나) HACCP 관리계획에 따라 생산된 기록은 일시, 측정된 수치, 조치된 사항, 담당자 서명 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고 있는가?		
23	다) 위해분석, CCP설정, 한계기준설정, 모니터링, 검증의 변경사항 발생 시 과학적 논문, 문헌, 실험결과 등의 근거문서가 있는가?		
24	라) HACCP 관리계획 개발 시 및 개정 시 일자, 책임자의 서명, 개정내역 등을 기록하고 있는가?		

구분 순위	평가내용	점수	비고
다. HACCP 교육·훈련			
25	HACCP 관리계획을 정기적으로 교육·훈련하고 있는가? 가) 종업원에 대한 HACCP 교육		
26	나) 영업자 HACCP 교육		
판 정 결 과 (예시) * 소수 둘째자리까지 기록			
총 합 평 가 (100% 기준)	① (평가결과점수/평가항목점수)*100% 예) 105점/130점*100% = 80.77 ② 점수별 개수 5점(개), 3점(개) 1점(개), 0점(개)		예) 부적합 (80.77%)
평 가 분 야 별 (40점 만점 기준)	40점 * (평가결과점수/평가항목점수) 예) 40점*(105점/130점)= 32.31		
지 적 사 항	※ 해당 항목에 대하여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판정기준

- ① 점수는 각항별 5점으로 한다.
- ② 5점(양호)은 적합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현장 이행 및 기록을 유지하는 경우로 판정한다.
- ③ 3점(보통)은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현장 이행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서가 경미한 수준으로 부족하거나 현장 이행 및 기록 방법에 실수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로 판정한다. 이 경우 실수가 비반복적이어야 하며, 안전성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④ 1점(미흡)은 기준에 따라 현장 수행 및 기록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준서가 미흡하거나, 현장 이행 및 기록 방법 등이 부족하여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판정한다.
- ⑤ 0점(미이행)은 세부기준의 설정이 없고 현장 이행 및 기록 등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로 판정하고, 법적 위반사항을 포함한다.
- ⑥ 조사평가시 평가결과 만점의 85% 이상일 경우에는 수정·보완하도록 조치하되, 85%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19년도 도축장 가식부산물 처리실태 평가표 (3점 이내 가점)

□ 닭 도축장 : 가식부산물 처리 평가 가점 (점)

* ①, ② 해당번호를 기입하고,

①이 0-9개(0점), 10-11개(1점), 12-13개(1.5점), 14개(2점), 15개(3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부산물처리실은 분리되어 마련되어 있는가?

① 있다 () ② 없다 ()

2. 부산물처리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① 있다 () ② 없다 ()

3. 부산물 처리실의 바닥, 벽, 용기 등의 청소상태는 위생적인가?

① 양호 () ② 보통-불량 ()

4. 부산물 처리실의 조도는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가?

① 양호 () ② 보통-불량 ()

5. 부산물처리실의 배수상태는 양호한가?

① 양호 () ② 보통-불량 ()

6. 부산물처리실의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① 양호 () ② 보통-불량 ()

7. 작업자가 위생모, 장화, 앞치마, 장갑 등의 복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는가?

* 위의 어느 것 하나라도 착용하지 않았으면 아니오.

① 예() ② 아니오()

8. 작업자의 복장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① 양호 () ② 보통-불량 ()

9. 부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세척수의 상태는 어떠한가?
 ① 양호 () ② 보통-불량 ()

10. 식용부산물의 포장상태는?
 ① 개별포장 또는 벌크포장 (), ②비닐포장없이 박스에 담음()

11. 식용부산물의 보관은?
 ① 냉장보관(얼음처리 포함)() ② 냉장보관 하지 않음()

12. 식용부산물을 담은 박스는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가?
 ① 예() ② 아니오()

13. 식용부산물을 적재한 차량의 냉장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 냉장차량이 아니거나 냉장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으면 아니오.

14. 부산물출하 차량 내부의 세척 및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① 예() ② 아니오()

15. 비식용부산물의 처리와 이동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① 예() ② 아니오()

② 오리 도축장 : 부산물 처리 평가 가점 (점)

1. 비식용부산물의 처리·이동(처리실, 배출구 등)은 위생적으로 이루어지는가 ?
 ① 매우 위생적(3점)()
 ② 위생적(2점)()
 ③ 보통(1.5점)()
 ④ 약간 비위생적(1점) ()
 ⑤ 매우 비위생적(0점) ()

'19년도 도축장 출입구 CCTV 설치실태 평가표 (1점 이내 가점)

□ 도축장 CCTV 설치실태 평가 가점 (점)

1. 도축장을 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확인을 위해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① 출입구 CCTV 설치(0.5점)()
 - ② 녹화영상 사후관리(0.5점)()

V. 미생물 검사 평가표(20점)

◆ 지자체의 일반 미생물 검사 반영 방안

1. 반영 항목

-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식육 중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결과
- 일반세균, 대장균 검사, 살모넬라검사 결과 (비율가중치)

2. 반영 기간 : 2018.1.1 ~ 2018.12.31의 미생물 검사결과

3. 반영점수 : 20점 (5번의 ①+②)

4. 반영 방법

①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사결과 : 14점 만점

- 1종 도축장 : 산출결과 반영 - 14점 만점
- 2종 축종(소·돼지) 도축장 : 소 7점 + 돼지 7점
- 2종 축종(닭·오리) 도축장 : 닭 7점 + 오리 7점

② 살모넬라 검사결과 : 6점 만점

5. 미생물 검사결과에 따른 세부 적용배점 산출 방법

① 일반세균 및 대장균 검사결과

- 축종별 일반세균, 대장균 검출결과 판정기준 및 검출수가 차이가 있으므로 소·돼지·닭·오리 도축장 별 평가
- 일반세균 50%, 대장균 50%,
- 해당 시도 시험소에서는 각 도축장별로 해당 기간에 대한 점수를 산출

※ 아래 표 A, B 및 C의 양식을 활용하여 도축장별로 반영점수 기입

→ 산출식 계산방식 : (각 검사결과(%)×해당 가중치)의 합계×0.5 =반영점수

② 살모넬라 검사결과

- 부적합 판정건수가 없는 도축장 : 6점
- 부적합 판정건수 1회인 도축장 : 5점
- 부적합 판정건수 2회인 도축장 : 4점
- 부적합 판정건수 3회이상인 도축장 : 3점

6.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로 공문제출 (제출기한 2019.9.30.)

A. 소(염소) 도축장

검사항목	산출식			반영%	비고
	검사결과(%) (A)	가중치(B)	반영점수(A×B)		
일반세균	10 ² 이하 율	1	a	50%	위생지표
	10 ² 초과 ~ 10 ³ 이하 율	0.75	b		
	10 ³ 초과 ~ 10 ⁴ 이하 율	0.5	c		
	10 ⁴ 초과 ~ 10 ⁵ 이하 율	0.25	d		
	10 ⁵ 초과 율	0	e		
		합계(a~e)×0.5			
대장균	10 이하 율	1	a	50%	
	10 ~ 10 ² 이하 율	0.5	b		
	10 ² 초과 율	0	c		
			합계(a~c)×0.5		

B. 돼지 도축장

검사항목	산출식			반영%	비고
	검사결과(%) (A)	가중치(B)	반영점수(A×B)		
일반세균	10 ² 이하 율	1	a	50%	위생지표
	10 ² 초과 ~ 10 ³ 이하 율	0.75	b		
	10 ³ 초과 ~ 10 ⁴ 이하 율	0.5	c		
	10 ⁴ 초과 ~ 10 ⁵ 이하 율	0.25	d		
	10 ⁵ 초과 율	0	e		
		합계(a~e)×0.5			
대장균	10 이하 율	1	a	50%	
	10초과 ~ 10 ² 이하 율	0.66	b		
	10 ² 초과 ~ 10 ³ 이하 율	0.33	c		
	10 ³ 초과 율	0	d		
		합계(a~d)×0.5			

C. 닭 · 오리도축장

검사항목	산출식			반영%	비고
	검사결과(%)	가중치	반영점수		
일반세균	10 ² 이하 율	1	a	50%	위생지표
	10 ² 초과 ~ 10 ³ 이하 율	0.75	b		
	10 ³ 초과 ~ 10 ⁴ 이하 율	0.5	c		
	10 ⁴ 초과 ~ 10 ⁵ 이하 율	0.25	d		
	10 ⁵ 초과 율	0	e		
		합계(a~e)×0.5			
대장균	10 이하 율	1	a	50%	
	10초과 ~ 10 ² 이하 율	0.66	b		
	10 ² 초과 ~ 10 ³ 이하 율	0.33	c		
	10 ³ 초과 율	0	d		
		합계(a~d)×0.5			

별표 5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제20조 관련)**1. 시설기준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과 교육 기자재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2. 강사의 자격요건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선행요건 및 HACCP, 식품산업체의 인적·물적·관리적 현황 및 실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 가. 정부가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에서 HACCP팀장으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나. 정부 주관 또는 정부지정 기관에서 HACCP 관련 교육훈련을 50시간 이상 강의한 자
- 다.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 라. 대학이상의 식품관련 학과에서 HACCP과 관련한 강의경력이 6학기 이상인 자
- 마. 정부에서 2년이상 HACCP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바.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자

3. 강사의 확보 등

교육훈련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전문 강사를 2명 이상, HACCP 교육훈련 관리자 1명 이상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확보하여야 하고, 강사자격요건에 적합한 강사가 전체교육훈련시간의 60% 이상을 담당하여야 한다.

4. 교육훈련의 범위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교육훈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

- 가. HACCP 원칙과 절차의 기본적인 이해에 관한 사항.
- 나. 식품위생법상의 HACCP 관련 규정
- 다. HACCP의 실제적용기술 및 방법
- 라. HACCP 실시상황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HACCP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식품위생 및 일반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과정의 개설 및 운영

교육훈련기관은 HACCP 체계의 구축·운영·관리의 교육훈련 목적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타 다른 교육·훈련과정을 개설·운영하거나 병합하여 개설할 수 있다.

가. HACCP 신규 교육과정

- 1) HACCP 경영자과정 : HACCP 적용업소의 총괄운영·관리를 위해 영업자가 이해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훈련 하는 과정
- 2) HACCP 팀장과정 : HACCP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HACCP팀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교육·훈련 하는 과정

나. HACCP 정기교육·훈련과정 : HACCP 팀장 또는 팀원이 HACCP 시스템의 사후검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훈련 하는 과정

6.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축산물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기관단체이어야 한다.

별표 6-1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기관 등 지정 평가표

구분	평가내용		적부판정 (O/X)	비고
	항목	기준		
서류심사				
1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 1부	○ 기재사항 누락여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등록증 진위여부		
3	교육훈련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시설에 한함) 사본 1부	○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진위여부		
4	교육훈련관련 조직 및 직무별 명단 1부	○ 전문 강사 2인 이상, 교육훈련 관리자 1인 이상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확보하였는지 여부		
5	교육훈련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 증빙 서류 각 1부 1. 강사의 이력서 2. 식품기술사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 3. 경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에서 HACCP 팀장으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정부 주관 또는 정부지정 기관에서 HACCP 관련 교육훈련을 50시간 이상 강의한 자 ○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 대학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에서 HACCP과 관련한 강의경력이 6학기 이상인 자 ○ 정부에서 2년 이상 HACCP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 		강사 면접 시 참고

구분	평가내용		적부판정 (O/X)	비고	
	항목	기준			
6	교육 훈련 과정 운영 에 관한 규정 (1부)	과정별 교육 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자격요건에 적합한 강사가 전체교육훈련시간의 60% 이상을 담당하는가? ○ 과정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교육 (경영자/팀장) 2. 정기교육 3. 기초교육 4. 지도관 양성 및 실무교육 ○ 과정별 교육정원이 적정한가? (교육훈련 효과를 위해 가능한 30인 이내로 한다.) ○ 이론 및 실습 교육훈련이 적정하게 배분되어있는가? 		
		과정별 교육 훈련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절차 포함 여부 		
		과정별 교육 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비 포함 여부 		
		과정별 교육 훈련증명서 의 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명서 발행에 관한 규정 포함 여부 		
		교육훈련강사 및 교육훈련생의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했는지 여부 		
7	교육훈련과정별 교육 훈련교재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재내용이 과정별로 세분화되었는지 여부 			
8	최근 2년간 교육훈련 과정별 실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생 출석부 사본 1부 (연도제시) ○ 교육훈련증명서 발행 기록부 사본 1부 (연도제시)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함	

구분	평가내용		적부판정 (O/X)	비고
	항목	기준		
	평가결과(적합/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 평가항목 전항목이 O 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현장평가				
9	교육훈련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 냉·온방 시설 유무 		
10	교육훈련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 기자재를 갖추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컴퓨터, 빔 프로젝터, 기타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등 		
11	교육 대상별로 적합한 교육교재가 잘 갖추어져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류심사 시 제출된 교육교재와 일치하는지 여부 교육교재의 수 확보 		
12	강사의 자격요건에 해당된 자로서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발표 및 질의문답 		각 평가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평가결과(적합/부적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기준 : 평가항목 전항목이 O 판정을 받은 경우 적합한 것으로 처리한다.

□ 현장평가 12번 항목 관련 평가자 부여 점수

구분	평균	총계	평가자 1	평가자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5
점수							

□ 질의응답 평가(50점)

구분 (배점)	평가내용	평가					소견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평균 이하 (2)	매우 미흡 (1)	
질문1 (5)	·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 · 답변의 명확성 및 간결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질문2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질문3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질문4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질문5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질문6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질문7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질문8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질문9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질문10 (5)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계 (50)						총 점	

□ 총평가

구분	평가총점 (A+B)	강의발표 평가(A)	질의응답 평가(B)	총평의견
점수				

별표 6-3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사후 평가결과 보고서

기관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	
		FAX	
신청과정명			
지정/사후평가일자			

■ 적합 사항

평가항목	적합사항의견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부적합 사항	
평가항목	부 적 합 사 항 의 건

■ 지정 또는 사후관리 평가 최종 결과

총 합 의 견

특 기 사 항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인증 교육훈련 기관 지정평가/ 사후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 지정 또는 사후관리 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또는 사후관리 평가반	성 명	소 속	서 명
확인자 (신청기관대표)	성 명	소 속	서 명

첨부서류 : 1.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또는 사후관리 평가표

별표 6-4

HACCP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평가표

구분	평가내용		적부판정 (O/X)	비고
	항목	기준		
HACCP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1	교육훈련교재의 개발, 편찬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에 적합한 교재의 개발, 편찬 및 보급 실시 여부 		
2	교육훈련실시계획서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과정명 및 내용 ○ 교육훈련과정별 실시 시간, 시간 및 장소 ○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생의 정원 ○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 교재 ○ 교육훈련 결과의 평가방법 및 횟수 		추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개시 7일전에 제출
3	교육훈련정보의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교육훈련과정명, 과정별 기간, 시간 및 장소 ○ 교육훈련 시설 ○ 연간 교육훈련계획 ○ 교육훈련 강사현황 ○ 교육훈련 실적 		인터넷, 인쇄물, 안내물 등을 이용
4	기타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약처장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시 부여한 사항 준수 여부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과정 등을 지연 또는 폐쇄·거부하였는지 여부 ○ 교육훈련기관지정서 사본을 교육 훈련 장소에 게시하였는지 여부 ○ 식약처장의 교육훈련관련 자료제출 요구시 지체없이 이행하였는지 여부 ○ 교육훈련업무 관련사항 중 변동 사항이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식약 처장에게 즉시 보고 또는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구분	평가내용		적부판정 (O/X)	비고
	항목	기준		
4	기타 준수사항	○ 교육훈련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였는지 여부		
		○ 교육훈련결과를 매년도 종료후 익월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교육훈련기관 평가				
5	교육훈련방법및 내용	○ 교육훈련과정운영 준수 여부		
6	강사와 시설·설비	○ 전문강사가 전체교육훈련시간의 60% 이상을 담당하였는지 여부		가능한 30명 이내
		○ 과정별 교육훈련 인원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 교육훈련 시설·설비 유지현황 및 개선사항 확인		
7	교육 만족도	○ 과정별 교육훈련 후,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		인터넷에 공개 (적부판정 미포함)
8	기타 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일로부터 교육 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 1년 미만 □ 1년 이상)		시정 또는 6개월간 교육훈련과정 정지
		○ 교육훈련실적 및 내용이 극히 부실한 경우		6개월간 교육 훈련과정 정지
		○ 교육훈련수수료를 허위로 발급하였는지 여부		지정취소
		○ 교육훈련대장 미보관 또는 허위 기재 여부		
		○ 교육훈련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별표 7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제22조 관련)**1. 교육훈련교재의 개발, 편찬 및 보급**

교육훈련기관은 제20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재를 개발, 편찬하여 교육생에게 보급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실시계획서의 제출

가. 교육훈련기관은 매년 11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를 포함하는 차기 연도 교육훈련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교육훈련과정명 및 내용
- 2) 교육훈련과정별 실시 기간, 시간 및 장소
- 3)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생의 정원
- 4)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 교재
- 5) 교육훈련 결과의 평가 방법 및 횟수

나. 기타 당해연도 교육훈련실시계획에 추가하여 지정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개시 7일 전에 교육훈련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정보의 공개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호를 인터넷, 인쇄물, 안내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가. 개설 교육훈련과정명, 과정별 기간, 시간 및 장소
- 나. 교육훈련 시설
- 다. 연간 교육훈련계획
- 라. 교육훈련 강사현황
- 마. 교육훈련 실적

4. 기타 준수사항

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과정 등을 지연하거나 폐쇄·거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교육훈련기관지정서 사본을 교육훈련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교육훈련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마. 교육훈련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변동이 발생하거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보고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바. 교육훈련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사. 교육훈련결과를 매년도 종료 후 익월 3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8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품목 심벌(제27조 관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심벌이나 현판은 다음 기본 심벌을 참조하여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 또는 디자인에 적합하게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식품 또는 축산물 구분이 필요한 경우 심벌 내부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안전관리인증식품 또는 안전관리인증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음).

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벌

그림1. 도축장, 집유장,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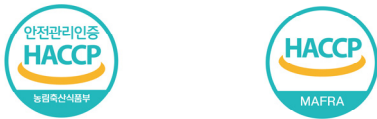


그림2. 그 밖의 HACCP 적용작업장·업소



그림3.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인증)작업장·업소·농장 현판 건본

그림 1. 도축장·집유장·농장

인증번호 제 ○ ○ 호 (인증번호는 생략 가능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 ○ ○ (업소명 또는 농장명)

그림 2. 그 외 HACCP 적용작업장·업소

인증번호 제 ○ ○ 호 (인증번호는 생략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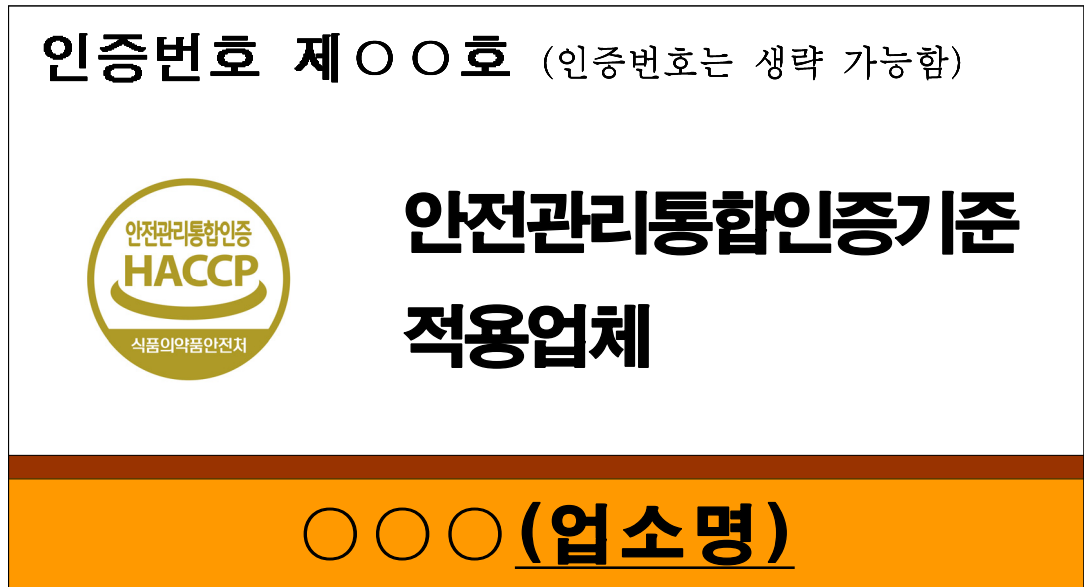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

○ ○ ○ (업소명)

그림 3.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현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과 가로(2):세로 (1) 크기의 비는 가능한 본 견본과 같아야 한다.

3)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도축장 위생관리 점검표

작업장명	주소	승인번호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O, X)	비고
작업전 위생관리 (일시 :)	1. 작업장 관계자의 작업전 위생점검 기록확인 및 적절한 개선조치 이행여부			
	2. 작업장 출입구 등의 소독설비 작동 및 소독수 투입여부			
	3. 작업장 등의 바닥, 벽, 천정의 청결여부			
	4. 축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설비, 장비, 도구, 칼, 톱 등 청결여부			
	5. 장비, 도구, 배관 등 부식 및 축산물 오염여부			
	6. 작업라인 칼 소독조 적정온도(83℃이상) 유지여부(온도측정)			℃
	7. 작업장내 온도, 조명(조도, 보호망), 환기 및 응축수 관리상태 여부 (측정한 수치 및 측정 장소 기록)			
	8. 배수구의 청결 및 덮개 관리상태 여부			
	9. 용수의 위생관리 여부(저수조 위생상태, 수질검사 등)			
	10. 방충방서 관리여부(해충유입차단, 설비 작동여부 등)			
	11. 지육의 적정 보관 및 지육간 일정간격 유지 여부			
	12. 종업원의 위생수칙 준수 여부(출입시 소독, 위생복 청결 등)			
작업중 위생관리 (일시 :)	13. 작업중 위생점검 관련 모니터링검증기록 유지 및 담당자 현장활동 여부			
	14. 지육오염 방지를 위해 칼, 기구, 톱 등을 83℃ 이상 물로 수시 세척·소독 여부			
	15. 작업장내 온도, 조명(조도, 보호망), 환기 및 응축수 관리상태 여부 (측정한 수치 및 측정 장소 기록)			
	16. 작업장 바닥 핏물 등 물기제거, 배수상태 및 폐수 역류여부			
	17. 지육 등이 벽,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위생적 처리 및 운반여부			
	18. 지육이 분변 또는 장 내용물에 오염되지 않게 위생적 처리여부			
	19. 방충방서 관리여부(해충유입차단, 설비 작동여부 등)			
	20. 지육의 적정 보관 및 지육간 일정간격 유지 여부			
	21. 종업원의 위생수칙 준수 여부(출입시 소독, 위생복 청결, 동선준수 등)			
HACCP 관리	22. CCP 모니터링, 검증(계측기구 검교정 포함) 및 개선조치 관련 기록 유지 여부			
	23. CCP 모니터링, 검증 담당자 현장 활동, 적절한 개선조치이행 여부			
기 타	24.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관련 기록유지 및 검사이행 여부			
	25. 부적합제품의 적절한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 여부			
	26. 기타 점검이 필요한 사항			
확인일자	작업장 책임자	소 속	(서 명)	
		직성명		
점검일자	점검자	소 속	(서 명)	
		직성명		

별지 제2호 서식

부적합 통보서

작업장명		허가번호	
일 자		발급번호	
수 신 자 (소속 및 직·성명)			
부적합 구분	<input type="checkbox"/> 자체위생관리기준	<input type="checkbox"/> HACCP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부적합 내역 :			
검사관 서명 (소속 및 직·성명)			
<input type="checkbox"/> 개선조치 내역 :			
<input type="radio"/> 즉각적인 개선조치 :			
<input type="radio"/> 향후 조치계획 :			
작업장 확인자 (소속 및 직·성명)		일 자	
검사관 서명 (소속 및 직·성명)		일 자	

라.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18-2호, 2018. 1. 3.)

1) 주요 조항

<p>목적 (제1조)</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별표 3에 따라 식육중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p>
<p>정의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니터링(Monitoring)검사"라 함은 도축장·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 (이하 '작업장 등'이라 한다)의 위생관리수준 파악 및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2. "탐색조사(Exploratory)"라 함은 모니터링검사 항목 이외의 병원성미생물을 대상으로 분포상황 등 오염도 조사를 통해 모니터링검사의 실효성을 평가 하고 식육의 위생관리를 위한 검사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p>검사기관 (제3조)</p>	<p>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함</p>
<p>검사대상 품목 (제4조)</p>	<p>작업장 등에서 도살·처리·가공·판매되는 소, 돼지, 닭, 오리 및 양(염소를 포함 한다)의 식육을 대상으로 함</p>
<p>검사기관별 업무 (제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육 중 미생물검사 계획 수립 2. 분기별 검사결과 종합분석 3. 식육의 탐색조사 등 기타 조사 관련사항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하는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관련 기술개발·교육 2. 미생물 확인동정 등 확인검사 3. 기타 식육 미생물검사 관련사항 4. 탐색조사 계획수립과 관련된 사항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계획하여 시행하는 미생물 탐색조사시 시료채취 및 검사 2.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시 수행하는 미생물 검사 ④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다만, 도축장에서의 미생물검사에 한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육중 미생물검사 계획 수립 2. 분기별 검사결과 종합분석 및 보고

<p>검사기관별 업무 (제5조)</p>	<p>3. 미생물 확인동정 등 확인검사 4. 검사관련 기술개발·교육 5. 탐색조사 계획수립 및 검사 6. 기타 식육 미생물검사 관련사항</p> <p>⑤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p> <p>1.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2. 식육의 탐색조사(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 검사계획 수립 실시) 3. 분기별/작업장별 검사실적 보고</p>
<p>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 (제6조)</p>	<p>① 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용 시료채취는 도축장의 예냉실, 식육포장처리장의 제품보관실, 식육판매장의 식육보관실 또는 진열상자에서 채취함을 원칙으로 함</p> <p>② 검사용 시료의 취급요령 및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름</p>
<p>검사구분 및 대상 미생물 (제7조)</p>	<p>①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항목</p> <p>1. 모니터링검사 : 대장균(<i>Escherichia coli</i> Biotype 1)수 및 일반세균수. 다만, 도축장에서 살모넬라균의 검사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실시</p> <p>2. 탐색조사 : 국내·외적으로 문제되는 병원성미생물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미생물</p> <p>② 검사항목은 필요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도축장에서의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p>
<p>검사실시 및 계획보고 (제8조)</p>	<p>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관할지역의 작업장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의 모니터링검사 세부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통보)함</p> <p>② 모니터링검사 항목에 대한 미생물검사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이 관내 도축장(단, 양 및 오리는 전문 도축장에 한함)을 대상으로 월 4회 이상, 매회 축종별로 각 3건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하고,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은 연간 검사배정 물량중 자체계획 수립 후 실시함</p> <p>③ 탐색조사 항목에 대한 미생물검사는 병원성미생물 오염도 분포조사 및 검사인력의 검사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p>

<p>확인검사 실시 등 (제9조)</p>	<p>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미생물시험법에 준한 검사결과 최종동정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리균주 및 생화학적 성상검사 등 자체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확인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의 확인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함</p> <p>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으로부터 의뢰된 분리균주에 대한 최종확인시험 결과를 검사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함</p>																																		
<p>검사기록서 유지 등 (제10조)</p>	<p>미생물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장은 검사와 관련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p>																																		
<p>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제11조)</p>	<p>미생물검사 결과의 권장기준은 다음과 같음</p> <table border="1" data-bbox="382 727 1238 962">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일반세균수 (CFU/g, cm²)</th> <th colspan="3">대장균수 (CFU/g, cm²)</th> </tr> <tr> <th>도축장</th> <th>식육포장 처리장</th> <th>식육판매장</th> <th>도축장</th> <th>식육포장 처리장</th> <th>식육판매장</th> </tr> </thead> <tbody> <tr> <td>쇠고기, 양고기</td> <td>1 × 10⁶ 이하</td> <td>5 × 10⁶ 이하</td> <td>5 × 10⁶ 이하</td> <td>1 × 10⁵ 이하</td> <td>1 × 10⁵ 이하</td> <td>1 × 10⁵ 이하</td> </tr> <tr> <td>돼지고기</td> <td>1 × 10⁶ 이하</td> <td>5 × 10⁶ 이하</td> <td>5 × 10⁶ 이하</td> <td>1 × 10⁴ 이하</td> <td>1 × 10⁴ 이하</td> <td>1 × 10⁴ 이하</td> </tr> <tr> <td>닭고기, 오리고기</td> <td>1 × 10⁶ 이하</td> <td>5 × 10⁶ 이하</td> <td>5 × 10⁶ 이하</td> <td>1 × 10⁵ 이하</td> <td>1 × 10⁴ 이하</td> <td>1 × 10⁴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일반세균수 (CFU/g, cm ²)			대장균수 (CFU/g, cm ²)			도축장	식육포장 처리장	식육판매장	도축장	식육포장 처리장	식육판매장	쇠고기, 양고기	1 × 10 ⁶ 이하	5 × 10 ⁶ 이하	5 × 10 ⁶ 이하	1 × 10 ⁵ 이하	1 × 10 ⁵ 이하	1 × 10 ⁵ 이하	돼지고기	1 × 10 ⁶ 이하	5 × 10 ⁶ 이하	5 × 10 ⁶ 이하	1 × 10 ⁴ 이하	1 × 10 ⁴ 이하	1 × 10 ⁴ 이하	닭고기, 오리고기	1 × 10 ⁶ 이하	5 × 10 ⁶ 이하	5 × 10 ⁶ 이하	1 × 10 ⁵ 이하	1 × 10 ⁴ 이하	1 × 10 ⁴ 이하
구분	일반세균수 (CFU/g, cm ²)			대장균수 (CFU/g, cm ²)																															
	도축장	식육포장 처리장	식육판매장	도축장	식육포장 처리장	식육판매장																													
쇠고기, 양고기	1 × 10 ⁶ 이하	5 × 10 ⁶ 이하	5 × 10 ⁶ 이하	1 × 10 ⁵ 이하	1 × 10 ⁵ 이하	1 × 10 ⁵ 이하																													
돼지고기	1 × 10 ⁶ 이하	5 × 10 ⁶ 이하	5 × 10 ⁶ 이하	1 × 10 ⁴ 이하	1 × 10 ⁴ 이하	1 × 10 ⁴ 이하																													
닭고기, 오리고기	1 × 10 ⁶ 이하	5 × 10 ⁶ 이하	5 × 10 ⁶ 이하	1 × 10 ⁵ 이하	1 × 10 ⁴ 이하	1 × 10 ⁴ 이하																													
<p>모니터링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제12조)</p>	<p>① 식육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한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작업장 등의 영업자에게 위생감독 강화를 지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거 해당 작업장 등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도축장에 한한다), 생체·해체검사기준(도축장에 한한다), 시설기준,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공개할 수 있음</p>																																		
<p>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제13조)</p>	<p>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해당 작업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영업자에게 제공하여 작업장 위생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②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할지역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고, 동시에 해당 작업장 등에 알려주어야 함. 다만, 도축장에서의 검사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도 보고(통보)하여야 함</p> <p>③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분기별 식육 중 모니터링검사 실적과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 분기 첫 달 5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농림축산</p>																																		

<p>검사결과 활용 및 보고 (제13조)</p>	<p>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함</p> <p>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자체검사결과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실시한 도축장 미생물검사 실적을 분기별로 취합하여 오염도 추이 등 분석 보고서를 다음 분기 첫 달 2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함</p>
<p>검사계획 보고 등 (제14조)</p>	<p>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연도의 도축장에서의 식육에 대한 미생물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도축장에서의 식육의 미생물 검사계획(검사물량 등)을 확정하여 12월 10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연도의 식육포장처리장과 식육판매장에서의 식육에 대한 미생물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도축장에서의 검사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매년 12월중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함</p>
<p>기술교육 (제15조)</p>	<p>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미생물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이 미생물검사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 의뢰시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 관리 결과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3. HACCP 적용 작업장의 미생물검사 전담요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식육 미생물 검사관련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4. 기타 최신 검사기술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정도관리 등 (제16조)</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축산물 검사요원의 검사숙련도 향상 및 검사기관 상호간의 표준화 유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3조제4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미생물검사 수행상황을 점검·지도할 수 있음</p>
<p>업무지원 등 (제17조)</p>	<p>시·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식육중 미생물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여야 함</p>
<p>업무감독 등 (제18조)</p>	<p>시·도지사는 검사기관의 검사장비 활용의 극대화 및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함</p>

※ 도축장의 미생물 검사 비교

구분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3]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식약처 고시)																																																																										
검사 주체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대장균수) 영업자 (살모넬라균)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대상 업체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도축장																																																																										
대상 미생물	(모니터링검사) 대장균수, 일반세균수 * 다만, 도축장에서 살모넬라균의 검사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실시 (탐색조사) 국내·외적으로 문제되는 병원성 미생물을 대상으로 검역본부(세균질병과·조류질병과)에서 수행	대장균수, 살모넬라균																																																																										
기준	<p>· 권장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일반세균수(CFU/g, cm²)</th> <th colspan="3">대장균수(CFU/g, cm²)</th> </tr> <tr> <th>도축장</th> <th>식육포장 처리장</th> <th>식육판매장</th> <th>도축장</th> <th>식육포장 처리장</th> <th>식육판매장</th> </tr> </thead> <tbody> <tr> <td>최고기, 양고기</td> <td>1 × 10⁷ 이하</td> <td>5 × 10⁷ 이하</td> <td>5 × 10⁷ 이하</td> <td>1 × 10⁷ 이하</td> <td>1 × 10⁷ 이하</td> <td>1 × 10⁷ 이하</td> </tr> <tr> <td>돼지고기</td> <td>1 × 10⁷ 이하</td> <td>5 × 10⁷ 이하</td> <td>5 × 10⁷ 이하</td> <td>1 × 10⁷ 이하</td> <td>1 × 10⁷ 이하</td> <td>1 × 10⁷ 이하</td> </tr> <tr> <td>닭고기, 오리고기</td> <td>1 × 10⁷ 이하</td> <td>5 × 10⁷ 이하</td> <td>5 × 10⁷ 이하</td> <td>1 × 10⁷ 이하</td> <td>1 × 10⁷ 이하</td> <td>1 × 10⁷ 이하</td> </tr> </tbody> </table>	구분	일반세균수(CFU/g, cm ²)			대장균수(CFU/g, cm ²)			도축장	식육포장 처리장	식육판매장	도축장	식육포장 처리장	식육판매장	최고기, 양고기	1 × 10 ⁷ 이하	5 × 10 ⁷ 이하	5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돼지고기	1 × 10 ⁷ 이하	5 × 10 ⁷ 이하	5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닭고기, 오리고기	1 × 10 ⁷ 이하	5 × 10 ⁷ 이하	5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p>· 실행기준</p> <p>① 대장균수</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도축장</th> <th rowspan="2">허용기준치 (CFU/cm², mL)</th> <th rowspan="2">최대허용한계치 (CFU/cm², mL)</th> <th colspan="2">대장균수 평가기준</th> </tr> <tr> <th>검사시료수</th> <th>허용기준치 이상에서 최대허용한계치 이하 까지 최대 허용 시료수</th> </tr> </thead> <tbody> <tr> <td>소</td> <td>5 미만</td> <td>100</td> <td>13</td> <td>3</td> </tr> <tr> <td>돼지</td> <td>10 미만</td> <td>10,000</td> <td>13</td> <td>3</td> </tr> <tr> <td>닭·오리</td> <td>100 미만</td> <td>1,000</td> <td>13</td> <td>3</td> </tr> </tbody> </table> <p>② 살모넬라</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도축장</th> <th colspan="2">살모넬라균 검출 허용기준</th> <th rowspan="2">살모넬라균 검출율(연간)</th> </tr> <tr> <th>검사시료수</th> <th>최대허용 검출 시료수</th> </tr> </thead> <tbody> <tr> <td>소</td> <td>26</td> <td>1</td> <td>2.5% 이내</td> </tr> <tr> <td>돼지</td> <td>26</td> <td>2</td> <td>7% 이내</td> </tr> <tr> <td>닭·오리</td> <td>26</td> <td>5</td> <td>18% 이내</td> </tr> </tbody> </table>	도축장	허용기준치 (CFU/cm ² , mL)	최대허용한계치 (CFU/cm ² , mL)	대장균수 평가기준		검사시료수	허용기준치 이상에서 최대허용한계치 이하 까지 최대 허용 시료수	소	5 미만	100	13	3	돼지	10 미만	10,000	13	3	닭·오리	100 미만	1,000	13	3	도축장	살모넬라균 검출 허용기준		살모넬라균 검출율(연간)	검사시료수	최대허용 검출 시료수	소	26	1	2.5% 이내	돼지	26	2	7% 이내	닭·오리	26	5	18% 이내
구분	일반세균수(CFU/g, cm ²)			대장균수(CFU/g, cm ²)																																																																								
	도축장	식육포장 처리장	식육판매장	도축장	식육포장 처리장	식육판매장																																																																						
최고기, 양고기	1 × 10 ⁷ 이하	5 × 10 ⁷ 이하	5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돼지고기	1 × 10 ⁷ 이하	5 × 10 ⁷ 이하	5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닭고기, 오리고기	1 × 10 ⁷ 이하	5 × 10 ⁷ 이하	5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1 × 10 ⁷ 이하																																																																						
도축장	허용기준치 (CFU/cm ² , mL)	최대허용한계치 (CFU/cm ² , mL)	대장균수 평가기준																																																																									
			검사시료수	허용기준치 이상에서 최대허용한계치 이하 까지 최대 허용 시료수																																																																								
소	5 미만	100	13	3																																																																								
돼지	10 미만	10,000	13	3																																																																								
닭·오리	100 미만	1,000	13	3																																																																								
도축장	살모넬라균 검출 허용기준		살모넬라균 검출율(연간)																																																																									
	검사시료수	최대허용 검출 시료수																																																																										
소	26	1	2.5% 이내																																																																									
돼지	26	2	7% 이내																																																																									
닭·오리	26	5	18% 이내																																																																									
결과조치	<p>· 권장기준 초과 시 해당 작업장에게 위생감독 강화 지시</p> <p>· 위생관리기준 등의 법적 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점검 후 위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기준 초과에 따른 직접적 행정조치 없음)</p>	<p>· 대장균수 부적합 및 살모넬라균 부적합 : 시정조치</p> <p>· 1년 이내 부적합 재발생 시 HACCP 관리계획 재평가</p> <p>· 살모넬라균 2회 연속 및 1년간 3회 이상 부적합 시 HACCP 관리계획 재검토 및 변경, 시설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 조치</p>																																																																										
보고경로	시·도 축산물시험·검사기관 → 영업자(매월) 및 검역본부(분기별 보고, 단, 권장기준 초과 시에는 즉시보고)	시·도 축산물시험·검사기관 → 시·도(매월) → 검역본부(분기)																																																																										

※ 도축장 HACCP 조사·평가 시 반영되는 미생물 점수 : 대장균수, 일반세균수의 모니터링검사 결과 및 HACCP 고시 별표 3.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의 살모넬라균 검사 결과임

2) 별지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식육 중 미생물 검사실적

가. 도축장 미생물검사실적

□ 모니터링검사 실적

(단위 : 시료수)

구 분	연간 계획 건수	OO 분기															누 계									
		OO 월					OO 월					OO 월					분기 누계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일반세균수																										
10 ² 이하																										
10 ² 초과~10 ³ 이하																										
10 ³ 초과~10 ⁴ 이하																										
10 ⁴ 초과~10 ⁵ 이하																										
10 ⁵ 초과~10 ⁶ 이하																										
10 ⁶ 초과																										
대장균수																										
10 ¹ 이하																										
10 ¹ 초과~10 ² 이하																										
10 ² 초과~10 ³ 이하																										
10 ³ 초과~10 ⁴ 이하																										
10 ⁴ 초과																										

※ A: 쇠고기, B: 돼지고기, C: 양고기, D: 닭고기, E: 오리고기

※ 누계는 1분기부터 해당 분기까지의 누계로 작성

□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 위반내역

구 분	OO 분기															누 계									
	OO 월					OO 월					OO 월					분기 누계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 A: 쇠고기, B: 돼지고기, C: 양고기, D: 닭고기, E: 오리고기

※ 작업장명(위반시료수) 기록

※ 누계는 1분기부터 해당분기까지의 누계로 작성

나. 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 미생물검사실적

□ 모니터링검사 실적

(단위 : 시료수)

구 분	연간 계획 건수	OO 분기								누 계	
		OO 월		OO 월		OO 월		분기 누계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일반세균수											
10 ³ 이하 10 ³ 초과~10 ⁴ 이하 10 ⁴ 초과~10 ⁵ 이하 10 ⁵ 초과~10 ⁶ 이하 10 ⁶ 초과~5×10 ⁶ 이하 5×10 ⁶ 초과											
대장균수											
10 ¹ 이하 10 ¹ 초과~10 ² 이하 10 ² 초과~10 ³ 이하 10 ³ 초과~10 ⁴ 이하 10 ⁴ 초과											

※ 누계는 1분기부터 해당분기까지의 누계로 작성

□ 모니터링검사 결과 권장기준 위반내역

구 분	OO 분기								누 계	
	OO 월		OO 월		OO 월		분기 누계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식육 포장 처리장	식육 판매장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 작업장명(위반시료수) 기록

※ 누계는 1분기부터 해당분기까지의 누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도축장별 모니터링검사 실적

○ 도축장명 :

(단위 : 시료수)

구 분	연간 계획 건수	OO 분기																				누 계				
		OO 월					OO 월					OO 월					분기 누계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A	B	C	D	E
일반세균수																										
10 ² 이하																										
10 ² 초과~10 ³ 이하																										
10 ³ 초과~10 ⁴ 이하																										
10 ⁴ 초과~10 ⁵ 이하																										
10 ⁵ 초과~10 ⁶ 이하																										
10 ⁶ 초과																										
대장균수																										
10 ¹ 이하																										
10 ¹ 초과~10 ² 이하																										
10 ² 초과~10 ³ 이하																										
10 ³ 초과~10 ⁴ 이하																										
10 ⁴ 초과																										

※ A: 쇠고기, B: 돼지고기, C: 양고기, D: 닭고기, E: 오리고기
 ※ 누계는 1분기부터 해당 분기까지의 누계로 작성

마.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식약처고시 제2018-51호, 2018. 6. 27.)

1) 주요 조항

<p>목적 (제1조)</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라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p>
<p>정의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니터링검사"라 함은 유해성잔류물질에 대한 오염 또는 잔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출하 전 잔류검사 : 양축가가 출하예정가축군의 오줌, 혈액, 근육, 내장, 지방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하여 설립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할 경우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 다만, 시·도지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료의 오염방지 및 효율적인 채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의 근육, 내장, 지방 등의 시료는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취하도록 할 수 있음 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관이 도축시 도체의 근육, 내장 지방 등을 채취하여 식육내 유해물질의 잔류여부에 대해 실시하는 잔류물질 검사 2. "규제검사"라 함은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기립불능 가축, 화농부위·주사자국 등이 있거나 생체·해체 검사에서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되는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또는 그 생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검사결과 판정 시까지 도축장 출고보류 조치를 전제로 함 3. "탐색조사"라 함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탐색 조사 결과는 차후 검사계획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4. "잔류위반농가"라 함은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및 규제검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한 농장)를 말함
<p>검사기관 (제4조)</p>	<p>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 기관에서 실시함.</p>

<p>검사대상 품목 (제4조)</p>	<p>국내 도축장에 출하되었거나, 출하하고자 하는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를 포함한다) 및 말 등을 대상으로 함</p>
<p>잔류물질 검사항목 (제5조)</p>	<p>① 모니터링검사 항목은 항균제(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등을 대상으로 함</p> <p>② 규제검사 항목은 페니실린계·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물질, 설파제 및 퀴놀론계 합성항균제를 포함하여야 하고,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하여는 이들 항목 외에 이전 모니터링검사 등에서 위반된 잔류 물질을 포함하여야 함</p> <p>③ 탐색조사 항목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국내외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물질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도로 정함</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검사항목은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별도 지시가 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p>
<p>잔류물질 검사방법 및 조치 (제6조)</p>	<p>① 검사시료채취,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별표 1과 별표 2에 따름</p> <p>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5조제3항의 탐색조사 항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조사계획을 1월 중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국내외에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는 물질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탐색조사의 계획과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함</p> <p>③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탐색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시료채취에 협조하여야 함</p>
<p>검사기록 및 보존 (제7조)</p>	<p>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장은 검사와 관련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p>
<p>출하제한 및 잔류위반농가 관리 등 (제8조)</p>	<p>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와 규제검사의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p> <p>1.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해당 농가를 출하제한농가로 지정하고 농가식별정보(「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 및 농장주 생년월일) 및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도 축산물</p>

**출하제한 및
잔류위반농가
관리 등
(제8조)**

- 시험·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제1호에 따른 출하제한농가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하제한농가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간이정성검사의 결과가 양성인 가축의 정밀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고 있는 다른 가축에 대하여 출하 및 양도를 제한하여야 함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출하제한농가의 출하제한기간 중에 불가피하게 해당 가축을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경우 규제검사를 실시함을 해당 농가에 통보하여야 함
 5. 제4호에 따라 불가피하게 출하하는 경우 해당 농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농가가 출하하고자 하는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게 출하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6. 제5호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출하제한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에 대해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②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정밀정량검사 결과 또는 제11조1항에 따라 유통 중인 식육, 포장육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검사결과를 입력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③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를 관할하는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농가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농가에도 통보하여야 함
 - ④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관내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농가의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⑤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가 규제검사기간 동안 익명으로 출하하지 않도록 감시·감독하고 해당 농가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1.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후 휴약기간을 준수하도록 조치
 2.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10대 수칙을 안내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조치
 3. 잔류위반농가의 규제검사기간 동안 양도된 가축에 대하여 도축장 출하시 규제검사 조치
 - ⑥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출하하는 가축에 대한 규제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잔류위반

<p>출하제한 및 잔류위반농가 관리 등 (제8조)</p>	<p>농가가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규제검사를 실시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함</p> <p>⑦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가에 대하여 규제검사기간을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 연장하여 실시하여야 함</p> <p>⑧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된 가축이 양수농가에서 도축장으로 출하될 시 규제검사를 실시하며 규제검사 기간은 잔류위반농가 지정 당시의 해당 농가 규제검사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p> <p>⑨ 시·도지사는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결과에 따라 지정된 잔류위반농가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잔류원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약사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부과하도록 하여야 함</p>
<p>잔류위반농가 등 지정의 해제 (제9조)</p>	<p>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잔류위반농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를 연속 3회 이상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규제검사는 잔류위반지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상의 간격으로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건의 출하두수 이상(돼지의 경우는 매 출하시마다 잔류위반농가 지정 건의 출하두수를 포함한 이전 3회의 평균 출하 두수 이상)으로 출하하여 3회 연속 검사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잔류위반농가 지정일로부터 최소 30일이 경과하여야 함 <p>② 제1항에 따른 잔류위반농가의 지정 해제는 해당 농가가 출하내역 등 관련 정보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함</p> <p>③ 제1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의 지정을 해제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해당 농가 및 양수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농가 및 양수농가에게 통보하여야 함</p> <p>④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간이정성검사 양성에 따른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도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에 입력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출하제한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함</p>

<p>잔류위반농가 정보의 관리 등 (제10조)</p>	<p>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 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잔류위반농가 관리 및 차년도 식육 잔류 검사 계획에 활용하여야 함</p> <p>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잔류위반농가 정보를 이력 관리시스템에 전송하고 동거축 정보를 제공받아, 양도·양수 등 관련정보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활용하게 할 수 있음</p>
<p>유통단계 수거·검사 위반 시 조치 (제11조)</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식육포장리처장, 식육판매장의 식육 또는 포장육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생산농가 정보를 포함한 검사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시·도지사, 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및 해당 농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p> <p>② 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관할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해당 농가에 대한 잔류위반농가 지정, 규제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p>
<p>검사결과 의 보고 등 (제12조)</p>	<p>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매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 검사 실적을 검사완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함</p> <p>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분기별 식육의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다음 분기 첫 달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검사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p> <p>③ 시·도지사는 「약사법」 제85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 실적을 매분기별로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p>
<p>검사계획 등 보고 (제13조)</p>	<p>①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역내 도축장별·축종별 도축두수 및 도축검사결과, 도축장별 실험실 및 냉장 시설, 검사장비 보유현황 등에 근거한 축종별 규제검사 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10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 하여야 함</p>

<p>검사계획 등 보고 (제13조)</p>	<p>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시·도별 검사계획과 탐색조사 결과, 잔류위반빈도 등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확정된 차년도 계획을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함</p>
<p>잔류물질 검사 기술교육 및 정도관리 (제14조)</p>	<p>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잔류물질검사 전담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장이 잔류물질검사요원에 대하여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탁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2.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최신검사방법의 전수 등 기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검사요원의 잔류분석능력 향상과 검사기관 간의 표준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도관리(Blind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p> <p>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검사실적 분석결과 및 제14조제2항의 정도관리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대해 잔류물질검사 수행상황을 점검·지도할 수 있음</p>
<p>업무지원 (제15조)</p>	<p>시·도지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술 인원의 확보, 기술교육의 실시, 예산확보 등을 지원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과태료 부과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함</p>
<p>연도별 검사물량 등 (제16조)</p>	<p>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대상물질 및 각 축산물 시험·검사기관별 검사물량을 확정된 후 매년 12월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각 및 각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p>

※ 잔류물질 위반농가 해제방법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 지정한 곳에서 해제
- 문서는 농가 소재지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제(안전관리해제 요청 필요)

검사방법 및
조치
(제6조)

식육 등의 잔류물질 검사 시료채취,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별표 1]

1. 모니터링 검사

가.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 1) 시료채취 장소 : 농장
- 2) 시료채취단위 및 채취(의뢰)량
 - 가) 소·돼지·양(염소 포함)·말 :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10%이상
 - 오줌 5mℓ 또는 혈액(혈청으로서) 1mℓ이상(냉장)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
 - 나) 닭·오리 :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0.1%이상
 - 혈액(혈청으로서) 1mℓ이상(냉장 운반)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별표 2 참조)

출하수수	검사수수
1,500수 이하	3수 이상
1,501~3,000수	5수
3,001수 이상	6수 이상

다) 닭·오리·메추리의 근육, 간, 신장, 지방 : 농장별 출하예정물량 규모를 기준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하고, 가축의 사체를 부검하여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의 경우 10g 이상, 신장 및 간의 경우 전체를 채취 후 냉장 운반하여 사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별표 2 참조)

라) 출하예정 가축에 대하여 돈방·계군별로 균등하게 시료채취

마)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하 전 잔류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양축농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농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검사방법 및 결과판정

가) 검사방법 : EEC 4-plate법 등 오줌 또는 혈청 중 항균물질 간이검사에 적합한 방법. 잔류위반농가의 경우 지정 당시 검출된 잔류위반물질에 대해 식육의 잔류허용기준 이하를 검출할 수

검사방법 및
조치
(제6조)

- 있는 방법으로 검사
- 나) 결과판정 : 검사결과의 판정은 제조회사의 결과판정 요령에 따른다.
- 4)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 가) 검사결과를 축주에게 신속히 통보. 단, 양성판정시는 최종약품 투약일, 투약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고려하여 휴약기간 준수 후에 출하토록 조치
 - 나) 검사결과 음성판정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농가의 요구가 있을 때 검사관이 검사가축과 출하가축이 같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출하가축에 한하여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또는 규제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잔류위반농가가 출하예정 가축에 대해 동 검사를 의뢰한 경우 규제검사를 1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 1) 시료채취장소 : 도축장
- 2) 시료채취단위
 - 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소속 검사관(또는 책임수의사)이 월별계획에 따라 가능한 농장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1농장 1시료(닭, 오리의 경우 1수) 이상에서 검사에 필요한 시료(근육, 지방, 신장 또는 간)를 채취
 - 나) 소의 경우 한우·젖소·육우·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염소를 대상으로 적절히 구분 채취
- 3) 시료채취 부위 및 채취량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를 채취하되,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의 경우 10g 이상,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을 채취
- 4) 검사방법 및 결과조치
 - 가) 검사방법
 -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 (2)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근육, 신장, 간 등)에서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당해 검사시료에서 추정되는 계열의 검사항목에 대한 정밀정량검사 실시
 - (가) 항생물질

검사방법 및
조치
(제6조)

- ① 신장에서 EEC 4-plate법, 미생물학적 신속간이검사법, 미생물수용체법 등을 이용하여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 도체에 대해서는 페니실린계 · 테트라 사이클린계 · 마크로라이드계 · 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를 포함하여 정밀정량검사 실시
- ② 다만, 클로람페니콜의 경우 근육에서 면역학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 후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곧바로 정밀정량검사 실시. 정밀정량검사 결과 0.5ng/g(분석법의 정량한계) 초과 검출시 부적합 판정
- ③ 기타 항생물질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신장 등)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나) 합성항균제

- ① 설파제 및 퀴놀론계 : 신장에서 미생물학적 방법(퀴놀론계 약물의 경우 *E. coli* 균주 이용), 면역학적 방법 등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이들 물질군에 대해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곧바로 정밀정량검사 실시
- ② 기타 합성항균제(항원충제 및 구충제 포함)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등)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다) 호르몬제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오줌 등)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라) 기타 약물(항염증제·진정제 등)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등)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마) 농약

- ① 유기인계 및 유기염소계 농약 : 지방 또는 근육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 ② 카바메이트계 농약 : 근육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 ③ 기타 농약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지방 등)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나) 결과조치

- (1)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동 요령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는 등 출하제한농가로 관리
- (2)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동 요령 제8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잔류방지 개선 대책 지도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동 요령 제8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안전관리

검사방법 및
조치
(제6조)

2) 가목 1)의 가), 나), 바) 및 사)에 해당하는 가축 : 농장별 출하규모를 기준으로 시료채취

소, 말		돼지·양(염소 포함)		닭·오리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수수	검사수수
5두 이하	2두 이상	40두 이하	2두 이상	1,500수 이하	3수 이상
6~10두	4두	41~80두	4두	1,501~3,000수	5수
11두 이상	5두 이상	81두 이상	5두 이상	3,001수 이상	6수 이상

라. 시료채취 부위 및 채취량

- 1)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를 채취하되,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 10g,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 채취
- 2) 근육에 화농부위나 주사자국이 있는 경우 당해 부위를 채취하며, 이버멕틴 등 근육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된 해당 가식부위를 채취하되, 지방인 경우 10g,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 채취

마. 검사방법 및 결과조치

- 1) 검사방법
 -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서 정한 방법 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 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 나) 신속한 규제검사를 위하여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불검출 기준일 경우 정량한계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는 면역학적, 미생물학적 방법 등의 원리를 이용한 신속한 검사키트를 사용할 수 있음
 - 다) 규제검사 대상 도체에 대한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 (1) 페니실린계, 테트라사이클린계, 설파제 및 퀴놀론계 약물 신장 시료에서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시 신장과 근육 시료에서 정밀정량검사를 실시
 - (2) 기타 항생물질·합성항균제·호르몬·농약 등 검사요령 제5조제2항 관련 정규 규제검사항목 이외의 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에서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불검출 기준일

검사방법 및
조치
(제6조)

경우 정량한계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는 면역학적 간이검사 기법 등 적용 가능

2) 결과조치

- 가)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신장 등)에서 미생물학적 방법(퀴놀론계 약물의 경우 *E. coli* 균주 이용), 면역학적 방법 등 간이정성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와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출고 조치
- 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동 요령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체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는 등 출하제한농가로 관리
- 다) 정밀정량검사 완료시까지 출고제한 조치 및 동 요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규제검사항목 및 추정되는 계열의 검사항목에 대한 정밀정량검사 실시
- 라)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육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 (1) 페니실린계, 테트라사이클린계, 설파제 및 퀴놀론계 약물 : 신장 시료에서만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신장을 폐기 조치하고, 신장과 근육 시료에서 모두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 (2) 기타 항생물질·합성항균제·호르몬·농약 등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로 검사시료에 해당하는 신장, 간, 지방 또는 근육 시료의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 또는 간 시료에서만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신장 또는 간을 폐기하고, 검사항목별 검사시료에 따라 신장, 간 등 내부장기와 지방 또는 근육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 마)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동일 농장에서 출하한 나머지 도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사하여 조치
 - (1) 소·돼지·양(염소포함)·말 : 검사한 도체 이외의 나머지 모든 도체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 초과 물질에 대한 정밀정량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 (2) 닭·오리의 경우는 전량 불합격 조치
- 바) 신장 등 내부장기 또는 근육 시료에서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동 요령 제8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라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잔류방지 개선 대책 지도 및 과태료를 처분하고, 동 요령 제8조제6항부터 제9항에 따라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규제검사 실시

검사방법 및
조치
(제6조)

[별표 2]

출하전 생체잔류검사 절차

검사시료 채취·의뢰
(양축농가)



시료검사 접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시료 검사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검사결과통보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출하여부 결정
(양축농가)



출하예정일 출하
혹은 출하시기 연장

- ① 출하예정일 3~7일전 시료채취용기(원심분리관 등)에 농장명, 축사번호 및 채취일자를 기입한다.
- ② 시료채취용기에 출하예정축군의 우리당 1마리 이상씩 오줌 또는 혈청시료(닭의 경우 계사당 2수 이상 혈청시료)를 채취한다. 시료채취 후 곧바로 냉장고에 보관한다.
- ③ 채취한 검사시료를 가능한 냉장상태로 운반하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생체약품잔류검사를 의뢰한다.

- ④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담당자는 시료를 접수하고 출하전 생체잔류검사 대장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여 기록한다.

- ⑤ 의뢰받은 검사기관 분석담당자가 검사시료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한다.

- ⑥ 검사기관의 장이 농장주에게 의뢰시료의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양성판정시 생체잔류검사일, 최종약품투약일 및 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고려하여 출하가능시점을 권장·통보한다.

- ⑦ 농장주는 통보받은 생체잔류검사결과에 따라 출하예정일 출하여부를 결정한다(음성시: 출하예정일 출하, 양성시: 약품의 최종투약후 당해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경과하지 않고 남은 기간만큼 출하연장).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은 생체잔류검사 의뢰시 양축가의 농장명, 연락처, 의뢰일자, 축종, 의뢰두수, 출하예정일 및 출하예정두수, 축사번호, 투여약품(사료첨가제 포함) 및 투약농도, 최종투약일, 최소휴약기간,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통보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하전 생체잔류검사 대장을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별표

별표 1

식육 등의 잔류물질 검사 시료채취,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1. 모니터링 검사

가. 출하 전 잔류검사

- 1) 시료채취 장소 : 농장
- 2) 시료채취단위 및 채취(의뢰)량
 - 가) 소·돼지·양(염소 포함)·말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10% 이상으로 오줌 5ml 또는 혈액(혈청으로서) 1ml이상을 채취한 후 냉장 운반하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
 - 나) 닭·오리 : 양축농가가 출하전 출하예정물량의 0.1%이상으로 혈액(혈청으로서) 1ml이상을 채취한 후 냉장 운반하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검사의뢰(별표 2 참조)
 - 다) 닭·오리·메추리의 근육, 간, 신장, 지방 : 농장별 출하예정물량 규모를 기준으로 검사대상을 선정하고, 가축의 사체를 부검하여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의 경우 10g 이상, 신장 및 간의 경우 전체를 채취 후 냉장 운반하여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별표 2 참조)

출하수수	검사수수
1,500수 이하	3수 이상
1,501~3,000수	5수
3,001수 이상	6수 이상

- 라) 출하예정 가축에 대하여 돈방·계군별로 균등하게 시료채취
- 마)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이 출하 전 잔류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양축농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농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3) 검사방법 및 결과판정
 - 가) 혈액 또는 오줌의 검사방법 및 결과판정
 - (1) 검사방법 :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TLC), BmDA법(*B. megaterium* disc assay), EEC 4-plate법, 효소면역분석법(ELISA), 미생물수용체분석법 또는 형광면역분석법 등 오줌 또는 혈청 중 항균물질 간이검사에 적합한 방법. 또는 식육의 잔류허용기준 이하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

(2) 결과판정 : 검사결과 판정은 검사법의 결과판정 요령에 따른다. 다만, TLC법은 형광 띠(band)의 위치에 관계없이 형광강도가 설파메타진을 기준으로 오줌 중 1.3ppm 이상이거나 혈청 중 0.4ppm이상일 때, BmDA법은 억제환의 직경이 12mm이상일 때 양성판정

나) 근육, 간, 신장 및 지방의 검사방법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4)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가) 검사결과를 가축의 소유주에게 신속히 통보. 단, 양성판정시는 최종약품 투약일, 투약 약품의 최소휴약기간을 고려하여 휴약기간 준수 후에 출하토록 조치

나) 검사결과 음성판정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의 요구가 있을 때 검사관이 검사가축과 출하가축이 같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출하가축에 한하여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또는 규제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잔류위반농가가 출하예정 가축에 대해 출하 전 잔류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적합한 경우 규제검사를 1회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나.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1) 시료채취장소 : 도축장

2) 시료채취단위

가)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소속 검사관이 월별계획에 따라 가능한 농장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1농장 1시료(닭, 오리의 경우 1수) 이상에서 검사에 필요한 시료(근육, 지방, 신장 또는 간)를 채취

나) 소의 경우 한우·젓소·육우·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염소를 대상으로 적절히 구분 채취

3) 시료채취 부위 및 채취량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를 채취하되,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의 경우 10g 이상,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을 채취

4) 검사방법 및 결과조치

가) 검사방법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2)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근육, 신장, 간 등)에서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해당 검사시료에서 추정되는 계열의 검사항목에 대한 정밀정량검사 실시

(가) 항생물질

- ① 신장에서 EEC 4-plate법, 미생물학적 신속간이검사법, 미생물수용체법 등을 이용하여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판정 도체에 대해서는 페니실린계·테트라사이클린계·마크로라이드계·아미노글리코사이드계 항생제를 포함하여 정밀정량검사 실시
- ② 다만, 클로람페니콜의 경우 근육에서 면역학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 후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곧바로 정밀정량검사 실시. 정밀정량검사 결과 0.5ng/g(분석법의 정량한계) 초과 검출시 부적합 판정
- ③ 기타 항생물질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신장 등)에서 정밀 정량검사 실시

(나) 합성항균제

- ① 설파제 및 퀴놀론계 : 신장에서 미생물학적 방법(퀴놀론계 약물의 경우 *E. coli* 균주 이용), 면역학적 방법 등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이들 물질군에 대해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거나 곧바로 정밀정량검사 실시
- ② 기타 합성항균제(항원충제 및 구충제 포함)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등)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다) 호르몬제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오줌 등)에서 정밀 정량검사 실시

(라) 기타 약물(항염증제·진정제 등)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간장 등)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마) 농약

- ① 유기인계 및 유기염소계 농약 : 지방 또는 근육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 ② 카바메이트계 농약 : 근육에서 정밀정량검사 실시
- ③ 기타 농약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지방 등)에서 정밀정량 검사 실시

나) 결과조치

- (1)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시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는 등 출하제한농가로 관리
- (2)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잔류방지 개선 대책 지도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며 규제검사 실시

2. 규제검사

가. 일반사항

-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규제검사를 실시
 - 가)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에서 출하한 가축
 - 나) 잔류위반농가에서 양도되어 도축장으로 출하된 가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개체)

- 다) 기립불능 증상(부상,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을 나타내는 가축
 - 라) 부상, 수술부위, 화농부위, 주사자국 등이 발견되어 동물약품의 처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가축
 - 마) 다), 라) 이외의 검사관이 생체·해체검사 결과 유방염, 자궁염, 복막염, 폐렴, 흉막염, 심낭염, 심근염, 패혈증·농혈증, 봉와직염 등 염증성 질환, 전신질환(비정상적 체온, 쇠약, 탈수, 율혈성 점막 등) 등과 같은 가축질병의 증상 또는 병변이 확인된 가축 중에서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어 규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축
 - 바) 그 밖에 노폐하거나 위축된 가축, 번식용 가축(암, 수 모두 포함) 등 동물약품 사용 가능성이 높은 가축 중 검사관이 지정하는 가축
 - 사) 검사관이 출하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어 규제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가축
- 2) 출하제한농장에서 출하한 가축, 잔류위반농장에서 6개월 이내에 출하한 가축 및 기타 규제 대상가축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경우, 간이정성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때까지 출고를 제한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는 규제검사서에서 합격된 이후에 실시

나. 시료채취장소 : 도축장

다. 시료채취단위

- 1) 가목 1)의 다), 라) 및 마)에 해당하는 가축 : 모든 해당 가축
- 2) 가목 1)의 가), 나), 바) 및 사)에 해당하는 가축 : 농장별 출하규모를 기준으로 시료채취

소, 말		돼지·양(염소 포함)		닭·오리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두수	검사두수	출하수수	검사수수
5두 이하	2두 이상	40두 이하	2두 이상	1,500수 이하	3수 이상
6~10두	4두	41~80두	4두	1,501~3,000수	5수
11두 이상	5두 이상	81두 이상	5두 이상	3,001수 이상	6수 이상

라. 시료채취 부위 및 채취량

- 1)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시료를 채취하되, 근육의 경우 100~500g, 지방 10g,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 채취
- 2) 근육에 화농부위나 주사자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위를 채취하며, 이버택틴 등 근육에서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기준이 설정된 해당 가식부위를 채취하되, 지방인 경우 10g, 신장 및 간의 경우 50g 이상(가금의 경우 신장 또는 간 전체) 채취

마. 검사방법 및 결과조치

- 1) 검사방법
 -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의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평가원장이 정한 「축수산물 유해물질 분석법 편람」시험법으로 검사할 수 있음

나) 신속한 규제검사를 위하여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불검출 기준일 경우 정량한계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는 면역학적, 미생물학적 방법 등의 원리를 이용한 신속한 검사키트를 사용할 수 있음

다) 규제검사 대상 도체에 대한 검사항목별 검사방법

(1) 페니실린계, 테트라사이클린계, 설파제 및 퀴놀론계 약물

신장 시료에서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시 신장과 근육 시료에서 정밀정량 검사를 실시

(2) 기타 항생물질·합성항균제·호르몬·농약 등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검사항목 이외의 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항목별 해당 검사 시료에서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해당 물질의 잔류허용기준(불검출 기준일 경우 정량한계 수준)까지 검출할 수 있는 면역학적 간이검사기법 등 적용 가능

2) 결과조치

가)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시료(신장 등)에서 미생물학적 방법(퀴놀론계 약물의 경우 E. coli 균주 이용), 면역학적 방법 등 간이정성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와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출고 조치

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 판정 시 지체 없이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하는 등 출하제한농가로 관리

다) 정밀정량검사 완료 시까지 출고제한 조치 및 제5조제2항에서 정한 규제검사 항목 및 추정되는 계열의 검사항목에 대한 정밀정량검사 실시

라)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육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1) 페니실린계, 테트라사이클린계, 설파제 및 퀴놀론계 약물 : 신장 시료에서만 잔류허용 기준 초과 시 신장을 폐기 조치하고, 신장과 근육 시료에서 모두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2) 기타 항생물질·합성항균제·호르몬·농약 등 : 연간 검사계획에서 정하는 검사항목별로 검사시료에 해당하는 신장, 간, 지방 또는 근육 시료의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 또는 간 시료에서만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신장 또는 간을 폐기하고, 검사항목별 검사시료에 따라 신장, 간 등 내부장기와 지방 또는 근육에서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해당 식육 전체에 대해 식용사용 금지 조치

마)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같은 농장에서 출하한 나머지 도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검사하여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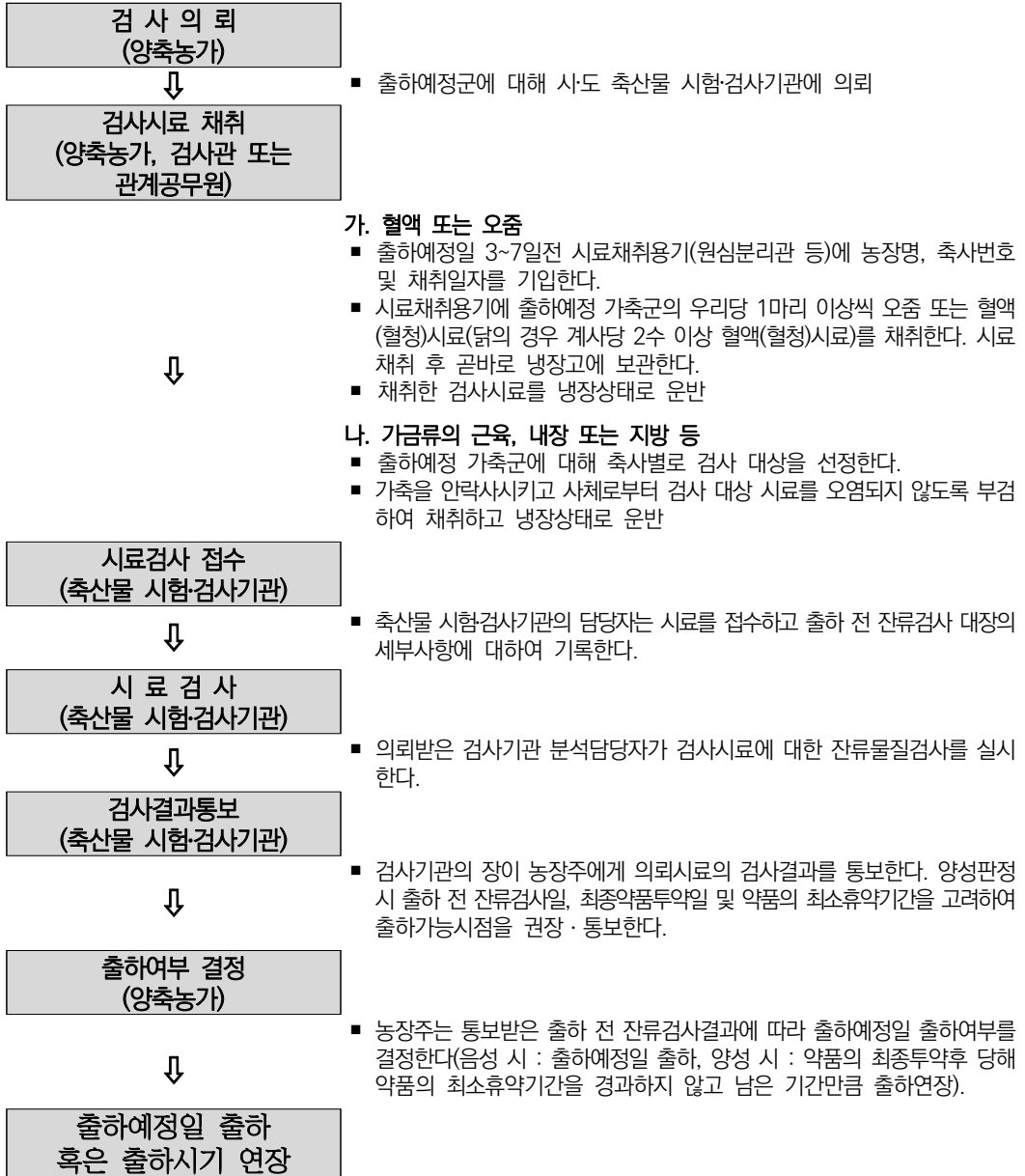
(1) 소·돼지·양(염소포함)·말 : 검사한 도체 이외의 나머지 모든 도체에 대해서 잔류허용기준 초과 물질에 대한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

(2) 닭·오리의 경우는 전량 불합격 조치

바) 신장 등 내부장기 또는 근육 시료에서 정밀정량검사 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가축을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는 잔류원인을 조사하여 잔류방지 개선 대책 지도 및 과태료를 처분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규제검사 실시

별표 2

출하 전 잔류검사 절차



※ 시·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은 출하 전 잔류검사 의뢰시 양축가의 농장명, 연락처, 의뢰일자, 축종, 의뢰두수, 출하예정일 및 출하예정두수, 축사번호, 투여약품(사료첨가제 포함) 및 투약농도, 최종투약일, 최소휴약기간,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 통보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출하 전 잔류검사 대장을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분기) 식육종 모니터링검사 및 규제검사 실적

I. 모니터링 검사

1. 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단위 : 두/수)

축 종		분 기				누 계			
		검사			검출 (양성)	검사			검출 (양성)
		FPT	TLC	기타		FPT	TLC	기타	
소	한우								
	젓소								
	육우								
	수입소								
	돼지								
	닭								
	오리								
양	면양								
	염소								
	말								
	계								

※ FPT; EEC 4-plate법, TLC; 박층크로마토그래피, 기타; BmDA 등의 간이정성검사법.

2.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가. 총 괄

(단위 : 두/수)

축 종		분 기					누 계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		
		검사	검출 (양성)	검사	검출	위반	검사	검출 (양성)	검사	검출	위반
소	한우										
	젓소										
	육우										
	수입소										
	돼지										
	닭										
	오리										
양	면양										
	염소										
	말										
	계										

※ 동일 개체에서 불검출 물질의 정량한계(LOQ) 이상 검출 또는 잔류허용기준(MRL) 초과 물질이 2종 이상인 경우에도 검출 또는 위반두수는 1두(수)로 산정하여 작성함.

나. 정밀정량검사 세부내역

구 분	분 기		구 분	누 계		비 고
	검출물질 및 농도(ppm) (검사부위, 개체번호)	관할지역 (축주명)		검출물질 및 농도(ppm) (검사부위, 개체번호)	관할지역 (축주명)	
한우			한우			
젓소			젓소			
육우			육우			
수입소			수입소			
돼지			돼지			
닭			닭			
오리			오리			
면양			면양			
염소			염소			
말			말			

※ 참고사항

- ① 소의 경우 한우·젓소·육우·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염소로 구분하여 작성함
- ② 한 농가에서 2마리 이상이 잔류위반되었을 경우 개체구분이 가능하도록 ()내에 검사시료의 가식부위(근육, 신장, 간 등)와 개체번호를 작성함
- ③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및 농약 등 검사항목에 대한 잔류분석법의 정량한계(LOQ) 이상으로 검출된 모든 개체별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를 작성함
- ④ 동일한 개체에 있어서 2종 이상 물질이 검출된 경우 각각의 검출물질과 검출농도를 모두 작성하며, 비교란에는 잔류위반농가 지정 또는 연장 여부를 명기함

II. 규제검사

1. 총 괄

(단위 : 두/수)

축 종		분 기					누 계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		
		검사	검출 (양성)	검사	검출	위반	검사	검출 (양성)	검사	검출	위반
소	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돼지											
닭											
오리											
양	면양										
	염소										
말											
계											

※ 동일 개체에서 불검출 물질의 정량한계(LOQ) 이상 검출 또는 잔류허용기준(MRL) 초과 물질이 2종 이상인 경우에도 검출 또는 위반두수는 1두(수)로 산정하여 작성함

2. 검사대상 가축별 규제검사 실적

검 사 대 상		분 기					누 계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				
		검사두수 (키트 검사두수)	양성두수 (키트 검사 양성)	검사 두수	검출 두수	위반두수 (폐기량, kg)	검사두수 (키트 검사두수)	양성두수 (키트 검사 양성)	검사 두수	검출 두수	위반두수 (폐기량, kg)		
출하제한 농가 및 잔류 위반농가 출하가축	소	한우											
		젓소											
		육우											
		수입소											
	양	돼지											
		닭											
		오리											
		면양											
		염소											
		말											
기립불능 증상 가 축	소	한우											
		젓소											
		육우											
		수입소											
	양	돼지											
		면양											
		염소											
		말											
		부상·수술 부위·화농 ·주사자국 등이 있는 가축	소	한우									
				젓소									
육우													
수입소													
양	돼지												
	닭												
	오리												
	면양												
	염소												
	말												
노폐하거나 위축된 가축, 번식용 가축 등 약품 사용 가능성이 높은 가축	소	한우											
		젓소											
		육우											
		수입소											
	양	돼지											
		닭											
		오리											
		면양											
		염소											
		말											

(뒤쪽에 계속)

검 사 대 상		분 기					누 계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			간이정성검사		정밀정량검사		
		검사두수 (키트 검사두수)	양성두수 (키트 검사 양성)	검사 두수	검출 두수	위반두수 (폐기량, kg)	검사두수 (키트 검사두수)	양성두수 (키트 검사 양성)	검사 두수	검출 두수	위반두수 (폐기량, kg)
생체· 해체검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소	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돼지										
	닭										
	오리										
	양	면양									
		염소									
	말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출하농장의 가축	소	한우									
		젖소									
		육우									
		수입소									
	돼지										
	닭										
	오리										
	양	면양									
		염소									
	말										
계											

※ 규제검사에 의한 간이정성검사는 페니실린계, 테트라사이클린계, 설파제 및 퀴놀론계 약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해당되며, 정밀정량검사의 경우 항생물질, 설파제를 비롯한 합성항균제, 호르몬 및 농약에 대한 검사결과가 포함됨. 간이정성검사의 검사두수와 양성두수는 EEC 4-plate법, *E. coli* 균주 등을 이용한 미생물학적 방법이나 미생물학적·면역학적 신속간이검사법(KIS, Premi, ROSA 등), 미생물 수용체법 등 신속간이검사키트 또는 이들 둘 다를 검사하여 양성으로 검출된 전체 마리수를 의미하며, ()에는 신속간이검사키트에 의한 검사두수 및 양성두수를 작성함. 동일 개체에서 검출 또는 위반물질이 2종 이상인 경우에도 검출 또는 위반두수는 1두(수)로 산정하여 작성함.

3. 정밀정량검사 세부내역

구분	분 기		구 분	누 계			
	검출물질 및 농도(ppm) (검사부위, 개체번호)	관할지역 (축주명)		검출물질 및 농도(ppm) (검사부위, 개체번호)	관할지역 (축주명)	조치내역	
						폐기 방법	폐기량 (Kg)
한우			한우				
젖소			젖소				
육우			육우				
수입소			수입소				
돼지			돼지				
닭			닭				
오리			오리				
면양			면양				
염소			염소				
말			말				

※ 소의 경우 한우·젖소·육우·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염소로 구분하여 작성함.

한 농가에서 2마리 이상이 잔류위반되었을 경우 개체구분이 가능하도록 ()내에 검사시료의 가식부위 (근육, 신장, 간 등)와 개체번호를 작성함. 동일한 개체에서 2종 이상 물질이 검출된 경우 각각의 검출물질과 검출농도를 모두 작성함. "조치내역" 란에는 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당해도체의 중량 및 처리결과(위탁폐기인 경우에도 소각, 매몰, 렌더링 또는 동물원사료활용 등 폐기방법을 구체적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잔류검사결과 위반내역

농장 주명 (생년 월일)	농장 식별 번호	농가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출하 일자	출하 가축	출하 두수	간이 검사 방법	검출/ 검사 두수	검사결과		잔류원인 조사결과	규제 검사 기간 (~)	출하 도축장	검사 기관명	비 고
								검출 물질	검출량 (ppm)					

※ 참고사항

- ① 규제검사기간은 검사완료 후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동 농가현황의 보고(통보)시 기존의 잔류위반농가를 포함하여 작성함. 소의 경우 한우·젖소·육우·수입소, 양의 경우 면양·염소로 구분하여 작성함.
- ② 「잔류원인조사결과」란은 검사기관에서 추정하는 잔류원인을 기재함.
비육후기사료 미급여(육성기 사료급여), 휴약기간 불준수, 미승인 약제사용, 투약기록의 불량, 권장량초과 투약, 약제무첨가 사료의 교차오염 등
- ③ 비고란에는 잔류물질 검사 종류(모니터링검사 또는 규제검사)를 기재함.
- ④ 해당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한 농장주명 및 농가소재지를 작성함

※ 잔류위반가 원인추적조사에 의한 잔류원인조사 결과 예

- ① **휴약기간 불준수** : 해당가축의 치료 또는 투약내역의 조사 결과 해당 가축에 사용이 허가된 약품을 권장 용법·용량으로 투여한 후 약품의 사용설명서상의 휴약기간을 지키지 않고 출하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② **투약기록의 불량** : 약품의 사용설명서의 휴약기간을 준수하려 했으나 투약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휴약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③ **투약동물의 미격리 또는 미표시** : 약품을 투여 후 다른 축사에 격리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함께 사육·출하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④ **권장량초과 투약** : 사용설명서나 안전사용기준의 투여권장용량을 초과 투약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⑤ **비육후기(출하용)사료의 미급여** : 비육말기 출하시기에 항생제 등 약제 무첨가 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약제가 첨가된 비육사료 등을 그대로 급여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⑥ **미승인 약제 투여** : 클로람페니콜이나 푸라졸리돈 등 식용동물에 금지된 제제나 약품의 사용 설명서상 투여대상동물에서 해당 가축이 포함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할 때 해당된다. 예를 들어, 돼지와 닭에 사용토록 되어있는 약품을 소에 사용한 경우, 착유우나 산란중인 닭에 사용금지하는 약품을 이들 가축에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해당된다.
- ⑦ **사료혼합시설 및 기구의 세척불량으로 인한 약제무첨가 사료의 교차오염** : 배합사료제조회사 또는 자가혼합과정에서 약제첨가사료가 오염되어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⑧ **축사 격리시설 관리 잘못에 따른 다른 축사로 유입 후 약제첨가 사료 급식** : 약제치료군을 별도의 축사로 격리하였으나 투약을 하지 않은 가축이 약제치료군의 축사로 왕래되어 약제 첨가사료를 섭취하여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⑨ **급수라인 관리 잘못으로 약제첨가 축사로부터 물의 유입** : 수용산제제를 음수투여시 급수라인의 관리 잘못으로 출하군에 잔류위반이 발생할 때 해당된다.
- ⑩ **실수에 의한 약제첨가사료의 급여 등**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규제검사계획(안)

1. 도축실적

가. 축종별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전년도						
당해연도 (9월말 현재)						

※ 도축장수 : () 개소(축종별 : 소/돼지, 소, 돼지, 닭, 오리 등)

나. 도축장별

1) 전년도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도축장						
○○도축장						
계						

※ 해당가축의 기립불능 증상 가축두수를 ()내에 작성함

2) 당해연도 (9월말 현재)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도축장						
○○도축장						
계						

※ 해당가축의 기립불능 증상 가축두수를 ()내에 작성함

2. 도축장 시설 및 검사장비 보유 현황

가. 도축장별 실험실 및 냉장시설

구 분	실험실		냉장시설				비 고 (냉동시설㎡)
	면적(㎡)	주요 검사장비(대)	축종 1		축종 2		
			면적 (㎡)	1일수용 마리수	면적 (㎡)	1일수용 마리수	
○○도축장							
○○도축장							
계							

※ 주요검사 장비는 도축장내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Incubator(32℃, 55℃, 65℃ 등 사용 온도별), heating block, microcentrifuge 등의 잔류물질 현장검사 관련 장비 종류별 보유 대수를 작성함.

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정밀분석장비

장비명	모델명 (부착검출기)	구입년도	보유대수 (대)	주요분석 대상물질	비 고

※ 차년도 구매 예정 장비를 포함하여 HPLC, GC, GC/MS, LC/MS, LC-MS/MS, Charm II, ELISA reader 등 잔류물질 검사와 직접 관련 있는 정밀분석장비를 작성함

3. 규제검사 실적

가. 전년도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 출하가축						
기립불능증상 가축						
부상·수술부위·화농·주사자국 등이 있는 가축						
노폐하거나 위축된 가축, 번식용 가축 등 약품 사용 가능성이높은 가축						
생체·해체검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출하농장의 가축						
계						

나. 당해연도 (9월말 현재)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출하제한농가 및 잔류위반농가 출하가축						
기립불능증상 가축						
부상·수술부위·화농·주사자국 등이 있는 가축						
노폐하거나 위축된 가축, 모돈, 옹돈 등 약품 사용 가능성이높은 가축						
생체·해체검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						
역학조사 결과 잔류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출하농장의 가축						
계						

4. ()년도 규제검사계획

가. 축종별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비 고 (전년도 계획)						

나. 도축장별

구 분	소	돼지	닭	오리	양	말
○○도축장						
○○도축장						
계						

※ 각 도축장별 해당 축종의 전년도 규제검사계획을 ()내에 작성함.

수거·검사 위반내역

농가정보	농장주명	
	농장명	
	농장 식별번호	
	농장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시료정보	수거장소 (영업장명)	
	수거일자	
	영업의 종류	
	영업장 소재지 (주소 및 연락처)	
	유통기한	
검사정보	검사항목	
	결과판정일	
	기준치	
	검사결과 (검출물질, 검출량)	
기타참고사항		

바.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68호, 2017. 8. 8.)

1) 주요 조항

<p>목적 (제1조)</p>	<p>「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5조의3에 따라 축산물안전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용어의 정의 (제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이하 "LPSMS" 한다)"이란 축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위생관리에 관련된 도축검사, 잔류물질 검사, 미생물검사, 식용란검사, 위생감시, 수거검사, 원유검사, 위탁검사, 축산물 시험·검사기관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관리 등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함 2. "축산물안전정보"란 축산물에 대한 검사, 감시, 인증 및 검사기관의 지정·운영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말함 3. "주전산기"란 대용량의 자료처리를 위한 대형 컴퓨터를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LPSMS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축산물안전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함 5. "운영부서"란 운영기관 내에서 LPSMS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함 6. "전산부서"란 LPSMS의 주전산기를 운영·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용자"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시·도 가축위생 관련기관 검사관 및 1호와 관련한 정보를 생산하는 영업자 등 LPSMS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함 8.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멸실·손괴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함
<p>LPSMS의 구축 및 운영 (제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영기관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함 ② 운영기관의 장은 LPSMS 운영에 필요한 예산·조직·설비 등을 갖추고 운영부서 및 전산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관리체계는 별표 1과 같음 ③ 운영기관의 장은 LPSMS 사용자에게 교육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음

<p>운영책임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자의 단말기, 주변기기 등을 통해 주전산기에 입력되는 축산물안전 정보의 관리는 운영부서의 장이 관장함 ② 운영기관의 주전산기 등 전산장비의 관리는 전산부서의 장이 관장함 ③ 운영부서의 장과 전산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축산물안전정보 및 전산장비의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함 ④ 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위해 LPSMS의 가동을 중지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중지 일시 및 기간을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함 ⑤ 전산부서의 장은 주전산기 및 정보통신망, 주변기기 등의 증설과 관리, 기타 작업을 할 때 작업 일정과 작업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 LPSMS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⑥ 운영부서의 장은 본 규정 외에 LPSMS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p>사용권한 관리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영부서의 장은 LPSMS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변경 및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LPSMS 전산 자료의 입력·수정·출력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 또는 운영부서의 장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권한을 부여함으로써 LPSMS의 사용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함 ④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LPSMS 사용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함 ⑤ 권한관리자는 LPSMS 사용권한의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p>회원가입 및 사용권한 등록 (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자는 LPSMS에서 회원가입 후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문서, FAX,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퇴직, 인사이동, 업무변경 등으로 사용권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권한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 ② 권한관리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 사용권한을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함
<p>비밀번호 사용 (제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자는 통상적인 보안규정에 따라 비밀번호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번호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누설되었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즉시 변경하여야 함

<p>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제8조)</p>	<p>LPSMS로 관리하는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9조 및 제9조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인증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의 실적 등 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p>축산물안전정보의 입력 (제9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용자는 제3조에 따른 축산물안전정보를 생산하는 즉시 LPSMS를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LPSMS이 운영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정상 운영 시 처리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달 5일까지 변경내역을 LPSMS에 입력하여야 함 ③ LPSMS에 입력해야 할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및 사용자는 별표 2와 같음
<p>축산물안전정보의 관리 (제10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영부서의 장은 사용자가 LPSMS를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의 유지·변경·소멸 등을 통하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② LPSMS를 이용하여 처리한 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함
<p>정보보호 (제11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LPSMS를 통하여 입력한 정보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p>LPSMS의 변경 (제12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영기관의 장은 필요에 의해 LPSMS를 변경한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에 LPSMS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p>보안 (제13조)</p>	<p>전산부서의 장은 LPSMS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변조·훼손·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p>
<p>백업 (제14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산부서의 장은 프로그램 및 축산물안전정보자료의 멸실·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함. 백업주기, 방법 및 범위는 운영기관의 백업지침에 따름 ②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p>장애처리 (제15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로부터 LPSMS 및 전산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LPSMS 및 전산자료를 점검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 ② 운영부서의 장 및 전산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애처리일지를 비치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p>적용범위 (제16조)</p>	<p>축산물안전정보의 통합관리 및 정보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p>

2) 별표

별표 1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관리체계

담당 업무		운영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업무 총괄		농축수산물정책과	동물검역과
○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제반 전산기술 지원		정보화통계담당관	가축질병상황실
시스템 분야별 관리	○ 도축검사, 위생감시, 수거검사	농축수산물안전과	동물검역과
	○ 위탁검사,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검사제도과	동물검역과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동물검역과
	○ 미생물(식용란 포함) 기준·규격 및 검사	식품기준과	세균질병과 조류질병과
	○ 잔류물질(식용란 포함) 기준·규격 및 검사 원유의 등급기준 및 검사	유해물질기준과	동물약품평가과 세균질병과
	○ 항생제내성균 검사	미생물과	세균질병과

별표 2

축산물안전정보의 종류 및 사용자

업무 분야	사용자 (정보생산자)	정보의 구분	정보의 내용	비고
도축 검사	도축(도계·도압)장	도축검사신청 및 접수	도축검사신청서 등록 및 접수	
		도축장정보관리	도축장 정보를 등록 및 수정	
		지육량 및 지육외중량 관리	도체의 지육량 및 지육외중량 입력	
	사도시험소 (도축장검사 관·책임 수의사)	도축검사	도축검사결과등록 및 월별실적 마감	
		정밀검사의뢰	정밀검사 대상 시료에 대한 정보 등록 및 검사의뢰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도축검사증명서 발급	
잔류 물질 검사	(식약처)잔류 물질과/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연간잔류물질검사계획관리	사도별 검사계획을 확인 후 물량할당 등	
		탐색조사계획관리	탐색조사계획 수립 및 관리	
	사도시험소	연간시험소검사계획관리	시험소 검사계획 수립 및 관리	
		출하전생체잔류검사	출하전생체잔류검사(모니터링검사) 의뢰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간이검사	도축 후 실시하는 간이검사 시료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정밀검사 의뢰 등	
		잔류위반농가 및 출하제한농가 관리	잔류위반 농가 및 출하제한 농가의 지정 및 해제	
		탐색조사시료내역 관리	탐색조사 정밀검사 의뢰 등	
	미생물 검사	미생물과	미생물모니터링검사계획관리	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생물 모니터링 검사 계획 수립 및 관리
항생제내성균검사계획관리			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항생제내성균 검사 계획 수립 및 관리, 검사계획 축종 관리	
항생제내성균검사			검사의뢰 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사도시험소		사도별검사계획관리	사도 모니터링 검사 및 항생제내성균 검사, 탐색조사 계획 수립 및 관리	
		모니터링검사	검사의뢰 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항생제내성균검사	검사의뢰 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탐색조사	검사의뢰 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업무 분야	사용자 (정보생산자)	정보의 구분	정보의 내용	비고
식용란 검사	사도시험소	식용란검사계획관리	연간 식용란 검사계획 수립 및 관리	
		잔류물질 간이검사	간이검사 의뢰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정밀검사	정밀검사 의뢰정보 및 검사결과 관리	
		잔류원인조사	잔류위반내역 조사결과 관리	
		위반농가 관리	위반농가 지정 및 해제	
위생 감시	식약처 (지방청 포함)/ 검역본부 사도/ 사군구 사도시험소	위생감시계획관리	연간 위생감시계획 관리	
		미등록 영업장 관리	미등록 영업장 정보 등록 및 관리	
		위생감시 대상관리	위생감시 대상 선택 및 관리	
		위생감시 결과관리	위생감시 결과 입력 및 행정처분 의뢰 등	
		위생감시 조사자 관리	조사자 등록 및 관리	
		위반사항 관리	위반사항 등록 및 관리	
		소비자신고 관리	소비자신고내용 접수 등 관리 및 결과통보·이첩 등	
	명예감시원 관리	명예감시원 정보 등록 및 관리		
	교육기관 (위생)	위생교육 과정 관리	위생교육기관 정보 및 교육과정 정보 등록 및 관리	
	수거 검사	식약처 (지방청 포함)/ 검역본부 사도/ 사군구 사도시험소	수거검사계획관리	연간 및 월간 수거검사계획 관리
미등록 영업장 관리			미등록 영업장 정보 등록 및 관리	
수거검사 대상관리			수거검사 대상 선택 및 관리	
수거검사 결과관리			수거검사 결과 입력 및 행정처분 의뢰 등	
원유 검사	식약처	등급기준 관리	등급기준 등록 및 관리	
	검역본부	검사실적 마감	검사실적 마감	
	집유조합 (유업체)	농가정보관리	농가정보 등록 및 관리	
		검사신청관리	검사신청 및 결과확인 등	
		집유실적 관리	집유실적 등록 및 관리	
	사도시험소	수수료 관리	수수료 등록 등	
		농가정보관리	농가정보 등록 및 관리	
		검사신청접수 관리	검사신청접수 등	
		검사대장관리	검사대장 등록 및 결재	
		검사결과관리	검사결과 통보 등	

업무 분야	사용자 (정보생산자)	정보의 구분	정보의 내용	비고	
위탁 검사	사·도시험소	위탁검사신청 및 접수	위탁검사신청 및 접수		
		위탁검사결과 관리	위탁검사결과 등록 및 관리		
		검사결과 통보 및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결과 E-mail, SMS를 통한 통보 및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수수료 관리	시료별 검사수수료 등록 및 관리		
	민간위생 검사기관	검사항목 관리	제품별 검사항목 등록		
		민간위탁검사 신청 및 접수	민간위탁검사 신청 및 접수		
		민간위탁검사결과 관리	민간위탁검사결과 등록 및 접수		
검사 기관 관리	식품의약품 안전처	지정 관리	지정신청관리	검사설비, 검사품목, 검사항목 등 지정신청 정보 관리	
			지정변경관리	지정변경 등록·승인·반려 등	
			현지점검	현지점검 계획 및 결과 등록 및 관리	
			지정서 발급	지정서 발급 및 출력	
	정도 관리	계획관리	정도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시료관리	시료정보 등록 및 관리		
		결과관리	정도검사 결과 등록 및 관리 (정량검사/정성검사)		
	민간위생 검사기관	인터넷 변경 신청	인터넷 변경 신청 등		
HACCP 관리	축산물안전 관리인증원	HACCP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지정 변경	작업장별 HACCP 지정,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지정 변경		
	교육기관 (HACCP)	HACCP교육관리	교육내역입력		

사.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4호, 2017. 2. 8.)

1) 주요 조항

<p>목적 (제1조)</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제2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원의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과 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교육실시기관의 지정 (제2조)</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도축검사와 관련된 교육 수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 여부 2.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 적정 여부 3. 제6조에 따른 교육실시비용 적정 여부 4. 제7조에 따른 교육시행규정(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 운영 방법 등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적정 여부 5. 제8조에 따른 교육계획(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 적정 여부 6. 사업자등록증 7.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정관 및 회원(주주)명부 8. 신청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지부 또는 지회도 포함)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18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1개뿐인 경우에는 그 1개의 기관을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p>
<p>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 (제3조)</p>	<p>영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와 같음</p>

<p>교육실시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4조)</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이하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함</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실시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실시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연월일 3.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과정
<p>교육과정 편성 (제5조)</p>	<p>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과정은 도축검사의 종류, 교육대상자의 재직기간, 검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자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p>교육실시비용 (제6조)</p>	<p>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함</p>
<p>교육시행규정의 승인 (제7조)</p>	<p>교육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교육실시비용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 서식 7.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p>교육계획의 승인 (제8조)</p>	<p>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2.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포함) 3. 교육개설과정 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예상인원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6. 과목별 교육시간 7.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②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계획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p>

<p>교육계획의 승인 (제8조)</p>	<p>하여야 함</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대해 검토한 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정지시를 받은 교육실시기관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p> <p>④ 교육실시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교육실시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교육실시기관의 교육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p> <p>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원활한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을 위하여 교육 실시기관에서 요청하는 예상 교육인원 통보 등에 협조하여야 함</p>
<p>교육 실시 (제9조)</p>	<p>① 교육실시기관은 지정받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교육대상인원이 급증하거나 또는 교육대상인원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p> <p>②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축검사교육 수료증을 교부하거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p> <p>③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작성하거나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함</p>
<p>교육의 유예 등 (제10조)</p>	<p>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업무에 종사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경우 3. 법원 등예의 출석, 증언, 재판 등을 받기 위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5.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이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교육결과보고 등 (제11조)</p>	<p>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 종료 후 1월 이내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p> <p>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성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p> <p>③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교육불참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p>

<p>교육실시기관 평가 (제12조)</p>	<p>농림축산식품부장은 도축검사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p>
<p>교육실시기관 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12조)</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실시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시간 2.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내용 3. 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4. 제6조에 따른 교육실시비용의 승인에 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교육시행규정의 승인에 대한 사항 6. 제8조에 따른 교육계획의 승인에 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교육장소 변경 승인에 대한 사항 8. 제10조에 따른 교육의 유예에 대한 사항 9. 제11조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에 대한 사항 10. 기타 본 세부실시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실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문서로 통보한 때 3.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 5. 교육실시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때 6.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때
<p>행정지원 (제14조)</p>	<p>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가축 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도축검사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함</p>
<p>승인간주 (제15조)</p>	<p>농림축산식품부장이 제3조, 제4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승인사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청 사항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봄</p>

2) 별표

별표 1

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

(제2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강사의 자격요건

- (1) 수의·축산·식품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2) 수의·축산·식품관련분야의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3) 수의·축산·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축산·식품관련학을 강의하고 있는 자로서 전임강사 이상인 자
- (5) 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 (6)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나. 강사의 확보 등

- (1) 교육실시기관은 가목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강사를 확보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자체강사를 두어야 한다.
- (2) 교육실시기관은 1인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교육실시기관은 도축검사 실습교육용 도축시설 및 실습교육장을 갖추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임차하여야 한다.

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다. 강의실은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것(3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마. 교육실시기관은 휴대용 컴퓨터·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제 호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 지정서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기 관 명 :
- 소 재 지 :
- 교육과정의 범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축검사원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2호 서식

수료증 번호 20 - 00000호

도축검사원 교육 수료증

교육이수자 성명		직 책	
소 속		대 표 자	
소 재 지	(☎)		
교 육 과 정	<input type="checkbox"/> 신규교육 <input type="checkbox"/> 정기교육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일시(시간)	(예시) 2018. 3. 1 ~ 4(40시간)		

위 사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따른 도축검사원의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교육실시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아. 도축검사관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지침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135호, 2017. 4. 3.)

1) 주요 조항

<p>목적 (제1조)</p>	<p>「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된 규칙 제47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도축검사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과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제2조)</p>	<p>① 도축검사관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정관 및 회원(주주)명부 1부 3. 신청기관의 교육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지부 또는 지회도 포함) 1부 4. 교육훈련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5. 교육훈련시설 보유현황(임대시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 1부 6. 교육시행규정(교육진행 및 방법, 교육수료 요건, 강사운영 방법 등 교육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 1부 7. 교육계획(신청일이 속하는 연도 및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 8. 교육실시비용 산출내역서 1부 7.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교재 1부
<p>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제3조)</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도축검사와 관련된 교육수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47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 1개뿐인 경우에는 그 1개의 기관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p>
<p>교육훈련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제4조)</p>	<p>교육훈련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와 같음</p>
<p>교육훈련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 (제5조)</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도축검사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이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함</p>

<p>교육훈련기관의 지정서 발급 등 (제5조)</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교육훈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연월일 3.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
<p>교육과정 편성 (제6조)</p>	<p>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은 규칙 제48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축검사의 종류, 교육대상자의 재직기간, 검사역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이나 필요한 지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상자별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p>
<p>교육실시비용 (제7조)</p>	<p>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비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함</p>
<p>교육시행규정의 승인 (제8조)</p>	<p>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할 때에도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교육실시비용에 관한 사항 5. 결강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교육수료증,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과 관련 서식 7. 그 밖의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p>교육계획의 승인 (제9조)</p>	<p>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2. 교육실시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포함) 3. 교육개설과정 4.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예상인원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6. 과목별 교육시간 7. 그 밖에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p>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 교육계획 예정일의 최소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대해 검토한</p>

<p>교육계획의 승인 (제9조)</p>	<p>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정지시를 받은 교육훈련기관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p> <p>④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교육 계획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도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통보받은 교육계획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p> <p>⑥ 시·도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원활한 교육계획 수립 및 진행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에서 요청하는 예상 교육인원 통보 등에 협조하여야 함</p>
<p>교육 실시 (제10조)</p>	<p>① 교육훈련기관은 지정받은 교육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교육대상인원이 급증하거나 또는 교육대상인원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효율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p> <p>②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축검사관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시·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p> <p>③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수료 사항을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에 작성하거나 전산자료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함</p>
<p>교육의 유예 등 (제11조)</p>	<p>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업무에 종사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하거나 사망한 경우 3. 법원 등예의 출석, 증언, 재판 등을 받기 위해 참석이 어려운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5.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교육결과보고 등 (제12조)</p>	<p>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 종료 후 1월 이내에 해당 교육대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p> <p>②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와 관련하여 교육성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음</p> <p>③ 시·도지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한 후 미 이수자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p>

<p>교육훈련기관 평가 (제13조)</p>	<p>농림축산식품부장은 도축검사관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교재 등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p>
<p>교육훈련기관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제14조)</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 2. 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른 교육내용 3. 규칙 제47조제6항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4. 제7조에 따른 교육실시비용의 승인에 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교육시행규정의 승인에 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교육계획의 승인에 대한 사항 7. 제10조에 따른 교육장소 변경 승인 및 기록보관에 대한 사항 8. 제12조에 따른 교육결과보고에 대한 사항 9. 기타 본 세부실시기준에서 규정한 사항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거나 문서로 통보한 때 3.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때 5.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때 6.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때
<p>행정지원 (제15조)</p>	<p>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은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함</p>
<p>승인간주 (제16조)</p>	<p>농림축산식품부장이 제3조,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승인사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청 사항에 대한 승인을 한 것으로 봄</p>

2) 별표

별표

교육훈련기관의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제3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강사의 자격요건

- (1) 수의·축산·식품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2) 수의·축산·식품관련분야의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 또는 식품위생에 관한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자
- (3) 수의·축산·식품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자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축산·식품관련학을 강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5) 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 (6)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나. 강사의 확보 등

- (1) 교육실시기관은 가목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강사를 확보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자체강사를 두어야 한다.
- (2) 교육실시기관은 1인 이상의 교육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교육실시기관은 도축검사 실습교육용 도축시설 및 실습교육장을 갖추거나,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교육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임차하여야 한다.

나. 교육시설에는 강의실, 휴게실, 화장실(남녀 구별이 되어야 한다) 및 주차장 등이 있어야 한다.

다. 강의실은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것(3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인당 1.5㎡씩 추가 확보)으로서 1개 이상이어야 한다.

라. 강의실에는 교육인원에 충분한 의자탁자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시청각 교육이 가능하도록 스크린음향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 등이 있어야 한다.

마. 교육실시기관은 휴대용 컴퓨터·빔 프로젝트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제 호

도축검사관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기 관 명 :
- 소 재 지 :
- 교육과정의 범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및 「도축검사관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세부실시기준」 제3조에 따라 도축검사관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인

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 서식

수료증 번호 20 - 00000호

도축검사관 교육 수료증

교육이수자 성명		직 책	
소 속		대 표 자	
소 재 지	(☎)		
교 육 과 정	<input type="checkbox"/> 신규교육 <input type="checkbox"/> 정기교육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일시(시간)	(예시) 2018. 3. 1 ~ 4(40시간)		

위 사람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른 도축검사관 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수료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교육훈련기관장

직인

자. 자가소비 및 자가조리·판매를 위한 가축의 도살 및 처리허용지역

- 시·도별 고시에 따름

□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 및 처리허용지역 고시(경기도 예시)

(경기도 고시 제2016-5085호. 2016. 4. 15.)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 및 처리허용지역

시군	허용지역	가축의 종류
수원시	입북동, 연무동	허용가축
용인시	백암면, 남사면, 원삼면, 이동면, 양지면, 포곡읍, 모현면	"
안산시	대부동, 팔곡동, 건건동, 사시동, 부곡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선부동, 화정동, 신길동	"
화성시	봉담읍(상리, 와우리, 동화리, 수기리, 수영리 제외), 향남읍(행정리, 발안리, 평리 제외), 우정읍(조암리 제외), 남양읍(남양리 제외),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송산리 제외), 정남면, 동부권(병점1·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2·3·4동, 진안동, 동탄면) 제외	"
평택시	평성읍, 안중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오성면, 청북면, 포승면, 현덕면, 비전1동, 비전2동, 세교동, 중앙동, 송탄동, 송북동	"
시흥시	시흥시 전지역(정왕 1, 2, 3, 4동 제외)	"
김포시	김포시 전지역	"
광명시	광명6동(옥길동), 광명7동, 하안1동, 소하1동, 소하2동, 소하2동(일직동), 학온동(오온사동, 가학동)	"
광주시	광주시 전지역(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제외)	"
오산시	대원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
이천시	이천시 전지역(창전동, 중리동 제외)	"
안성시	공도읍,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고삼면	"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청계동	"
하남시	천현동, 풍산동,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	"

시군	허용지역	가축의 종류
여주시	여주시 전지역	"
양평군	양평군 전지역	"
고양시	주교동, 원시동, 흥도동, 성사1동, 신도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화정2동, 행신1동, 고봉동, 송산동, 화전동, 일산2동	허용가축 (닭제외)
남양주시	남양주시 전지역	허용가축 (사슴제외)
파주시	파주시 전지역(금촌동, 금릉동, 동패동, 다울동, 문발동, 목동동, 와동동, 야당동 제외)	허용가축
양주시	양주시 전지역	"
포천시	포천시 전지역	"
동두천시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	"
가평군	가평군 전지역	"
연천군	연천군 전지역	"

- 허용가축 : 닭,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슴·토끼·칠면조·메추리·꿩(오리는 제외)
- 안산시 대부동(풍무동) : 돼지, 양 허용

□ 자가조리·판매를 위한 가축의 도살 및 처리허용지역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6-5086호. 2016. 4. 15.)

자가조리·판매를 위한 가축의 도살 및 처리허용지역

시군	허용지역	가축의 종류
수원시	입북동, 연무동	허용가축
성남시	운중동, 판교동, 신촌동, 복정동, 시흥동, 고등동, 서현동	"
용인시	포곡읍, 모현면, 남사면, 이동면, 원삼면, 백암면, 양지면	"
부천시	춘의동, 역곡1·2·3동, 범박동, 괴안동, 오정동, 성곡동	"
안산시	대부동(풍도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선감동), 팔곡동, 건건동, 사사동, 부곡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선부동, 화정동, 신길동	"
화성시	봉담읍(상리, 와우리, 동화리, 수기리, 수영리 제외), 향남읍(행정리, 발안리, 평리 제외), 우정읍(조암리 제외), 남양읍(남양리 제외),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송산리 제외), 정남면, 동부권(병점1·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동탄1·2·3·4동, 진안동, 동탄면) 제외	"

시군	허용지역	가축의 종류
평택시	전지역	"
시흥시	시흥시 전지역(정왕 1,2,3,4동 외)	"
김포시	통진읍, 고촌면, 양촌면,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김포1·2동, 사우동, 풍무동	"
광명시	광명6동(옥길동), 광명7동, 하안1동, 소하1동, 소하2동(일직동), 학온동(노온사동, 가학동)	"
광주시	광주시 전지역(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제외)	"
군포시	군포2동, 대야동	"
오산시	신장동, 세마동	"
이천시	이천시 전지역(창전동, 중리동 제외)	"
안성시	공도읍,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원곡면,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고삼면	"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청계동	"
하남시	천현동, 풍산동,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	"
여주시	여주시 전지역	"
양평군	양평군 전지역	"
과천시	갈현동, 과천동, 문원동	"
고양시	주교동, 원시동, 흥도동, 성사1동, 신도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 능곡동, 화정2동, 행신1동, 고봉동, 송산동, 화전동, 일산2동, 행신3동, 효자동, 대덕동, 송포동, 풍산동	"
남양주시	남양주시 전지역	허용가축 (사슴제외)
의정부시	호원1·2동, 장암동, 신곡1동, 송산1동, 송산2동, 자금동, 가능1동, 가능3동, 녹양동	허용가축
파주시	파주시 전지역(금촌동, 금릉동, 동패동, 다울동, 문발동, 목동동, 와동동, 야당동 제외)	"
양주시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장흥면	"
구리시	갈매동, 사노동, 아천동, 토평동	"
포천시	포천시 전지역	"
동두천시	불현동, 소요동, 상패동	"
가평군	가평군 전지역	"
연천군	연천군 전지역	"

- 허용가축 : 닭 및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슴·토끼·칠면조·메추리·꿩

도축검사 매뉴얼(관련 법령 및 규정)





참고 자료

1. 정보시스템의 활용
2. 절식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3. 도축장 식육부산물 위생관리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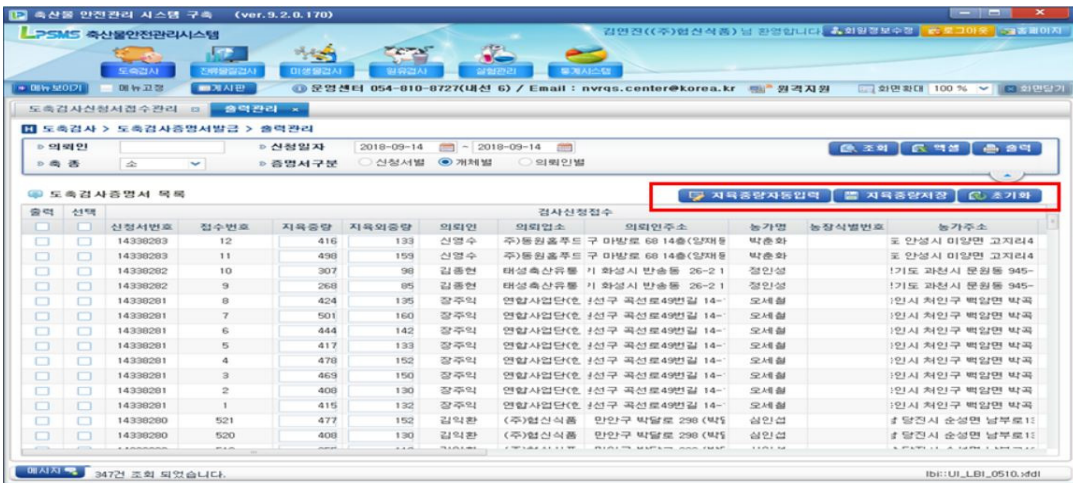
1 정보시스템의 활용

가. 도축검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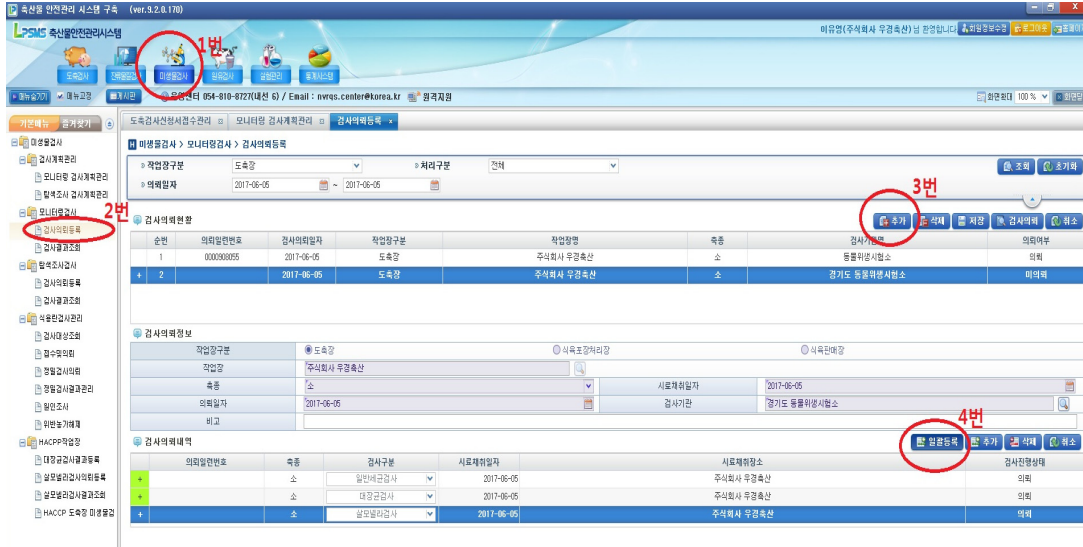
나.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의 활용

도축검사증명서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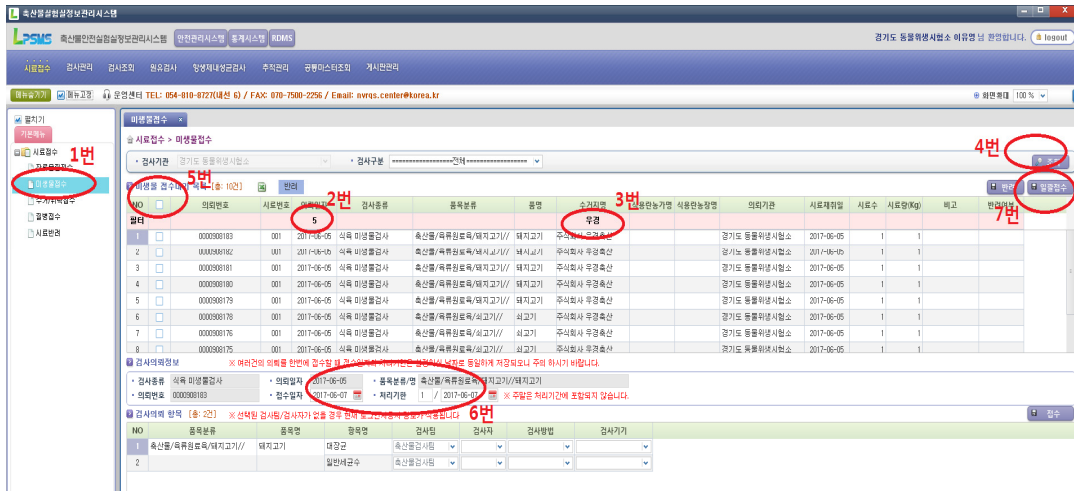
1. 도축검사항목 선택
2. 출력관리 선택
3. 신청일자-축종(소:개체별, 돼지: 신청서별, 닭: 신청서별)-증명서구분-조회
4. i) 지육증량과 지육외 중량이 입력된 작업장의 경우
초기화(증명서 새로고침의 의미, 증명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누름)-지육증량저장
- ii) 지육증량만 입력 되는 작업장의 경우
지육증량자동입력- 지육외 중량의 적용 %를 입력하고 지육증량, 지육외증량 등록의 과정 추가 이후 초기화-지육증량저장
5. 출력

미생물검사(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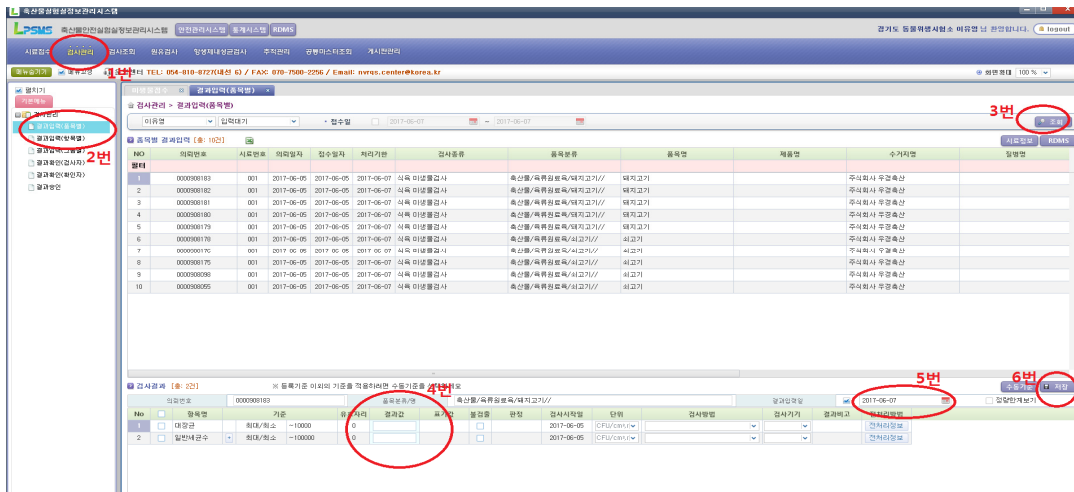


1. 미생물검사항목 선택
2. 모니터링검사 - 검사시료 등록
3. 추가버튼 클릭 후 검사의뢰정보란을 의뢰내용에 맞게 선택
4. 일괄등록 버튼 클릭
5. 살모넬라 항목 삭제
6. 검사의뢰 클릭

미생물검사(일반세균수, 대장균수) 검사결과 입력



1.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시료접수-미생물접수 선택
2. 의뢰일자에 날짜 입력 예) 3월 5일 의뢰한 경우 "5"입력
3. 수거지명에 도축장명 입력
4. 조회 클릭
5. NO 옆의 클릭하여 시료 전체선택(선택 후 반려버튼 클릭하여 반러가능)
6. 접수일자과 처리기한 입력
7. 일괄접수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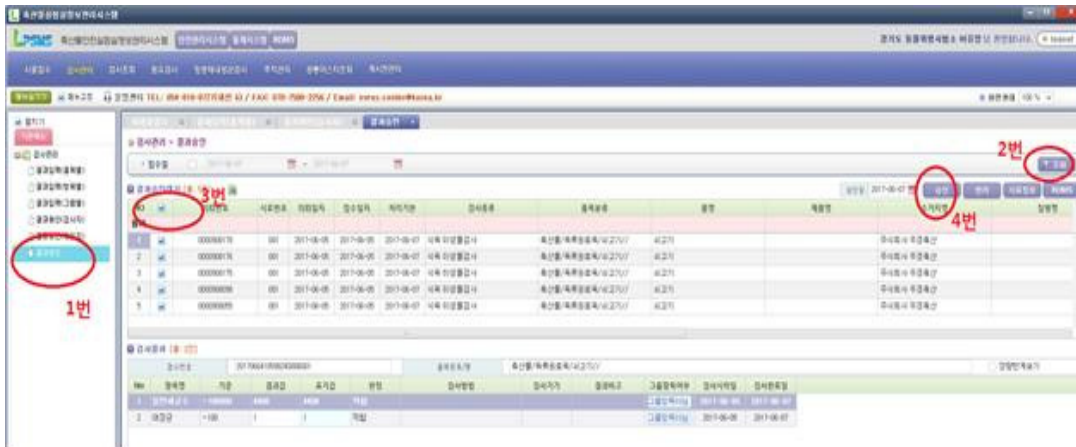


1. 검사관리 선택
2. 결과입력(품목별) 선택
3. 조회 클릭
4. 결과입력
5. 결과입력일 선택
6. 저장 클릭

미생물검사(세균수, 살모넬라)결과 승인



1. 결과확인(검사자) 클릭
2. 수거지명에 도축장명 입력(타 도축장결과 조회되는 것 차단)
3. 승인전결 선택(확인전결을 선택할 경우 추가로 결과승인에서 승인을 해야 함)
4. 조회
5. NO옆에 클릭하여 전체선택
6. 확인 클릭(승인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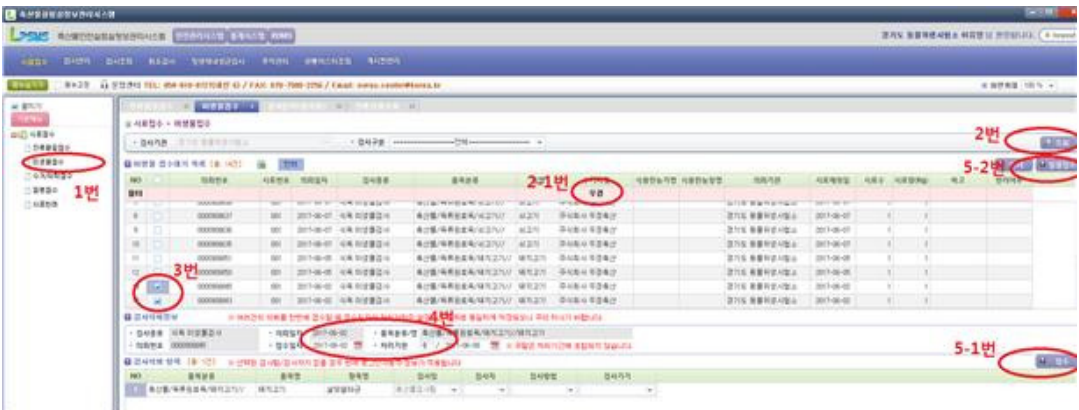


1. 확인전결을 선택(승인자 이름도 클릭해야 함)한 경우 결과승인 클릭
 2. 조회
 3. 전체선택
 4. 승인
- ※ 확인자 전결을 할 경우 결과승인에서 반력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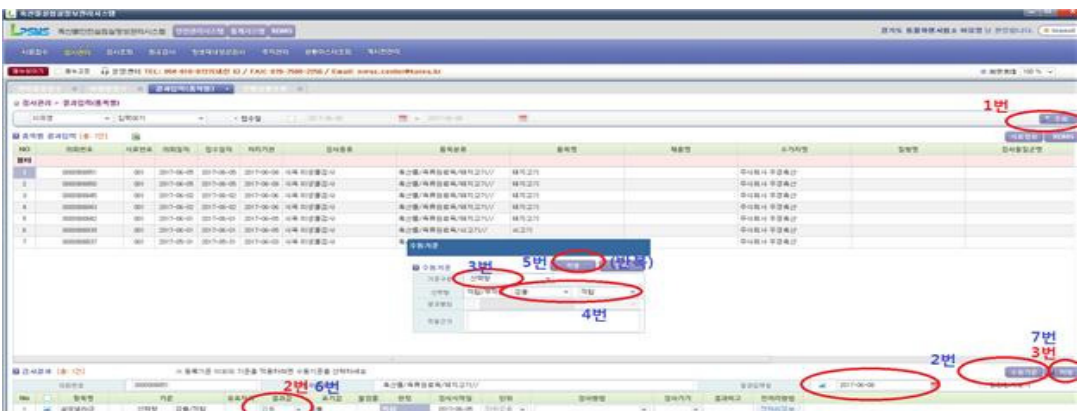
살모넬라검사 입력



1. 미생물검사-HACCP작업장-살모넬라검사의뢰 등록(미생물 세균수와 동일하게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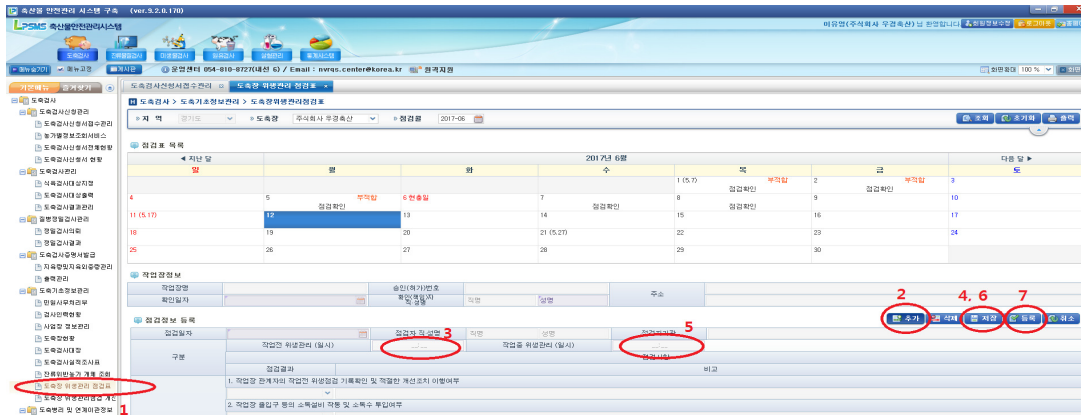


1.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시료접수-미생물 접수(이후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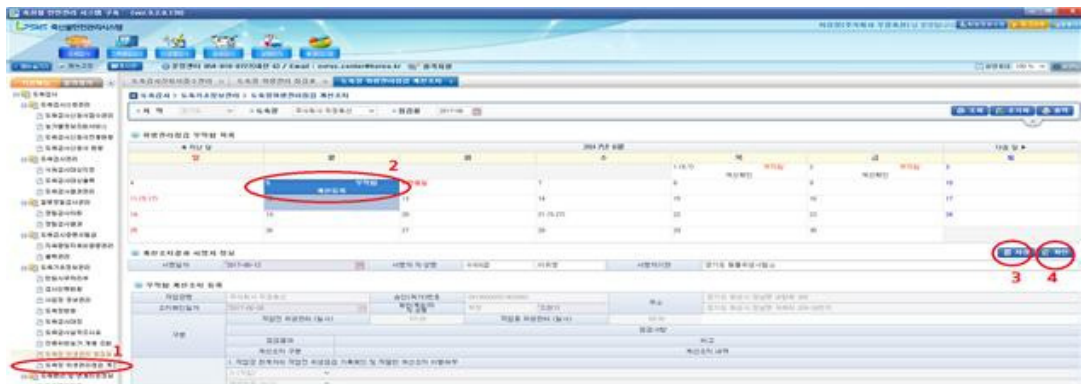
만일 살모넬라가 검출된 경우 결과입력(품목별)에서 검출시료 클릭-3번 수동기준 클릭-수동기준 팝업창 뜸-기준구분은 선택형, 선택형은 적합/부적합, 검출, 적합 순서대로 선택 후 적용 클릭

일일 위생관리점검



1. 도축장 위생관리 점검표 클릭
2. 해당날짜에 추가버튼 누름
3. 작업 전 점검시간 입력(작업 전, 작업 중 점검을 각각 입력가능 하도록 개선됨), 한번에 입력할 경우 3. 5번을 입력 후 저장→등록
4. 점검사항 기록 후 저장(저장할 경우 “적합”으로 저장. 부적합일 경우 해당사항 부적합 선택 및 사유 기록)
5. 작업 중 점검시간 입력
6. 저장
7. 등록(칼 소독조 온도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알림창이 뜸), 달력에 “점검등록”으로 표시됨. 작업장에서 확인 이후 “점검확인”으로 표시

위생관리 개선조치



1. 위생점검 결과 부적합을 등록할 경우 작업장에서 개선조치를 위생관리점검 개선조치 항목에 작성함(위생 관리 점검표에는 점검확인으로 표시됨)
2. 부적합 등록일 선택(개선등록으로 표시됨)
3. 부적합 개선사항 확인 후 저장
4. 등록(개선확인)으로 표시됨

다. 이력조회시스템의 활용

이력조회시스템을 통한 개체이력조회

1. 개체조회

개체조회

개체식별번호 KOR002 + 개체번호 12자리 또는 9자리 입력

2. 유효성 검사

002 0257 0002 3 는 올바른 개체식별번호 입니다.

3. 귀표정보

귀표종류	귀표번호	최초배부 위탁기관	현재소유 위탁기관	귀표상태	배부대상
일반귀표	02570002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031-230-4195)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031-230-4195)	사용중	위탁기관

4. 재부탁 귀표정보

재부탁귀표 번호	재부탁귀표 부착일자	재부탁귀표 부착기관	재부탁귀표 부착농장
2150575	2017-06-12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한세영(330249)

5. 개체 등록 여부

소의종류	성별	출생일자	개월령	신고일자	등록일자	개체상태	상세보기
젖소	암	2009-01-05	102	2009-04-08	2009-04-10	사육	상세보기

6. 사육단계

구분	농가명	농장명	위탁기관	참여대상
신고자	한세영 (330045)	한세영 (330249)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화성시
소유자	한세영 (330045)	한세영 (330249)	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	화성시
모개체번호			농장식별번호	116183
부개체번호			부정액번호	
소유자주소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외간곡길72 (삼화리)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354-4번지		사육지주소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외간곡길72 (삼화리)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354-4번지

② 절식여부 판단 가이드라인

절식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예시 : 경기도)

(「가축 출하 전 절식 판단을 위한 출하농가 및 도축의뢰인 지도용 가이드라인 알림」,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7097, '17.3.24.)

<p>절식여부 판단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체 검사시 절식여부를 확인하는데 가이드라인 제시 • 소의 경우 반추위 특성상 판단이 돼지에 비해 어려움 • 상습 위반농가의 경우 후순위 도축 등 도축장 여건에 맞는 여러 지도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음
<p>출하 전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가축을 사육하는 자, 도축장에 출하하려는 자 • 출하 전 절식과 약물투여 금지기간을 준수 • 포유류는 출하 전 12시간 이상, 가금류는 3시간 이상 절식 • 물은 제외
<p>운송 전 급식 (동물운송 세부규정 제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 관련 행정규칙(권장사항) • 상차 전 소4시간, 오리 4시간, 오리 2시간 전까지 급식 • 돼지는 멀미구토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4시간 전부터 절식 • 도축 전 공복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p>계류시간 (동물도축 세부규정제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권장사항) •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적정절식시간

최소 16시간 이상, 24시간 내외 권장

판 단 부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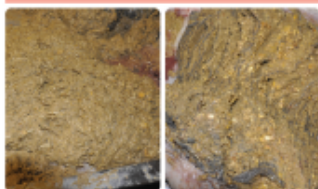
제3위

판 단 기 준

사료 잔여량 및 곡물사료(옥수수) 소화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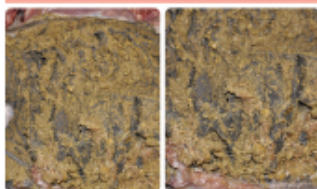
※ 주의 사항: 본 자료는 사료 종류와 조성, 개체별 사료 식습관, 섭취량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 볏짚과 비육후기 사료 섭취 시

8시간



사료들 형태 온전
특히 곡물(옥수수) 형태 온전

12시간



볏짚 소화 진행 중
곡물(옥수수) 형태 지속유지

16시간



볏짚은 거의 없으나
곡물(옥수수) 소화 불완전

돼지



적정절식시간

최소 12시간 권장

판 단 부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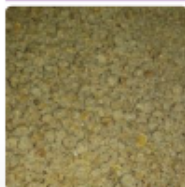
위(胃)

판 단 기 준

사료 잔여량 및 소화상태

※ 주의 사항: 본 자료는 곡물사료(옥수수)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사료 종류와 조성, 개체별 사료 식습관, 섭취량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0시간



사료 섭취 전
곡물(옥수수) 사료

4시간



곡물(옥수수) 형태가
온전하며 잔여물이 가득함

8시간



소화 진행 및 곡물(옥수수)
형태 지속유지

12시간



소화액과 수분이 대부분이며
잔여물이 거의 없음

16시간



소화액과 수분이 대부분이며
잔여물은 없음

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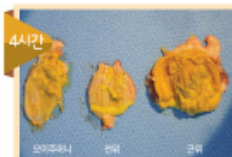


- 적정절식시간 : 최소 8시간 이상, 8~12시간 범위 권장
- 판단 부위 : 근위
- 판단 기준 : 사료 잔여량 및 소화상태

※ 주의 사항 : 본 자료는 사료 종류와 조성, 개체별 사료 식습관, 섭취량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사료형태 온전,
내장 내 잔여물 가득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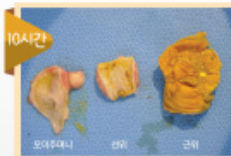
소화 일부 진행 및
각 부위별 사료잔여물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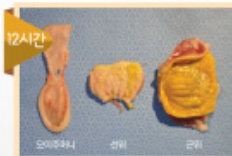
모이주머니,
선위 내용물이 비워지기 시작



선위 및 근위 내
사료 잔여물 일부 존재



근위 내 일부 사료잔여물과
모래, 돌 관찰



전 부위에서 사료가
남아있지 않음

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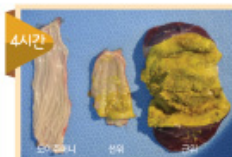


- 적정절식시간 : 최소 8시간 이상, 8~12시간 범위 권장
- 판단 부위 : 근위
- 판단 기준 : 사료 잔여량 및 소화상태

※ 주의 사항 : 본 자료는 사료 종류와 조성, 개체별 사료 식습관, 섭취량 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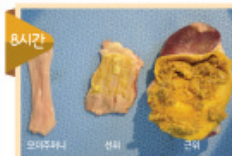
사료형태 온전,
내장 내 잔여물 가득 존재



모이주머니 내용물이
비워지기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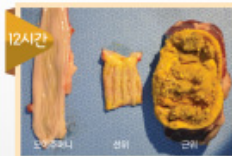
선위 및 근위 내 사료 잔여량
감소 시작



선위 및 근위 내
사료 잔여물 일부 존재



근위 내 일부 사료잔여물과
모래, 돌 관찰



전 부위에서 사료가
남아있지 않음

3 도축장 식육부산물 위생관리 매뉴얼

(농림축산식품부, 2014. 12. 5.)

가. 식육부산물의 범위 및 생산공정

1) 범위

- 본 매뉴얼의 적용범위는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창자, 콩팥, 머리, 다리, 꼬리, 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 적내장은 통상적인 구분에 따라 간, 심장, 폐 등을 말한다.
- 백내장은 통상적인 구분에 따라 위장, 췌장, 비장, 콩팥 및 창자 등을 말한다.

법 적 근 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

- ‘식육’이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함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약처고시, 제2013-244(‘13.12.10)]

- ‘식육’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 정육, 내장, 그 밖의 부분을 말함
- ‘지육’은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도체(car cass)를 말함.
- ‘정육’은 지육으로부터 뼈를 분리한 고기를 말함.
- ‘내장’은 식용을 목적으로 처리된 간, 폐, 심장, 위장, 췌장, 비장, 콩팥 및 창자 등을 말함.
- ‘그 밖의 부분’은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된 가축으로부터 채취, 생산된 가축의 머리, 꼬리, 발, 껍질, 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위를 말함.

2) 국내 식육부산물의 분류

가) 부위별

- 식용이 가능한 부산물의 종류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국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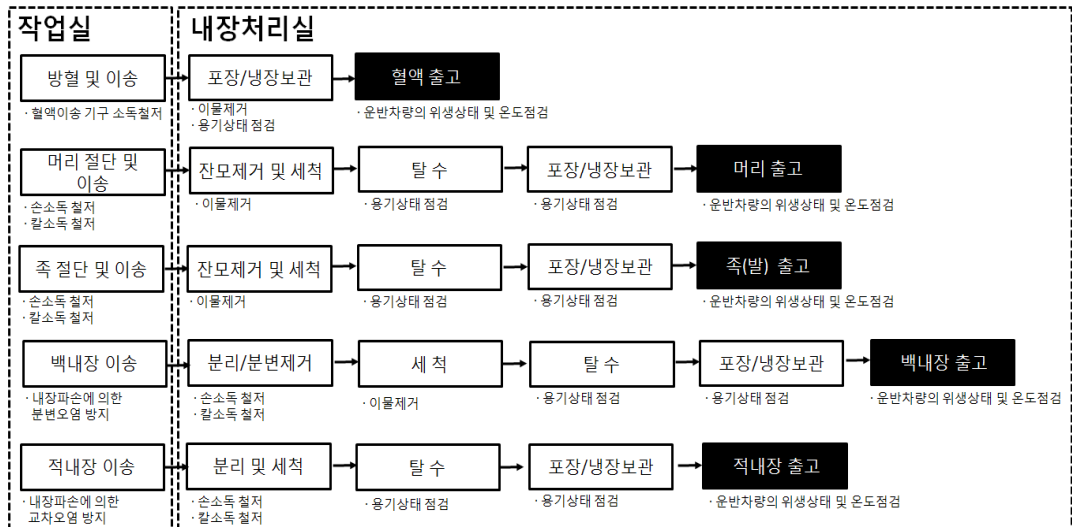
소 식육부산물	돼지 식육부산물	닭 식육부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양, 반추위) 2위(벌집위) 3위(천엽) 4위(홍창, 막창) - 소장(곱창) - 대장(대창) • 간, 심장, 폐, 비장, 콩팥 • 기타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 족(발), 꼬리, 혈액(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 대장(대창), 막창 • 간, 심장, 폐, 비장, 콩팥 • 기타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머리, 족(발), 혈액(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위 • 닭발 • 심장 • 내장

나) 생식용

- 식육부산물 중 전통적으로 가열·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으로 소의 간, 비장, 천엽 등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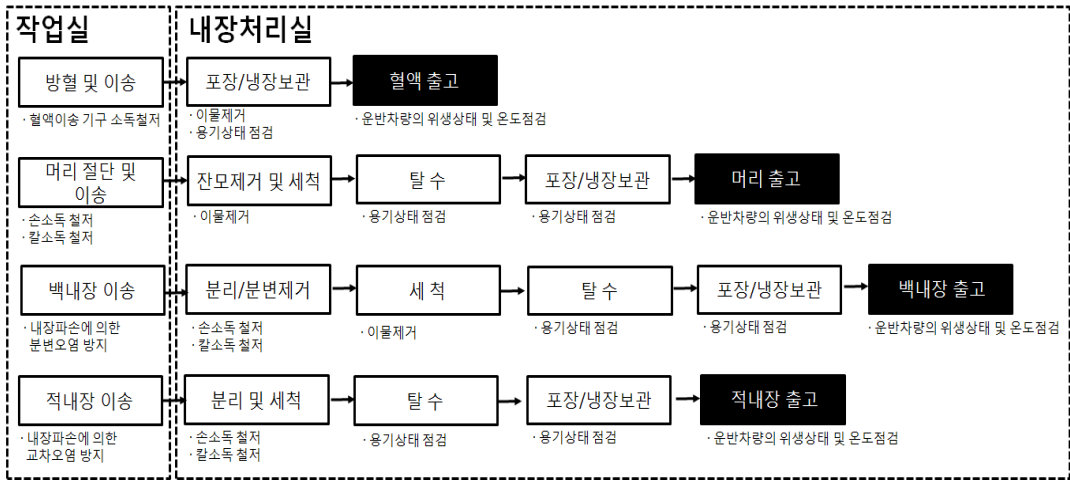
3) 축종별 도축작업 중 식육부산물의 생산공정도

가) 소 식육부산물 처리공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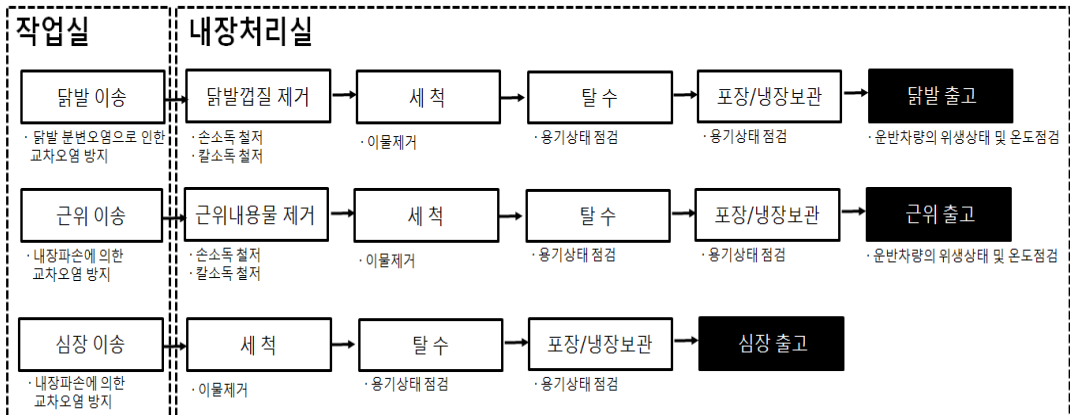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에 대한 처리공정도임.

나) 돼지 식육부산물 처리공정도



*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에 대한 처리공정도임.

다) 닭 식육부산물 처리공정도



*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에 대한 처리공정도

나. 식육부산물 관리기준

1) 내장처리실 시설관리기준

가) 위치, 구조 및 시설

- ① 내장처리실 내·외부 및 주위환경은 식육부산물을 처리하는데 있어 간접적·직접적으로 오염을 유발하거나 식용으로 제공하기에 부적합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내장처리실의 주위환경 정비를 통해 해충 및 설치류가 서식·은닉할 수 없도록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③ 내장처리실의 주위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담장 등 차단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④ 내장처리실은 작업실 안에 구획하여 설치하거나 도축장 안에 따로 설치하되, 내장검사대와 연결되도록 한다.
- ⑤ 내장처리실은 적절한 온도와 환기가 유지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축종 및 처리되는 내장의 종류에 따라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등으로 분리 또는 구획하는 것을 권장한다.
- ⑥ 소 머리, 족(발) 등 고압으로 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털 날림 등으로 주위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벽 등으로 분리 또는 구획 관리하여야 한다.
- ⑦ 내장처리실은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⑧ 내장처리실은 실내온도가 15℃이내(열이 발생하는 공정이나 시설이 있는 장소 제외)로 유지될 수 있도록 냉방시설의 설비를 권장한다.

나) 바닥, 내벽 및 천정

- ① 내장처리실 안의 바닥과 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이하의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타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로 시공하여 작업과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내벽 및 천정은 세척·소독이 용이한 내구성 재질로 시공되어야 하며, 누수

등이 되지 않도록 구멍이나 틈이 없어야 한다. 또한 벽은 곰팡이를 방지하고, 천정은 응축수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며 이물이나 먼지 등이 붙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 ③ 바닥은 콘크리트·돌 등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미끄럼을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100분의 1 정도의 경사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내벽의 표면 및 칸막이는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타일·스테인레스철재 등 이와 유사한 재료로 시공하거나 내수성 또는 세균방지용 페인트칠을 하여 청소가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 환기시설

- ① 내장처리실 안의 악취·유해가스·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이 있어야 한다.
- ② 외부로 개방된 환기시설은 해충 및 설치류 등을 막을 수 있는 여과망이나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채광 및 조명시설

- ① 내장처리실 안은 작업이 용이하도록 자연채광 또는 인공조명장치를 하며 밝기는 2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검사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에는 540룩스 이상을 권장한다.)
- ② 조명장치는 파열시 식육부산물에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망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마) 배수로 및 배관

- ① 내장처리실의 배수구는 암거를 원칙으로 하며, 실내에서 실외로 통하는 배수구는 트랩(U자관)을 설치하여 냄새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실내의 배수구 덮개는 스테인리스 철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 상부 개폐식으로 설치하고 덮개의 구멍은 쥐 등의 드나듦을 막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한다.

- ③ 내장처리실의 배수로는 퇴적물이 쌓여 있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가 용이하며 폐수가 넘쳐 작업실 등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④ 내장처리실의 배관은 음용수 및 비음용수간의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위해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은 가능한 작업장 내부로 노출되지 않게 설치한다.
- ⑤ 내장처리실의 배관은 표면 응결수 발생이 없도록 하거나 응결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바) 방서·방충관리

- ① 내장처리실의 창문, 환기시설, 배수구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곳은 쥐, 파리 등 위해생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서·방충설비를 하여야 한다.
- ② 방서·방충관리에 사용하는 화학약품 등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관리한다.

사) 휴게실, 화장실 등

- ① 화장실은 내장처리실과 차단되어 있거나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수세설비와 방서·방충설비를 하여야 하며, 수도꼭지는 반자동 또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탈의실은 내장처리실과 인접한 곳에 구획하여 설치하고, 탈의실 안에는 종업원 개인별로 옷·신발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함이 있어야 한다.

아) 용수관리

- ① 급수시설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②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축산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법적 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③ 식육부산물과 직접 사용하는 얼음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사용하여 위생적으로 생산·취급·보관되어야 한다.

2) 작업설비 및 기구 관리기준

가) 공통사항

(1) 식육부산물 설비관리

- ① 내장처리실에는 식육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세척용수조 및 폐기용저장용기가 있어야 한다.
- ② 식육부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장비·도구는 위생적인 스테인리스철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으로 세척·소독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 ③ 적내장 및 백내장을 구분하여 내장처리실로 운반하고 적내장의 경우 현수이송장치(설비)의 설치를 권장하며, 내장처리실에서도 적내장과 백내장을 구별하여 위생적으로 취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④ 혈액(피)을 식용에 제공하거나 식품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혈액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비는 이물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공기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혈액을 채취할 수 있는 장비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⑤ 처리과정 중 쉽게 부러져서 위해물질이 되는 도구(커터기, 철수세미 등)의 사용 및 설치는 금지한다.
- ⑥ 내장처리라인에는 종업원들이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일정 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분리, 해체 등에 사용되는 칼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냉장·냉동시설

- ① 식육부산물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실은 내장처리실 안에 설치하거나, 공간이 협소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장처리실 외부에 설치하되, 내장

처리실과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냉장을 하는 경우에는 입고 후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 냉동을 하는 경우에는 냉동실 내부온도가 -18℃이하가 되는 성능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실 벽면의 재질은 내수성·무독성 재료로 시공되어야 한다.
- ③ 냉장·냉동실은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되, 문을 열지 않아도 온도를 알아볼 수 있는 온도계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식용 및 비식용 용기구분

- ① 식육부산물을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류는 식품위생법 제9조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② 식육부산물의 보관 및 운반은 전용 용기를 이용해야 하며, 용도(식용, 비식용)에 따라 색깔 및 형태를 구분하여 서로 섞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비식용부산물이 식용부산물과 동일한 용기에 섞여 담겨져 있거나 동일한 용기를 사용하여 처리·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축종별 세부기준

(1) 소 및 돼지

- ① 내장처리실에는 내장처리대, 내장운반구, 세척용수조 및 세척 후 물기를 빨 수 있는 전용 기구 또는 용기 및 폐기용저장용기가 있어야 한다.
- ② 내장처리실에서 사용하는 내장처리대, 내장운반구, 세척용수조 및 폐기용 저장용기 등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철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세척 및 소독에 용이하여야 한다.
- ③ 내장처리라인에는 종업원들이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일정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분리, 해체 및 세척 등에 사용되는 칼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닭

- ① 내장처리실은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면적으로 설치하고 내장처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식육부산물물 취급하는데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철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하며, 세척 및 소독에 용이하여야 한다.
- ③ 내장처리라인에 칼을 이용하여 해체작업이 이루어질 경우는 종업원들이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일정간격으로 83℃ 이상의 온수가 나오는 설비를 하여 분리, 해체 등에 사용되는 칼 등을 소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위생관리기준

가) 작업장 위생관리

- ① 가축도살·지육처리 및 내장처리에 종사하는 종업원은 작업구간별로 구분하여 작업에 임해야 한다.
- ② 식육부산물의 반입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내장처리 및 작업자의 동선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작업개시 전에는 식육부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도구 등의 표면은 흙·고기찌꺼기·털·쇠붙이 등 이물질이나 세척제 등 유해성 물질이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 ④ 작업 중에 오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오염물질 제거, 기구 및 손 등을 세척한 후 작업을 개시한다.
- ⑤ 식육부산물은 벽·바닥 등에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처리·운반하여야 하고, 냉장·냉동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저장·운반하여야 한다.

나) 청소·세척·소독관리

- ① 내장처리 작업 후 사용된 장갑, 앞치마, 장화 등은 세척·소독하여 건조한 후 보관한다.
- ② 내장처리실 바닥 및 하수구는 식육부산물 찌꺼기 등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 ③ 내장처리대, 내장운반구, 세척용 수조 및 식육부산물과 직접 접촉되는 장비·도구 등은 식육부산물 찌꺼기 또는 이물을 제거하고 세척·소독 등 실시로 청결상태를 유지한다.
- ④ 식육부산물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설비·기구 및 용기도 정기적으로 청소 등 청결하게 관리하여 비위생적인 상황이나 교차 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 ⑤ 내장처리실에서 사용하는 소독약 등은 잠금장치가 가능한 곳에 보관·관리 한다.

다) 종업원의 위생관리

- ① 내장처리실에서 종사하는 종업원은 위생복·위생모·앞치마·장화 및 장갑 등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착용한 상태로 내장처리실 밖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내장처리 작업 중 화장실을 갈 때는 앞치마, 장갑 등을 벗어야 한다.
- ③ 내장처리실에서는 흡연·음식물 섭취 및 껌을 씹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종업원의 내장처리실 출입 시 팔찌, 반지, 귀고리, 목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종업원은 인조눈썹, 매니큐어, 화장품 등 식육부산물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코트, 지갑, 컵, 전자제품 등 개인물품은 내장처리실 안으로 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검사관 또는 영업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을 내장처리실 안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⑧ 종업원 위생관리수칙은 종업원이 볼 수 있도록 내장처리실 출입 장소에 부착하여 관리한다.

라) 종업원 건강진단

-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9조에 의하여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② 신체질환 등으로 식육부산물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종업원은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
- ③ 영업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 및 퇴사한 종업원이 일정기간이 지나 복직하는 경우에 필요시 건강진단을 다시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및 제3군감염병 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을 포함하여 피부병이나 그 밖의 화농성 질환이 있는 자는 종사를 금지한다.

마) 종업원 교육훈련

-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검사관 또는 종업원이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결과는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바) 폐기물 관리

- ① 도축검사 후 불합격된 부산물은 합격된 부산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공정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수시로 수거하여 지정된 용기에 수집하여 처리되어야 하며, 모든 폐기물이 2시간 이상 작업장에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 ③ 폐기물 처리에 사용한 용기는 사용 중에 교차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잔유물이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처리에 사용한 용기는 식육부산물 용기로 사용할 수 없고 작업장 내에서는 밀폐되어야 한다.

4)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점검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일 작업개시 전 및 작업 중 자체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영업자는 작업개시 전 및 작업 중 자체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탈이 발생한 경우, 위생상태 개선, 재발방지조치 및 영향 받은 제품의 처리 등 적절한 개선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 운용 등에 대한 검사관 등의 지시한 사항을 반영하여 즉시 시정·보완하여야 하며 즉시 시정·보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식육부산물 처리기준

1) 포유류

가) 혈액의 처리기준

- ① 도축검사 결과 합격한 가축의 혈액만을 식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② 혈액을 수집·운반·보관 등 작업공정은 미생물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에 사용되는 용기 및 도구 등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 ③ 혈액을 식용에 제공하거나 또는 식품·의약품의 원료로 수집할 때 목 주위의 털 및 타액에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 ④ 혈액을 수집·보관·운반하는 용기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포장지를 용기 내피로 넣어 사용할 수 있다. 혈액을 보관·운반할 때에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식용으로 제공하는 혈액(선지)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소금(Sodium chloride)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용으로 적합한 소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⑥ 혈액 수집 후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냉장실 내부온도가 10℃ 이하로 관리되는 냉장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식육부산물의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는 포장대상 식육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식육부산물 종류,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⑧ 바닥에 떨어진 혈액은 폐기하여야 한다.
- ⑨ 혈액의 수집·운반·보관 등에 사용한 설비, 용기 및 기구 등은 묻어있는 혈액이 굳기 전에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세척이 완료된 후에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소 머리의 처리기준

- ① 도축검사 결과, 검사에 합격된 소 머리만을 식용으로 한다.
- ② 절단된 소 머리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송장치(설비)를 통하여 내장 처리실로 이송한다.
- ③ 온수 및 고압을 이용하여 털을 제거하며, 털 제거를 위하여 온수에 소머리를 담귀 둘 경우, 작업장의 상황에 맞게 물은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거나 교체하여 깨끗한 상태이어야 한다.
- ④ 고압으로 털을 제거하는 경우 털 날림 등으로 주위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털이 제거된 소머리는 흐르는 물로 세척을 실시한다
- ⑤ 세척·소독된 칼을 이용하여 잔모를 처리한다.
- ⑥ 핏물 등을 빼기 위해 머리를 수조에 담귀 둘 경우 물은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거나 교체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⑦ 소 머리는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야 한다. 세척된 소 머리의 물기를 제거하는 경우, 바닥의 물이 튀지 않을 정도로 바닥과 간격을 두어야 하고, 작업 후에는 용기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⑧ 물기가 빠진 머리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머리를 보관·운반할 때에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⑨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한다. 내장처리실에서의 체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전용 용기에 얼음을 채워 온도를 낮춘다
- ⑩ 식육부산물의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는 포장대상 식육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식육부산물 종류,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⑪ 이송장치(설비) 및 사용된 장비·기구 등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세척이 완료된 후에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⑫ 작업 시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은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작업칼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며,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장갑은 수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소 족(발)의 처리기준

- ① 도축검사 결과, 검사에 합격된 소 족(발)만을 식용으로 한다.
- ② 절단된 소 족(발)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송장치(설비)를 통하여 내장처리실로 이송한다.
- ③ 온수를 이용하여 털을 제거하며, 발톱의 제거를 위하여 온수에 족(발)을 담가 둘 경우, 작업장의 상황에 맞게 물은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털 제거 후, 흐르는 물로 1차 세척을 실시한다.
- ⑤ 세척·소독된 칼을 이용하여 잔모를 처리한다.

- ⑥ 핏물 등을 빼기 위해 족(발)을 수조에 담귀 둘 경우 물은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⑦ 소 족(발)은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야 한다. 세척된 소 족(발)의 물기를 제거하는 경우, 바닥의 물이 튀지 않을 정도로 바닥과 간격을 두어야 하고, 작업 후에는 용기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⑧ 물기가 빠진 족(발)은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족(발)을 보관·운반할 때에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⑨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한다. 내장처리실에서의 체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전용 용기에 얼음을 채워 온도를 낮춘다.
- ⑩ 식육부산물물의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는 포장대상 식육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식육부산물 종류,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⑪ 이송장치(설비) 및 사용된 장비·기구 등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세척이 완료된 후에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⑫ 작업 시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은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작업칼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며,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장갑은 수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돼지 머리의 처리기준

- ① 도축검사 결과, 검사에 합격된 돼지 머리만을 식용으로 한다.
- ② 절단된 돼지 머리는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송장치(설비)를 통하여 내장처리실로 이송한다.
- ③ 세척·소독된 칼을 이용하여 잔모를 처리한다.
- ④ 잔모의 제거 후, 흐르는 물로 1차 세척을 실시한다.

- ⑤ 핏물 등을 빼기 위해 머리를 수조에 담귀 둘 경우 물은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⑥ 돼지 머리는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야 한다. 세척된 돼지 머리의 물기를 제거하는 경우, 바닥의 물이 튀지 않을 정도로 바닥과 간격을 두어야 하고, 작업 후에는 용기를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⑦ 물기가 빠진 머리는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돼지 머리를 보관·운반할 때에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⑧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한다. 내장처리실에서의 체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전용 용기에 얼음을 채워 온도를 낮춘다
- ⑨ 식육부산물의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는 포장대상 식육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식육부산물 종류,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⑩ 이송장치(설비) 및 사용된 장비·기구 등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세척이 완료된 후에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⑪ 작업 시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은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작업칼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며,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장갑은 수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적내장의 처리기준

- ① 도축검사 결과, 검사에 합격된 적내장만 식용으로 한다
- ② 적내장은 교차오염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위생적으로 적출하여 백내장과 구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송장치(설비)를 통하여 내장처리실로 이송한다.
- ③ 이송장치(설비)에서 떨어진 적내장은 세척과정 없이 세척·소독된 칼을 이용하여 장기별 분리를 실시하며, 분리된 장기는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④ 각각의 적내장에서 오염이 발생한 경우, 생식용으로 제공할 때에는 오염 정도에 따라 전체 폐기 또는 오염부분을 도려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다만, 세척이 불가피한 경우 흐르는 물로 표면에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세척하여야 한다. 적내장을 수조에 담귀 세척할 경우, 적내장 종류별 수조는 달리하여야 하며 수조의 물은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⑥ 적내장은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야 하고 전용 기구 또는 용기에 담아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 ⑦ 물기가 빠진 적내장은 종류별로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적내장을 보관·운반할 때에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⑧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한다. 내장처리실에서의 체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전용 용기에 얼음을 채워 온도를 낮춘다.
- ⑨ 식육부산물물의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는 포장대상 식육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식육부산물 종류,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⑩ 이송장치(설비) 및 사용된 장비·기구 등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세척이 완료된 후에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⑪ 작업 시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은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작업칼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며,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장갑은 수시 교체하여야 한다.

바) 백내장의 처리기준

- ① 도축검사 결과, 검사에 합격된 백내장만 식용으로 한다
- ② 백내장은 적내장과 구분되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송장치(설비)를 통하여 내장처리실로 이송한다.
- ③ 이송장치(설비)를 통하여 내장처리실로 이송 중 백내장의 파열되었을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이송장치(설비) 및 내장처리대의 세척을 실시한 후 작업을 개시한다.
- ④ 이송장치(설비)에서 떨어진 백내장은 세척과정 전에 세척·소독된 칼을 이용하여 위와 장을 분리하며, 분리된 장기는 작업라인을 달리하여 처리한다.
- ⑤ 위장의 처리
 - ㉠ 소 위의 경우, 1위(양), 2위(별집위), 3위(천엽) 및 4위(홍창 또는 막창)를 세척·소독된 칼을 이용하여 분리하며, 분리된 위장은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 분리된 소 위 및 돼지 위는 세척·소독된 칼을 이용하여 절개한 후, 흐르는 물로 1차 세척하면서 내용물을 제거하며 최종 세척단계까지도 흐르는 물로 세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다만, 위장을 수조에 담귀 세척할 경우, 수조의 물은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 위장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용 기구 또는 용기에 옮기기 전에 흐르는 물로 최종 세척을 실시하여 위장의 표면에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자동 세척기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물을 이용하여 위 세척을 실시하며,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용 기구 또는 용기에 위장을 옮기기 전에 위장 표면(내부)에 이물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완전한 세척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흐르는 물로 재 세척을 실시한다.
 - ㉦ 세척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위를 열처리 할 경우, 흐르는 물로 최종 세척하여 표면과 위 내부에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열처리를 실시한다.
- ⑥ 창자의 처리
 - ㉠ 소장과 대장은 세척·소독된 칼을 이용하여 구분하며, 분리된 장기별 작업라인을 달리하여 처리한다. 이때 소장와 대장은 작업장의 상황에 따라 더 세분되게

- 구분하여 작업할 수 있으며, 세분화할 경우에는 작업라인도 달리하여 처리한다.
- ㉞ 분리된 창자는 흐르는 물로 1차 세척하면서 장 내용물을 제거한다. 이때 수동 박리기(manual stripper)나 롤러(roller)등의 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
 - ㉟ 분리된 창자는 최종 세척까지 흐르는 물로 세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㊱ 창자를 수조에 담귀 세척할 경우, 수조의 물은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㊲ 창자는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야 하고 전용 기구 또는 용기에 담아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 ㊳ 자동 세척기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물을 이용하여 장 세척을 실시하며,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용 기구 또는 용기에 옮기기 전에 창자의 표면(내부)에 이물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완전한 세척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흐르는 물로 재 세척을 실시한다.
 - ㊴ 세척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창자를 열처리 할 경우, 흐르는 물로 최종 세척하여 표면과 내부에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열처리를 실시한다.
 - ㊵ 물기가 빠진 백내장은 종류별로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백내장을 보관·운반할 때에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 ㊶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한다. 내장처리실에서의 체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전용 용기에 얼음을 채워 온도를 낮춘다.
 - ㊷ 식육부산물(포)의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는 포장대상 식육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식육부산물 종류,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㊸ 이송장치(설비) 및 사용된 장비·기구 등은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요시, 세척이 완료된 후에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에 사용될 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㊹ 작업 시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은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작업칼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며, 작업자가 착용

하고 있는 장갑은 수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기타 식육부산물의 처리기준

- ① 도축검사 결과, 식용에 사용가능한 부산물만 처리한다.
- ② 식육부산물 처리기준에 정하고 있지 않은 부위는 세척·소독된 칼을 이용하여 구분하며, 분리된 장기별 작업라인을 달리하여 처리한다.
- ③ 절개가 필요한 경우는 세척·소독된 칼을 이용하여 절개를 실시한다.
- ④ 분리된 식육부산물은 최종 세척까지 흐르는 물로 세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식육부산물을 수조에 담귀 세척할 경우, 부산물 종류별 수조는 달리하여야 하며 수조의 물은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⑥ 식육부산물은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용 기구 또는 용기에 옮기기 전에 흐르는 물로 최종 세척을 실시하여 기타 식육부산물의 표면과 내부에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자동 세척기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물을 이용하여 세척을 실시하며,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용 기구 또는 용기에 식육부산물을 옮기기 전에 표면에 이물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완전한 세척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흐르는 물로 재 세척을 실시한다.
- ⑧ 물기가 빠진 식육부산물은 종류별로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기타 식육부산물을 보관·운반할 때에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⑨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한다. 내장처리실에서의 체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전용 용기에 얼음을 채워 온도를 낮춘다.
- ⑩ 식육부산물의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는 포장대상 식육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식육부산물 종류,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⑪ 작업 시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은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작업칼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며,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장갑은 수시 교체하여야 한다.

2) 닭

- ① 도축검사 결과, 검사에 합격된 부산물만 식용으로 한다
- ② 닭발, 근위 및 기타 식육부산물은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동이송장치(설비)를 통하여 부위별 내장처리실로 이송한다.
- ③ 내장처리실에서 닭발의 껍질 및 근위 내용물 제거 작업은 내장처리대에서 세척·소독된 칼을 이용하여 닭발의 껍질 제거 또는 근위를 절개하고 흐르는 물로 1차 세척을 실시한다.
- ④ 분리된 식육부산물은 최종 세척까지 흐르는 물로 세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식육부산물을 수조에 담귀 세척할 경우, 수조의 물은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물을 투입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 ⑥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용 기구 또는 용기에 식육부산물을 옮기기 전에 흐르는 물로 최종 세척을 실시하여 식육부산물의 표면과 내부에 이물질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자동 세척기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물을 이용하여 세척을 실시하며, 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용 기구 또는 용기에 식육부산물을 옮기기 전에 식육 부산물의 표면에 이물질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완전한 세척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흐르는 물로 재 세척을 실시한다.
- ⑧ 물기가 빠진 식육부산물은 종류별로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운반하여야 한다. 식육부산물을 보관·운반할 때에는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 ⑨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냉장 또는 냉동상태로 보관한다. 내장처리실에서의

체류가 길어질 경우에는 전용 용기에 얼음을 채워 온도를 낮춘다.

- ⑩ 식육부산물의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는 포장대상 식육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식육부산물 종류,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⑪ 작업 시 교차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작업공정은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작업칼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며, 작업자가 착용하고 있는 장갑은 수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식육부산물 보관·운반관리 및 표시기준

1) 보관·운반관리

- ①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부산물은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지정된 전용 용기에 담아 위생적으로 보관·운반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지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식육부산물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실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다른 물건들과 혼재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식육부산물을 냉장·냉동실에 입·출고 또는 보관할 때에는 벽·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 ④ 식육부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작업자의 손, 운반구, 도구 등은 위생적인 상태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세척 및 소독하여야 한다.
- ⑤ 식육부산물을 운반하는 때에는 냉장 또는 냉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보관 및 운반 온도는 10℃이하의 냉장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으로 보관 및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 ⑥ 식육부산물을 하차하는 과정에서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차하여야 한다.
- ⑦ 운행 중에 식육부산물 등의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운행이 완료되면 식육부산물을 보관·운반하는데 사용한 적재함 등을 반드시 세척·소독하여야 한다.

- ⑧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표시기준

- 식육부산물에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포장대상 식육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식육부산물 종류, 작업장 명칭, 생산연월일, 보존방법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마. 약품관리

1) 식육부산물에 직접 적용되는 살균·소독제의 사용기준

-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중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식품의 살균목적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 종류 및 사용기준 [붙임 1]’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식육부산물 공정과정 중 사용되는 기구·기계에 적용되는 소독제의 사용기준

-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중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 등의 소독제 종류 및 사용기준 [붙임 1]’를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붙임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 '19. 1. 9.)

□ 식품의 살균목적에 사용되는 살균소독제 종류 및 사용기준

○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은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차아염소산수

차아염소산수는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수는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이산화염소(수)

이산화염소(수)는 아래의 식품 또는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이산화염소는 빵류 제조용 밀가루 이외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량은 빵류 제조용 밀가루에 있어서는 1kg에 대하여 30mg 이하이어야 한다.
2. 이산화염소수는 과실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최종 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오존수

오존수는 과일류, 채소류 등 식품의 살균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최종 식품의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 등의 소독제 종류 및 사용기준

○ 에탄올제제 :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

○ 염화-N-데실-N,N-디메틸-1-데칸아미늄제제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 : 사용량은 200mg/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 염화알킬(C₁₂-C₁₈)벤질디메틸암모늄제제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 :

염화알킬(C ₁₂ -C ₁₈)벤질디메틸암모늄	200mg/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시 4급암모늄의 합계로서 400mg/L 이하)
염화-n-알킬(C ₁₂ -C ₁₄)디메틸 에틸벤질암모늄(평균분자량 377~384)	200mg/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시 4급암모늄의 합계로서 400mg/L 이하)
염화-n-알킬(C ₁₂ -C ₁₈)디메틸 에틸벤질암모늄(평균분자량 384)	200mg/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시 4급암모늄의 합계로서 400mg/L 이하)
염화디-n-알킬(C ₈ -C ₁₀)디메틸 암모늄(평균분자량 332~361)	240mg/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다만 다른 4급암모늄과 병용시 4급암모늄의 합계로서 400mg/L 이하)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	550mg/L 이하

○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제제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 : 사용량은 100mg/L 이하(유효염소로서)

○ 차아염소산나트륨제제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 : 사용량은 200mg/L 이하(유효염소로서)

○ 차아염소산수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 : 사용량은 200mg/L 이하(유효염소로서)

○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제제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 :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	550mg/L 이하
염화디-n-알킬(C ₈ -C ₁₀)디메틸암모늄	240mg/L 이하(4급암모늄으로서)

○ 과산화수소제제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으로 사용 : 사용량은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 : 1,100mg/L 이하 (과산화수소로서)

○ 과산화초산제제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으로 사용 :

과산화초산	315mg/L 이하
과산화수소	1,100mg/L 이하
과산화옥탄산	122mg/L 이하
옥탄산	234mg/L 이하
(1-하이드록시에틸리덴)비스포스포닉산	34mg/L 이하
1-옥탄설폰산나트륨	312mg/L 이하

○ 구연산제제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

○ 요오드제제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사용 :

요오드	25mg/L 이하 (적정요오드로서, 다만,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계로서 25 mg/L 이하)
요오드칼륨	25mg/L 이하 (적정요오드로서, 다만, 다른 요오드화물과 병용 시 적정요오드의 합계로서 25 mg/L 이하)

○ 이산화염소제제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의 살균목적으로 사용 : 200mg/L 이하

○ 젖산제제

식품의 제조·가공용 기구등 살균소독으로 사용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1.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도축검사지침서, 2018
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도축검사 참고자료, 2015
3. 송형익·채기수 등. 지구문화사, 현대식품위생학, 2003
4. 강경선·김기석·김석 등. 문운당, 식품위생학, 2013
5.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기획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강호성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건호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이재만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정찬인

편찬위원

(포유류)

농림축산검역본부 윤순식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 변현섭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김정화(남)

(가금류)

농림축산검역본부 배유찬
전북동물위생시험소 조선영

(법령 및 규정)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영숙

기술감수위원

(포유류)

농림축산검역본부 소병재
서울대학교 김용백

(가금류)

농림축산검역본부 권용국
충북대학교 모인필



도축검사 매뉴얼(관련 법령 및 규정)

발행일 2019년 7월
발행처 농림축산식품부
디자인/인쇄 Design세창(1544-1466)